

조선후기 실록수정 연구

목 차

I. 《선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머리말

1. 《선조실록》 수정 시말(始末)
 - 1) 수정 논의의 배경과 전개
 - 2) 수정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의 대립
 - 3) 《선조수정실록》의 완성
2. 수정본의 체제와 범례
 - 1) 주목사(朱墨史)의 원용
 - 2) 수사요강(修史綱領)과 범례
3. 기사(記事)의 보완과 수정
 - 1) 기사 수보(修補)
 - 2) 사론(史論) 수정

맺음말

II. 《현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1. 머리말
2. 《현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 1) 《현종실록》의 편찬
 - 2) 《현종실록》의 개수
3.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비교
 - 1) 찬수범례로 본 개수
 - 2) 사안과 인물의 평가
4. 맺음말

III. 《숙종실록》의 편찬과 보궐정오

1. 머리말
2. 《숙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 1) 《숙종실록》의 편찬
 - 2) 《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
3.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의 비교
 - 1) 숙종 초년에 대한 인식
 - 2) 노소 분당과 외척 비판

- 3) 장희빈 처리와 세자 보호
- 4) 병신처분과 정유독대
- 4. 맺음말

IV. 《경종실록》의 편찬과 수정

- 1. 머리말
- 2. 《경종실록》의 편찬과 수정
 - 1) 《경종실록》의 편찬
 - 2) 《경종실록》의 수정
- 3.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의 비교
 - 1) 왕세제의 건저(建儲)
 - 2) 김일경과 목호룡의 고변
 - 3) 복권과 출향의 갈림길
- 4. 맺음말

I. 《선조실록(宣祖實錄)》의 편찬과 수정

머리말

1. 《선조실록》 수정 시말(始末)

- 1) 수정 논의의 배경과 전개
- 2) 수정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의 대립
- 3) 《선조수정실록》의 완성

2. 수정본의 체재와 범례

- 1) 주목사(朱墨史)의 원용
- 2) 수사요강(修史綱領)과 범례

3. 기사(記事)의 보완과 수정

- 1) 기사 수보(修補)
- 2) 사론(史論) 수정

맺음말

머리말

조선후기에 들어서 조선사회는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본고의 주제인 《선조실록》의 수정도 그런 변화의 하나이다. 조선초 《태조실록》이 세종대 후반에 이르러 수정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선조수정실록》 이전에는 이렇듯 이미 완성된 실록을 수정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태조실록》이 조선건국 당시 부족한 정보에 기초하여 편찬되었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조실록》의 수정은 조선시대 실록 편찬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조실록》의 수정의 배경으로 인조반정을 떠올리거나, 왜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한 뒤에 《선조실록》을 그대로 남겨두었을까 하는 소박한 의문 정도는 연구자라면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본고도 바로 그런 선입견 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선조수정실록》의 편찬은 식민지시대부터 주목을 받아, 수정사업에 대한 주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宣祖 이래 격렬한 黨爭의 결과’라는 해석에 그쳤으며,¹⁾ 이후로도 지금까지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 대한 연구는 해제 이상의 논고가 제출되지 않았다.²⁾

1) 瀨野馬熊, 1932 〈李朝宣祖修正實錄と顯宗改修實錄に就いて〉; 1936 《瀨野馬熊遺稿》에 재수록. 瀨野馬熊은 총독부 주도로 1923년 만들어진 관변학회인 조선사학회(朝鮮史學會 1925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는 이들을 주축으로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로 개편)에서 《조선사강좌(朝鮮史講座)》편찬에 참여하였다. 趙東杰, 1998 《現代韓國史學史》(나남출판) 269~270

2) 申奭鎬, 1957 〈凡例〉《宣祖實錄》(국사편찬위원회); 강대걸, 1993 〈국역선조실록해제〉. 최근에는 《선조실록》 의례에 대한 해제가 추가되었다. 韓明基, 2000 〈解題〉《宣祖大王修正廳儀軌》(규장각); 吳恒寧, 2002 〈順治十四年丁酉九月日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藏書閣所藏儀軌解題》(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한 《선조수정실록》 편찬은 계해반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도 문제의식에서 보면 식민지 시대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실록을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수정과 보완’이라는 수정작업의 성격과 몇몇 내용의 특징을 서술한 최근의 연구조차도, 중요한 사실의 오류를 제외하고라도 다시 당쟁론적 해석으로 환원하고 마는 답보를 면치 못하였다.³⁾ 이 시기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실증과 이해가 축적되었음을 고려하면 무척 의아한 일이다. 실록이 정치성을 띠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실록편찬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서술을 통하여 《선조실록》 수정의 실제와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선조수정실록》은 비록 인조 원년에 수정논의가 처음 제기되었지만,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계속 중단되다가 효종 8년(1657)에 이르러 사업이 끝났다. 그간 편찬 주체도 변하였고, 수정 방향을 두고 논쟁을 벌인 일도 있다. 편찬 주체나 범례는 해당 실록 부록과 현존하는 《선조실록수정청의궤》 및 기타 연대기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선조실록의 수정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은 실록의 발달과정에서 제기된 연원이 깊은 논제가 다시 고개를 내민 것이 있어서 주목을 끄는데, 논쟁은 논쟁대로 실록사의 맥락에서 또는 편찬논의 당사자들이 수정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료비판의 관점에서 두 실록에 접근하기로 한다. 즉, 우리가 《선조실록》(宣宗昭敬大王實錄)과 《선조수정실록》(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⁴⁾을 사료로 활용하면서도 실제로 그 둘이 서로 다른 사료(Text)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활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학자들도 개인적 경험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서 그치고, 이 문제를 드러내어 체계적으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즉 역사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까지 여기지는 않은 듯하다.⁵⁾ 그렇지만 사료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늘 자신의 연구를 사료로 증명해야 하는 역사학자에게는 기초에 속하는 일이다.⁶⁾ 그렇기에 피할 수 없는 조사작업이 사료비판이라고 한다면, 필자의 소박한 시도마저도 매우 때늦은 감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본고의 서술을 위하여 우선 단순하지만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를 年月日별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문 중, 기사와 사론의 수정에 대한 서술은 이런 비교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이 비교작업

3) 배동수, 2000 〈宣祖實錄 修正編纂의 政治史的 意味〉 《정정》 13.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배동수가 瀨野馬熊의 결론으로 자신의 결론을 대체한 것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위 논문, 78 및 각주57) 《宣祖大王修正廳儀軌》나 《澤堂集刊餘本》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여러 차원을 단순화한 결과로 보인다.

4) 광해군 8년에 宣宗의 廟號를 宣祖로 하였다. 《광해군일기》 권106 8년 8월 4일(임인)

5) 대표적인 예로는 北島万次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北島万次, 1994 〈壬辰倭亂研究와 「朝鮮王朝實錄」〉 《민족문화17》(민족문화추진회). 16년 동안이나 선조 25년 4월에서 26년 10월까지 실록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사료를 섭렵하며 비판, 검토한 ‘조선왕조실록강독회’에서조차도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기사 구성의 차이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6) 실록 기사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제출된 연구성과는, 韓祐勳, 1988 〈朝鮮前期 史官과 實錄 編纂에 관한 연구〉 《震檀學報》 66; 金慶洙, 1998 《朝鮮時代의 史官研究》(국학자료원) 등을 들 수 있다.

은 수정편찬자들이 제시했던 범례를 준거로 삼아 접근하였다. 인조대 수정작업을 총괄, 주도한 인물인 이식의 《澤堂集·刊餘本》에서 《선조실록》의 수정에 이용된 참고자료와 범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⁷⁾ 이어 그 범례를 범주화하고 東西分黨·己丑獄事·壬辰倭亂 등 당대의 주요 사건이자 현재 연구자들의 관심이 될 수 있는 記事群을 범례의 범주와 관련시켜, 그 주요 기사들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조사하였다. 또 인물 및 사건에 대한 사론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비교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실록편찬사에 처음 있는 수정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수정작업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 《선조실록》 외에도 여러 차례 개수 또는 수정작업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야 가능한 일반론이 있을 것이고, 《선조실록》의 수정이라는 하나의 사안이 갖는 나름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본고에서 제시하는 몇몇 단서를 통하여 《선조실록》의 수정은 물론, 나아가 조선후기 실록 수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선조실록》 수정 시말(始末)

1) 수정 논의의 배경과 전개

광해군대에 편찬된 《선조실록》은 인조가 즉위한 계해반정(1623) 후 곧바로 그에 수정 의견이 제기되었다. 인조 원년 8월, 경연석상에서 특진관 李晬光, 李廷龜 및 任叔英 등은 《선조실록》이 ‘賊臣’의 손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며, 애초 李恒福이 총재관이 되어 제학 申欽 등과 찬수하다가 계축옥사(광해군 5년, 1613) 때 이들이 쫓겨나고는 이이첨 등이 초고를 산삭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료를 없앴다고 주장하였다.⁸⁾ 그런데 이미 대북 정권의 專制가 강화되었던 광해군 후반에 편찬된 《선조실록》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경로로 그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반정을 계기로 표출되었던 것이다.⁹⁾

광해군대 이루어진 《선조실록》 편찬은 관례대로 선조의 졸곡이 끝난 뒤 춘추관의 발의로 시작되었다.¹⁰⁾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사초와 기타 편찬자료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7) 오항녕, 2002, 〈역사가 이식〉 《문헌과해석》 20호. 원제목은 《택당선생별고간여》(규장각, 古3428-67Aa-v.1-9)인데, 이하 《간여본》이라 칭한다. 이 《간여본》은 이종묵의 도움으로 알게 되었다. 《간여본》을 포함한 《택당집》의 판본과 목록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2, 〈이식의 문집, 《택당집》〉 《문헌과해석》 20호 참고.

8) 《인조실록》 권2 원년 8월 丙子;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규장각 14155, 장서각 2-3722. 이하 《수정청의궤》라고 줄인다) 계해 8월 18일. 지난번 경연에서도 제기되었다고 한 인조의 말로 보아 이미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조실록》에는 《수정청의궤》에 나오는 인조의 말이 없다. 한편,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는 宣祖·光海君代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구덕희, 1988 〈宣祖代 後半(1594~1608) 政治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 20; 한명기, 1988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9) 《선조실록수정청의궤》 신사년 2월 15일, 대제학 이식(李植)의 차자. “史庫之藏 外人雖不能徧窺 而前後實錄 考見之時 史臣目見相傳 有不可諱者 誠于古史家之一大變也”

편찬에 무척 애를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 그래서 우선, 개인의 일기나 문집 등 보완할만한 편찬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했다. 특히, 본고에서도 다룰 기사이지만, 기축(1589년, 선조 22년)·경인(1590년)·신묘(1591년) 등 정여립 모반사건에 이은 논란 와중에서 위관(委官)으로 정여립의 옥사를 담당했던 정철(鄭澈)이 파직되는 등 선조대의 주요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의 기록이 부족했던 것은 더욱 편찬자들을 난감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 게다가 유영경의 옥사 등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여 편찬작업이 지지부진하던 터에 계축옥사를 계기로 편찬 담당자가 대거 바뀌는 상황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후 실록편찬은 기자헌·이이첨이 담당하여 광해군 9년에 이르러 완성되었는데,¹³⁾ 이렇게 실록편찬이 늦어진 것은 조선시대 실록편찬의 관례로 보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결국 《선조실록》 편찬은 광해군 5년 이전 이항복·이정구·신흠을 중심으로 편찬자료 수집 및 중초(中草)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기자헌을 중심으로 등록 및 인출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인정반정 이후 경연관들의 문제제기는 바로 등록 및 인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다.¹⁴⁾

이정구 등의 발론이 있던 지 이틀 뒤, 좌의정 윤방은 구체적인 선조 지문(誌文)의 실례를 들어 《선조실록》을 수정해야할 이유를 제기하였다. 그는 이산해가 《선조실록》 편찬의 총재관이 되어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게을러져서 세자에게 국정을 전담시켰다고 기록하였으며, 선조의 지문에는 자손조차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정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¹⁵⁾ 이어 《선조실록》이 ‘사실이 왜곡된 역사[誣史]’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해를 넘겨 수정논의가 계속되었다.

인조 2년, 서성(徐滄)이 다시 국가 경비 고갈로 사정이 어렵더라도 시급히 실록수정청을 설치하자고 건의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았지만 여전히 추진하지는 못하였다.¹⁶⁾ 이는 대체로 내외의 정세가 그리 녹록치 않았던 데서 먼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서성의 건의가 있던 지 며칠 안되어 이괄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¹⁷⁾ 더 이상 수

10) 《광해군일기》(태백산본, 본고에서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중초본인 태백산본이다.) 권18 원년 7월 13일(임진)

11) 《광해군일기》 권21 원년 10월 5일(계축)

12) 《광해군일기》 권35 2년 11월 6일(정미), 서경우(徐景雨)의 계

13) 《광해군일기》 권118 9년 8월 28일(경신), 실록청의 계. 《선조실록》 부록에는 광해군 8년 11월에 마쳤다고 하였다. 그런데, 광해군 9년 9월에야 선운(宣醞)을 하였고, 다시 1년이 지나 광해군 10년 4월까지도 세초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7월이 되어 실록을 4사고에 봉안하였다.

14) 《선조실록》 수정 발의자였던 이정구는 知事로, 이수광은 同知事로 《선조실록》 권221 부록 편수관 명단에 실려 있다. 편수관 명단은 전후 관원을 모두 기록하였기 때문에 명단만으로는 《선조실록》 편찬을 둘러싼 긴장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때 편수관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발의로 수정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 긴장의 표출이라 하겠다.

15) 《인조실록》 권2 원년 8월 20일(무인). 자손을 적지 않은 것은, 《선조실록》 부록, 誌文 참고. 선조가 선위 의사를 표시했던 26년(1593)의 史論에 2백년 기업을 멸망케 하였으니 禪位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였는데 (《선조실록》 권42 26년 9월 戊午, 승정원의 嗣位 반대에 대한 사론 및 11월 庚申, 領府事 沈守慶과 領議政 柳成龍 등을 응대한 기사에 대한 사론), 선조가 게을러 양위하려했다는 기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산해는 광해군 원년(1609)에 죽었으므로 《선조실록》 편찬에는 실제로 간여한 바가 없다.

16) 《수정청의궤》 갑자년 정월 14일, 徐滄의 건의

17) 《인조실록》 권4 2년 1월 24일(기묘)

정 논의나 편찬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반정세력 내부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¹⁸⁾ 동시에 반정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대가 여전히 반정세력의 중요한 과제였음을 의미한다.¹⁹⁾ 나아가 계해반정에 대해 ‘찬탈’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명과의 현안은 반정세력에게는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야 할 사안이었다.²⁰⁾

그렇다고, 이미 조선시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관례가 된 실록편찬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 이괄의 난이 수습되는 와중에 춘추관에서는 광해군대의 역사편찬을 제안하였고,²¹⁾ 이에 따라 《광해군일기》의 편찬에 착수한 것이 《선조실록》의 수정이 늦어진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춘추관에서는 魯山君·燕山君의 예에 따라 실록청에 총재관·도청 및 각 당상·낭청을 두어 《광해군일기》를 편찬하자고 건의하여 인조의 승낙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된 《광해군일기》도 이괄의 난 와중에 서울이 이괄에게 점령되어 편찬자료가 거의 분실됨으로써 원활한 편찬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일부만(13개월분) 中草本을 만든 채 나머지는(54개월분) 亂草 상태로 정묘호란을 당하였다.²²⁾ 결국 정묘호란(1627년, 인조5년)을 맞아 찬수청을 철수하였고, 이후 손을 놓다시피 하다가 시작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서도 활자로 인출하지 못하고 중초본과 정초본만 작성한 채 중단되었고, 《광해군일기》는 그 상태로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²³⁾ 그렇지만 《선조실록》의 수정보다 《광해군일기》를 먼저 편찬하게 된 이유는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그 이유는 반정 초기 조정에 참여한 학자나 관료들이 《선조실록》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광해군 시대의 ‘일기’에 대해서도 수정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²⁴⁾ 광해군대의 時政記가 거칠고 왜곡되었으며,²⁵⁾ 광해군 초년 이후의 史筆을 모두 이이첨의 門客이 작성하였다고²⁶⁾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광해군일기》의 편찬은 통상의 실록편찬이 아닌 ‘시정기의 수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²⁷⁾

말하자면 반정 이후 인조를 위시한 반정세력과 새로운 정권에 참여한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해군대의 역사를 정리하는 편이 한 세대 앞선 선조대의 역사를 수정하는 일보다 반정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데 더 중요한 일로 판단되었을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 《광해군일기》의 편찬(곧, 수정)에 먼저 착수하였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한다.

18) 인조대 정치세력의 동향은, 오수창, 1986 〈仁祖代 政治勢力의 동향〉, 《韓國史論》 13 참고.

19) 반정 이후 중요한 정책방향이 ‘崇用山林’이었고, 이에 따라 반정공신들과 師友 관계에 있던 金長生·朴知戒·張顯光 등의 산림을 초치하였다. 오항녕, 1992 〈17세기 전반 서인산림의 사상-김장생·김상헌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 29~33.

20)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역사비평사) 제3부 제2장 인조반정 승인을 둘러싼 명과의 갈등

21) 《인조실록》 권6 2년 6월 辛亥, 춘추관의 계

22) 《인조실록》 권28 11년 9월 辛卯, 찬수청의 계

23) 林承豹, 1993 〈국역광해군일기해제〉(민족문화추진회)

24) 《인조실록》 권2 원년 8월 丙子, 이수광의 계

25) 《인조실록》 권6 2년 6월 辛亥, 춘추관의 계

26) 《인조실록》 권28 11년 7월 辛丑, 춘추관의 계

27) 예를 들어, 市民들이 이이첨의 집에서 발견한 이이첨이 광해군에게 보낸 서찰을 任叔英이 수집하여 檢閱 羅萬甲으로 하여금 찬수청에 보내게 한 일은 광해조의 기록에 대한 당시의 관심을 보여준다. 《인조실록》 권28 11년 8월 己巳, 纂修廳의 계 및 그에 대한 史論과 서찰 내용.

거기에 더하여 실록이라는 당대사 편찬의 관례도 편찬(수정)의 선후를 결정하는 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춘추관에서 ‘광해군일기’의 수정을 건의했을 때, 《노산군일기》와 《연산군일기》의 편찬 사례를 근거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²⁸⁾ 이는 폐주 재위시대의 역사를 폐주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재위기간을 단위로 편찬하여 당대사 편찬 관례를 유지하되 ‘실록’이 아닌 ‘일기’로 불러 역사의 位格을 달리하자는 의미였다.

인조 초기의 당대사 수정 논의는 이렇게 매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제기되었는데, 폐조시대에 편찬된 실록의 수정과 폐조대 일기의 편찬이라는 두 가지 국사 편찬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때 《선조실록》을 먼저 수정하느냐 《광해군일기》를 먼저 수정하느냐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당대사 편찬 관례와 반정세력의 현실적 긴박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였고, 그에 따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후자를 먼저 편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일기》를 먼저 편찬하기로 한 뒤에도 《선조실록》의 수정을 촉구하는 의논은 계속되었지만,²⁹⁾ 이어지는 병자호란과 국정 수습에 급하다보니 인조 19년에 이르러 이식의 상차에 따라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논의는 《선조실록》수정을 재개하자는 발의로 시작하지만 그 논의에는 수정 작업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 따로 검토해야 할 주제가 있으므로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수정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의 대립

《선조실록》의 수정은 인조 19년(1641) 2월에 올린 이식의 상소로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³⁰⁾ 수정의 이유는 誣史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왕의 공론과 다를 바 없었지만, 이미 선조 승하 후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인조 원년 발의 이후로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에 사료 인멸의 우려도 있고 사실을 아는 당대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뜬으로써 더 이상 수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논의는 『선조실록』의 수정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정 당위론의 반복이 아닌 본격적인 수정작업이 가능하였다.

이식의 상소와 《수정청의궤》에 수록된 논의를 종합하면 방법론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편찬주체와 史局의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었지만 《선조실록》 수정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식의 2월 상소를 계기로 수의한 결과, 이성구와 심열이 형편을 고려하여 수정을 미루자고 하였으나 인조는 최명길의 의견에 따라 수정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최명길의 의견은,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편찬하였듯이 이식에게 수정을 전담하게 하고 이식의 집에

28) ‘노산군일기’는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며 수양대군에게 선위하는 형식으로 왕위계승이 이어졌던 까닭에 세조 사후 《세조실록》과 함께 편찬되었다.

29) 《승정원일기》 인조6년 8월 26일(계유), 東陽尉 申翊聖 劄子

30) 《인조실록》에는 12일로, 《수정청의궤》에는 15일로 되어 있다. 아마 《수정청의궤》가 상소에 따른 후속 논의를 함께 게재하면서 생긴 차이로 보인다. 이때 올린 상소는 《선조수정실록》에 蔡裕後 後記와 함께 부록으로 실려 있다. 《택당집별집》 권4에는 〈辛巳春請修史辨誣劄〉로 수록되어 있다.

사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³¹⁾

이에 대해 이식은 조선의 역사편찬은 私家에서 사사로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법이 없고, 사마광의 《통감》은 ‘지나간 시대의 역사[前代史]’일 뿐이므로 당대사인 실록의 수정과는 다르다고 최명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³²⁾ 이식의 반론은 두 가지로, 자신의 집에서 편찬하였을 때 과연 체계적인 인력동원이 원활하겠느냐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실록은 그렇게 개인의 집에서 편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식의 반론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收議에서, 최명길은 韓愈가 《순종실록》 5권을 편찬한 것이나 令狐가 《현종실록》 100권과 《대종실록》 30권을 찬수하였던 사례를 들어 이왕의 견해를 고수하였다.³³⁾ 그런데 최명길의 논리는 수정작업이 “閭巷의 보고들은 것을 모아서 역사기록에서 빠졌거나 소략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편찬을 완료한다는 것도 야사와 소설 중에 조금 내용을 갖춘 것에 불과할 뿐…역사편찬(실록편찬-필자) 관례와는 자연히 다른 것으로 이식이 기피할 일이 아니”라는 데로 이어졌다.³⁴⁾ 이런 최명길의 판단은 심각한 사실적, 명분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적 오류라는 것은, 한유가 실록편찬을 ‘전담’했다는 말에 집착한 것이다. 즉, 관청에서 하든 私家에서 하든 한 사람이 책임지고 편찬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어느 역사편찬이든 책임관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전담 책임편찬의 성격도 개인의 학식에 의존한 책임편찬이라는 데서 차츰 관청(예를 들어, 실록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편찬의 지휘라는 의미로 변화해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관제도 운영의 변화가 확인하였던 것이다.³⁵⁾

결국 최명길의 무리스러운 일반화와 그에 따른 오류는 다른 논거가 필요하였고, 그것은 《선조실록》의 수정이 갖는 의의를 약화시키는 데로 이어졌다.(혹은 그 역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처음 《선조실록》의 수정이 발의될 때부터 그것은 단순한 보완이 아니었다. 왜곡과 시비의 전도를 바로잡는, 즉 역사를 통하여 당대의 평가와 가치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조가 최명길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잘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식도 납득할 수 없었던지 곧바로 반론을 폈는데, 조선의 역사편찬은 춘추관이 주관하되 실록의 경우에는 궁성 밖에 있는 관청에 실록청을 설치하여 여러 관원들의 출입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전례이며 앞 시대의 史臣들도 모두 관청에 근무하면서 일을 보았고, 만일 집에서 사사롭게 저술하면 이는 野史이지 國史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식은 또 黨論에 따라 수정작업이 좌지우지 된다는 비난을 예상해서인지 수정작업이 公論의 지지를 얻고 인정을 받기

31) 《수정청의궤》 신사년 2월 15일, 李植의 차자에 대한 崔鳴吉의 의견

32) 《수정청의궤》 辛巳 3월 18일, 行義興衛護軍 李植의 상소. 《인조실록》에는 19년 4월 辛亥(6일)에 수록되어 있다.

33) 《수정청의궤》 辛巳 3월 18일, 行義興衛護軍 李植의 상소에 대한 최명길의 의견

34) 위와 같은 곳, “竊見韓愈文集載其所撰順宗實錄五卷 皆出韓愈之手 而其中又稱令狐恒在史館修玄宗實錄一百卷撰代宗實錄三十卷云 以此見之 可想唐朝修史 亦皆專屬一人 非特司馬光修綱目日事可爲援例而已 況今日所議不過掇拾閭巷聞見以補史文闕畧 就令撰完不過野史小說中稍備者而已 與史例自不同 恐非李植所當辭也”

35) 오항녕, 2009, 《韓國史官制度成立史》, 일지사

위해서는 조정의 신하들이 논의를 통하여 필삭하는 공적 구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³⁶⁾ 이식의 견해는 춘추관의 계에서 다시 언명되었고 인조의 승인 아래 수정작업은 이식의 제안과 구상대로 진행되었다. 빈 관사를 정하여 이식의 차자 내용대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팔도의 감사에게 유시하여 사관을 지낸 적이 있는 사람들의 사초와 야사를 고을별로 수집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³⁷⁾

3) 《선조수정실록》의 완성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는 이듬해에 예조참판 이식은 영의정 崔鳴吉, 이조판서 李顯英, 행호군 李景曾, 대사헌 徐景雨, 대사간 李厚源 등과 함께 청으로 압송되었다가³⁸⁾ 인조 21년 어느 무렵 귀국하여 《선조실록》 수정 책임을 다시 맡았다. 이식은 檢閱 沈世鼎과 함께 赤裳山城에 가서 《선조실록》 중 잘못된 곳을 기록하여 따로 《實錄謄抄》 한 책을 만들어 춘추관에서 편찬할 때 상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⁹⁾ 인조 22년(1644년) 2월, 이런 예비 작업이 끝나고 수정청을 창덕궁의 병조 건물에 두었는데, 당시 승문원 숙직실로 사용하던 곳으로 비변사에서도 가까워서 춘추관 당상관들이 왕래하면서 감독하기 편하기 때문이었다.⁴⁰⁾

이렇게 한권으로 典籍을 모으고 실록을 謄抄하면서 부족한 편찬인원을 보강하는 등 수정작업을 지속하여⁴¹⁾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시대 병신년(1596년, 선조 29년)까지는 이미 이식의 손으로 개수작업이 대체로 마무리되었다.⁴²⁾

그런데 이후의 수정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이식은 한참 실록 수정이 진행될 인조 24년(1646년) 1월에 이조판서로 있을 때의 인사 문제로 파직을 당하였고, 鄭弘溟이 대제학이 되었다. 그 해 7월 다시 대제학에 제수되었으나 이번에는 文科 別試의 初試 一所와 二所の 논제에 역모의 기미가 있다 하여 罷榜되면서 이식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門外黜送되었다.⁴³⁾ 昭顯世子的 세자빈인 姜嬪의 賜死에 이은 정국의 경색이었다.⁴⁴⁾

이후 인조 말년은 이 일로 뒤숭숭했고, 이듬해 6월 이식은 세상을 떠났다. 이식이 세상을 뜨자 8월에 인조는 趙綱에게 실록 수정을 맡기면서 일을 계속하려 했지만⁴⁵⁾ 이후 별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정에 대하여 《수정청의궤》에는 “丙戌(인조 24년, 1646) 이전에 총재관과 당상들 중에서 어떤 이는 세상을 떴고, 당상관 중에는 정승이 되기도 하였

36) 《수정청의궤》 辛巳 4월 16일, 吏曹參判 李植의 상소

37) 《인조실록》 권42 19년 5월 辛巳, 春秋館의 계

38) 《인조실록》 권43 20년 10월 庚戌

39) 《인조실록》 권44 21년 7월 甲辰

40) 《수정청의궤》 甲申 2월 29일

41) 《인조실록》 권45 22년 8월 戊寅

42) 《효종실록》 권18 8년 정월 癸亥, 蔡裕後의 계

43) 《인조실록》 권48 25년 6월 壬午, 이식의 卒記

44) 吳恒寧, 1993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태동고전연구》 9, 13~16. 강빈 옥사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인조의 불만이 이식에 대한 파직으로 이어졌지만, 이미 인조의 斥和派 신하들에 대한 반감은 컸으며 특히 鄭命壽가 第三使로 왔을 때는 이식을 勅使의 館伴에서 바꾸려고 하여 인조가 이식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다. 《인조실록》 권46 23년 11월 乙亥.

45) 《인조실록》 권48 25년 8월 辛未.

다. 오직 대체학 이식이 있어서 편찬 작업을 계속하다가, 병술년 9월에 이르러 이식이 죄를 입자 그 상태로 편찬작업은 중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⁶⁾

효종이 즉위한 뒤에도 《선조실록》 수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⁴⁷⁾ 이때에도 인조대 실록을 먼저 편찬할 것인지 《선조실록》을 수정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다가⁴⁸⁾ 이번에도 《인조실록》을 먼저 편찬하기로 함으로써 《선조실록》 수정은 뒤로 늦추어졌다. 아마 인조 초년 《광해군일기》를 먼저 편찬하기로 했던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며, 결국 수정작업은 《인조실록》이 완성된 효종 4년⁴⁹⁾ 이후에야 추진될 수 있었다.

사료로만 보면 효종 5년에 이미 실록찬수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실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그런데 이때 수정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계속된 흉년과 효종 5년 金弘郁이 求言應旨上疏에서 강빈 伸冤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杖殺당하면서 급속히 얼어붙은 정국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경비조달의 문제점과 안로를 막아 공론정치를 부정한 효종의 독단에 대한 신료들의 반발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으며, 양병론에 근거를 둔 효종의 국방정책이 난관에 봉착하여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할 시점이었던 것이다.⁵¹⁾

결국 효종 7년 2월 김수항의 상소를 계기로 노비추쇄, 군사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8년 7월에는 효종이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하여 宋浚吉과 許穆 등을 다시 조정에 초치하는 등 공론정치의 회복을 천명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다시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실록찬수청이라는 명칭이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때 사용하던 이름이라 하여 실록수정청으로 명칭을 바꾸고,⁵²⁾ 강화도의 실록을 가져다 참고문헌으로 삼아 수정을 시작하는 한편,⁵³⁾ 〈應行事目〉을 정하여 효종에게서 결재를 받았다.⁵⁴⁾

앞서 말하였듯이 이미 이식의 책임 아래 수정작업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중국의 칙사가 왔을 때 잠시 지연되고 수정청이 자리를 옮긴 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방해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의 수정작업은 무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에서 가져온 실록 중에서 빠진 부분(32개월 분량)은 적상산 사고에서 등출하여 참고하였다.⁵⁵⁾

장황(粧黃)을 마친 실록수정본은 모두 8책이었으며, 5곳의 사고에 두기 위하여 모두 40책을 간행하였다.⁵⁶⁾ 이 중, 이식이 편찬한 30년분이 6권이고, 이번에 수찬한 11년분이 2권이

46) 《수정청의궤》. 《수정청의궤》는 내용으로 보아 인조대 기록과 효종대 기록의 두 단계로 나뉜다. 인조대 수정사업에 대한 기록 말미에 인조대 수정작업이 미완에 그친 이 설명이 달려 있다.

47)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10월 18일(계묘); 효종 원년 1월 18일(임신)

48) 《승정원일기》 효종 원년 6월 3일(을유), 李敬輿의 말

49) 《효종실록》 권10 4년 6월 庚申

50) 《승정원일기》 효종 5년 5월 25일(갑인), 특진관 蔡裕後의 계; 26일(을묘) 찬집청 계

51) 吳恒寧, 1993 〈앞 논문〉 32~38. 김홍욱의 장살은 鄭斗卿의 상소를 필두로 당색에 상관없이 효종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고, 효종 10년에 김홍욱을 復爵함으로써 해소되었다.

52) 《효종실록》 권18 8년 정월 乙卯, 纂修廳의 계

53) 《효종실록》 권18 8년 정월 癸亥; 《승정원일기》 효종 8년 2월 17일(경인) 金堉의 말.

54) 《수정청의궤》 丁酉 1월 12일, 纂修廳 單子.

55) 《효종실록》 권18 8년 3월 庚申, 실록수정청의 계. 당시 실록 등출을 위하여 文官과 蔭官을 가리지 않고 호서호남의 都事와 守令, 찰방 중에서 글을 잘쓰는 사람을 선발하여 실록등출에 참여시켰는데, 이로 인해 실록 등출에 음관을 포함시켰다는 비판여론이 있었다.

56) 《수정청의궤》 정유 8월 28일.

었다.⁵⁷⁾ 이를 춘추관에 봉안하는 동시에, 실록수정의례청을 두어 《수정청의례》를 작성하게 하였다.⁵⁸⁾ 이어 세초를 하고 세초연을 벌임으로써⁵⁹⁾ 오랜 기간의 수정작업이 마무리되었다.

2. 수정본의 체재와 범례

1) 주목사(朱墨史)의 원용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조실록》의 수정은 조선시대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수정작업이란 원본과 수정본 사이에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수정을 하였으면 수정본만 남기고 원본을 폐기하든지, 원본에 수정을 하든지,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경우처럼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남기든지 하는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이식이 수정작업의 전례로 처음 언급한 것은 중국 宋나라 ‘朱墨史’였다. 주목사란, 중국 宋나라 高宗이 남쪽으로 파천할 때 아직 行都도 정해지지 않았고 和戰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혼란이 극심할 때인데도, 元祐太后가 먼저 國史를 개수하여 宣仁后의 誣告를 가릴 것을 청하였다.⁶⁰⁾ 이에 高宗이 곧 史官 范冲에게 명하여 이전 역사에 근거해서 개수케 하였던 초안이 주목사이다. 범충은 《신종실록》을 수정하면서 《考異》를 저술하였는데, 원문은 검은 글씨로, 뺀 것은 노란 글씨로, 새로 삽입한 것은 붉은 글씨로 썼다. 세간에서 이를 ‘주목사’라고 불렀다고 한다.⁶¹⁾

효종대 채유후도 역사기록에는 잘못된 곳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資治通鑑綱目》에도 《考證》·《集覽》·《集覽正誤》 등이 저술되었으며, 《선조실록》처럼 正邪가 바뀐 경우 주목사의 예에 따라 바로잡되 新舊本, 즉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을 모두 보존하겠다고 말하였고,⁶²⁾ 그 결과는 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같다.

57) 《효종실록》 권19 8년 10월 甲戌.

58) 《수정청의례》 정유 9월 6일.

59) 《효종실록》 권19 8년 9월 己巳. 그런데 당시 시정기의 처리를 놓고 잠시 논란이 있었다. 사실 시정기는 어떤 가공을 거친 편찬물이라기보다는 ‘편철해놓은(filing)’ 묶음에 가깝다. 즉, 춘추관에 보관하는 사초를 비롯하여 승정원 등 각 관청에서 보내오는 중요한 문서를 잘 정리하여 모아두는 일을 가리킨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오항녕, 1998 《조선초기 사관제도연구》(고려대박사학위논문). 물론 이들도 세초의 대상이나 아무튼 이때에는 선조의 전교를 근거로 시정기는 태우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가, 《효종실록》 권19 8년 9월 庚申) 다시 세초하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

60) 선인은 宣仁后로, 송나라 英宗의 부인. 성은 高氏. 哲宗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섭정을 하였다. 王安石派를 물리치고, 司馬光 등을 등용하여 元祐之治를 이루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女人 堯舜이라고 칭찬하였다. 元祐 8년(철종 8년. 1093)에 돌아갔는데, 2년 뒤, 章惇蔡卞邢恕 등이 근거 없이 헐뜯었다. 황태후와 태비가 변론하여 일이 마무리되었다. 고종 때에 이들의 장순 등의 죄를 밝히고 선인후의 집안을 기렸다. 《宋史》 권242 列傳1 〈后妃上〉

61) 《宋史》 권435 列傳194 儒林5 〈范冲傳〉. “冲之修神宗實錄也. 為考異一書 明示去取 舊文以墨書 刪去者以黃書 新修者以朱書 世號朱墨史 及修哲宗實錄 別為一書 名辨誣錄” 송나라 고종은 재위 1127~1162.

62) 《선조수정실록》 부록, 蔡裕後의 後記 및 《효종실록》 권19 8년 10월 甲戌, 大提學 蔡裕後의 말. 《考證》은 徐昭文이 元나라 順帝 至正 19년(1359)에, 《集覽》은 王幼學이 元나라 晉宗 泰定 원년(1324)에, 《集覽正

그러면 이러한 주목사 방식의 수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보자. 우선,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실록편찬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리라 짐작되는 만큼, 또 세초된 사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던 만큼 이왕 편찬된 《선조실록》을 폐기하고 따로 《선조수정실록》을 만든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수정해야될 기록도 있지만, 단순한 사실에 대한 기사 등 그대로 두어도 될 기록도 상당량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수정작업 방향은 이후의 서술에서 보듯이 《선조수정실록》의 기본 구성이 ‘기사 보완-사론 수정’의 체제로 이루어진 데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원문은 검은 글씨, 빨 것은 노란 글씨, 새로 삽입한 것은 붉은 글씨’ 하는 식의 주목사 형식을 기계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수정작업에 적용된 기본 원리는 마찬가지였다.

주목사 방식 수정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역사를 남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점은 ‘수정작업의 규모’에 대한 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식은 《선조실록》과 다른 관점이나 사실을 제공하는 사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도 주목사의 교훈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듯하다.⁶³⁾ 이식이 처음 《선조실록》의 수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견해를 제출한 것은 광해군대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아 잠시 관직을 떠난 적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교관료로서의 능력 때문에 줄곧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또 《선조실록》 편찬에 간여한 적이 있고 계해반정 이후 그 수정의 필요성을 댄먼저 제기했던李廷龜를 통해서였다.⁶⁴⁾ 《辨誣錄》처럼 한권의 책을 편찬하는 방안도 기사별로 검토하면서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기각되었다.⁶⁵⁾ 그래서 기사별로 검토하고 수정본을 편찬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이식이 적상산성에 내려가 수정해야될 대목을 조사한 《실록등초》를 작성해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선조수정실록》은 주목사의 원리가 기사별 검토 수정이라는 수정작업의 규모에 적용된 결과인데, 그 기본정신은 ‘한 시대의 典刑을 후대에 증거로 남기는 것’, 즉 원문 기사와 수정 기사를 구별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한 객관성과 시비를 판단하게 하는 데 있었다. 이식이 수정 작업을 수행할 ‘공적 구조’를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이었다. 사실 주목사는 고친 기사와 원래 기사를 구분하는 편리한 방법 이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편의성’을 실무 당사자의 편의성이 아니라, ‘역사를 수정하는 태도’라는 사회적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선조실록》의 수정에 주목사를 표본으로 채택한 의미는, 성리학적 역사인식 일반이 갖는 ‘최종 심판은 후대 사람의 몫이라는, 곧 후대 사람들의 눈을 현재화하는 역사관’을⁶⁶⁾ 당대사인 실록의 수정

誤》는 陳濟가 明나라 成祖 永樂 20년(1422)에 각각 저술하였다. 이러한 저술에 대한 언급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역사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데, 따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63) 《수정청의궤》 辛巳 2월 15일, 大提學 李植의 차자. “臣又以爲收拾野言家祿 折衷筆削 附藏史庫 亦是朱墨之遺意 而難者又以不大湔洗 止於小補爲歎”

64) 《수정청의궤》 壬午 5월 19일, 行虎賁衛司直 李植의 상소. “臣於甲子春 親見故相臣李廷龜以某日記出示且曰 吾欲傳寫一本 藏於史庫 臣答以不但此也 他日記亦可收藏云矣 其事雖不竟 臣之創意於此事 則實由故相之言啓之也”

65) 《수정청의궤》 辛巳 2월 15일, 大提學 李植의 차자에 대한 收議. “行判中樞府事沈悅以爲…或者曰 畧倣哲宗 辨誣錄古事 成一家書藏之史庫 則事可易就 而百世之後 是非可定云 此設近之 而亦非所以大洗誣筆之汚穢 痛雪先朝之羞辱 莫如考閱原本隨事釐正之爲當”

에 적용하여 자신들의 수정 작업마저도 객관화시킨 데 있다고 하겠다.

2) 수사요령(修史綱領)과 범례⁶⁷⁾

이렇게 수정작업의 표본과 원리, 규모가 정해지면서, 수정을 위한 사료가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광해군 9년 《선조실록》을 편찬한 뒤 관례에 따라 사초 등을 세초하였기 때문에⁶⁸⁾ 수정작업에는 통상 실록을 편찬하던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수정을 위하여 별도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했다. 수정에 이용된 자료는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조정에 남아 있던 기록으로 《승정원일기》나 朝報, 또는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참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에 남아 있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처음 《선조실록》 수정을 발의하던 무렵에 이정구는 《승정원일기》와 무진년(1568년, 선조 원년)부터 무자년(1588년, 선조 21년)까지 朝報가 남아있으니 이를 수정의 참고자료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승정원일기》는 참고하지 못하였고,⁶⁹⁾ 조보는 부분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⁷⁰⁾

한편 수정의 대상인 《선조실록》도 조사하였다. 그렇기에 수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무렵, 이식은 檢閱 沈世鼎과 함께 赤裳山城에 가서 《선조실록》 중 잘못된 곳을 기록하여 따로 한 책을 만들어 춘추관에서 편찬할 때 상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간여본》에 보이는 《實錄謄抄》(丁卯.1567. 선조 즉위년~戊申.1608. 선조 41년)로 생각된다.⁷¹⁾

민간의 문집 등에 산재해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식의 《刊餘本》에 목록이 실려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간여본》에 실려 있는 〈修史綱領〉이 바로 수정에 필요한 수집대상자료의 목록인 것이다. 綱領·雜記·疏章·碑誌行狀으로 분류된 〈수사강령〉은 실록의 수정의 기초자료가 무엇인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효종대에 끝난 2차 『선조실록』 수정작업에서는 수집 대상자료가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하기가 어렵다.⁷²⁾

〈수사강령〉에 분류된 綱領·雜記·疏章·碑誌行狀은 자료의 배치와 기사 보완 및 사론 수정

66) 吳恒寧, 1999 〈性理學的 歷史觀의 성립:超越에서 現實로〉 《조선시대사학보》 9

67) 《선조수정실록》에 이용된 典據는 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선조수정실록》의 수사강령에 대한 검토에 국한하여 언급할 것이다.

68) 정확히 언제 세초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광해군 10년 무렵으로 보인다. 《광해군일기》 권128(태백산본) 10년 5월 丙午 참고.

69) 《선조실록》 권2 원년 8월 丙子. 그런데, 현재 우리는 선조·광해군대의 《승정원일기》를 볼 수 없다. 이정구가 발의할 당시 남아 있던 《승정원일기》는 아마 인조 2년 이괄의 난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70) 《수정청의궤》 〈移文秩〉 丁酉 정월 27일, 全南監司에게 보낸 관문. “...宣祖朝實錄修正時考閱次 道內光州地故鄭大學家 去丙申丁酉戊戌己亥庚子辛丑壬寅等年 朝報藏在云 考閱後還送次...”

71) 이식이 미처 등초하지 못했던 선조 30년(1597) 이후 기록은 효종 8년 2차 수정 때 등초하였다. 《효종실록》 권18 8년 3월 庚申, 實錄修正廳의 계

72) 《수정청의궤》 〈移文秩〉 丁酉 9월 13일. 효종 8년(1657년) 9월 13일 전라감사에게 보낸 문서에 “실록을 수정할 때에 사용했던 도내 南原에 사는 幼學 조경남이 낸 『난중잡록』 4책과 『속잡록』 4책을 돌려주기 위하여 내려 보내니, 關文이 도착하는 대로 조경남에게 돌려준 다음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선조 15년부터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이식의 〈수사강령〉에 있는 ‘趙家野史’와 같은 책으로 보인다.

의 기본 줄기를 이루고 뒤에 언급할 〈수정법례〉와도 상관이 있다.⁷³⁾ 강령은 연대별로 수정실록의 줄기를 잡을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그밖에 편찬에 참고한 기록류가 있는데, 수집된 자료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⁷⁴⁾ 각 참고문헌의 편저자는 필자가 조사하였고, 나머지는 《간여본》의 것이다.

〈표1 : 〈수사강령·강령〉〉

資 料 名	筆者 註
考事撮要	조정의 행사, 절차 등을 요약하여 수록한 책. 명종 때 魚叔權이 저술하고 선조 때 許葑이 증보하였으며, 朴希賢이 續纂하였는데, 인조 때 崔鳴吉이 수정 증보.
實錄謄抄	선조 즉위년(1567)~선조 41년(1608). 이식이 《선조실록》 중 수정해야 할 대목을 적상산에서 베껴온 등초에 효종 8년 수정 때 추가한 등초.
石潭野史	李珥의 《石潭日記》로 보임. 선조 14년(1581) 이전
癸巳錄	不明. 선조 24년(1591) 이전
退溪年譜	李滉. 선조 3년(1570) 이전
高峯行狀年譜	奇大升. 선조 5년(1572) 이전
東崗講義	金宇顥의 《經筵講義》. 선조 6년(1573)~선조 18년(1585)
栗谷行狀年譜	李珥. 선조 17년(1584) 이전
李忠正行狀	李浚慶. 선조 5년(1572) 이전
懲怠錄	柳成龍. 선조 19년(1586)~선조 32년(1599)
海東野言	不明. 선조 21년(1588)~선조 32년(1599)
趙家野史	趙慶南의 《亂中雜錄》. 선조 15년(1582)~선조 40년(1607)
玄翁倭志	申欽. 선조 20년(1587)~선조 32년(1599)
混定錄	安邦俊 또는 尹宣學의 《混定編錄》으로 보임. 선조 8년(1575)~선조 35년(1602)
蘇齋疏註	盧守愼. 선조 원년(1568)~선조 22년(1589)
玄翁年譜	申欽
完平家史	李元翼. 선조 25년(1592)~선조 41년(1608)
鰲城年譜	李恒福

〈표2 : 〈수사강령·잡기(雜記)〉〉

資 料 名	筆者 註
-------	------

73) 《간여본》에는 考事撮要和 雜記가 강령의 하위분류기준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혼선을 주는데, 우선 ‘고사촬요’는 분류기준이라기보다 중앙 조정의 행사 등을 수록한 전래의 서적으로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왜냐하면, 분류기준으로 ‘고사촬요’라는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또 〈수정법례〉에, “먼저 綱領에 실린 것을 기록한 뒤, 雜記와 碑誌行狀의 차례대로 기록하였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잡기가 강령의 하위분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사강령〉의 분류는 綱領雜記·疏章·碑誌行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74) 아래에 표로 제시한 자료 외에 약 147명의 碑誌·行狀 목록도 《간여본》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는 ‘張 碑’, ‘申 狀’처럼 간략히 적혀 있으므로 따로 조사를 하여 누가 쓴 누구의 碑誌·行狀인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林塘年譜	鄭惟吉 연보. 선조 21년(1588) 이전
正氣錄	高由厚 편. 高敬命 父子의 사실 기록
己丑獄記	黃赫 또는 ‘大東野乘’ 의 《己丑錄》(?)
抗義新編	安邦俊의 《重峯先生抗義新編》. 선조 20년(1587)~선조 25년(1592)
閑山記事	(?) 선조 25년(1592)~선조 32년(1599)
湖南義錄	선조 25년(1592)~선조 30년(1597)
三冤錄	선조 25년(1592) 이후
晉州記事	선조 26년(1593)
海槎錄	金誠一(?) 선조 23년(1590)
東槎日記	黃愼. 선조 28년(1595)
關北紀事	
東事聞見	선조 35년(1602)
弔亡錄	선조 25년(1592) 이후
錦溪藏草	不明. 선조 25년(1592)
登科錄	
政府案	
書堂案	
崔大容雜記	崔大容
於于野談	柳夢寅
玄繩	宋翼弼
鑄字洞志	權僖(?)
諸家文集中亦有雜記	
完平日錄	李元翼
禹伏龍日記	禹伏龍
海東野言抄 洪家來	李珥

〈표3 : 〈수사강령소장(疏章)〉〉

<p>退溪(李滉), 栗谷(李珥), 西崖(柳成龍), 鰲城(李恒福), 月沙(李廷龜), 牛溪(成渾), 漢陰(李德馨), 東阜(李浚慶), 延平(李貴), 重峯(趙憲), 鶴峯(金誠一)-沈相宅來, 李忠正(李浚慶), 蘇齋(盧守愼), 晚翠(吳億齡), 朴生疏冊, 鄭吏疏冊, 梁弘澍疏, 愚伏家書疏(鄭經世), 鄭嶠書疏(?), 全有亨疏, 完平(李元翼)</p> <p>* 朴生疏冊과 鄭吏疏冊은 미상</p> <p>* 梁弘澍疏 : 《선조수정실록》 권37 36년 5월 삭 병진조</p> <p>* 全有亨疏 : 《선조실록》 권158 36년 6월 을유조</p>

자료수집과 함께 당연히 편찬의 기준인 범례를 확정하여야했을 것이다. 《선조수정실록》 부록에는 〈범례〉 10조가 전하는데, 이는 이식의 《간여본》의 〈선조대왕실록수정범례〉와 몇 글자만 다를 뿐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범례〉를 인용해보겠다. 논의가 편리하도록 일련번호를 매기고 범주화해보았다.

〈표4 : 〈범례〉와 그 범주〉

범 주	범례의 각 조문
-----	----------

1.총론	① 《선조실록》은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잃은 사실이 근거도 없이 잡다할 뿐 아니라, 대개의 인명·지명·관직명 등 대체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國事가 뒤섞이고 어긋난다. 또 治亂의 꾀새와 관련된 名臣의 奏疏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제 잘못된 부분을 빼고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큰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본말과 곡절 및 명신의 주소를 그때그때 편집하여 기록하였다.
2.편년	② 《선조수정실록》은 임진년(1592년. 선조25년) 이전에는 날짜별 기사가 없고 월별 기사나 연별 기사만 있다가 임진년 이후에 들어와서야 날짜별 기사가 있다. 지금 野史에서 채집한 자료로는 날짜별로 기록할 수 없기에 단지 월별로 기록하였으며, 해당 달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의 끝에 써 넣었다. - 날짜를 상고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었다. ⁷⁵⁾
3.자료순위	③ 먼저 綱領에 실린 사실을 기록한 다음 雜記와 碑誌·行狀 순의 차례로 기록하였다.- 行狀類는 그 사람의 事跡에 그치지 않고 國事를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득실을 기록한 것을 모두 자세히 채록하였다.
4.취사원칙	④ 野史類는 글이 거칠고 잡다하므로 이번에 줄여서 문장을 만들고, 誌狀類는 훌륭한 일이나 추한 일이 지나치게 수식되어 있으므로 한결같이 公論에 입각하여 간략히 사실을 기록하며, 原文대로만 기록하지 않았다.
	⑤ 野史를 이름난 사람이 썼다 해도 사실이 아니면 없었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쓴 것이라도 사실을 기록한 것이면 취하였다.
	⑥ 여러 기록에서 많은 사실을 취하였는데, 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내용을 합쳐 간략하게 줄인다. 서술한 것 중에 뜻이 일관되지 않거나 그 곡절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어쩔 수없이 보완하고 수정한 기사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거나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논의로, 모두 그 내력에 근거하여 기록하였다.
	⑨ 《선조실록》에 기록된 것 중 大事의 본말이 자세히 갖추어진 것과 名臣의 啓劄疏章을 모두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선조수정실록》에 신지 않고, 단지 그 대략만 남겨두어 사건의 개요를 알게 하였다.
	⑦-1 야사는 是非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모두 연별로 고르게 배열하지 못하였고, 狀誌類는 기리기만 하고 낮춘 것은 없어서 기사로 끼워넣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야사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한 경우는 많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한 경우는 적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믿을만한 점이 있다.
5.是非 관련 記事의 처리	⑦-2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간혹이 총괄하여 관장하면서 사실을 줄이고 덧붙이기를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여 무리가 매우 적었고 조정에 들어찬 앞뒤 사람들을 모두 원수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포창한 인물은 자기 자신 및 자기와 친밀한 몇 사람에 불과하였고, 그들이 비방한 사람들은 모두 선조대에 신임 받던 名臣들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 명신들만이 모함을 받은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번성했던 시대의 청명한 미덕을 더럽게 물들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선조수정실록》에서 아무리 많이 포창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일은 아닐 것이다. 공론에 입각하여 시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 만한 내용은 《선조실록》 자체에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간혹들 스스로 자신을 포창하고 꾸민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역사를 기록하는 예에 의하여 얼마간의 公議를 붙여 두었다.
	⑧ 명신의 奏疏 중 한때의 시비와 관계가 깊거나 후세의 귀감이 되는 것들은 모두 신기도 하고 일부분을 뽑아서 신기도 하였는데, 世敎와 관련성이 깊은 것에 중점을 두었다.
	⑩ 《선조수정실록》을 완성한 뒤 《선조실록》 중에서 사실을 속이고 잘못 편찬한 실상과 이제 修補하는 뜻을 차례로 언급하고 얼마간의 史論을 지어 그 말미에 붙임으로써 後考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75) ②조의 원문은 “實錄, 壬辰以上無日記, 或有月記, 或只年記, 壬辰以後, 方有月記. 今以野史採輯者, 不得爲日記, 只隨月記之, 而月亦未詳, 則當於年終書之-或日字可考慮則存之” 이다. 여기서 원문 중 ‘실록’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수정담당자들이 통상 말하는 ‘실록’은 《선조실록》을 가리킨다. 또 문장 구성으로 보아도 ‘實錄’ 이하의 문장과 ‘今以’로 시작하는 후반부의 문장이 대비를 이룬다는 점에서도 ‘실록’은 《선조실록》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실록’을 그렇게 보면 실제와 맞지 않는다. 즉, 《선조실록》에는 임진년(1592년. 선조25년) 이전 기록에도 기사가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꺼림직하지만, 일단 《선조수정실록》을 가

이 〈범례〉에 따른 기사의 修補, 즉 사론을 포함한 기사의 보완과 수정은 다음 장에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위의 《표4》를 검토하여 〈범례〉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기로 한다. 물론 이 〈범례〉를 범주화하는 방법은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범례〉의 각 조항을 다시 다섯 범주로 나누어보았다. 그 범주는 총론·편년·자료이용순위·자료취사원칙, 그리고 是非 관련 記事 및 史論의 처리 등이다.

총론에서는 《선조실록》의 수정을 통하여 진실과 사실의 오류를 바로잡되, 모든 사실을 수정하지는 못하지만 큰 사건의 경우는 가능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①)⁷⁶⁾

이어 편년을 언급하였다.(②) 편년체 당대사인 실록은 연(在位年)·월·일(干支) 순으로 기사를 編輯하는 것이 상례인데, 《선조수정실록》은 날짜별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원자료인 史草 등이 세초되었고, 무엇보다도 날짜별로 작성될 가능성이 적은 ‘野史’에서 기록을 채집하였기 때문에 날짜 파악이 가능한 기사는 날짜를 기입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월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교정을 소홀히 한 탓인지 날짜가 적힌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朔日만 표시하고 기사를 한데 적었다.

자료이용의 우선순위는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修史綱領〉의 순위, 즉 綱領에 해당하는 기록을 우선 수록한 다음, 雜記와 碑誌·行狀의 순으로 사실을 채택하였음을 말해준다.(③) 취사의 원칙은 다시 자료의 성격에 따라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야사류의 취사원칙인데, 우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碑誌·行狀 등의 기록이 칭찬에 치우친 것을 경계하는 한편(④ ⑦-1), 撰者의 명성에 따라 기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도록 삼갔음도 밝히고 있다.(⑤) 또, 야사의 기록이 불일치될 경우의 처리방향도 정하였다.(⑥) 다른 하나는 야사가 아닌 정부공식기록의 경우, 이미 《선조실록》에 기재된 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선조수정실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요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⑨)

다섯 번째 범주인 是非 관련 記事의 수록 원칙인데, 아마도 수정 담당자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인 대목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名臣의 奏疏 중 사실의 확인이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⑧) 그리고, 《선조실록》 편찬자들이 왜곡이나 오류를 범한 곳에는, 그 왜곡과 오류의 실상에 대한 公論과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의미 및 별도의 史論을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수정작업이 설득력을 갖도록 하려는 편찬담당자들의 뜻으로 생각된다.

〈범례〉에서 보여준 몇 가지 원칙이 어떻게 《선조수정실록》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좀더 구체적인 수정작업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범례〉 중, 총론·편년·자료순위는 수정작업에 앞서 결정되는 일이므로, 실제로 주목해야할 〈범례〉는 자료의 취사와 시비 관련 기사일 것이다. 자료의 취사는 결국 기사의 보완에 해당되는 일이고, 시비 관련

리키는 것으로 보고, ②조 전체의 해석도 그 맥락에 따랐다.

76) 예를 들어, 〈범례〉 ⑦-2는 총론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맥락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달리 범주화하였다.

기사는 사론의 형식을 띠고 기재되므로 3장의 서술도 그렇게 구분하겠다.

3. 기사(記事)의 보완과 수정

1) 기사의 수보(修補)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을 날짜별로 비교 검토하면 몇 가지 수정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수정 전거 문헌과 〈범례〉를 염두에 두고 그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분량으로 보면 《선조실록》이 221권, 《선조수정실록》이 42권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선조실록》의 사실 기사를 전제로 수정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보면 《선조실록》(이하 원본)에 없는 달의 기사가 《선조수정실록》(이하 수정본)에 수록되어(수/3/1,2,3,9,10,11월 및 수/5/1,윤2,3,4월, 수/12/1,2,,8,9,10,11월 등. 전거/연도/월/일의 순서) 있는 경우도 물론 있다. 또 洪曇(원/13/6/을사→수/9/경인)과 咸運(원/13/6/을사→수/12/5/을사)의 줄기에 대한 원본의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도 눈에 띈다.

한편, 수정에 참고한 전거 문헌의 영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는 수정담당자들이 가진 문제의식의 소산일 것이다. 선조 초년을 비롯하여 경연 기사가 보완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수/즉/10/병술, 수/원/4/경진, 수/2/윤6/계묘 등) 이는 〈강령〉에서 보듯이 이황·기대승·김우옹·이이 등의 경연일기와 年譜를 참고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 유희춘(수/10/5/무자, 줄기)·성혼(수/14/4/갑오, 16/7/경진, 23/4/임신 등)·유성룡(수/14/12/신묘, 수/27/4/기유 등)·이이(수/15/9/병진, 16/4/임자 등)·조현(수/19/10/임술, 20/12/을묘, 22/4/정축 등)·이귀(수/20/3/경인, 수/35/윤2/갑오 등) 등의 상소나 차자가 대폭 증보된 것도 수정본의 특징이다.

그런데 원본과 수정본의 기사를 비교하다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보완 기사와는 달리 몇몇 사건을 중심으로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선조대 주요 사건인 동서분당·기축옥사·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들이다.

尹元衡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金孝元의 행적에 대한 沈義謙의 비판과 戚臣이므로 심의겸의 동생 심준겸을 이조 낭관에 임명할 수 없다는 김효원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작된 대립이 붕당의 분립으로 이어진 사건이 선조 8년 동서 분당이였다. 淸論의 대립이 士類의 分黨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원본은 심의겸과 김효원의 外職 보임 기사 등을 통해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친 반면,(원/8/10/무자, 원/9/3/병신) 수정본에서는 선조 8년 7월부터 이듬해 2월에 이르기까지 그 전모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허엽과 허엽을 비판하는 정철과 신응시 등에 대해 가졌던 李珣와 金宇顥의 우려와 조정 노력 및 전후 배경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수/8/7/정유, 수/8/9/병신 등)

이는 《선조실록》이 수정되던 인조 후반과 효종 연간의 시기에 남인과 서인이 공조를 이

루며 국정을 운영하던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며, 실제로 이이의 조정론이 사림의 공존을 주장하며 그 공존은 사림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해결해야할 폐정개혁 등의 시국관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지적과도⁷⁷⁾ 일치한다. 즉 수정 당시 사림들의 봉당관과 정치적 역학관계가 동서분당의 해결방향을 이이의 입론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봉당정치가 그런 방향을 전개되었으면 하는 전망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선조 22년(1589) 鄭汝立이 모반하였다는 고변으로 시작한 기축옥사는 3년을 끌면서 당시 정세변화는 물론 후대에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그러나 원본과 수정본 모두 정여립의 모반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獄事가 진행되면서 鄭介淸·崔永慶 등 東人, 그중에서도 曹植의 문인이 연루되었고, 그 죄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獄死하는 일이 발생한 일이었다. 특히 정철이 倭官으로 옥사를 주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옥사를 정철이 조작 또는 확대한다는 비난이 일었고 이는 곧 봉당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원본은 바로 이러한 대립의 연장에서 기록되어 있다. 즉, 정여립 모반사건이 확대된 계기가 되었던 호남 생원 양천회의 상소나(원/22/11/임인) 이발·이길·白惟讓이 사건에 개입된 증거가 되었던 樂安 敎生 宣弘福의 집에서 나온 편지도(원/22/12/을유) 정철의 사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정본에서는 사건의 전개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자칫 변호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향간의 소문에 대한 반론은 이항복의 《己丑記事》 등에서 정철이 최영경을 구원하고자 한 일 등을 인용하여(30/4/신유) 소문이나 원본의 기록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이의 10만 양병론 기사로(수/15/9/병진) 복선을 깔고 시작된 수정본의 임진왜란 관련 기사도 원본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수정본은 조정(행재소)보다는 민간이나 지역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완하였다. 임진왜란으로 파천할 때 궁궐이 불타고 인민들이 掌隸院과 刑曹를 불태운 일(수/25/4/경인)과 왜적이 서울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수/26/1/병진) 등을 기록하여 민심과 민정을 전해주는 한편, 경기 지역에 기아자가 급증하고, (수/26/2/병술) 각도에 흉년이 든 데다가(수/26/3/병진) 각도 산성 수축으로 인민들의 부역이 곱절로 늘어난(수/28/3/1) 민생의 어려움을 기사에 보완하였다. 이 시기 민간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원본도 상세하기 때문에 원본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⁷⁸⁾ 수정본의 특징이랄 것까지는 없더라도 수정본의 자료 이용방향을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왜적에 대항하는 의병활동에 대한 기사 보완으로 이어졌다. 광재우·고경명·정인홍·손인갑·김천일(수/25/6/기축, 수/26/6/갑신), 조한·영규·유종개(수/25/8/무자), 이광·윤국형의 백의종군(수/25/8/무자), 김덕령(수/26/12/경술), 의병장 이산겸이 무고로 하옥되었던 일(수/27/1/경진) 등 의병활동에 대한 기사는 수정본이 원본을 많이 보완하였다. 이는 의병활

77) 鄭萬祚, 1991 <조선조 '당쟁'의 정치이론>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91인문과학학술토론회(한국정신문화연구원)

78) 실제로 전란으로 인한 민간의 고충과 사회상은 《선조실록》의 자료를 통해서도 두루 파악할 수 있다. 그 예로, 한명기, 1999 《앞 책》 제1부 제3장 1. 명군 주둔에 따른 민폐와 사회상(社會相)을 보라.

동에 대한 野史로 추정되는 《湖南義錄》·《抗義新編》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수정 담당자들이 의병활동에 관심을 가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초기에 관군은 연패를 거듭하였고 필경 선조는 서울을 떠나 의주까지 파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明軍이 병력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점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전세는 의병활동과 수군의 승전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지역사회[鄉村]에서 지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가능했던 의병활동은 곧 사람들이 향약과 서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⁷⁹⁾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과 조정의 대립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의병장 郭再祐가 도주했던 監司 金睟를 처단하려고 한 일부터,⁸⁰⁾ 이후 군공을 세운 의병장에 대한 시상의 배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서 그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⁸¹⁾ 그렇다면 의병들의 활동 자료를 보완한 것은 임진왜란 극복의 원동력을 수정담당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관점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본에 체계적인 의병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행재소 중심의 기록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행재소를 오고간 문서를 중심으로 국내 동향이 파악되게 마련이었고, 對中國 관계 기사가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그렇지만, 수정본에서도 明軍의 소극적 전술,(수/26/2/병술) 중국 사신의 이간질(수/26/윤11/신사) 등 비판적인 기사가 보완되어 있다.

해전에서의 승리로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꾼 이순신에 대한 기록도 수정본에서 보완에 관심을 기울인 기사이다. 제목으로 보면 《閑山記事》가 출처가 아닌가 싶은데, 수정본에서는 이순신의 승전,(수/25/6/기축, 수/25/8/무자) 이순신과 원군의 틈이 생긴 이유 등이(수/25/6/기축, 26/8/임오)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당시 조정이 원군의 편을 들었으며(수/27/12/갑진) 그로 인해 이순신 하옥되고(원/30/2/을축·정묘, 수/30/2/임술) 원군은 이순신의 수군제도를 변경하여 패배했다는(수/30/7/경인, 원/30/7/신해) 수군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 분량으로 보면 수정본이 1/5이지만, 선조시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편찬된 것이 《선조수정실록》이라고 하겠다. 다음 절에서 다룰 사론의 수정은 수정작업의 또 다른 목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2) 사론(史論)의 수정

선조 30년 이후부터 《선조실록》에 사론과 대비하여 다른 사론을 제시하는 수정사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앞서 이식이 선조 29년까지 수정을 마쳤다고 하였으므로, 이 수정사론

79) 李泰鎭, 1989 《朝鮮儒敎社會史論》 제12장 壬辰倭亂 극복의 사회적 動力(지식산업사); 정만조, 1997, 《朝鮮時代 書院研究》(집문당) 179~186.

80)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丙辰;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 己丑

81) 한명기, 1999 《앞 책》 78~81.

은 효종 8년 2차 수정에 참여한 편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식의 〈범례〉에 이미 《선조실록》에 무함과 왜곡이 있는 기사에 따로 사론을 작성하여 끝에 붙인다는 조항이 있었으므로⁸²⁾ 누가 수정사론을 달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론의 특성으로 보아 당시대 인물에 대한 ‘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편찬자들이 주의를 기울인 기사임을 틀림없다. 먼저 원본과 수정본의 기사를 대비하여 수정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5 :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사론에 나타난 인물평〉

인물/사건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柳成龍(남)	30/10/갑술. 倭와 講和 주장, 覲親 중 飲酒	30/12/정사. 學行 孝友, 父親 看病 극진
	36/10/기축. 국정을 바로잡지도, 실효도 없다. 김우옹의 “대신의 국량도 풍채도 없다”는 평이 옳다.	36/10/계미. 임진년의 공이 크다. 나라 걱정을 집안일처럼. 김우옹과는 교우가 긴밀하였으므로, 믿을 수 없는 말.
黃愼(서)	30/4/신유. 아침 편벽, 볼 것이 없다	30/12/정사. 큰그릇으로 인정, 成渾을 위한 直言으로 죄를 입음.
李爾瞻(대북)	30/10/갑술. 영특 기개, 諫諍하는 기품	30/12/정사. 편찬 때 자신의 일을 기록.
	32/9/병인. 바른 사람. 문예 엄숙 명변 지덕. 危言과 讜論으로 柳永慶 등 비판, 權奸 낙담	32/9/정미. 공격하여 해치는 일을 능사로 삼음. 광해군대에 수차례 獄事 유발. 편찬을 담당하여 자기 청송을 꺼리지 않음.
尹斗壽(서)	31/3/병술. 弘文錄 결정 때, 아들 尹暄을 위해 개입. 엄치 없는 鄙夫.	31/3/병술. 당시 윤두수는 탄핵 중. 史臣이 날조에 급급하여, 사실을 살피지 못함.
	32/2/무오. 경박 무례 탐욕 교활. 나라의 盜賊, 士林의 해충.	32/2/신해. 趙光祖 복권운동, 權臣 李樞의 모함, 이황 조식과 학문교류. 붓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헐뜯고 욕하면 안된다.
	35/2/을해. 윤두수가 최영경의 옥사를 주도하였는데, 當路者가 윤두수를 구제하였음.	35/윤2/정사. 당로자는 정인홍과 기자현인데, 이들이 윤두수를 구원했다는 것은 당치 않다.
趙正立(남)	31/5/임진. 간사 용렬, 鄭經世를 상진으로 섬겨 淸顯職에 오름. 비루.	31/5/을유. 청렴 정직하고, 돈후하여 당시에 인정을 받음.
金義元(남)	31/5/임진. 居喪에 불참, 小人輩들과 유성룡의 세력을 이룸. 玉堂에서 유성룡 구제 노력.	31/5/을유. 의견 차이만으로 모함.
李權(남?)	31/5/임진. 탐욕 간사 아침. 조정립의 黨與.	31/5/을유. 아침, 간사한 인물인지는 자제하지 않지만, 탐욕 비루하다는 말은 있음
成渾(서)	31/6/경신. 隱士의 명성이 있었으나, 功名에 빠짐. 崔永慶 죽음도 방치. 당시 鄭徹과 惡行을 해서 모두 미워함. 애석하다.	31/6/갑인. 졸기. 宣祖가 義州로 播遷하던 당시 李弘老의 모함으로 내내 출사 안함. 당시 學行으로 칭송.
許箴(북)	31/4/기사. 李好閔 金弘微 무리에 黨附. 西人과 합하려 하고, 尹斗壽에 아침	31/12/임자. 許箴의 門閥과 位望이 김홍미 등보다 높아, 당부했다는 말은 그르다. 東西黨이 분리되어, 협력 아침이 불가능
金眸(남)	31/4/기사. 自黨을 심고, 權勢를 전횡하고 시기 훼방.	31/12/임자. 평소 謙雅. 黨論이 일어날 때, 守拙하다는 평가.

82) 李植, 《택당집·간여본》 〈선조대왕실록수정범례〉. “此錄畢修之末 歷舉實錄誣枉僞謬之狀 兼今日修補之意 作一段史論 付于其末 以備後考”

李德馨(남)	31/4/경진. 播遷 때 失禮. 무능. 쌀 100석 형령.	31/12/임자. 戰亂으로 起服한 것은 비난 대상이 아님. 一世에 清廉하다는 重望.
	39/01/신묘. 아비가 文化縣令 때 告身帖을 빼내 소 수백 두를 사들임. 반복 변절.	39/1/경오. 모함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마음대로 史冊에 기록.
韓浚謙	32/2/병인. 겉은 관대, 속은 음험. 和議 주동, 士類 공격. 유성룡 다음으로 나라 망친 죄인	32/2/신해. 당시에 偉人이라 칭송. 주로 外職 생활- 《실록》의 서술은 모함.
金玊(남)	32/3/계미. 유성룡이 뜻을 얻자, 그 위세를 빌어 안전을 도모함.	32/3/경진. 유성룡이 논핵당하자 김늑이 차자를 올려 구원하니, 群小輩가 험담
趙挺(대북)	32/9/병인. 훌륭한 선비로, 단아하고 寶玉같다.	32/9/정미. 명성도 없었고, 光海君代에 이이첨에 붙어 정승을 지냄. 역사편찬자가 自黨이라 하여 거짓으로 높임.
奇自獻(대북)	32/10/무자. 과묵, 바르고 아부하지 않음	32/10/무자. 음험 흉악. 헛된 명예를 만들어 후세를 속이려한 것.
	36/1/갑자. 외모는 질박하나 마음은 神明하여 世情을 통찰.	36/1/무오. 음험하고 행실이 불측, 사람 해치는 일을 능사로 삼음. 후세의 公論을 면할 수는 없다.
	37/5/임신. 私黨을 심지 않고 평정, 兩銓에서도 공정. 宰相이 되자 兵卒까지 경하.	37/5/신해. 한심하다. 정인홍에 붙어 士類를 일망타진. 뇌물 수수. 史臣의 曲筆.
	38/8/갑진. 도량이 넓고 일찍부터 덕망이 있었다.	38/8/계묘. 金尙憲을 미워하여 鏡城判官으로 내보냈으면서도 실록을 감수할 때 이렇게 기록. 誅罰해도 모자란다.
李恒福(서)	33/1/신유. 己丑玉 때 郎廳으로 鄭澈과 함께 서울, 호남, 영남의 士類를 모두 죽이려 함.	33/1/병오. 기축옥 때 이항복의 주선을 생존한 사람이 많다. 그가 지은 《己丑記事》를 보면 심정을 알 수 있다.
	37/4/갑진. 사직 筓子에 奸黨이란 두 글자를 거론하며 분노하는 기색이 넘쳤다.	37/4/신사. 농담이자 은미한 말. 이항복을 이해하는 자가 쓴 사론이 아니다.
	39/1/신묘. 정철과 이항복의 同惡相濟	39/1/경오. 기축옥 당시 問事郎이었던 이항복이 기록한 鄭澈의 崔永慶 求命 사실로 보아, 소인배들의 날조.
沈喜壽(남)	33/2/계묘. 反覆無常. 관청의 늙은 기생이라는 기롱도 있다.	33/2/을해. 淸顯, 六卿을 지낼 때 비방하는 말이 없었다. 심하다.
	39/9/병자. 志操 없이 아부하였다.	39/9/정묘. 壁書사건 때 委官으로, 기자현의 사건 확대를 저지. 이에 감정을 품고 기자현이 國史를 감수하면서 분풀이.
沈悅(서)	33/6/을해. 교활, 반복무상. 당초 이이첨에 당부하였다가, 이이첨 몰락 후 時議에 붙음.	33/5/계묘. 지평이 되어 任國老를 탄핵하자, 그 무리들이 미워하여 무함.
朴弘老(朴弘壽. 대북)	33/7/갑인. 단정. 일처리가 주밀하고 자세함.	33/7/임인. 간사하고 아부, 탐욕한데, 이처럼 찬양한 것이 놀라운 일.
	33/9/신축. 미련하고 간사. 關西 方伯을 지낼 때 청렴하지 못하다는 기롱이 많음.	《선조실록》 중에서도 서로 다른 사평-필자
李顯英	33/12/기해. 성품이 음흉, 鄭澈을 추앙, 啓辭도 작성 못하고 朴東亮 형제의 손을 빚.	33/12/신묘. 李穡의 후손, 溫雅, 簡默, 세간의 추앙을 받음.
鄭述(남)	34/9/임자. 成川府使로 있을 때 백성들에게 거두어 西行하는 宮人을 대접함.	34/9/을미. 정구는 훈련된 선비. 정구가 정인홍을 싫어하여 왕래하지 않았기에 멋대로 무함, 비방한 것이니 이상할 것 없다.

鄭弘翼(서)	35/2/을축. 결단력이 없고, 유약한 겁쟁이	35/2/갑자. 成渾의 죄를 날조하려는 정인홍 때문에 인피하였던 것.
李廷龜(서)	35/3/을유. 詞賦에 재능이 없어 인망에 부족	35/3/계해. 中國使臣 전담, 文詞로 당시에 명망이 있었는데, 거짓이 심하다.
李海壽(서)	35/6/신축. 간사 악독. 관작삭탈은 곧 해가 중천에 뜬 것과 마찬가지.	35/6/신묘. 상이 小人의 讒訴를 믿고 이렇게 처리. 《실록》의 史評은 鄭仁弘과 洪汝諄 무리가 작성.
黃廷彥	35/8/정유. 임금을 잊고 나라를 버린 죄가 천지에 사무친다.	35/8/을미. 인품이 간간하여 當路者에 거스름. 倭의 奏文 사건으로 北邊 유배. 史論은 심하다.
鄭仁弘(대북)	35/9/갑신. 曹植의 高弟, 氣節로 자부. 정인홍의 일을 경계로 고고한 山林들이 은신-애석.	35/9/갑신. 山林에 가탁, 士林을 해침. 史臣이 부회 아첨. 鄙夫와는 임금을 섬기기 어렵다.
尹根壽(서)	36/4/을미. 간인의 편이 되어, 선인을 해침	36/3/정사. 윤근수가 판의금부사로 있으면서 時論에 따르지 않자 그릇되게 기록.
申欽(서)	36/4/신해. 기자현이 淸顯職에 등용하려 했는데, 자신의 丈人 宋應漑를 포함한 인물이라고 유성룡이 반대.	36/1/정해. 당시는 신희가 弱冠 이전이었고, 布衣의 선비였으므로 논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송응개 유배는 特命에서 나옴.
鄭協	36/5/경오. 아버지 鄭彦信이 이항복에 의해 귀양을 갔는데도 利를 쫓아 원수를 잊은 삼살개.	36/5/병진. 정협이 이항복과 왕래를 그치지 않은 것은, 기축옥에서 없는 죄를 꾸미지 않았다는 반증. 너무 근거 없는 평.
尹昉(서)	36/6/경인. 李弘老가 아버지 윤두수를 國賊으로 지목했는데도 임인년 가을 이후 윤방 등이 자주 왕래하여, 사람들이 의심.	36/6/병술. 기자현이 이홍로를 꺼렸고, 윤두수 부자를 질시하여 근거 없이 양쪽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니 흉악하다.
朴東亮(서)	36/7/계유. 丈人 閔善과 함께 崔永慶을 옥사케 하고, 鄭澈을 추존.	36/7/을묘. 재주 있고, 인품이 너그러워 남을 해치지 못함. 사실과 어긋난다.
崔滉	36/8/갑신. 輕薄 偏急, 정철의 심복으로 최영경과 曹大中 주벌에 앞장. 이때 죽었지만 애석해하는 사람이 없다. 金德齡을 옥중에서 죽게 함.	36/8/갑신. 민첩하나 각박하고 도량이 좁다 좋아하는 사람이 적다. 기축옥이나 김덕령 옥사에서 모함한 일은 없다. 기록자가 유감을 갖고 배척한 것.
金瑬(서)	37/5/병인. (父親 金汝叻이 죽은) 탄금대를 지나게 되었으니, 거기서 女樂을 즐긴 일이 두렵지 않겠는가?	37/5/신해. 時輩들이 제주와 명망을 꺼려 都事로 내치고서 彈琴臺에서 음악을 연주했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
吳億齡(남)	37/5/을해. 기축옥 때, 정철이 최영경을 죽이고 영남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오역령을 어사로 삼았다.	37/5/신해. 정철이 오역령에게 부탁했을 리도 없고, 오역령이 그 책임을 지고 영남에 나갔을 리도 없다. 史臣의 무함이다.
李希得(북)	37/11/신묘. 강직. 박순 정철 윤두수 비판으로 士論이 칭찬. 이조참판 때 士類를 등용.	37/11/계묘. 재능이 없이 출세에만 연연하여, 鄭澈과 朴淳에 대한 비난만 일삼음. 史臣의 칭찬은 놀라운 일.
洪奉先	38/1/경인. 허탄 음험하여 말을 만들고 일을 일으키기 좋아한다.	38/1/병자. 기자현이 銀을 받은 것은 확실히 드러났는데, 자신이 실록을 감수하면서 왜곡. 기탄없고 방자한 행동.
沈宗道(대북)	38/2/무진. 맑은 지조와 관리의 재주가 있다.	38/2/을사. 광해군대에 이이첨에게 아부하여 蔭官으로 判決事를 지냄. 실록의 왜곡이 이런 식이다.
洪汝諄(소북)	38/4/을사. 품성이 흉험하고 탐포하며 꺼리지 않는 사람이다.	38/4/을사. 실록의 포폄은 대개 애증에 따라 마음대로 썼는데, 홍여순만 실상대로

		썼다.
金尙憲(서)	38/8/기유. 銓郎으로 있을 때 임의대로 진출 시키거나 막았다.	38/8/계묘. 기자현이 柳永慶을 끌어들이려다가 김상헌에게 저지당했으니 강직함을 알 수 있다.
李冲	39/1/기묘. 權奸 李樸의 아들인데, 宮掖에 아침하여 超擢되었다.	39/1/경오. 이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록하였다.

수정본에서 사론을 통해서 원본의 기사를 수정한 인물은 모두 40명이다.(사론 52則) 그 중에서 원본과 수정본에서 평가의 일치를 본 인물은 洪汝諄(小北)과 李冲 두 사람인데, 둘 다 비판을 받았다. 한편 원본에서는 높이 평가했는데, 수정본에서는 비판한 인물은 李爾瞻·奇自獻·朴弘孝·鄭仁弘·李希得·沈宗道 등이다.(朴弘孝는 원본에도 평가가 상반되는 두 사론이 같이 실려 있다) 이들 大北 일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폄하함으로써 실록 수정의 명분이 그치지 않았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위의 표에서 참고삼아 당색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동서분당 이후 동인은 선조 24년(1591년) 建儲 논의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었고, 서인이라고 해도 다른 당색과 통혼이나 학문적 교류에서 보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의 표에서 나타난 사론은 이이첨을 비롯한 몇몇 대북 정권 담당자들이 자당을 제외한 잠재적 현실적 정치 세력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조정 능력이나 통합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라면 서인이나 남인, 소북 중에서도 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없을 리 없고, 또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람일진대, 원본에서 보여주는 대북 정권 담당자들의 자찬과 배타성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韓浚謙 같은 遺教 7臣, 李德馨·李顯英 같이 당색을 떠나 重望을 받던 인물은 물론, 柳成龍·鄭述 등 남인 관료나 학자, 서인 계열인 成渾·李恒福·尹斗壽·申欽·李廷龜 및 신진인 金尙憲 등은 예외 없이 원본과 수정본이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원본에서는 李廷龜는 폐모론을 반대하여 관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광해군에 의해 다시 등용되었을 정도로 文名이 높았는데도 詞賦에 식견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선조실록》이 계축옥사와 그에 이은 폐모론이 진행되던 무렵에 이이첨 등에 의해 편찬되었음을 상기할 때 위의 사론은 광해군 중후반기 대북 정권의 지지 기반이 점차 좁아지는 형편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렇게 실록을 편찬함으로써 지지 기반의 축소를 자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최초의 실록 수정본인 《선조수정실록》의 편찬 전모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을 수정실록의 편찬 과정과 논의, 수정본의 체제와 참고 문헌, 수정 및 보완된 기사의 실제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먼저 40년에 걸친 수정사업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당대사 편찬과 계해반정이라는 정치 상

황의 변동이 갖는 상관관계, 수정사업의 방향과 주체 및 사업구성 등에 대한 논쟁, 실제 수정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았다.

한편, 체제와 수정을 위한 참고문헌을 살펴보았다. 현재 원본과 수정본이 공존하게 된 것은 ‘주목사’를 수정의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이는 실록을 다시 제작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절약이라는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원문 기사와 수정 기사를 구별하기 위한 실무적인 편의성이 객관적인 역사기록의 전승이라는 사회적 의미로 확장된 결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식이 남긴 《간여본》을 통하여 참고문헌과 범례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수정작업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기사에 대한 실제 조사에서는 원본의 교정, 보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선조수정실록》은 《선조실록》에 비하여 동서분당·기축옥사·임진왜란 중의 행재소 이외의 기록, 이를테면 의병활동, 수군활동, 민간동향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사론은 대북계 소수의 인물을 제외하면 당색에 관계없이 폄하했던 《선조실록》의 기사를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비판적으로 수정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선조실록》사론에 나타난 이러한 편향성은 곧 광해군대를 주도했던 대북세력이 다른 학파나 정치세력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만큼 고립되어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해반정을 계기로 《선조실록》의 수정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또 실록의 수정과 같은 사안은 정치세력의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조수정실록》의 편찬은 일반적인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세력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만 수정작업을 해석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정 초기 《광해군일기》의 편찬에 우선 순위를 넘겨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선조실록》의 수정과 반정이라는 정치상황과의 상관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또 수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정일등공신인 최명길보다 이식이 엄격하고 공적인 수정작업을 주장하고 사업을 주도하였던 것도 수정작업의 정치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러면 수정사업의 동력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 이 문제는 주체와 명분의 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주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조대에 실록이 수정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선조시대 이전부터 형성되어 봉당으로 진화한 士類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 서원과 유향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이황의 《성학집도》나 이이의 《성학집요》가 보여주는 국가 경영의 비전과 이러한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적 결집이 이루어졌던 바, 이들이 수정작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일차적인 동력이었다. 조선 전기와는 달리 이후 몇 차례의 실록 수정이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한편, 《선조실록》을 수정해야 된다는 명분이 이들 사류들 사이에서 공론으로 설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선조실록》의 기사와 사론의 편향성에 있었다. 그렇지만 그 편향성을 바로세우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곧 수정에 동의하는 사류들의 정체성에 다름 아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통해 《선조실록》을 수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조실록》의 수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선조실록》 수정은 발의에서 완성까지 인조-효종 연간의 약 40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던 데서 확인된다. 바로 인조·효종 연間は 각 학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단계였던 것이다. 인조 연간에만 해도 원종추송논의·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하여 입장과 원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인은 이황을 사림의 종장으로 인정하면서 이이-김장생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잡아나갔으며 이는 효종 초년 이이의 문묘중사논의로 표출되었다.⁸³⁾ 《선조수정실록》의 전거에 이이의 《석담일기》를 우선 채택하고 동서분당에서 이이의 조제보합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축옥사에서 정철이 했던 역할에 대한 변론 증거를 제시하고 수정본의 사론에서 서인과 남인에 포함되는 인물들에 대한 원본의 사평을 바로잡고자 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인의 입장에서 유성룡·정구 등 남인계 관료와 학자를 폄훼했던 《선조실록》을 용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듯이, 《선조수정실록》은 왜곡된 역사의 수정, 그리고 그 수정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형성과 확립이라는 이 시대 사류들의 요구가 낳은 역사적 산물이었다.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을 좀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본고의 접근이 한계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료의 비교 및 비판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자료 제시는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단순비교를 통해 특징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수정사업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기사마다 분석하고 검증하여 좀더 나은 사료 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사료비판의 궁극의 목표는 두 실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본의, 즉 ‘주목사’의 본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본고의 미진한 부분은 꾸준히 보완하기로 하고, 본고가 우리가 이용하는 자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용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83) 이이의 文廟從祀는 인조 원년부터 제기되었다. 《인조실록》권1 원년 4월 辛酉. 이후, 효종 즉위와 함께 다시 제기되어 격론을 거쳤다. 효종 10년, 효종과 송시열의 己亥獨對에서도 姜嬪伸寃·金弘郁의 復爵·北伐과 함께 논의된 4대 의제 중의 하나였다. 오항녕, 1993 〈앞 논문〉 23~27 및 42~45.

II. 《현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1. 머리말
2. 《현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 1) 《현종실록》의 편찬
 - 2) 《현종실록》의 개수
3.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비교
 - 1) 찬수범례로 본 개수
 - 2) 사안과 인물의 평가
4. 맺음말

1. 머리말

《현종실록》은 조선 18대 국왕인 현종 재위 기간(1660~1674)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국왕이 승하한 뒤 실록을 편찬하는 관례에 따라 숙종 원년(1675) 5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숙종 3년(1677) 9월에 편찬을 마쳤으니, 대략 2년 5개월이 걸린 셈이다. 《현종실록》은 모두 22권이었고, 5질을 간행하여 춘추관과 지방 4사고에 봉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숙종 6년(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들이 실각한 뒤, 이미 편찬되었던 《현종실록》의 기록이 부정확하고 왜곡되었다는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종 연간에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는 정책과 사건이 여럿 있었으니만큼 그를 둘러싼 이해와 관점의 차이가 낳은 결과였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실록이 《현종개수실록》이다. 개수(改修)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종개수실록》은 《현종실록》을 다시 편찬한다는 기조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 시기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사이다. 왜냐하면 실록이 갖는 내용의 충실성과 포괄성에 비추어 시대사든 분야사든 실록이 중심사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학계에서는 이런 검토에 소홀하지 않았나 한다. 그 결과, 개별 연구자의 의식 속에서는 구별되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실록,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또는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먼저 《현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실록편찬의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도 이해이지만, 개수 당시 어떤 배경과 관점에서 개수에 임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어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토하기로 한다. 두 실록의 기사를 낱짜별로 비교한 위에서 어떻게

개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인데, 방법은 먼저 조선초기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14개조의 실록찬수범례 별로 두 실록을 비교해보겠다. 둘째, 주로 두 실록에서 사실 기술이나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주요 사건과 인물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겠다.

2. 《현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1) 《현종실록》의 편찬

대체로 《세종실록》을 편찬할 무렵부터 실록은 국왕의 상례, 즉 흥례 중 졸곡(卒哭)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¹⁾ 상중이지만 국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평복으로 갈아입는 절차인 졸곡은 대개 죽은 지 3달 전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숙종 즉위년 11월~12월에 치르게 되어 있었다. 실제로 12월 25일 숙종은 효경전(孝敬殿)에서 졸곡을 행하였다. 당시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도 입대(入對)하여, “졸곡이 이미 지났으니, 서무(庶務)에도 유의해야 하고, 강학(講學)이 급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쯤에서 나오게 마련인 춘추관의 계, 즉 실록청을 설치하자는 계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5월에 이르러 실록편찬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현종 후반부터 시작된 정계 개편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정계 개편은 예송(禮訟)과 관련이 있었다. 대략 현종 13년 무렵부터 현종은 송준길 등에게 거리를 두었다. 살펴 보건대, 송준길이 김정(金澄)을 구원한 후 누차 참설이 들어가자 현종은 송준길 역시 편당을 한다고 의심을 하였고, 4월에 송준길이 병으로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자 노여움이 커져서 그전의 예우를 없애버렸다. 사관은 “이는 실로 음양이 소장(消長)으로 나뉘는 일대 관건이었으며, 후일에 사류들이 낭패를 보게 된 것도 단지 예론(禮論)만이 그 뿌리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²⁾

효종이 승하한 뒤, 인조 왕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의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는 전례 문제로 시작한 것이 기해예송이었다.³⁾ 정태화, 송시열의 기년복설(期年服說)에 대해, 허목은 차장자설(次長子說)에 따라 삼년복을 주장했고, 윤휴(尹鑄)는 신모설(臣母說)에 따라 삼년복을 주장했다. 이때는 정태화의 조정으로 국제(國制)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윤선도가 윤휴의 삼년복을 지지하면서 기년복설이 효종의 정통을 부정하는 설이라고 주장함으로써⁴⁾ 예송논쟁은 전례 논쟁에서 졸지에 민감한 정치문제로 비화했다.⁵⁾ 이 논란은 윤선도가 삼수(三水)로 귀양 가는 것으로 끝났지만,⁶⁾ 사화(士禍)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 오향녕, 〈實錄의 儀禮性에 대한 연구-慣例와 象徵性的 형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6, 2003

2) 《현종실록》 권25 13년 4월 18일(계사)

3) 지두환, 1987, 〈朝鮮後期 禮訟 研究〉 『부대사학』 11, 1987

4) 《현종실록》 권2 1년 4월 18일

5) 오향녕,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정치활동과 경세론(經世論)〉 《한국사학보》 46, 2012

6) 《현종실록》 권2 1년 4월 19일

예송은 효종비인 인선왕대비(仁宣王大妃) 장씨(張氏)가 세상을 떴을 때 아직 살아 있던 대왕대비 조씨의 상복 논쟁으로 재론되었다. 이를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고 하는데, 해를 넘기는 논의 끝에 현종은 송시열의 기년설을 오례(誤禮)로 판정하였다. 그것도 “가슴 아프고 놀랍고 무상함을 느끼겠다. 경들 모두가 선왕의 각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지금 와서 감히, 혈통이기는 하나 정통은 아니라는[體而不正] 논리를 내세워 오늘의 예율(禮律)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한다는 말인가.”라는 비통한 전교와 함께.⁷⁾ 현종이 돌아가기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난 변화였다.

이러한 갑인예송에는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金佑明)과 처사촌 김석주(金錫胄)가 서인이면 서도 남인과 결탁했던 정국 변동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효종비를 장자의 며느리로 보고 자의대비의 상복을 기년으로 하는 남인의 설에 찬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곧 현종이 돌아가고 숙종이 즉위하면서 갑인예송이 당장 큰 정치적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주(晉州) 유학(幼學) 곽세건(郭世健)이 “사론(邪論)에 붙은 김수흥(金壽興)도 오히려 편배(編配)되었는데, 사론을 창도한 송시열이 어찌 헌장(憲章)에서 빠진단 말이나.”고 상소했다. 이는 현종의 지문(誌文)을 송시열에게 맡긴 데 대한 반발이었다.

숙종은 곽세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종의 묘지명에 그 사실을 기록하려 했으나 송시열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그의 제자 이단상(李端相)에게 묘지문을 맡겼으나 거절했고, 숙종은 스승만 알지 임금은 모른다며 이단상을 파직시키고 송시열을 덕원부(德源府)로 귀양 보냈다.⁸⁾ 결국 예제(禮制) 논의이었던 복제(服制)가 윤선도의 상소를 계기로 마치 왕실의 정통성과 관련된 것처럼 되면서 비화하면서, 현상적으로 보면 예송에서 왕실 편을 든 것이 김우명, 김석주 등 외척과 허적, 윤희를 비롯한 남인이었다.

거기에 삼복(三福)이라 불리는 종친이 있었다. 이들은 갑인예송 정국의 배후 또는 표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아니라 1680년(숙종6)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할 때도 같은 운명을 겪으며 《현종실록》 개수의 정치적 배경을 이루었다. 삼복은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복평군(福平君) 이연(李演),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楠) 형제로, 인평대군(仁平大君)의 아들이자 인조의 손자였다. 효종은 인평대군과의 각별한 우애로 이들을 궁중에서 기르며 자식처럼 여겼고, 장성한 뒤에도 궁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였다. 친형제가 없었던 현종은 이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다. 송준길(宋浚吉)이 경연에서 이들을 궁궐에 들이지 말라고 청했지만 현종은 따르지 않았다.⁹⁾

숙종도 이들을 매우 자상하게 대우했고, 신임도 깊었다. 세자 때부터 이들과 함께 지냈고, 빈전에서도 숙종과 함께 지냈다. 특히 청나라와 외교를 통해 입지가 커졌는데, 청나라로부터 군약신강(君弱臣強)설을 국내에 퍼뜨림으로써, 현종이 강신(強臣)인 송시열에게 억제되었다는 여론을 만들었다. 송시열은 예론에서 군부(君父)를 폄강(貶降)했다는 혐의에 이어, 군약신강의 혐의도 감당해야 했다.

7) 《현종개수실록》 권28 15년 7월 15일(정축)

8) 《숙종실록》 권2 1년 1월 13일(임신)

9) 이상식,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강화》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5, pp22~26.

이들 삼복은 외가인 동복(同福) 오씨와 연합하여 조정을 장악해갔다. 삼복의 외숙이었던 오정일(吳挺一), 오정위(吳挺緯), 오정창(吳挺昌), 내종인 오시수(吳始壽)는 모두 재상의 자리에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청남인 허목(許穆), 윤휴(尹鑄), 이태서(李泰瑞) 등과 연계되었다. 또한 이들은 인평대군이 죽었을 때 효종이 김육에게 그 묘지명을 쓰게 했던 인연으로 청풍 김씨와도 연계가 있었다. 이들은 외척, 봉당, 군문, 환관들까지 폭넓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여, 종주(宗主)로서 부자간에 네 임금에 걸쳐 40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⁰⁾

《현종실록》 편찬의 배경에는 갑인예송의 반전, 삼복이라는 종친 세력의 정치 개입, 어린 숙종의 즉위라는 변수가 맞물리면서 빚어낸 이런 파란이 있었고, 이 파란의 한복판에서 실록편찬이 시작되었다. 먼저 숙종 원년 5월 16일 대제학에 김석주를 임명하여 실록 편찬을 위한 실질적인 총책임자를 정한 뒤 총재관으로 영의정 허적을 임명했으며, 실록청을 도청과 3방으로 나누고 각 방에 당상과 낭청을 임명했다.¹¹⁾ 5월 28일 임명된 실록청 당상과 낭청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실록청도청	당상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
		행지중추부사	강백년(姜栢年)
		형조판서	민점(閔點)
	도청	낭청	사헌부 집의 박세당(朴世堂)
			홍문관 교리 권유(權愈)
			사간원 헌납 이옥(李沃)
			부사과 유명현(柳命賢)
1방	당상	행예조판서	장선징(張善徵)
		호조판서	오정위(吳挺緯)
		한성부 좌윤	윤심(尹深)
		이조참의	홍우원(洪宇遠)
	낭청	홍문관 부응교	이하진(李夏鎭)
		전 정랑	윤지선(尹趾善)
		병조 정랑	목창명(睦昌明)
		사헌부 지평	유하익(兪夏益)
		전 좌랑	심수량(沈壽亮)
2방	당상	행 의정부좌참찬 민희(閔熙)	

10) 《현종개수실록》 권26 13년 6월 3일(정축)

11) 《숙종실록》 권3 1년 5월 16일(갑술). 같은 날 승정원에서는 총재관을 차출하라는 계를 올렸다.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장서각 2-3795) 이하 특별한 참고표시가 없는 경우, 《현종실록》의 편찬과정에 대한 서술은 이 의례에 따른 것이다.

		한성부 판윤	김우형(金字亨)
		행 승정원도승지	목래선(睦來善)
		병조 참지	정석(鄭皙)
낭청	사복시 정	오정창(吳挺昌)	
	전 도사	곽제화(郭齊華)	
	성균관 직강	이일정(李日井)	
	사헌부 지평	이항(李沆)	
	부사직	이덕주(李德周)	
3방	당상	이조판서	김휘(金徽)
		행부호군	오시수(吳始壽)
		이조참판	심재(沈粹)
		행부호군	김만중(金萬重)
낭청	성균관 사성	임상원(任相元)	
	이조 좌랑	오시복(吳始復)	
	전 좌랑	윤치적(尹致績)	
	전 헌납	김환(金奩)	
	병조 정랑	이수경(李壽慶)	

박세당, 김만중 같은 일부 서인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대체로 총재관 허적을 위시하여 남인 중심으로 실록청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재관으로 임명되었던 허적도 총재관 사직했는데, 이는 당시 좌의정(左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주문(主文), 즉 대제학을 지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허적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¹²⁾

한편, 도청 당상 강백년의 경우, 예론에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고 헌납(獻納) 이옥(李沃), 정언(正言) 박신규(朴信圭) 등이 논핵하면서 당상직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숙종은 이를 받아들여 강백년을 체차하고 3방 당상 오시수(吳始壽)를 도청 당상으로 대신하게 했다.¹³⁾ 강백년은 현종 15년 갑인예송 때 기년복에 반대하는 의계(議啓)를 올린 적이 있었던 것이다.¹⁴⁾ 그뿐 아니라, 박세당과 장선징, 김만중 등도 임명만 되었을 뿐 병을 이유로 출사하지 않았다. 아마 정세(情勢)가 편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 《숙종실록》 권3 1년 5월 21일(기묘). 사관은 허적이 겉으로 사양하는 체한 것이라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인조조(仁祖朝)와 효종조(孝宗朝) 두 조정의 실록(實錄)은 거짓된 역사라 하여 모두 고치려 하는 논의(論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13) 《숙종실록》 권4 1년 윤5월 6일(계사). 사관은 “임금이 편파적으로 옛 신하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한 번 아뢰기만 하면 즉시 윤허하였다. 그래서 오시수(吳始壽) 같이 간사한 사람으로 강백년과 같은 문한(文翰)을 바꾸게 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탄식하였다.”라고 평하였다.

14) 《현종개수실록》 권28 15년 7월 13일(을해). 판중추부사 김수항(金壽恒), 영의정 김수흥(金壽興), 행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 이조 판서 홍처량(洪處亮), 행 대사헌 강백년(姜栢年), 형조 판서 이은상(李殷相), 한성부 판윤 김우형(金字亨), 예조 참판 이준구(李俊耆), 예조 참의 이규령(李奎齡), 홍문관 부응교 최후상(崔後尙)이 빈청에 모여 의계하였다.

실록청 관원이 정해진 뒤에는 응행사목(應行事目)을 확정했다. 응행사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설국처는 형조에 설치하고, 각 방은 공조와 사역원에 나누어 설치하되, 실록청이라고 부른다.

하나, 당상과 낭청은 본직으로 있는 관청에 직속하는 일을 면제하고 모든 공식 회의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며 제사(祭祀)에 차출하지 않는다. 복제와 식가도 면제해주시며, 조사 받을 인원은 공사죄(公私罪)를¹⁵⁾ 막론하고 공무를 보도록 한다. 승지나 대간으로 임명하더라도 이전의 관례에 따라 교체하지 말고, 낭청 중에서 과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입계하여 군직(軍職)에 부처 관직을 띠고 근무하게 하십시오.

하나, 한림 1명이 구례대로 항상 근무하면서 임무를 살핀다.

하나, 별공작 감역원 1명은 선공감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나누어 정송한다.

하나, 당상과 낭청의 인신(印信) 각 1과(顆)는 해당 관청에서 가져오도록 한다.

하나, 각방 서리 17명은 각사의 요포(料布)를 받는 서리를 분정하여 부리고, 서사(書寫) 1명과 서고지기(庫直) 4명 및 사령 17명은 호조와 병조에서 급료를 지급한다.

하나, 사초를 등록할 때 소용되는 종이와 붓, 먹, 기타 물품 및 아문이 없는 관원의 자리 등은 해조에서 준비한다.

하나, 수직(守直)할 군사(軍士)와 다모(茶母) 등은 각 해사(該司)에서 정송한다.

하나, 각사의 태만한 관리들은 분패(粉牌)를 쓰고, 하인은 즉시 가두고 태형을 친다.

하나,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하여 시행한다.

응행사목은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할 때도 비슷하거니와, 조선초기 실록편찬 관례가 성립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5월부터 7월까지 실록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인원변동이 있어서, 1방은 아예 별단을 따로 보고하였다.

1방	당상	지중추부사	김우형(金字亨)
		승정원좌승지	이관징(李觀徵)
		승정원우승지	정석(鄭皙)
		호조참의	이우정(李宇鼎)
낭청		성균관 사성	임상원(任相元)
		병조 정랑	유하익(兪夏益)
		병조 정랑	권해(權諧)
		성균관 직강	이일정(李日井)

15) 公私罪 : 公罪는 직무「公務」를 보던 중에 과실로 지은 죄로, 동료가 죄를 지을 경우 직위의 차등에 따라 지휘책임을 진다. 私罪는 직무를 보다가 故意로 지은 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현직관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만큼 공무 중에 과실 또는 고의로 지은 죄를 말한다. 공사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게 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불구속기소한다는 뜻이다.

7월 20일 관원과 사무실 준비가 끝나고, 실록청의 찬수법례를 확정했다. 실록청의 시정기 찬수 법례도 응행사목과 마찬가지로 조선초기부터 확정되었으리라 짐작된다.

1. 사관의 시정기, 주서(注書)의 일기, 서울과 지방의 겸춘추(兼春秋)의 기록 외에, 비변사 장계축(狀啓軸), 의금부 추안(推案) 및 형조의 참고할 만한 중요하고 핵심적인[緊關] 문서, 사변(事變)과 추국(推鞠)에 대한 주서 일기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검토하여 갖추어 적는다.

2. 모든 조칙(詔勅) 및 우리나라[本朝]의 유관 교서(敎書)는 찾아내어 기록한다.

3. 이름 있는 신하는 졸기(卒記)를 작성하는데, 빠진 대목이나 소략한 데가 있으면 일시의 공론이나 혹은 문집의 비문과 지문(誌文)을 참고하여 상세히 보충하여 기록한다.

4. 매일 매일의 날짜는 갑자(甲子)만 기록한다.

5. 모든 재변의 경우, 관상감 초록(抄錄)을 하나하나 첨가하여 적는다. - 지방의 바람, 비, 지진 등 각각의 사항은 그 당시 보고한 문서[啓聞]를 반드시 살펴보고 갖추어 기록한다.

6. 대간의 논계(論啓)는, 첫 번째 논계[初啓]의 경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적고, 잇달아 올린 논계[連啓]의 경우는 단지 ‘연계’라고만 적고, 혹시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으면 뽑아낸다.

7. 대간의 논계는 단지 ‘사헌부’, ‘사간원’이라고만 적고, 와서 보고한 사람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다만 첫 번째 논계했을 때는 성명을 모두 적는다. 중대한 시비가 걸린 사안의 경우는, 다른 의견을 꺼낸 경우도 적지 않으면 안 된다. - 어사(御史)의 성명 및 관리를 쫓아낸 일[黜陟], 폐단을 변통한 일 등도 상세히 기록한다.

8. 상소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상세히 갖추어 신고, 그 사이의 불필요한 글자는 해당 구절을 빼더라도 무방하다. 예에 따라 사직하는 상소나 차자의 경우는 반드시 모두 적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거취나 시비 같은 당시 정치에 관련된 사안은 역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모든 관직 임명[除拜]의 경우, 중요하지 않고 잡다한 관직이나 산직[冗散] 외에는 이조와 병조[兩銓]의 문서를 다시 살펴보아 상세히 기록한다.

10. 각 연도의 과거에 합격한 인원은 ‘아무개 등, 몇 사람’이라고 적는다.

11. 군병의 숫자, 서울과 지방의 법제, 호구 숫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문서를 상소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12. 도움이 되지 않는 번잡하고 쓸데없는 문자는 참작하여 다듬어서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이 되도록 힘쓴다.

13. 조정[朝家]의 길흉(吉凶) 등 여러 의례 중에서 나라의 헌장(憲章)에 관계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 보여줄 만한 것은 문장이 비록 번거롭고 잡다해도 갖추어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4. 서울과 지방의 관리 출척이나 공적 또는 사적 시비는 반드시 그 대략을 뽑아 기록한

다.

약 보름에 걸쳐 시정기를 산정한 뒤, 8월 12일 1방 당상과 낭청은 감하하고 분판등록 낭청 15명을 차출했다. 분판등록은 산절된 시정기를 토대로 실록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제학 김석주가 병조 판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바빠서 초고 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이때 임명된 15명은 제대로 일도 해보지 못하고 다른 관직으로 옮겨졌고, 이듬해인 숙종 2년(1676) 정월 29일 이후 다른 관원으로 교체되었다. 김석주도 2월 9일 대제학을 그만두었고 민점이 대제학으로 임명되었다.

실록청의 사무실도 이동이 있었다. 실록청이 설치되었던 형조와 병조에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부묘도감(附廟都監)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숙종 원년 9월 3일에 실록청을 창덕궁의 비변사 건물로 옮겼지만, 다시 두 달 여 만인 11월 15일 다시 경덕궁(慶德宮)으로 옮겼다. 창경궁으로 옮겼던 비변사가 창덕궁으로 돌아오면서 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것이다. 경덕궁에서는 비변사 건물을 사용하다가 장소가 협소하자 승문원, 시강원, 병조의 건물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편찬 작업은 늦어지고 있었다. 숙종 2년 5월 16일 현재, 아직도 현종 즉위년(1659) 초고 밖에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통상 사왕(嗣王) 즉위 후 실록이 완성되어야 할 시점에 아직 초반 작업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실록청 당상들에게 다른 업무를 모두 면제해주고 편찬에만 전념하게 하라는 공론이 형성되었고 숙종도 이에 동의하는 편이었다.

편찬을 마치기 위해 실록청 관원은 다른 업무에서 면제해주었다. 8월 11일 경시관으로 임명된 겸춘추의 임명을 취소했고, 11월 13일 홍문관 관원의 주강(書講) 참석을 면제해주었다. 또 12월 16일에는 홍문관 관원의 입직을 면제시켰고 과거 시관(試官) 차출도 면제해주었다. 실록청 당상도 경연관 직임을 면제해주었고, 대사헌에는 후보로 올리지 말도록 했다.

당상 홍우원은 상소하여, 실록청 관원의 근무 강화를 주장했다. 묘시에 출근하여 유시에 퇴근한다는 ‘묘사유파(卯仕酉罷)’를 제대로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하절기에는 묘사유파(卯仕酉罷), 동절기에는 진사신파(辰仕申罷)가 관원들의 근무시간이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실록청에 초과근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상근무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애당초 실록청 관원은 겸직이었기 때문에 본직이 없이 군직(軍職)에 부처 들어온 관원을 제외하면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임명과 승진, 전보 등에서 본직의 구애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런 애로는 다른 시기에 실록을 편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건이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의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숙종 원년부터 시작된 편찬에서 관원의 빈번한 교체와 함께, 편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숙종 초반 서인 출신의 신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정을 떠나거나 기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강백년, 박세당, 김만중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총재관부터 당상까지 남인 일색으로 꾸려진 실록청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었을 것이고, 후일 《현종실록》을 개수할 썩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관직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겸직으로 운영되는 실록청의 경우는 한결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이런 여건 탓인지 대제학을 그만둔 김석주도 여전히 실록청 편찬에 참여하고 있었다.¹⁶⁾ 그러나 그도 병조 판서의 일에 전념하겠다고 “사국의 일은 긴급한 것이라 하루라도 체직(遞職)하지 않으면 사국을 하루 비우게 되고 한 달을 체직하지 않으면 사국을 한 달 비우게 될 것입니다.”라며 겸직인 실록청 직무를 사양했고, 영의정 허적(許積)도 김석주의 체차를 청했다. 막상 편찬이 급한 쪽에서는 달랐다. 실록청 당상을 맡아 실무를 지휘하고 있던 민점(閔點)과 홍우원(洪宇遠) 등은, “김석주는 충명하여 선조(先朝)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사국에서 찬수(撰修)할 적에 함께 의논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 대제학(大提學)이 죄로 폐치(廢置)된 경우가 아닌데 사국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체가 아닌 일이니, 실록청의 소임을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라고 체차를 반대했다. 그러나 숙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종 3년(1677) 2월이 되어서도 편찬은 늦어지고 있었다. 숙종은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도 찬수(撰修)가 아직도 절반을 넘지 못했으니, 일이 매우 태만하다.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모두 중중(從重) 추고(推考)하라.”고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¹⁷⁾ 며칠 뒤에도 숙종은 별감(別監)을 보내어 실록청에 가 보도록 했었는데, 나와 있는 당상·낭청이 없었다. 숙종은 묘사유과(卯仕酉罷)는 어디로 갔느냐며 관원들이 태만하다 하여 추고(推考)하도록 명했다. 이렇게 다그치는 한편 은사(恩賜)를 내려 사기를 북돋운 결과, 같은 해 5월 22일에는 14년 8개월분의 편찬을 마쳤다. 이즈음인 5월 9일 총재관이었던 허적이 병으로 물러나고, 10일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총재관에 낙점되었다.

이제 간행을 위해 인쇄하는 일이 남았다. 정초본을 기초로 간행을 할 때, 대제학이 반드시 초본(草本)을 보고 문자를 수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등록관원에게 내려 분판에 쓰게 한 뒤에 비로소 장인들이 활자를 바로잡아 인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제학 민점이 도목정(都目政) 때문에 근무하러 나오지 못하여 인쇄가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도 큰 무리없이 인쇄가 진행되어 숙종 3년 9월에는 《현종실록》이 완성되었다. 물론 《현종실록》 편찬의 전 과정은 의례에 기록되어 남았다.

9월 9일에는 사고로 옮기기 전에 춘추관 실록각에 임시로 봉안했다. 나머지 시정기는 세초를 했고, 세초한 휴지는 호조에서 거두어갔다. 사관은 이때 일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기록하였다. “《현종대왕실록(顯宗大王實錄)》이 완성되었는데, 모두 22권(卷)이었다. 실록청(實錄廳)이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洗草)하였더니,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일등악(一等樂)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또 내외(內外)에 명하여 선운(宣醞)하게 하였으니, 구례(舊禮)를 따른 것이었다. 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이 흥년이 들었다 하여 잔치를 내려 주고 음악 내려 주는 것을 정지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⁸⁾

곧이어 관례대로 실록 총재관(實錄總裁官) 이하에게 차등이 있게 상을 주었다. 근무 날짜

16) 《숙종실록》 권6 3년 1월 17일(갑오)

17) 《숙종실록》 권6 3년 2월 5일(임자)

18) 《숙종실록》 권6 3년 9월 11일(을유). 의례에는 세초일이 9월 19일로 나와 있다. 《숙종실록》의 사론은 전후 상황을 함께 모아 기록한 것이라 날짜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가 적은 이관징(李觀徵)은 단지 말[馬]만 받았다가, 홍우원(洪宇遠)이 힘써 찬수(纂修)하였음을 상소하여 아뢰고, 또 총재관(總裁官)에게 물어서 가자(加資)하여 줄 것을 청하여 이관징에게도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숙종 3년에 짧은 기간 동안 편찬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숙종의 세심한 독려에 힘입지 않았나 한다.

2) 《현종실록》의 개수

그런데 김석주 등 청풍 김씨 외척, 허적 등 남인 세력, 그리고 종친인 삼복의 제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정과 이연이 간통한 궁녀 홍수(紅袖)가 현종의 은총을 받은 궁녀였던 데서 발단하여 명성왕후(明聖王后)까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었다. 명성왕후는 김우명을 이들의 비리를 상소하게 했다. 이는 그동안 삼복이 종친으로서 정치에 간여한 정상이 누적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조정에 종친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관례를 지나치게 넘어선 데서 나타나는 재조정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군권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윤희는 체찰부(體察府)의 설치를 주장하여 체찰부가 설치되고, 허적이 체찰사에 임명되었다. 원래 체찰부는 영의정을 도체찰사로 하는 전시의 사령부로서 외방 팔도의 모든 군사력이 그 통제를 받게 되었다. 총융사와 수어사도 경기도의 군사력으로 간주되어 도체찰사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도체찰사가 된 허적은 훈련도감과 어영청마저 체찰부에 소속시켜 군권을 하나로 합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김석주 등이 강력히 반발하여 체찰부는 일시 혁파되었으나, 1678년(숙종4) 영의정 허적의 건의로 복설되었다. 1679년, 체찰부 복설과정에서 윤희는 부체찰사 직위를 노렸으나, 숙종은 김석주를 부체찰사로 임명했다. 숙종은 군권을 장악하는 남인을 견제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¹⁹⁾ 경신환국 때 윤희에게 사사(賜死)했던 죄목 중 하나가 바로 도체찰부 복설이었다.

이 와중에, 1680년(숙종6) 3월 19일,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적이 조부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에 궁중의 천막을 가져다 쓴 사건이 발생하였다. 숙종은 이날 비가 내리자 허적에게 궁정의 기름먹인 천막을 가져다 쓰라고 명하였으나, 이미 가져간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군권을 서인에게 넘기는 전격 조치를 취하였다. 훈련대장을 남인계인 유혁연을 해임하고 총융사 김만기로 바꾸고, 김만기의 후임에는 신여철을, 수어사에는 김익훈을 임명하였다.²⁰⁾

이 무렵 조정에서는 김수항이 1675년에 차자를 올려 삼복의 홍수를 둘러싼 변고와 윤희의 조관(照管) 발언을 비판했던 일을 재론했다.²¹⁾ 이미 숙종의 마음은 기울어 있었다. 숙종은 김수항을 귀양 보낸 일을 후회하며, “그 때는 내가 어려서 기만당함을 면치 못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어찌 통한(痛限)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김수항을 곧 서용하고, 그

19) 명성왕후와 숙종 모두 김석주를 통해 윤희에게 다른 뜻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궁익, 《국역 연려실기술》 권34 〈숙종조고사본말 경신년대출척허견옥사〉

20) 《숙종실록》 권9 6년 3월 28일(정사)

21) 《숙종실록》 권9 6년 3월 30일(기미)

때의 대간(臺諫)을 모두 국문하라.”고 명했다.

영의정 허적도 편치 않았다. 숙종은 정승으로 있으면서 사태만 관망했다고 허적을 몰아세웠고, 허적을 옹호하던 승지 민취도(閔就道)와 경최(慶最)를 파직하였다. 이어 숙종은 정재승(鄭載嵩)을 이조판서에, 조지겸(趙持謙)을 지평에 임명했다. 그리고 좌의정 민희(閔熙), 우의정 오시수(吳始壽), 이조참판 유명천(柳命天), 대사헌 민암(閔黯), 예조판서 오정창(吳挺昌), 이조참의 목창명(睦昌明) 등 남인 핵심 인사들이 체직되었다. 허적은 도체찰사부와 내국제조 직임까지 사임하고 조정에서 물러났다.

삼복 형제와 허적의 아들 허견(許堅)에 대한 대간의 탄핵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장 이들에게 무슨 혐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의 비행과, 또 다시 이들이 저지를 수도 있는 후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삼복을 귀양 보냈고, 남인들은 정배 및 삭탈관작하였다.

그러나 4월 5일 정원로(鄭元老)와 강만철(姜萬鐵)의 고변(告變)이 나왔다. 이들은 허견의 압객(狎客)이었는데, 이들의 입을 통해 구체적인 역모의 정상이 밝혀졌다. 고변 7일 뒤, 허견을 군기시(軍器寺) 앞 길에서 능지처사(凌遲處死)하고 이남(李楠)은 교수형(絞首刑)에 처하였다. 4월 26일에는 복창군 이정에게 사사하고, 추국청을 폐지했다. 귀양 간 윤휴에 대해서는, 막상 윤휴를 비판했던 김수항은 “윤휴의 ‘조관(照管)’이라는 말과 체찰부의 복설을 청한 것은 그 죄가 비록 무겁기는 하나, 곧바로 사죄(死罪)로 논단하기는 지나친 듯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두인(吳斗寅), 민정중(閔鼎重) 등의 의견에 따라 사사를 명하였다.²²⁾

《현종실록》을 남인 중심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환국이 마무리되면서 《현종실록》의 개수 논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같은 해 7월 10일, 판교(判校) 정면(鄭勲)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²³⁾

“신이 생각하건대, 실록을 찬수하는 임무는 지엄하고도 중대하여, 필삭(筆削)할 때에 한구절, 한마디라도 사실에 어긋나면 역사 편수의 의의를 잃게 되고, 후세의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성고(聖考) 현종대왕(顯宗大王)은 총명과 예지를 지닌 불세출의 대성(大聖)으로 십오 년 즉위하셨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신 정성과, 부모를 공경하고 현자를 높이는 마음은 정령(政令)과 언동(言動) 사이에 드러났습니다. 가유(嘉猷)와 가모(嘉謨), 인심(仁心)과 인문(仁聞)은 환히 세인(世人)들의 이목(耳目)에 남아 있는데, 몇 년 전 역사를 편수할 때에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면서 선왕께서 교화하신 덕을 잊고 일시의 원망하는 마음에 태사(太史)의 붓을 임시 훔쳤습니다. 여탈(與奪)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올리고 내렸으니, 선왕을 매우 무함하고 시비를 변란시킨 실상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탈고(脫稿)한 뒤에 진신(摺紳)들 사이에서 꽤 의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진실로 무슨 사안, 무슨 정치가 정말 믿을 수 없는지 몰랐는데, 대개 오늘날 흉역배(凶逆輩)

22) 《숙종실록》 권9 5월 15일(계묘).

23)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례》(장서각 2-3794) 경신 7월 10일조. 《숙종실록》의 상소 기록이 소략한데 비해,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례》에는 상소가 훨씬 상세하다.

들이 전하를 등지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러저러한 말이 진실로 무함이 아니었습니다.

연전에 허목(許穆)이 입시하던 날 감히 ‘선조(先朝)에 정치가 어지러웠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주상 가까운 데서 진달했으니, 그의 임금을 업신여기고 부도(不道)한 마음은 여기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총재관을 맡은 권대운(權大運)과 실제 편찬 책임자인 민점(閔點)은 평소 심술이 허목과 매일반인 자인데, 허목이 험뜯고 무함한 것처럼 바르지 않은 말이 우리 선왕께 가해졌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비록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필연코 그랬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의 시정기는 인조조로 넘어와서부터 이미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또 가저다 고치자고 청하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송유(宋儒) 진관(陳瓘)은 소성(昭聖) 연간²⁴⁾의 사관들이 오로지 왕안석(王安石)의 일기만을 가져와 《유릉실록(裕陵實錄 신종실록(神宗實錄))》을 편수하여 시비(是非)를 크게 어지럽혔으므로 후세에 믿을 수 있는 역사로 전할 수 없다며 수개(修改)를 청했으니, 이것이 오늘날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가슴 깊이 결단하시어 서둘러 실록청을 설치하고 때맞추어 이정(釐正)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경화(更化)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급선무입니다.”

정면은 《현종실록》의 개수와, 예송에서 윤선도의 상소를 지지했던 조경(趙綱)을 현종묘정(廟庭)에서 내오라는 두 가지를 주장했다. 정면의 상소가 《숙종실록》에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의례 처음에 거의 전제한 점으로 미루어 이 상소가 《현종실록》의 개수에 서 차지하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정면의 상소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우선, 권세를 잡은 간신들이 사실을 왜곡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두 갈래로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환국이 일어난 뒤에 반대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상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우리는 실록편찬이 정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즉 실록이 전해주는 역사사료, 역사의 진실은 결국 관점에 달렸다는 상대주의에 빠지게 된다.

둘째, 숙종 원년부터 환국까지 실록편찬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보여준 행적으로부터 실록개수의 정당성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총재관 허적의 행적, 대제학 민암의 행적, 허목, 윤휴의 행적이 그것이다. 적어도 앞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숙종 주도의 환국이 갖는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실록 개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면의 견해를 반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허목이 했다는 ‘선조(先朝)에 정치가 어지러웠다’는 말은 《숙종실록》에 보인다. 허목의 상소를 평하는 사관의 말²⁵⁾에서 보이는데, 실제로 입시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24) 소성은 송 철종(宋哲宗)의 연호이다. 1094~1097.

25) 숙종 원년에 나오는 사료는 허목의 말이 아니라, 허목 상소의 일부인 논덕조(論德條)를 소개하면서, 사관이 “그는 바야흐로 효종의 정치가 어지러웠다고 생각하므로 임금이 효종의 사업을 따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渠方以孝廟爲政亂, 故不欲上遵孝廟之業,]고 논평한 말이다. 《숙종실록》 권2 1년 1월 5일(갑자).

허목이 ‘김종일은 정치가 어지러워진 뒤로부터 관직에서 물러나 몸을 깨끗이 지켰다’고 했는데, 김종일이 벼슬을 못했던 시기가 효종조(孝宗朝)와 현종조(顯宗朝)의 두 조정 때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김만중(金萬重)이 아뢰자 숙종은 김만중을 간교하다고 말했다. 당시는 숙종의 마음이 서인에게서 떠나던 시기였다. 검토관(檢討官) 유명현(柳命賢)도 허목이 그럴리 없다고 거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주는 자신도 입시해서 들었다면 허목이 실언을 했다고 김만중의 말에 증거가 되어주었다. 이렇게 그 발언은 실언으로 정리되었지만, 효종, 현종대에 대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정면의 상소를 통해 다시 거론된 셈이었다.

정면은 또 남인을 중심으로 《현종실록》을 편찬한 일을 두고 왕안석의 일기만을 참고하여 《신종실록(神宗實錄)》을 편찬한 일과 비교했다. 주목사(朱墨史)의 전례를 인용한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현종실록》을 편찬했던 남인들이 《광해군일기》를 수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광해군일기》는 1624년(인조 2년) 7월부터 1627년(인조 5년) 1월까지의 1단계와 1632년(인조 10년) 1월부터 1633년 12월까지의 2단계에 걸쳐 편찬되었다. 1623년(인조1) 8월 경연에서 이수광과 이정귀(李廷龜) 등의 건의로 《선조실록(宣祖實錄)》을 수정하고 광해군대 시정기(時政記)를 수정, 즉 일기를 편찬하기로 하였으나, 재정이 궁핍하여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1624년(인조 2년) 1월에는 이괄(李适)의 반란이 일어나, 춘추관(春秋館)을 비롯한 많은 관청이 불탔다.

1627년 8월에 정묘호란이 수습된 뒤에도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여 편찬 사업을 착수할 수 없었고, 국가 재정의 고갈과 변방의 위태로운 국면 때문에 오래 동안 중지되었다. 1632년(인조 10년) 2월에 가서야 찬수청을 남별궁에 다시 설치하고 편수 관원을 임명하여 편찬을 속행하였다. 그리하여 1633년(인조 11년) 9월까지 133개월분이 중초로 작성되고, 그 해 12월에 187개월분 모두가 중초본으로 작성되었다. 편찬된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다시 정서하고 인쇄해야 하였으나, 재정의 고갈 및 《선조수정실록》의 편찬 문제 등으로 인쇄하지 못하고, 몇 벌을 정서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634년(인조 12년) 5월 《광해군일기》 187권을 묶어 정서하여 정초본 39책으로 두 벌을 만들어 강화도의 정족산 사고와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 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중초본은 64책으로 만들어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사고에 보관하였다.

《광해군일기》가 간행되지 못한 것은 재정문제였다. 광해군 때 궁궐공사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과 재정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경제구조에서는 쉽게 회복될 수 없었다. 거기에 두 차례 후금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결국 간행하지 못하고, 중초본, 정초본 상태로 사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숙종 초반 《광해군일기》의 수정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군가는 인조대에 편찬된 《광해군일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폐위된 혼군(昏君)의 시대로 반정까지 초래했던 광해군 시대의 일기를 고치려고 했던 부류는 누구였을까. 그것은 광해군 정권이었던 북인 또는 대북(大北)의 잔존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겠지만, 현단계에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경신환국 직전 허적은 윤휴와 체찰부 설치 등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한 적이 많았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있다. 윤휴가 오정창의 사객(私客)인 이서우(李瑞雨)를 홍문관으로 추천했을 때 허적은 “대북의 자손을 갑자기 청요직(淸要職)에 등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²⁶⁾ 윤휴는 윤효전(尹孝全)의 아들로, 윤효전은 임해군의 옥사에서 원훈(元勳)의 반열에 들었고, 김계남(金梯男)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귀양 보내던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대사헌으로 사건을 주도했으며 이이첨(李爾瞻)과 결탁했던 인물이었다. 결국 윤휴를 위시한 대북의 후예들이 《광해군일기》의 수정을 시도했으리라는 것이 정황과 방증으로 미루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윤의제(尹義濟)가 적상산(赤裳山)에 가서 국사(國史)에 윤효전(尹孝全)의 악행이 매우 자세히 쓰여져 있음을 보고 돌아와 그 아비에게 말하니, 그 아비가 크게 놀라 연인(漣人 허목(許穆))에게 부탁하여 개정하기를 계청(啓請)하게 하려 한다고 하네. 이것은 한결같이 채경(蔡京)과 장돈(章惇) 때의 일과 같은데, 지금 한 사람도 감히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을 것 같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네. 어떻게 해야 진요옹(陳了翁 진관(陳瓘)) 같은 정직한 이를 얻을 수 있겠는가.²⁷⁾

위의 자료는 윤의제 → 윤휴 → 허목으로 이어지는 《광해군일기》 수정 논의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이미 정면의 상소 이전에 알 사람들은 이 논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숙종은 정면의 상소에 대해, 위의 일은 누구나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대신들을 인견한 자리에서 《현종실록》 개수에 대한 견해가 나왔다. 영암, 철원으로 귀양을 갔다가 복귀한 영의정 김수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국(史局)의 일은 엄중하고 비밀스러워 신은 상세히 알지 못하였으나, 다만 듣건대 너무 소략하여 신빙성을 고구하고 후세에 남길 수 없다 합니다. 《선조실록(宣祖實錄)》은 혼조(昏朝)의 못 소인들이 꾸민 것으로, 인조(仁祖)께서 모든 제도를 개정하면서 고(故) 판서(判書) 이식(李植)에게 수정(修正)할 것을 명하였는데, 미처 편찬을 끝내지 못하였고, 효종조(孝宗朝)에 이르러 비로소 일을 마쳤습니다. 이미 선조(先朝)의 고사(故事)도 있으니, 지금 별도로 한 책을 편수하여 전본(前本)과 함께 보관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일의 대체가 중대하니, 춘추관(春秋館)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여금 실상을 받들어 살피게 한 뒤에 품정(稟定)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²⁸⁾

김수항의 의견은 초점이 소략하다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서 좌의정 민정중(閔

26) 《숙종실록》 권10 6년 10월 2일(정해). 김석주가 이전의 일을 기억하며 했던 말이다.

27) 송자대전권63 민지숙(閔持叔)에게 답함 - 병진년(1676) 11월

28) 《숙종실록》 권9 6년 7월 15일(임인)

鼎重)은 “영릉(寧陵 효종의 능침)을 옮길 때에 선왕(先王)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친히 거동하지 못했는데, 윤희가 행장(行狀)을 지으면서 아래에서 신하 중 누군가 그만두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실록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며, 왜곡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현종실록》 편찬이 시작되었을 때 대제학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다가 직무가 바빠 민점에게 대제학을 넘겨주고 실록 편찬 일선에서 물러났던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는, “신이 을묘년에 외람되게 대제학(大提學)의 명을 받아 사국(史局)의 일을 관장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체직되었고 민점(閔點)이 신을 대신하여 대제학이 되었습니다. 그 후 허적이 총재관(摠裁官)으로 신이 찬수했던 기해년(1449, 효종즉위)의 두 달 치와 신축년(1451)의 몇 달 치 사실을 제 마음대로 고쳐서 신은 마침내 사면하였는데, 들으니 전적으로 빨리 완성시키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서 정령(政令)을 변동하는 것이나 전곡(錢穀)·갑병(甲兵)·형옥(刑獄) 등과 같은 일이 하나도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 소략함을 알 만합니다.”라고 하여, 소략함과 왜곡 두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대체로 《현종실록》을 개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의견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형조판서 김덕원(金德遠)은 “실록을 개수(改修)하는 일은 옛날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다만 송(宋)나라 소성(紹聖) 때에 채변(蔡卞)이 《유릉실록(裕陵實錄)》을 개수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청하였으나, 이것은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견을 보였다. 그러자 지중추부사 조사석(趙師錫)이 힐난하면서, “채변 등의 추잡한 역사는 남송(南宋)에 이르러 개수되었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주묵사(朱墨史)입니다. 유독 채변의 일은 오늘날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인용해서는 안 될 소성(紹聖) 연간의 일을 인용하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채변은 왕안석의 사위로 《신종실록》을 개수하자고 요청했는데,²⁹⁾ 김덕원이 이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수와 비교하니까 조사석이 그것은 잘못된 비교이고, 오히려 채변이 편찬한 《신종실록》을 나중에 범충(范冲)이 개수한 주묵사가 지금 논의에 적절한 비유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덕원의 견해는 부적절한 논거와 부정확한 논리에 입각해 있었다. 홍문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차자를 올렸다.

선대왕의 실록을 수정하던 날, 그 때의 상신(相臣) 권대운(權大運)이 전적으로 총재(摠裁)의 책임을 맡았으며, 찬수(纂修)에 동참했던 신하들도 또한 한 때의 간사한 사람에게 편들어 나라를 그르친 자들이 많아서, 다만 기사(記事)가 소략하고 누락되어, 자세함과 극진함에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탈(與奪)과 내리고 높임에 있어서 반드시 전도(顛倒)된 곳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개정하기를 청한 의논은 진실로 오늘의 급무입니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29) 소성(紹聖) 2년(1095), 왕안석의 신법당(新法黨)이 부활되면서 장돈(章惇)과 채변(蔡卞)은 《신종실록》에 무고가 많다고 편찬책임자들을 탄핵했다. 탄핵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범조우(范祖禹 1041~1098),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이다. 황정견의 자는 노직(魯直)이고, 호는 산곡도인(山谷道人) 또는 부옹(涪翁)인데, 의주(宜州)에 유배되어 그 곳에서 병사했다. 범조우 역시 유배 가서 죽었다. 범조우의 아들 범충(范冲)이 고종(高宗)의 명으로 《신종실록》을 개수했는데, 그것이 앞서 다룬 주묵사이다.

김덕원(金德遠)이 방자하게 주장을 세우면서, 국사(國史)를 개수(改修)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고, 다만 송(宋)나라 소성(紹聖) 연간에 채변(蔡卞) 등이 건의하여 《유릉실록(裕陵實錄)》을 고치고자 청하였을 뿐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록을 개수하는 일은, 예전의 역사를 상고하거나 국사(國史)를 상고해 보아도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니므로, 예전에 없었던 설은 족히 변명할 것도 없지만, 그가 소성(紹聖)을 인용하여 증거한 한 항목은, 말의 뜻이 대단히 참혹합니다. 대개 소성은 곧 송나라 철종(哲宗)의 연호입니다. 그 때의 희풍(熙豐)의 간사한 무리가 시기를 이용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부렸는데, 채변은 왕안석(王安石)의 사위로서, 원우(元祐) 때의 사관(史官)이, 왕안석이 권세를 오로지하고 정사를 어지럽혔던 실상을 직서(直書)한 것을 추후에 원망하여 첫 번째로 의견을 내어 《신종실록(神宗實錄)》을 고치자고 청하였으며, 전적으로 왕안석의 일기를 사용하였고, 당시에 역사를 관장한 신하인 범조우(范祖禹)·여대방(呂大防) 등의 여러 어진이를 폄찬(貶竄)하여, 제멋대로 틈을 만들고 원망을 갚는 사사로움을 시행하였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때가 어느 때이기에 김덕원이 이에 감히 오늘의 일에 가리켜 견주었으니, 그의 방자하고 무엄함이, 아! 또한 심합니다. 김덕원은 허적에게 아첨하여 붙었던 사람으로서 진실로 공의(公議)의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바인데도, 감히 임금의 가까운 도유(都兪)하는 자리에서 간사한 의논을 주장하여 공의(公議)를 공공연히 배척하고, 간악한 자에게 편들려는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니, 인심과 세도(世道)가 좋지 못한 것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지금 권세 있는 간신이 겨우 쫓겨났지만, 선비의 기개가 아직도 미약하니, 소장(消長)하는 기미가 매우 두렵습니다. 청컨대 김덕원을 파직하여 공의를 엄정하게 하고 인심을 바로잡으소서.³⁰⁾

홍문관의 지적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왜곡의 혐의가 있다면 《현종실록》은 수정해야 한다. 둘째, 김덕원은 채변이 왕안석의 일기를 토대로 《신종실록》을 고친 사례를 들어 《현종실록》에 대한 정당한 수정 요구를 왜곡하고 있다.

숙종은 “실록이 소루한 것은 진실로 힘이 되는 일이다. 대신과 춘추관 당상, 낭청이 택일하여 실록을 봉심(奉審)한 뒤 품처하라.”고 지시했다. 명에 따라 김수항이 실록을 봉심하고 돌아왔고, 봉심한 결과를 숙종에게 보고했다. 봉심에 참여했던 김석주, 민정중, 이익(李翊)의 의견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이들의 의견에는 《현종실록》의 개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말고도 실록 편찬에 관한 구체적인 실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

(김수항) 실록은 모두 22권입니다. 신들과 춘추관 당상이 권을 나누어 고열했는데, 한 사람당 10권, 혹은 8, 9권을 맡았습니다. 각각 전질을 다 상고하지는 못했지만, 그 대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신은 효종대왕께서 승하하시던 날 예방 승지(禮房承旨)로서 오래 승정원에 있으면서 초상(初喪)부터 졸곡(卒哭)까지 모든 일을 대부분 직접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비변사 당상으로 대죄하면서 탐전에 출입한 것이 관원 중에 가장 오래되었으므로 인대(引

30) 《숙종실록》 권9 6년 7월 19일(병오)

對) 설화에도 많이 참석하여 들었습니다. 다만 듣고 본 것에 대해 말하자면, 《현종실록》에 대단히 긴요하고 중대한 일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신이 알지 못하는 것도 추측하여 알 수 있습니다.

대저 실록의 찬술은 역사 기사(記史)의 법과 다르더라도 절로 규모와 체제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일정한 범례가 없고 혹 전말이 어지럽게 섞여 있거나, 혹 한 가지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 등 전혀 요령이 없어 단지 《승정원일기》만 증빙하고 대충 경술하게 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장(疏章)의 수록 또한 혹 그 대략이나 비답만 기록했을 뿐이어서 비답 중 그 상소에서 한 말을 거론하여 하교한 것은 그 곡절을 알 수 없습니다. 인견(引見) 설화의 경우, 혹 그 결말만 기록하거나 그 사건의 근원을 기록하지 않았고,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는 혹 단지 그 이름만 기록하고 그 관직과 성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책례(冊禮), 가례(嘉禮)는 나라의 중대한 전장(典章)인데, 의주(儀註)와 절목(節目)이 하나도 수록되지 않아서 뒷날 상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실록을 찬술한 뒤 인쇄하는 대로 그때그때 교정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이 실록은 오자가 상당히 많아서 급히 완성하느라 살펴 교정하지 못한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록을 다시 찬수하는 일은 사안이 본디 중대하지만, 이 실록은 후대에 믿고 살필 수 있게 전해줄 책이 될 수 없습니다.³¹⁾

김수항의 의견은, ① 일정한 범례나 사실 기재의 요령이 없다, ② 《승정원일기》만 증빙 자료로 써서 경술하게 만들었다, ③ 상소 등의 기록이 곡절을 알 수 없게 소략하다, ④ 인대, 입시 설화의 기록이 맥락이 없다, ⑤ 주요 전장을 상소하기 어렵다, ⑥ 찬술한 뒤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현종실록》 편찬 과정을 통해 시정기찬수범례 14개 조항을 기준으로 기사를 배치, 수록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김수항은 《현종실록》이 시정기찬수범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편찬 관행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수항과 함께 김석주는 김수항이 지적한 내용 외에 다른 정보도 전달해주고 있다.

(김석주) 관례(冠禮) 같은 일은 시장원(侍講院)에서 그 의주를 기록해두는 것이 상례입니다. 마땅히 가져다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헌력(時憲曆)과 대통력(大統曆)을 혼용하는 것 역시 후대에 살펴볼 사실입니다. 관상감 교수 송형구(宋亨久)가 그때 상소하여 역법(曆法)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례(史例)에 마땅히 갖추어 기록해야 하는데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비록 말을 주고받을 때 간혹 긴요하지 않은 설화도 모두 옮겨 기재해야 합니다. 주서(注書)도 본디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고 혹 문

31)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경신년 9월 27일

리(文理)를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대로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빨리 완성하는 데 급급해서 전적으로 《승정원일기》를 가져다 필삭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록의 모양을 갖추지 못했고, 보면 마치 조보(朝報) 같습니다.

김석주의 의견은, ① 관례는 시장원 의주를 빠트렸고, ② 시헌력, 대통력 같은 논의도 누락되었으며, ③ 《승정원일기》를 베끼면서 제대로 필삭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석주는 아예 《현종실록》을 조보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익) 사실이 소략하다는 점은 진실로 대신들이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게 알 수 있는 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朝臣)의 제배, 사망한 날짜가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도 역시 많게는 수 년씩 차이가 나서, 심지어 수년 전에 이미 당상 직함을 써놓고도 수년 뒤에 또 당하 직함을 썼습니다. 한 사람의 직명에 필시 앞에는 높았다가 뒤에는 낮아질 리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죽은 사람을 혹은 지난해라고 썼으니, 그 전도와 오류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승정원일기》만 가져다 썼다 해도 필시 이런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한 일은 비록 이를 몰랐다 해도 갑자기 닥쳐 고찰하지 못했던 소치에 불과하니, 후대에 전할 믿을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김수항, 김석주와 마찬가지로 이익 역시 《승정원일기》만 가져다 베끼고, 그것도 제대로 고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익은 관직 임명 시기와 직함의 오류, 몰년 기록의 오류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이민서(李敏鉉)도 사건의 시종이 불분명하여 본말을 알 수 없으며, 믿을 수 있는 기록[信史]이 될 수 없다고 《현종실록》을 비판하였다.

이렇게 실록 개수를 위한 여론이 모아지고 7월 29일에 실록청을 구성했다. 개수이기 때문에 시정기를 산정하는 일이 없으므로, 각 방(房) 당상과 낭청은 차출하지 않고 도청(都廳)만 두었다. 총재관은 대제학을 지낸 영의정 김수항이 맡았다. 이어 8월 4일에 당상과 낭청을 임명하여 실록 개수의 진용을 갖추었다.

실록개수청 도청 당상

검 병조판서	김석주(두 번 차자를 올려 교체되었다.)
공조 참판	이단하(李端夏)
이조 참판	이민서
행 홍문관 부제학	김만중(金萬重)

도청 낭청

전 정(正)	이현석(李玄錫)
홍문관 전한	최석정(崔錫鼎)
의정부 검상	윤경교(尹敬敎)

전 지평	홍만수(洪萬遂)
홍문관 부교리	오도일(吳道一)
홍문관 수찬	이사명(李師命)
이조 좌랑	조지경(趙持謙)
홍문관 부수찬	임 영(林泳)

이현석과 홍문수는 당시 직명이 없었으므로, 군직(軍職)에 부처 겸춘추로 임명했다. 이어 선조실록 수정 때의 전례에 따라 실록개수청 사목을 정하였다. 응행사목은 이미 관례가 있기 때문에 첫 조항의 “설국처는 형조, 공조에 설치하고, 실록개수청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빼고는 《현종실록》 때와 동일하다.

그러나 《현종실록》의 개수는 《현종실록》을 편찬할 때와 조건이 같을 수 없었다. 사무실, 인원 등의 준비가 끝난 10월 5일, 실록개수청에서는 “당초에 실록을 찬수한 뒤에 시정기(時政記)를 이미 세초(洗草)하였는데, 지금 개수할 때를 당하여 빙고할 근거가 없으니, 기해년에서부터 갑인년까지 사관(史官)이 사사로이 간수하고 있는 초본(草本)을 수납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건의하여 숙종이 따랐다.³²⁾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종실록》 편찬을 마치고 당연히 사초를 세초하여 조지서(造紙署)로 보냈을 것이니 사초가 남아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혹시 사관이 사장(私藏)하고 있는 사초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가져오게 했다. 동시에 《승정원일기》도 관례대로 이송해오게 했다. 아울러 실록 원본도 택일하여 실록개수청으로 실어오게 했다.³³⁾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10월 26일, 숙종의 왕비 인경왕후(仁敬王后)가 경덕궁(慶德宮)에서 승하한 것이다.³⁴⁾ 이로 인해 빈전도감(殯殿都監), 산릉도감(山陵都監), 국장도감(國葬都監)이 설치되고, 민정중은 총호사(摠護使)로, 남용익(南龍翼)·신정(申晟)·남이성(南二星)을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로, 민유중(閔維重)·여성제(呂聖齊)·조사석(趙師錫)을 국장도감 제좌(國葬都監提調)로, 박신규(朴信圭)·이익상(李翊相)을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로 삼고, 여성제에게 산릉도감을 겸하여 살피게 하였다.³⁵⁾ 이렇게 세 도감이 구성되면서 관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실록개수청은 일단 업무를 중단해야 했다. 그리고 가져왔던 《현종실록》 원본도 다시 봉안했다. 실록개수청 당상 공조 참판 이단하(李端夏)는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실록을 개수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반드시 성취해야 하므로, 헛되

32) 《숙종실록》 권10 6년 10월 5일(경인)

33) 일관(日官)이 택일하여 10월 15일에 실록 원본을 실록개수청으로 옮겼다.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례》 경신년 10월 14일, 15일

34) 《승정원일기》 숙종 6년 10월 26일(신해)

35) 《숙종실록》 권10 6년 10월 27일(임자)

이 시일을 끝면서 후일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설국(設局)을 하자마자 국상을 만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도로 걷어치웠으니, 신은 매우 애석하게 여깁니다. 실록을 한적하고 널찍한 공청(公廳)에 옮겨놓고 각사(各司)에서 유급(有給) 서리(書吏)와 사령(使令) 두세 명만을 옮겨 와서 머물러 있게 하고, 해조(該曹)에서는 고지기 한 명의 급료만 지급하고 위장소(衛將所)에서 군사를 파견하면, 충분히 수직(守直)할 것입니다. 당상관과 낭청(郎廳)이 윤번으로 출근해서 먼저 본사(本史)를 열람하여 그 오류와 누락된 것을 상고하고 자세한 곡절을 살펴서 문서를 수집했다가, 졸곡(卒哭) 후에 바로 분방(分房)하여 편수(編修)하면, 공력(功力)과 비용(費用)은 절약하면서 일은 쉽게 성취될 것이니, 참으로 편익한 방법입니다.³⁶⁾

이단하의 의견은 아무래도 졸곡은 지나야 실록개수청을 다시 열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한 말로 보인다. 아울러 이단하는 아버지인 이식(李植)이 선조실록을 개수할 적에 인조로부터 “일을 마친 뒤에 실록 중에서 후세에 본보기가 될 만한 대왕의 말씀을 따로 추려서 한 책을 만들어 들이라.”고 직접 하교를 받았으나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그 때 만들어 놓은 범례를 보고 《선조실록》을 옮겨 와서 그중에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정교(政敎)를 추려서 《국조보감(國朝寶鑑)》 같이 만들 것을 청하였다. 이 사안은 의정부에서 동의함으로써 시행하기로 했다.³⁷⁾ 그렇지만 11월 12일, 실록개수청 찬수범례는 이전의 규례대로 정하였다.

1681년(숙종7) 국장이 끝나고 3월 13일 다시 실록을 이안(移安)해왔다. 그런데 국장 기간에 업무를 정지하고 몇 달이 지나자 이전 관원에 변동이 생겼다. 병이나 본직의 인사이동 때문이었다. 먼저 당상관을 정비했다.³⁸⁾

총재관 영의정	김수항
이조 판서	김석주
홍문관 제학	이단하
대제학	이민서
예문관 제학	김만중

사무실은 한성부(漢城府)에 두고 도청, 등록 낭청 각 8명을 두었다. 5월 25일 실록개수청에서 등록낭청을 차하했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³⁹⁾

사헌부 지평	이언강(李彦綱)
병조 정랑	이 평(李宏)

36) 《숙종실록》 권10 6년 11월 11일(병인)

37) 국장이 끝난 뒤 이 참고서를 편찬할 관원으로 이이명(李頤命)을 겸춘추로 삼았다.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례》 신유년 1월 18일

38) 《숙종실록》 권11 7년 5월 22일(갑술)

39)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례》 신유년 9월 18일

병조 좌랑 윤덕준(尹德駿)
 전 현감 이선부(李善溥)
 의정부 사록 황 흠(黃欽)
 승문원 부정자 신계화(申啓華)
 권지 승문원 정자 최규서(崔奎瑞)
 권지 승문원 부정자 최석항(崔錫恒)

한편 숙종은 실록청에 전복(全鰓) 1첩(貼), 건치(乾雉) 5수(首), 문어(文魚) 2미(尾), 대구(大口魚) 5미, 편포(片脯) 2통(筒), 건수어(乾秀魚) 2미, 생치(生雉) 2수, 생선(生鮮) 3미, 생리(生梨) 30통, 홍소(紅燒) 5병(瓶) 등의 식품을 하사하여 격려했다.⁴⁰⁾ 그러나 실록개수청도 실록편찬 과정에서 늘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록 편찬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원을 동원해야 했다. 그런데 실록청이 임시 관청이었으므로, 자연히 편찬에 참여하는 관원들은 겸임 사관으로서 다른 관직을 본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관직이 없던 사람을 동원하려면 군직(軍職)을 주어 관원 신분을 띠고 편찬에 참여하게 하였다. 원래 본직이 있다 보면 겸직은 소홀하게 마련이었다. 아무리 실록편찬에 참여하는 것이 묘비에 반드시 적을 정도로 영예로운 일이라고 해도 본직의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들 편찬에 참여한 관원들은 편찬하던 중에 지방관이나 사신으로 나가거나, 병환 등을 이유로 교체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였다.

12월 9일, 약방(藥房)에 입시켰던 김수항이 “설국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번 낭청은 갖추어지지 않아 개수가 중지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던 것⁴¹⁾은 이런 배경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당상 4명이 2년씩 맡아 8년을 찬수했고, 지난 겨울에 찬수한 것과 합쳐 한 번에 인출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⁴²⁾ 당상들의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단하가 맡았던 기해년(1659 현종즉위), 경자년(1660 현종1) 찬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차례로 인출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때 이조 판서였던 이단하는 박태보(朴泰輔)의 탄핵을 당하고 여주(驪州)로 돌아가 있었다.⁴³⁾ 결국 김수항이 실록청 당상으로 이선(李選)을 차출하여 일을 나누어 맡도록 하기를 청하여 숙종이 따랐다.

이렇게 국상을 겪고, 당상과 낭청이 교체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종실록》의 개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7월 들어 인출할 때의 등록을 위해 낭청을 추가로 배치했다. 원래 인출할 때는 낭청 15명이 정원인데, 일단 8명만 차출하여 초본(草本)을 쓰는 일에 복무하게 했다. 인역(印役)이 시작되면서 실록개수청에서는 인원이 보강되어야 분판(粉板) 쓰는

40)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신유년 5월 25일

41)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신유년 12월 9일. 김수항이 이 차자를 올렸을 때도 총재관인 김수항 자신이 약방 입진에 참석했을 때였다.

42)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신유년 12월 9일

43) 《숙종실록》 권12 7년 12월 26일(을사)

일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원을 추가로 요청하였다.⁴⁴⁾ 같은 날 장악원 정 윤세기(尹世記) 등 8명이 별단으로 등록낭청에 임명되었다.

다소 곡절은 있었지만 1683년(숙종9) 1월 15일에 《현종개수실록》은 인출 작업을 마쳤고 담당 관원의 수 일부를 줄였다.⁴⁵⁾ 모두 28권을 인출했고, 다섯 곳의 사고에 분장하기 위해 총 1백 40권을 장황(粧潢)한 뒤에 공장(工匠)들도 감하였다. 개수를 마치고 《승정원일기》를 다시 승정원으로 반납하고, 초초, 중초 등은 세초할 때까지 춘추관에 보관하도록 했다. 1월 16일에는 실록개수청 의궤 사목을 정하였다.

3월 17일에 올린 실록개수청의 계에 따르면, 총재관은 내내 김수항이 맡았고, 당상은 이조 판서 이단하 등 연인원 6명이었고, 도청 낭청은 사헌부 집의 신완(申琬) 등 연인원 15명이었으며, 등록청 낭청은 장악원 정 윤세기 등 연인원 60명이었다. 총재관 김수항 등 이하의 관원에게 상(賞)을 차등 있게 주었다. 또 창의문(彰義門) 밖에서 세초할 때에 관례에 의거하여 사연(賜宴)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사연(賜宴)할 날에 일식(日食)의 괴변(怪變)이 있었으므로 시행하지 않았다.⁴⁶⁾

3.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비교

앞서 김수항, 김석주, 이익 등이 지적했던 《현종실록》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지만, 이런 지적은 실제로 기사별로 검토하지 않으면 쉽게 확인할 수가 없다. 현종 13년 3월, 4월, 8월, 9월, 11월, 12, 또는 현종 14년 8월처럼 눈에 띄게 원본에 없는 기사들이 개수본에 등장하는 시기도 있지만, 대부분 날짜별, 사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개수를 주도했던 김수항 등도 직접 《현종실록》을 보고 와서 제시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갖는 실제 의미도 직접 《현종실록》을 검토한 바탕에서 그 문제점이 《현종개수실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소략하게 두 실록을 비교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 ① 둘 다 나오는 기사
- ② 동시에 나오지만, 《현종실록》이 상세한 기사
- ③ 동시에 나오지만, 《현종개수실록》이 상세한 기사
- ④ 《현종실록》에만 나오는 기사
- ⑤ 《현종개수실록》에만 나오는 기사
- ⑥ 날짜가 변동된 기사
- ⑦ 인물이나 사건 평론이 다른 기사

44)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임술년 7월 10일

45)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계해년 1월 15일

46) 《숙종실록》 권14 9년 3월 11일(계축). 의궤에는 흰무지개가 해를 꿰었다고 했다.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계해년 1월 15일

① ~ ⑤의 경우는 그 차이가 금방 드러난다. ④ 《현종실록》에만 나오는 기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째, 《현종실록》이 먼저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개수실록에서 그대로 놔두었을 수 있다. 《현종실록》을 편찬하고 사초를 세초했기 때문에 개수할 때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첫째 가능성은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①처럼 둘 다 나오는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나온다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개수본이 아예 원본 기사의 존재를 없다고 치고 기사를 선별했음을 보여준다. 즉 ①에 내재한 원칙에서 보면 ④를 앞의 첫째 가능성, 즉 이미 세초한 자료를 원본을 통해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놔두었다고 보기가 곤란하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개수할 때 원본 기사의 사료 가치가 없어서 뺐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현종실록》의 총서이다.

○ 《현종실록》 총서

왕의 휘는 연(欄), 자는 경직(景直)으로 효종 현인 대왕의 맏아들이고 인조 명숙 대왕의 손자이며 어머니는 효숙 경렬 명헌 인선 왕후 장씨(張氏)인데, 【우의정 신평 부원군 장유(張維)의 딸임.】 명나라 숭정(崇禎) 14년(1) 2월 4일(기유) 축시에 심양(瀋陽)의 질관(質館)에서 왕이 탄생하였다. 갑신년(2) 에 비로소 본국으로 돌아왔고, 을유년에 소현 세자가 죽어 효종이 차적자로서 왕세자에 책봉되자 왕 역시 원손(元孫) 칭호가 올려졌으며, 기축년에 왕세손 책봉례를 거행하였다. 그해 여름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사위하자 왕도 왕세자 칭호가 올려졌고, 신묘년에 관례(冠禮)를 거행하고는 이어 왕세자 책봉례를 거행하였으며, 겨울에 세자 익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 김우명(金佑明)의 딸을 책봉하여 왕세자 빈을 【영의정 김육(金堉)의 손녀.】 삼았다. 기해년 5월에 이르러 효종이 승하하고 왕이 뒤를 이었다.

이 총서는 같은 실록의 맨 뒤에 부록되어 있는 현종 행장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소략하여 총서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없다. 개수본에서 이를 뺀 것은 바로 중복과 사료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은 ② 동시에 나오지만, 《현종실록》이 상세한 기사, ③ 동시에 나오지만, 《현종개수실록》이 상세한 기사에도 해당된다. 즉 중요도에 따라 침삭한 기사이다.

⑤ 《현종개수실록》에만 나오는 기사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건 분명 원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⑥ 날짜가 변동된 기사는 당연히 제 날짜로 가야 할 것이다. ⑦ 인물이나 사건 평론이 다른 기사는 개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① ~ ⑥은 기사(記事)의 문제이고, ⑦은 평론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두 실록의 검토방법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할 측면임과 동시에 유용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시정기찬수범례를 기준으로 한 검토와, 사건과 인물에 대한 사평을 기준으로 검토,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려는 본 장의 구성을 결정한다.

본장에서는 두 실록의 검토방법으로, 먼저 전통적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데 적용했던 시정기찬수범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정기찬수범례는 조선초기부터 실록 편찬의 기사 수록 기준이었고, 《현종실록》 개수론자들도 《현종실록》을 시정기찬수범례를 엄두에 두고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개수란 실록을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개수의 기준은 시정기찬수범례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엄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선명하게 관점이 엇갈린 사건이나 인물이 무엇이며 누구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정기찬수범례를 통해 범주별로 살펴보아도 가늠은 되겠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의 차이점은 따로 선명하게 드러내어, 《현종실록》-《현종개수실록》 편찬자들의 지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런 문제는 사실 관계보다 관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론(史論)과 관계있고, 사론의 경우는 14개 조항의 시정기찬수범례 범주로 정리할 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1) 찬수범례로 본 개수

① 사관의 시정기, 주서(注書)의 일기, 서울과 지방의 겸춘추(兼春秋)의 기록 외에, 비변사 장계축(狀啓軸), 의금부 추안(推案) 및 형조의 참고할 만한 중요하고 핵심적인[緊關] 문서, 사변(事變)과 추국(推鞠)에 대한 주서 일기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검토하여 갖추어 적는다.

개수론자들은 《현종실록》이 소략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승정원일기》를 급히 가져다 산절(刪切)하지도 않고 《현종실록》을 편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종실록》을 편찬할 때 《승정원일기》 외의 자료를 실록 편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종실록》을 편찬한 뒤 《승정원일기》는 반납하고 나머지 사초, 시정기는 세초했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 두 기사를 비교해보자.

①-1. 현종 즉위년 5월 6일 재궁 기사

[원본]

신이 삼가 살피건대, 재궁 제도는 국초부터 정해진 것으로 3백 년 동안 준용해 왔으나 폐단이 없었는데, 지금 척수가 부족하여 판자를 이어서 쓰고 있으니, 이게 어찌 무더운 여름 철에 베끈을 매지 않은 소치가 아니겠는가. 심지어 길이까지 부족하였으니, 이는 더욱 이치 밖의 일로서 소림을 잘못했다는 것을 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송시열이 예를 안다고 자처하면서 군부의 상에 일찍이 전고에 없었던 부판으로 된 재궁을 써가면서까지 자기 실정이 탄로날까봐 염을 다시 할 것을 청하지 않아, 마지막 보내는 대례에 막대한 이변이 있게 하였으니, 송시열의 죄야말로 이루 다 꾸짖을 수 있겠는가. 태화는 원상으로 있으면서 끈을 매지 않은 것을 보고서도 강력히 다투지 않았고, 척수가 부족함을 보고도 염을 다시 할 것을 청하지 않은 채 앞장서서 부판을 쓰자는 논의를 꺼내 시열의 뜻만을 순종하였으니, 그의 마음에는 선왕은 저버릴 수 있어도 시열은 거스를 수 없다고 여긴 것이 아니었겠는가. 비열

한 인간이 행여 지위를 잃을세라 걱정하는 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그의 죄를 논하기로 들면 시열보다 덜할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황각(黃閣)에다 30년씩이나 두고 그의 말대로만 따랐으니, 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개수]

신은 삼가 살피건대, 《승정원일기》에 소림 의대가 여섯 벌에 불과했다고 하였고 정선홍이 원상에게 대답한 말도 모두 실려 있다. 여섯 벌은 지나치게 두터운 것이 아니다. 교포를 묶지 말자는 의논은 처음 송시열에게서 나왔으나 성상의 분부와 신하들의 걱정하는 말로 인하여 한두 가닥만 남겨 예를 아끼는 뜻을 보일 것을 청하고 시열 역시 당초의 견해를 버리고 그것을 따랐다. 선홍의 대답에서도 교대를 너무 느슨하게 묶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소림을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니며 또 다른 걱정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옥체의 풍위가 보통에 비해 큰 데 대해 재궁은 비록 즉위초부터 비치하였으나 유래의 척도를 따랐을 뿐이었다. 상사를 당해 널을 다루는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길이와 넓이가 부족한 것을 알았다. 다른 재목을 찾아 얻지 못함으로써 부판을 쓰게 된 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 모함하는 자들은 교포를 묶지 않고 염습 고치기를 청하지 않은 것으로 송시열에게 죄를 돌렸다. 또 태화가 맨 처음 부판을 쓸 것을 발론한 것으로 시열의 뜻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어찌 인정에 가까운 소행이겠는가. 간사한 사람들의 남을 모함하는 심리가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시정기(時政記)는 지금 상고할 수 없으나, 마침 그 당시의 《승지일록(承旨日錄)》과 《정원일기》를 얻어 참고한 결과 소림 의대가 조금도 예에 어긋남이 없었다. 승지일록에는 선홍(善興)의 말을 기록하여 이르기를 “어깨가 닿는 곳에 입힌 옷이 여섯 벌에 불과하며 또 모두가 겹옷과 홑옷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교포를 처음에는 묶지 않았으나 이내 묶었다.”고 하였다.】

①-1 기사는 재궁의 교포를 묶지 않고 염습 고치기를 청하지 않았다는 원본 기록과, 원본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개수본을 비교한 것이다. 뒤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현종실록》은 송시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무척 많다. 이 기사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수본의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시정기는 이미 세초하여 찾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승정원일기》를 보면 당시 소림의 의대가 예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부분만 주목한다. 아마 김수항이 《승정원일기》조차도 제대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개수론을 펴던 근거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이어 아래 기사를 보자.

①-2. 현종 즉위년 9월 5일

[개수]

…… 시열이 드디어 물러나왔다. 【시열이 물러나와 그날 독대(獨對)한 대화를 직접 기록해 비장해 두었다. 그 후 사관 이광직(李光稷)이 은밀히 편지로 기록의 유무를 물으며 사실을 책서(策書)에 덧붙이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시열이 종일토록 깊이 생각했으나 그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말하기를 “당시 하늘이 성상에게 수명을 빌려 주었더

라면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니, 그렇다면 기록은 없어도 된다. 이제는 이미 다 틀렸다. 만약 그날의 말 역시 끝내 없어져 버린다면 나의 죄가 어떠하겠는가. 당일의 자상한 경계를 저버리는 이 죄는 도리어 적은 것이다.” 하였다. 드디어 손으로 스스로 봉함하여 사람을 시켜 보내려는데, 그날에 광직의 부음(訃音)이 갑자기 이르러 보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 뒤 사관 이세장(李世長)과 이선(李選) 등이 또 광직의 뜻처럼 청하니 시열이 비로소 그 청에 부응하고, 또 그 기록의 끝에 쓰기를 “아, 우리 성고(聖考)의 큰 규모와 큰 뜻을 전석(前席)에서 잠깐 동안 보이셨는데,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저 푸른 하늘은 어찌 그리 무심한가. 오직 이 외로운 신하는 근심에 잠겨 피눈물을 흘리지만 아직 아무 보답도 못하였다. 매양 덕음(德音)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오늘 아침에 다시 옛 봉함을 뜯어 보니 마치 탑 전에 올라가 친히 옥음(玉音)을 듣는 듯하다. 드디어 다시 눈물을 머금고 그 봉투의 겉에다 써서 두 한림에게 알린다. 아, 태사공(太史公)이 말하기를 ‘주상이 밝고 성스러운데도 그 덕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유사(유사의 허물이다.’ 하였으니, 아, 이 사실을 만세 후까지 펴서 알려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였다. 이선(李選)이 이것을 신축년 5월 시열이 입대하고 물러간 뒤에다 추가해서 수록하였는데, 전의 《실록(實錄)》에서 모두 삭제해 버렸다. 또 지문(誌文)을 지어 바친 아래에다 쓰기를 “효종(孝宗)이 즉위한 처음에 때를 기다려 크게 치욕을 씻고자 하는 뜻을 두었는데, 시열이 상의 뜻을 알아차리고 은밀히 봉사(封事)를 올려 찬양하였다. 효종이 마침내 시열에게 큰일을 맡길 만하다고 생각하여 의지하면서 심복으로 삼았는데, 시열은 실로 못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시열이 상의 명에 의하여 효종의 지문을 지었는데, 구애에 위축되었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에만 힘을 써서 곧바로 쓰지 못함이 많았다.” 하고, 이어 허적(許積)의 차자 내용을 기록하였다. 아, 시열의 경륜과 큰 지략은 독대(獨對)할 때의 대화에서 알 수 있고, 지문을 지어 바쳤을 적에 사관이 전달한 유지에 대한 회계 내용을 읽어 보면 당당한 기세를 느낄 수 있으며, 또 허적의 사적인 말을 인용하면서 “대처할 방법만 있다면 미처 쓰지 못한 것을 다시 쓰고자 한다.”고 한 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에 임해 잘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인(黨人)들이 또 이 말을 삭제하고는 단지 허적의 차자만 기록해, 마치 시열은 두려워했고 허적만 혼자 말한 것처럼 하였다. 그들의 마음씀의 간사하고 편벽됨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것으로써 후세를 믿게 하고자 한들 어찌 되겠는가.】

이 기사는 호조 판서 허적의 차자에 이어 나오는 사론이다. 원본에는 이 기사와 관련된 허적의 차자가 18일(병자)에 기재되어 있다. 원본에서는 “당초 효종이 막 즉위했을 때부터, 시기를 기다려 치욕을 씻으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송시열이 알아차리고 비밀리에 봉사(封事)를 올려 그 뜻을 찬양하였으므로, 효종이 드디어 시열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여 심려(心膂)로 삼았었다. 그러나 시열은 사실 비루하고 용렬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위인이었다.”라고 비난한 뒤, 허적의 차자를 실었다.⁴⁷⁾ 개수본에 밑줄로

47) 송시열이 지은 묘지문에 대해, 영중추부사 이경석이 말하기를, “비풍(匪風)·하천(下泉) 두 시의 주된 뜻은 오늘날의 상황 하에서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삭제하자고 하니, 현종이 사관을 시켜 송시열에게

표시한 부분이 그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송시열이 효종과의 독대(獨對)를 기록한 〈악대설화〉를 실록에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시열의 효종과 송시열의 독대 사실을 알고 사관 이광직(李光稷)이 그 기록을 요청하자 망설이다 사관(史官) 이선(李選)에게 주었다. 이선은 이를 신축년(1661, 현종2) 5월에 송시열이 입대하고 물러간 뒤에다 추가해서 수록하였는데, 이전 《실록(實錄)》, 곧 《현종실록》에서 모두 삭제해 버렸다는 것이다. 누가 했던 기록인가를 떠나서, 이런 중요성을 지닌 기록을 실록 편찬할 때 누락시킨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시정기찬수범례에 어긋난다.

①-3. 2년 7월 8일(을묘)

○ 효종 대왕을 종묘 제10실에 부모하고, 김상헌과 김집을 배향하다

개수본에는 김상헌과 김집에 내린 교서가 전제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종실록》이 서인들의 활동이나 치적을 드러내는 기록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①-3 기사도 그런 혐의를 갖게 하는 기록의 하나이다.

한편, 원본에는 들어 있으나 개수본에 뺀 기사도 있다. 윤희가 허목에게 보낸 서신(1년 5월 2일(병진))은 개수본에서 삭제했는데, 이는 개인 편지를 실록에 수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송도(松都) 유생 양우석(梁禹錫)이 자기 형 양몽석(梁夢錫)이 유수부에 수금되자 정을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했던 일(1년 8월 19일(임인))은 문묘(文廟) 대문에 발생한 화재 사건 및 서원의 위판(位版)을 훔쳐 훼손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개수에서 제외했다. 사안의 성격으로 미루어 삭제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 병조 좌랑 정재승이 군관 자격으로 북경에 따라가게 해 줄 것을 청한 기사를 개수본에서 뺐는데(3년 6월 2일(계묘)) 이런 류의 기사가 실록에 실리는 적은 없으므로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 개수본에서 홍문록 권점 기사도 뺐다. 원본에는 “홍문관의 신록(新錄)에 대한 권점(圈點)이 있었다. 칠점(七點)을 받은 사람은 이익상(李翊相)·민시중(閔蓍重) 2인이고, 육점을 받은 사람은 이명익(李溟翼)·이동명(李東溟)·김징(金澄)·이관징(李觀徵)·정중휘(鄭重徽)·정재승(鄭載嵩)·이혜(李喆)·조성보(趙聖輔)·이규진(李奎鎭)·홍만형(洪萬衡)·신명규(申命圭)·이규령(李奎齡)·김만중(金萬重) 등 13인이었다.”라고 했지만, 이 역시 실록 수록 대상 기사가 아니므로 뺐다.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송시열이 삭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허적은 송시열의 묘지문이 통쾌한 맛이 부족하다며 수정을 청하였는데, 대신들의 논의 결과 그대로 두기로 했다. 《현종실록》 권1 즉위년 9월 5일(계해). 비풍, 하천은 《시경(詩經)》의 편명이다. 변풍(變風)은 치세(治世)에 지어졌다는 정풍(正風)의 상대어인데, 왕도 정치가 쇠퇴한 뒤 지어진 시라는 뜻이다. 두 편 모두 치세를 그리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변풍의 끝에 배열한 이유는 천도가 순환하는 것이어서 변란이 극에 도달하면 바로잡힌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송시열 역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변란의 극치로 보고 이런 상황은 곧 바로잡힐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①-4. 1년 6월 30일(계축)

[개수]

포도청이 아뢰기를,

“변응립(邊應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일상(李一相)의 서간(書簡)을 위조하여 전라 우수영(全羅右水營)에서 선척(船隻)을 사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기에, 일이 놀라운 데에 관 계되기 때문에 은밀히 체포하게 하고 먼저 그의 처자(妻子)에게 물으니, 양영남(梁穎南)이란 사람이 위조하여 써주었다고 했습니다. 영남이 이미 사실임을 실토했으니, 중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엄형을 가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그뒤 형조가 양영남은 도배(徒配)하고 하효달(河孝達)은 분간(分 揀)할 것으로 계품하니, 상이 특명을 내려 영남은 연한(年限) 없이 먼 변방에 충군(充軍)시 키고, 효달은 원도(遠道)에 도배(徒配)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해조 당상의 계사(啓辭)가 흐 릇하였다는 이유로 아울러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용산(龍山)의 뱃사람인 변응립이 우수영(右水營)의 오래된 퇴선(退船)을 사기 위해 청탁하는 서간을 얻어 수사(水使) 이동현(李東顯)에게 보냈었는데, 동현이 즉시 답을 써서 보냈다. 그리하여 하리(下吏)가 이일상(李一相)의 집에 서간을 전하니 일상이 이를 뜯어 보 고서 자신에게 온 서간이 아니라고 받지 않았다. 이때는 일상이 이조 참판에서 막 체차되고 응시(應蓍)로 교체되었을 때였다. 그들이 이조의 이참판(李參判)으로 통칭됐기 때문에 그 하 리가 또 응시의 집으로 가서 전하였는데 응시도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말이 떠들 썩하여 ‘동현이 쌀을 실은 배를 일상에게 주었는데 그 글이 잘못 응시의 집으로 전하여지자 일상이 누설된 것을 혐의하여 남에게 미루면서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최후에 대론(臺論)이 처음 발론되어 동현을 잡아다 추문하라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그 뒤에 실록청에서 아뢰기를 ‘사사(史事)가 바야흐로 급한데 동현을 잡아다가 추문하게 되 면 사건을 끝마무리짓기 전에는 일상은 사세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또 돌아다니는 말 은 믿을 수 없으니 쌀 실은 배가 정박(定泊)해 있는 곳을 적간(摘奸)하여 허실을 증험해야 한다.’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공조랑(工曹郞)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말하 기를 ‘강 가 10리(里)의 지역에는 남녘에서 온 배가 원래 없었다.’ 했으며, 또 강간인(江干 人)은 ‘봄·여름 이래 이러한 배는 있지 않았다.’ 하였다. 이에 대계(臺啓)가 사실이 아니라 하여 동현을 잡아오라는 명을 도로 중지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일상과 응시가 동현에게 절간(折簡)을 보내어 그에 대한 곡절을 묻고 또 전일 에 청탁한 서찰을 찾아가지고 와서 비국의 회좌(會坐) 때 보였다. 그것을 보니 짙막한 서간 으로 줄필(拙筆)이었고 말이 서로 이어지지 않아 위조서(僞造書)임이 분명하였다. 그 위조서 의 출처를 추핵(推覈)하니, 응립이 맹인(盲人) 하효달에게서 얻고 효달은 사노(私奴) 묵석(墨 石)에게서 얻고 묵석은 일상의 집과 친한 초관(哨官) 양영남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효달이 처음에는 직초(直招)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인 박세문(朴世文)에게서 얻었다고 핑계대었으

나 효달 아내의 고발을 인하여 영남을 체포하여 취복(取服)하자 효달이 비로소 실토하기를 ‘과연 영남에게 사주당하여 죽은 사람을 끌어다가 지명하였다.’고 하였다. 목석은 이것을 효달에게 전해 주었을 뿐 당초 영남에게 청탁한 일이 없었다.

응립을 체포할 즈음에 그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가 도피한 곳을 몰랐다. 효달이 일상(一相)의 뜻으로 지송(指送)하여 그의 집 전사(田舍)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포도청에서 추문(推問)할 때 나왔으며, 또 쌀을 실은 배에 대한 비방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졌는데도 일상은 한번도 소장을 올려 스스로 논열(論列)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형조에서 영남 등을 조율(照律)한 것이 또 가벼웠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말하기를 ‘판서 홍중보(洪重普)는 일상의 친구여서 이렇게 가볍게 조치하였으니, 더욱 일상이 의심스럽다.’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영남의 일은 한때의 의옥(疑獄)으로서 사람들의 말이 자자했으므로 비록 일상을 편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속으로 의혹을 품어 명백하게 가리켜 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상이 처음 영남에 대한 의율(擬律)이 너무 가벼운 것을 통렬하게 변백하지 않았으므로 더욱 큰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상이 서간을 가지고 비국에 갔을 때 응시가 이미 그것이 먼저 일상의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뒤 임인년(105) 2월에 허적(許積)이 상의 앞에 또한 그 서간이 일상에게 먼저 도착했다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하지만 일상에게 과연 배를 사기 위해 서간을 통한 일이 있었다면 먼저 그 서간을 보고서 응시의 집으로 추송(推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점이 당초 동헌과 상응하여 청탁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대체로 오래된 퇴선(退船)을 사기 위해 청탁하는 것이 본디 조금이나마 근신할 줄 아는 사대부로서는 할 짓이 아닌 것이다. 배에다 쌀을 가득 실어 선물로 보냈다는 데 이르러서는 너무도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었다. 그런데 일상은 평소 청렴하다는 이름이 부족했고 오랫동안 요로(要路)에 거처하고 있었으므로, 일 만들기를 좋아하여 비방을 조작하는 자들이 그 사이에서 떠들썩하게 가리켜 문제삼음으로써 끝내 탐오스럽다는 비방을 받게 되었으니, 이 점은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①-4 기사는 포도청에서 올린 계사이다. 원본에는 포도청의 계사, 정확히 말하면 포도청에서 형조에 올린 계사나 나오지 않고, 곧바로 형조의 처분만 기록되어 있다. 위의 밑줄 친 부분이 원본에 수록된 내용이다. 또한 원본에는 이 기사가 7월 9일에 수록되어 있다. 개수본은 포도청의 계와, 형조의 조치, 그리고 사건의 배경을 함께 6월 30일에 수록함으로써, 찬수범례에 따라 빠진 기록을 보충하는 효과와 강(綱)-목(目) 구조를 통한 사건 파악의 용이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② 모든 조칙(詔勅) 및 우리나라[本朝]의 유관 교서(敎書)는 찾아내어 기록한다.

중국의 조칙과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누락된 기사가 없다. 다만, 원래 중국 사신이 정해지

면 그 기사를 적게 마련인데, 원본에는 없는 기록을 개수본에서 “이후원(李厚源)을 고부사(告訃使) 겸 청시승습사(請謚承襲使)로, 유심(柳愔)을 부사로, 정익(鄭楫)을 서장관으로, 정태화를 내의 도제조로, 정유성(鄭維城)을 제조로 삼았다. 【대신이 약방 제조가 논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먼저 체직을 청하였다. 공제(公除) 전에 대개 차제(差除)가 있을 경우, 상이 낙점하지 않고 3망(三望) 중에 나아가 모망(某望)을 차임하라고만 명하였다.】”라고 기록한 정도만 눈에 띈다.(즉위년 5월 10일) 청나라 황제의 부음이 의주에 도착한 기사는 날짜가 오류였는지 개수본에서 하루 늦추어 실었다.(2년 1월 24일(갑술), 2년 1월 25일(을해))

③ 이름 있는 신하는 졸기(卒記)를 작성하는데, 빠진 대목이나 소략한 데가 있으면 일시의 공론이나 혹은 문집의 비문과 지문(誌文)을 참고하여 상세히 보충하여 기록한다.

졸기는 통상 2품관 이상을 지낸 사람이 죽었을 때 기록하는 일종의 전기(傳記)이자 사론이다. 2품관 이상을 역임하지 않았어도 중요한 인물일 경우는 졸기를 남긴다. 아마 졸기는 기전체(紀傳體) 역사서의 열전(列傳)이 편년체인 실록에 반영된 흔적일 텐데, 통상 실록에는 기전체의 열전처럼 길게 기록되지 않는다. 조선초기에는 권근(權近)의 졸기처럼 매우 긴 졸기가 여럿 있지만, 이후 실록 편찬의 관례가 쌓이면서 차츰 간단한 약력과 사평을 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개수본에는 신하의 졸기 중 빠진 부분을 보충한 기사가 여럿 보인다. 그 중 몇몇 졸기를 예로 들어 보겠다. 아래 기사는 원본에 없다.

③-1. 전 참판 신익전의 졸기(원년 2월 30일(을묘))

전 참판 신익전(申翊全)이 죽었다. 익전은 문정공(文貞公) 신흠(申欽)의 아들이다. 집안 대대로 유아(儒雅)했는데 익전 역시 문사(文辭)에 뛰어났다. 사람됨이 순박하고 겸허하였으며, 명가(名家)의 자제로 화현직(華顯職)을 역임하였는데, 권요(權要)의 직책에 당하게 되면 사양하며 피하고 처하지 않았다. 형의 아들 신면(申冕)이 권력을 좋아하여 패거리를 끌어 모으자 마음속으로 매우 싫어하며 늘 이 점을 자제들에게 경계시켰다. 신면이 이미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딸이 송선군(崇善君) 이정(李潁)에게 시집갔어도 화복(禍福)의 갈림길에서 전혀 오염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들 인정하였다. 만년에 더욱 염정(恬靜)한 생활로 일관하며 세상일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간직하다가 죽었다.

③-2. 판중추부사 오준의 졸기(7년 9월 17일(갑오))

판중추부사 오준(吳竣)이 죽었다. 오준이 글씨를 잘 써서 조정의 길사나 흥사의 책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질이 유하여, 그의 조카 오정일 무리가 한 짓을 늘 미워하였고 사나운 처에게 미혹되어 형제 간에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였으며, 관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③-3. 전 판서 윤순지의 졸기(7년 9월 29일(병오))

전 판서 윤순지(尹順之)가 죽었다. 윤순지는 감사 윤환(尹暄)의 아들이다. 시를 짓는 재주가 있어 문형(文衡)을 맡아 육경의 자리에 올랐으나, 성품이 나약하고 지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단점으로 여겼다.

③-4. 전 의정부 좌참찬 겸 성균관 제주 세자찬선 송준길의 졸기(13년 12월 5일(병오))

전 의정부 좌참찬 겸 성균관 제주 세자찬선 송준길(宋浚吉)이 집에서 졸하였다. 상이 즉시 정원에 하교하기를,

“참찬 송준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 놀랍고 슬퍼 마음을 가눌 수 없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관곽(棺槨)·조묘군(造墓軍) 및 미진한 상수(喪需)들을 모두 즉시 제급(題給)토록 하라.”

하였고, 후에 또 하교하여 【계축년 2월 8일.】 추모하고 슬퍼하는 뜻을 보이고 특별히 영의정에 증직하였다.

준길은 자(字)가 명보(明甫)이고 은진(恩津)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인 군수(郡守) 송이창(宋爾昌)은 젊어서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어머니 김씨(金氏)는 곧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종매(從妹)이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이이의 풍도를 듣고 학문에 뜻을 두고서 약관(弱冠)에 장생을 좇아 학문을 닦으니, 장생이 매우 중히 여기고서 일찍이

“이 애가 장차 예가(禮家)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였으며, 또 부옹(婦翁 장인) 정경세(鄭經世)에게 공부하면서 의심나는 곳을 질문하니 경세도 기대를 매우 중하게 가졌다.

사마 양시(司馬兩試)에 합격까지 하였다가 과거 공부를 단념하고서, 더욱 강학(講學)에 전심하니 좋은 평판이 크게 드날렸고, 인조조(仁祖朝) 때 처음 세마(洗馬)에 제수하고 병자년에 특명으로 예산 현감(禮山縣監)에 제수하였으며, 계미년에 또 지평에 발탁 제수하였으나, 모두 취직하지 않았다.

소현 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소를 올려 한시바빠 원손(元孫)을 책봉하여 인망(人望)을 붙들어 매도록 청하였는데, 소를 들었으나 아무런 비답이 없었고, 효묘(孝廟) 초년에 맨 먼저 소지(召旨)를 받고 비로소 조정에 나아가 자주 예우를 입었으며, 누차 천거를 받아 집의에 이르렀다. 이어 역적 김자점(金自點) 및 그의 패거리를 논핵하여 미움과 원망을 몹시 받았는데, 몰래 북쪽 오랑캐를 사주하여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게 되어가던 차에, 효묘의 홀륭하신 결단에 힘입어 일이 풀릴 수 있었다. 급기야 자점이 역모죄로 주벌되고 그의 패거리들도 사형되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자, 상의 예우가 다시 융숭해지고 은소(恩召)가 계속 잇따랐으며 교자(轎子)를 타고서 나아오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였다.

정유년에 비로소 이조 참의 겸 찬선으로 서울에 들어와 양연(兩筵) 【경연 서연.】 을 시강(侍講)하니 특명으로 이조 참판에 제수하였고, 그 이듬해에 다시 입조(入朝)하여 도헌(都憲)

으로서 채주를 겸임하였으며, 기해년에 또 병조 판서에 발탁·제수하였다. 이때 송시열도 소명에 나아와 총재(冢宰)를 맡고 있었으므로 사림이 기대에 부풀고 중외가 희망을 가졌으나, 곧이어 효묘가 승하하였다. 시열과 더불어 함께 고명(顧命)을 받았고 또 시열을 대신해 천조(天曹)의 판서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체직되었다.

경자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그 후로 혹은 상의 하교가 빈번하고 간절함으로 인하거나 혹은 나라에 큰 일이 있는 까닭에 애써 조정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모두 오래지 않아 금세 돌아왔다. 을사년에 온양의 어가 수행을 따라 나섰다가 그 길로 원자 보양관에 체배되어 서너달 머무르다가 돌아왔다.

경자년의 예송(禮訟)이 화의 뒀으로 변하면서부터 군소배들이 기어코 틈을 타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여 윤선도(尹善道) 같은 무리들이 전후로 잇따라 나왔으나, 상의 은혜와 예우는 끝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허적을 논척하자 비로소 변하기 시작했고 이때 졸하니 향년 67세이다. 유소(遺疏)를 남겨 권계(勸誡)하였고,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서로 거느리고 거애(擧哀)를 하였으며, 관서(官署)이건 초야(草野)이건 서로 조문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여기저기서 장례식에 모인 자들이 거의 1천 인이었다.

준길은 타고난 자질이 온후·순수하고 예법과 태도가 탁트여 그를 바라보면 빙옥(氷玉)과 같았고, 그가 학문에 힘을 얻은 곳은 무엇보다도 《심경》·《근사록》 등의 서적에 있었는데, 염·낙(濂洛)의 연원(淵源)을 따라 연구했다. 본조의 선현(先賢)에 있어서는 이 문순공 황(李文純公滉)을 평생 사법(師法)으로 삼았다.

아버이에게 효도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일에는 각기 그 도리를 다하여 모두 모범이 될 만하였고, 두 조정에서 받은 예우는 멀리 천고에 뛰어 났으며, 성의와 지혜를 다해 들어가는 도덕(道德)을 논하고 나와서는 임금의 계획을 도우면서 미상불 옛날 선철왕(先哲王)이 되기를 임금에게 요구하였다.

그가 진퇴를 할 경우에는 또 반드시 시세를 생각하고 의리를 헤아린 다음에야 행동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누차 조정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끝까지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는 것이며, 그의 언론은 차분하면서도 명확하여 모난 데가 없었다. 일을 대해서는 올바르게 적절하게 처리할 뿐 이해를 돌아보지 않았고, 특히 사정(邪正)의 변별에 엄절하여 끝내는 사후에 관작이 추탈(追奪)되었다.

송시열과는 동종(同宗)인데다 또 중표 형제(中表兄弟)가 되고 함께 김장생·김집(金集) 부자를 사사(師事)하여 덕망(德望)이 서로 엇비슷하였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양송(兩宋)’이라 칭하였고 학자들은 그를 존경하여 ‘동춘당 선생(同春堂先生)’이라고 하였다.

금상(今上) 경신년에 장곡강(張曲江) 고사(故事)를 적용하여 관원을 보내 그의 묘소에 제사하고 ‘문정(文正)’의 시호를 추증하라고 명하였다. 【송준길이 기축년 초에 임금을 모시고 강학할 때, 글 뜻을 분명하게 아뢰고 예의에 익숙하니, 함께 입시한 여러 신하들이 너나없이 다들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였다. 조경(趙綱) 역시 그 자리를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복공(愚伏公)이 전에 ‘내가 송 아무개라는 사위를 두었는데 그 사람이 매우 어질다. 반드시 장차 크게 성취할 것이다.’고 하더니만, 지금 보고 나니 우복공은 사람을 알아본다고 말

할 만하다.”고 하였다. 우복은 곧 정경세의 호이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준길의 친우 이 유태(李惟泰)가 소를 올려 조경을 몹시 심하게 논척하였는바, 그 상소에 “경서(經書)의 가르침을 건강부회하여 간사한 말을 얼버무리고 꾸며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병술년 강옥(姜獄)때 소를 올려 영합(迎合)한 일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에 조경은 준길 등의 뜻도 유태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의심을 하였는데, 준길이 정유년에 조정에 나아갔을 때 조경과 담을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끝까지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정두경(鄭斗卿)이 조경과 문자(文字)로써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준길을 방문하여 그의 어질다는 것을 극구 말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하려 하였으나, 준길은 웃기만 할 뿐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유태가 소를 올려 조경을 논척하고서부터 상은 유태가 강옥(姜獄)을 두둔하고 나서 는 것을 꺼리어 오랫동안 수용(收用)하지 않았는데, 송시열이 그의 어짐을 극력 천거하면서 “이유태의 상소 내의 여덟 자는 강씨를 위해서도 아니고 또한 그 혼자만의 견해도 아닙니다. 신 등의 의견도 모두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비로소 불러들였고, 조경은 이로 말미암아 준길 등에게 원망을 품더니, 후에 마침내 윤선도의 뒤를 이어 글을 올려 공박하였다.】

③-5. 전 참판 이민적의 졸기(14년 11월 22일(정해))

전 참판 이민적(李敏迪)이 죽었다. 민적이 상소하여 이상(李翔)을 구하려 한 일에 걸려 특명으로 외직에 보임되었는데, 부임하는 것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또 죄를 받아 해가 지나도록 폐고(廢固)되었다가 죽은 것이다. 상이 그의 부음을 듣고 경연에서 애석해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일찍이 그를 끝내 버리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적은 상신(相臣) 이경여(李敬輿)의 아들로써 병신년 과거에 장원으로 발탁되었는데 효종(孝宗)이 그의 대책문(對策文)을 보고는 훌륭하다고 칭찬했었다. 장주(章奏)를 짓는 솜씨가 뛰어났으며 삼사에 있으면서 논열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사리가 밝고 표현이 간절하여 전배(前輩)의 풍도가 있었다. 진솔하게 행동하면서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정직 성실하고 온화하였으며 비속한 태도는 조금도 볼 수 없었다. 평소 자신의 생활을 담박하게 하였으며 거처와 의복이나 음식 때문에 마음에 누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의 동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모두 자신들이 미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죽을 때의 나이가 겨우 49세였다.

③-1부터 ③-5의 졸기는 신익전, 오준, 윤순지, 송준길, 이민적의 졸기인데, 《현종실록》 원본에 누락된 졸기이다. 오준은 남인이기 때문에 고의 누락보다는 편찬의 실수로 생각되고, 나머지는 주요 인물들이기 때문에 수록했어야 옳았다. 특히 송준길의 졸기가 누락된 것은 당색 여부를 떠나 의외의 편찬 오류라고 할 것이다.

이조 판서를 지낸 윤강의 졸기처럼 “전 판서 윤강(尹絳)이 졸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윤강은 사람됨이 순수하고 근실하였으며, 오랫동안 청요직(淸要職)에 있었다. 비록 칭할 만한 점은 없었으나 늘그막에 시골로 물러가 있으면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물러나 조용히 지내는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8년 8월 6일(무인))라는 원본의 기

록을 개수본에서 그대로 전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편 같은 사람의 줄기라도 내용과 사론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당색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③-6. 홍문관 전한 이수인의 줄기(2년 5월 29일(정축). 원본 28일)

[원본]

사신은 논한다. 수인은 고(故) 판서 이후백(李後白)의 증손이다. 대대로 강진(康津)에서 살면서 젊은 나이에 등제(登第)하였으나 사람됨이 또한 본래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점은 없었다. 신면(申冕)이 그의 처당(妻黨)이었는데, 신면이 송준길로부터 공척(攻斥)을 받을 때에 수인이 마침 대간으로 있으면서 그를 변호하며 인피한 말에 어긋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시골에 물리가 살며 끝내 소명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사론(士論)이 훌륭하게 여겨 번번이 삼사에 두기도 하고 사인과 전한에 이르게까지 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죽은 것이다.

[개수본]

홍문관 전한 이수인(李壽仁)이 집에서 졸하였다.

이수인의 자(字)는 유안(幼安)이니 고 판서 이후백(李後白)의 증손이다. 사람됨이 담담하고 조용하여 벼슬길에 나서려는 뜻이 없었다. 기축년에 지평으로 임명되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 강진(康津)의 옛 집으로 돌아가 수·죽(水竹) 사이에다 움막을 짓고 서사(書史)를 벗삼아 지냈다. 삼사(三司)에서부터 사인·전한에까지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③-7. 판중추부사 민형남의 줄기(즉위년 7월 16일(을해))

[원본]

판중추부사 민형남(閔馨男)이 죽었다. 형남이 화려한 벼슬을 두루 거치고 광해(光海) 시절에는 품계가 보국(輔國)에까지 이르렀다가 반정 초기에 훈봉을 삭탈당하고 자급이 가선(嘉善)으로 강등되었는데, 그후 다시 승급하여 정1품에 이르고 인조 말년에는 동진(東鎭)까지 잡았었으나, 그 직에 오래 있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고 거래불이에게는 정의가 돈독하였으므로 칭찬하는 사람도 많았다.

[개수본]

판중추부사 민형남(閔馨男)이 졸하였다. 형남의 처음 이름은 덕남(德男)인데 늦게 과거에 합격하여 박승종(朴承宗), 유희분(柳希奮)의 당파로 혼조(昏朝)의 위훈(僞勳)에 참여해 벼슬이 부원군에 이르렀다. 반정(反正) 후에 훈봉(勳封)을 삭탈당하고 가선(嘉善)으로 자급이 강등되어 덕원 부사(德原府使)가 되었다가, 후에 다시 보국(輔國)으로 올랐다. 인조 말년에 사류의 배척을 받았으나 김자점(金自點)이 정권을 잡자 형남을 천거하여 동진(東鎭)을 제수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겼는데 얼마 되지 않아 대론(臺論)으로 체직당했다. 나이 96세에 졸했다. 비록 그 사람됨은 볼 만한 점이 없었으나 조심스럽고 온후해 마침내 많은 수명을 누렸으니, 이것이 그의 장점이다.

③-8. 동지 남노성의 졸기(8년 10월 16일(정해))

[원본]

동지(同知) 남노성(南老星)이 졸하였다. 남노성은 어려서부터 재명(才名)이 있었으며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하였는데, 만년에 송시열의 무리에게 거슬림을 받아 다시는 청요직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개수본]

동지(同知) 남노성(南老星)이 졸하였다.

남노성은 고 상신 김상용(金尙容)의 외손이다. 어려서 재명(才名)이 있었으며 급제함에 미처서는 화현직(華顯職)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사람됨이 경솔하고 희학을 좋아하였으며 주견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론이 몹시 가볍게 여겨 끝내 청로(淸路)에는 나가지 못한 채 졸하였다.

③-9. 전 부제학 이단상의 졸기(10년 9월 19일(기유))

[원본]

전 부제학 이단상(李端相)이 죽었다. 이단상은 판서李明漢(李明漢)의 아들이다. 젊어서 과거에 올라 좋은 벼슬들을 두루 역임했으며 깨끗하다는 명성이 있어 동료들로부터 추앙받았다.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양주(楊州)에 물러나 살면서 여러 차례 불러도 벼슬을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으니, 사람들이 명리에 담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운명을 말하는 자가 이단상을 두고 말하기를 ‘만일 당상관에 오르게 되면 수명이 반드시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벼슬하기를 즐기지 않아서이다. 송준길이 경연에서 아뢰어, 부제학에 승진 임명되었는데, 이단상이 은명(恩命)을 사은하고자 왔다가 서울에서 병을 치료하던 중 며칠 만에 죽었다. 이단상은 본시 송시열과 송준길에게 빌붙었다. 송준길이 일찍이 상 앞에서 호남 선비 정개청(鄭介淸)의 서원을 철거할 것을 청했는데 이단상도 상소하여 정개청을 헐뜯었다. 윤선도(尹善道)가 소장을 올려 개청을 신구(伸救)하고 이단상을 배척하면서 그의 아버지李明漢이 이이첨(李爾瞻) 부자에게 아첨하여 ‘문성이 지금 덕성과 함께 있다.[文星今與德星俱]’라는 시를 지었음을 거론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단상이 또 일찍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송시열의 예에 대한 논의는 정정 당당하여 백세(百世) 이후에 성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혹될 게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임금을 속인 그의 죄가 여기에서 극에 이르렀다. 이것이 어찌 이른바 소인의 거리낌없는 짓이 아니겠는가.

[개수본]

전 부제학 이단상(李端相)이 졸하였다.

단상은 이조 판서李明漢(李明漢)의 아들이고, 좌의정 정귀(廷龜)의 손자이다. 집안이 대대로 문장과 복록(福祿)으로써 온 세상에 성대하게 일컬어졌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재

주 있다는 칭찬이 점점 성해졌는데, 방랑을 좋아하는 문사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효묘(孝廟) 말년에는 신병을 핑계로 출사하지 않고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지역에 물러나 있었다. 비록 간간이 고을에 임명되었지만 역시 오랫동안 있지 않았다. 글을 읽어 뜻을 구하고 담박하게 스스로를 지켰으며 또 사우(師友)의 도움으로 나날이 개발되었는데, 대체로 그의 사람됨이 충명하고 올바랐기 때문에 혼미한 벼슬길에서 스스로 벗어나 인고하면서 뜻을 돈독하게 지녀, 마침내 확립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그가 강론한 견해는 대부분 명확하고 투철하였으므로 한 때의 사류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불행하게 일찍 졸하였으니, 애석하다. 임종할 때 유소로 홀륭하고 덕 있는 이를 초치하고 큰 사업에 더욱 힘쓰라고 상에게 권하였으며, 또 장식(張弼)의 말을 인용하여 남을 믿어 맡길 때는 일신의 편견을 막고, 남을 좋아하고 미워할 때에는 천하의 이치에 공변되게 하라 청하였고, 아울러 약을 하사한 은전을 사양하였다.

③-6 이수인의 줄기는 간관이었을 때의 기록이 첨가되었을 뿐 특별히 덧붙인 사실은 없다. ③-7 민형남의 줄기는, 개수본에서 그가 관직을 지낸 광해군대에 박승중, 유희분과 함께 위훈(僞勳)에 들어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김자점에게 천거를 받은 사실도 지목하였는데, 품성에 대한 평은 원본이나 개수본이나 차이가 없다.

한편, ③-8 남노성의 줄기는, 원본에서 ‘송시열의 무리에게 거슬림을 받아’ 청요직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 반면, 개수본에서는 ‘경솔하여’ 청요직에 들지 못했다고 하였다. 아주 대조적인 평가가 실린 것은 ③-9 이단상의 줄기이다. 원본에서는 이단상의 아버지 이명한(李明漢)이 이이첨 부자에게 아첨한 일까지 거론했고, 또 예송(禮訟)에서 송시열을 지지한 데 대해 소인(小人)이라고 평가한 반면, 개수본에서는 ‘견해가 명확하여 사류들에게 존중을 받았다’며 그의 죽음을 애석해했다. 예송과 관련된 입장 차이는 따로 장을 바꾸어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 상론하지는 않겠다.

④ 매일 매일의 날짜는 갑자(甲子)만 기록한다.

실록의 날짜는 갑자를 기록한다. 개수론자들은 《현종실록》의 날짜가 잘못 되어 있는 것 역시 개수의 논거로 삼았다. 그래서인지 개수본에는 원본에 실린 기사의 날짜를 수정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몇몇 사례를 통해 수정의 정당성을 검토해보자.

우선, 현종 즉위년 5월 17일에, 중전(中殿)의 탄일이므로 정부가 표리(表裏)를 봉진한 기사는 원본에 18일에 실려 있다. 이는 탄일 기사이므로 17일에 기록하는 것이 옳바르기 때문에 개수본의 수정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본에서도 17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으므로, 18일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1. 현종이 승정원에게 이정영(李正英)을 삭탈관작하여 변방으로 보낼 것을 하교한 기사.(2년 11월 18일(계사))

이 기사는 원본에 16일자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본에는 개수 19일자의 기사도 일부 통합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대사헌 이정영이 11월 16일에 조형(趙珩)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계를 올렸는데, 이정형에 대한 삭탈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이 옳을 것이며, 그렇다면 개수본이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형의 처리에 대한 대신들의 간언 및 현종의 대답이 원본 18일에 실려 있는데, 개수본은 19일(갑오)에 실려 있다. 한편 판중추 정태화가 조형을 형추하라는 말을 거두라고 상차한 내용은 원본 16일, 18일 두 군데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태화의 상차는 18일(개수본 19일) 우의정 원두표(元斗杓)와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약방이 입시하는 기회에 조형의 형추가 지나치다고 아뢰 뒤엔 나왔으므로, 시간 순으로 보면 이 사건의 날짜는 개수본이 정확한 듯하다.

또한 남로성(南老星)을 대사간으로, 이연년(李延年)을 사간으로, 송시철(宋時喆)을 헌납으로, 이유상(李有相)·이동명(李東溟)을 정언으로, 원만석(元萬石)을 형조 참의로 임명한 날짜가 개수본은 19일, 원본은 18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에는 11월 19일에 ‘정사가 있었다[有政]’고 하여 개수본이 정확함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승정원일기》에는 명단이 불에 타 안 보이지만, 전후로 인사 이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필자의 추론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현종 2년 12월 10일(을묘), 대사간 남노성이 인피하여 체직된 기사도 원본에 8일로 나와 있다. 정작 원본에는 10일에 물러나 물론을 기다린다는 기사가 나오므로, 원본이 부정확한 증거가 된다. 같은 날 개수본에는 병조 판서 홍명하 상소와 함께 비답이 실려 있는 데 반해, 원본에서는 비답을 15일에 수록하였다. 물론 “홍명하의 소에 대해서도 안에 들인 지 5일만에야 비로소 비답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사실을 밝혔지만, 상소와 비답은 함께 수록하고 비답이 늦게 내려온 사유를 기록하는 것이 짜임새가 있는 편찬일 것이다.

그러나 날짜를 고친 것 중에는 개수본이 오류인 듯한 경우도 있다. 개수본에는 현종 9년 2월 12일(신사)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이 면직되었다고 했고, 원본에는 15일 기사로 나오는데,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원본의 15일이 맞는 듯하다.

한편 한 날짜의 기사가 모두 무더기로 날짜가 바뀐 경우도 있다.

④-2. 현종 9년 11월 20일(을묘)

-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 사간 권격과 정언 조정보가 좌윤 권령 등의 일로 인피하다
- 좌참찬 송준길이 태극음양도를 그려 올리고 인하여 상차하다
- 판부사 송시열이 상소하여 ‘계술’의 일을 진달하고 복수의 뜻을 드러내다
- 좌의정 허적이 체직을 청하는 소장을 올리나 허락하지 않다

④-3. 현종 12년 2월 3일(을유)

○ 경상 감사 민시중의 진흥곡 대책, 개성 우수 이정영 소금 치계

○ 노직(老職)으로 가선(嘉善)·통정(通政)과, 증직(贈職)으로 지사(知事)·우윤(右尹)·판결사(判決事)·통례(通禮)·좌랑(佐郎)과, 영직(影職)으로 판관(判官)·주부(主簿)와 허통 교생(許通校生)·면강(免講)·보충대(補充隊) 등까지의 첩문(帖文)을 각도에 만들어 보내어 곡식을 모으게 함.

④-2 기사는 원본에 모두 18일로 나와 있던 기사이다. 그런데 송준길의 태극음양도는 나오지 않지만,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권력의 인피, 좌의정 허적의 사직, 송시열의 상소는 20일에 올린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역시 개수본에서 《승정원일기》를 참고하여 날짜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④-3 기사는 원본 6일(무자)에 실려 있다. 그러나 4일(병술) 기사에,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좌도(左道)의 해방(海防)에 종사하는 토졸(士卒)들에게 이미 번포(番布)를 줄였으므로 의지해 살아갈 길이 없어서 구덩이에 굴러 죽을 걱정이 조식에 닥쳤다 하여, 월과미(月課米)를 덜어내 나누어 주어 진구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여, 월과미 5백 석을 덜어내어 영하(營下)와 소속의 열 군데 진(鎭)에 고루 나누어 주어 죽을 쑤어 구제하게 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4일 전에 올린 치계로 봐야 하므로 개수본이 타당하며 원본이 오류이다.

④-4. 현종 15년 2월 1일(병신)

원본에는 아예 1개월 전체가 날짜가 틀린 부분이 발견된다. 현종 15년 2월이 그 부분인데, 2월 1일[朔]이 병신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에서 을미일로 잡음으로써 계속 날짜가 밀리게 되었고, 그 결과 한 달의 갑자(甲子)가 잘못되고 말았다.

이는 얼핏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초(또는 시정기)는 날짜별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루의 갑자를 잘못 기재할 수는 있지만 한 달의 갑자를 잘못 기재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승정원일기》 같은 편찬 자료를 인용할 때 그 편찬 자료가 애당초 잘못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월과 3월의 날짜와 맞추어보기만 했어도 이런 오류는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타 실록에서는 좀체로 보이지 않는 흠이 되고 말았다.

⑤ 모든 재변의 경우, 관상감 초록(抄錄)을 하나하나 첨가하여 적는다. - 지방의 바람, 비, 지진 등 각각의 사항은 그 당시 보고한 문서[啓聞]를 반드시 살펴보고 갖추어 기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5번 조항은 《현종실록》이나 《현종개수실록》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음 세 경우를 보자.

⑤-1. 1년 2월 8일(계사)

○ 햇무리가 지다

첫째, 이 기사는 개수본에서 오랜 만에 나오는 일기(日氣), 기상(氣像) 기록이다. 즉위년 이래, 이 무렵 이전에는 개수본에서 거의 일기를 신지 않았다. 반면 원본에는 기상 관측 기사가 실려 있다. 다음은 원본에 나오지 않고 개수본에만 나오는 기상이다.

⑤-2. 3년 5월 15일(정해)

○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⑤-3. 9년 11월 22일(정사)

○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물론 이외에도 원본에 실리지 않고 개수본에만 실린 기록이 많지만, 간단히 사례만 제시한다. 이와 반대로 원본에는 있지만 개수에는 없는 기상 자료도 있다. 아래 기사가 그러하다.

⑤-4. 15년 7월 21일(계미)

○ 유성이 나타나다

⑥ 대간의 논계(論啓)는, 첫 번째 논계[初啓]의 경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적고, 잇달아 올린 논계[連啓]의 경우는 단지 ‘연계’라고만 적고, 혹시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으면 뽑아낸다.(⑦ 대간의 논계는 단지 ‘사헌부’, ‘사간원’이라고만 적고, 와서 보고한 사람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다만 첫 번째 논계했을 때는 성명을 모두 적는다. 중대한 시비가 걸린 사안의 경우는, 다른 의견을 꺼낸 경우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어사(御史)의 성명 및 관리를 좇아낸 일[黜陟], 폐단을 변통한 일 등도 상세히 기록한다.)

먼저 사헌부, 사간원, 어사의 기록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계(啓) 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 제시해둔다.

⑥-1. 즉위년 6월 7일

[원본]

호서 예산(禮山) 고을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몸은 하나에 머리가 둘이고 손과 발이 넷씩이어서 감사 이진(李軫)이 치계하여 알려왔다.

[개수]

호서(湖西) 예산현(禮山縣)에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몸뚱이에 머리는 둘이며 손이 넷, 발이 넷이었다. 도신(道臣)이 이를 알려 왔다.

⑥-2. 즉위년 6월 13일

[원본]

경상 감사 홍처후, 전라 감사 김시진이 모두 수해로 인한 참혹한 상황을 치계하여 알려왔다.

[개수]

양남(兩南)의 감사(監司)가 모두 수재가 몹시 참혹하다고 계문하였다.

위 사례는 원본에서 관찰사의 이름을 명시한 데 비해, 개수에서는 도신, 감사라고만 표기하고 이름을 적지 않았다. 여타 실록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치계나, 첩정에 인명이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인명을 알 수 없으면 모르되, 알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⑥-3. 2년 4월 1일(경진)

○ 사간원이 궁가의 도장 김원을 죄주는 일로 논계하다

⑥-4. 3년 5월 13일(을유)

○ 정언 이단하 등이 경연을 하루 빨리 시행할 것을 아뢰다.

○ 사헌부가 궁가가 지나치게 토지를 소유하는 폐단을 근절할 것을 아뢰다.

위의 ⑥-3, ⑥-4 기사는 원본과 개수본에 실려 있다. 그런데 ⑥-3은 개수본에서 ‘사간원’이라고 한 데 비해, 원본에서는 ‘헌납 박증휘(朴增輝), 정언 정박(鄭樸)’라고 하여 실명을 거론했다. 이것이 김원에 대한 첫 번째 논계일 경우에는 원본이 찬수범례를 준수한 것이지만, 반복된 논계 중 하나라면 개수본이 찬수범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김원에 대한 첫 기사이므로 원본처럼 실명을 기록해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사례가 있다. 바로 ⑥-4 기사이다.

⑥-4의 위 기사는 원본 12일자에 실려 있고, ‘정언 이단하’라는 실명 대신 ‘사간원’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원본보다 개수본이 찬수범례를 준수한 셈이다. 아래 기사는 개수본에서 ‘사헌부’라고 한 데 비해, 원본에는 ‘대사헌 김수항(金壽恒) 등’이라고 하여, 실명을 노출했는데, 이 사안에 대한 논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개수본처럼 ‘사헌부’라고 하는 것이 찬수범례에 합당하다.

찬수범례 6조, 7조에서 말하는, 첫 번째 논계는 사안의 내용을 상세히 적고, 이름을 적되, 다음부터는 논계 사실과 관청만 기재한다는 규정은 원본과 개수본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초계(初啓)에서 인명을 기재하고 이후부터 관청만 기재하는 것은 두 실록 모두 다소 어긋나는 경우를 보이지만, 경향으로만 보면 개수본 쪽이 찬수범례에 합당한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나중에 편찬한 실록이니만큼 앞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⑥-5. 원본 4년 8월 24일(기미)

○ 조형에 관한 일을 정계하다

⑥-6. 원본 10년 7월 18일(기유)

○ 합계

⑥-5 기사는 정계 기사, ⑥-6 기사는 합계 기사인데, 둘 다 개수본에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정계에 대해 찬수범례에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어떤 관례적인 원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정계 기사의 유무는 원본과 개수본의 장단점을 논할 기준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⑥-6 기사의 경우는 다르다. 원본에는 ‘○己酉 舍啓’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무슨 사건에 대한 합계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합계했다는 사실 이상의 정보를 주기 못한다. 이런 경우는 편찬과정에서 미처 기재하지 못하고 빠트린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은 편찬 사례이다.

⑥-7. 2년 4월 18일(정유)

[개수]

헌납 오두인(吳斗寅)이 아뢰기를,

“윤선도(尹善道)의 죄는 위로 선왕에 관계되는데도 사형을 감하여 북쪽 지방에 유배시킨 것은 애당초 특별한 은혜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좋은 지역으로 옮기니 여론이 놀라고 분해합니다. 성명을 도로 거두실 것에 대한 청은 당연히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 때문에 신이 공회석상에서 발언하였더니 동료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으나, 장관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이미 정해진 의논이 지연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감히 직위에 편안히 있을 수 없으니, 체직하소서.”

하였다. 대사간 조복양(趙復陽)은 당초 쟁집(爭執)하지 못했으므로 감히 그대로 수석(首席)에 있을 수 없다 하여 인피(引避)하였고, 정언 윤변(尹抃), 대사헌 김남중(金南重), 장령 이광재(李光載)도 서로 잇달아 인피하였다. 집의 곽지흠(郭之欽)이 처치하여 두인(斗寅)은 출사시키고 양사의 관원은 체차시키기를 청하였다.

⑥-7 기사는 오두인이 ‘중대한 시비’를 놓고 먼저 의견을 꺼내며 체직을 청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피 사실과 처치 사실을 함께 기록하였다. 이 기사는 원본과 개수본이 동일한데, 차이가 있다면 개수본에 18일자 기사로 나오는 데 비하여 원본에는 ‘대사간 조복양(趙復陽)’ 이하가 19일자 기사로 나온다는 점이다.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이는 원본의 비효율적 편집이다. 실록은 편년이므로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고, 조복양 등의 인피가 오두인의 체직을 청한 다음 날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

도 같은 사안에 연관된 인피라면 함께 수록해주어야 사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초기부터 실록은 편년이면서도 강(綱)-목(目)의 구조,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함께 관련 사실을 모아 편집하는 강목체를 함께 편찬체제로 발전시켜왔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정기찬수범례 7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본은 개수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래 기사 역시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⑥-8. 2년 6월 5일(임오) 4일(신사)

○ 어사들의 서계에 따라 각 고을 현감·군수에게 상벌을 내리다

[개수]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증(李澄), 예산 현감(禮山縣監) 백홍우(白弘祐), 석성 현감(石城縣監) 채이항(蔡以恒), 직산 현감(稷山縣監) 정시걸(丁時傑), 연산 현감(連山縣監) 이현(李峴), (원본: 이상 의금부. 5일 기사, 이하 6일) 신창 현감(新昌縣監) 박용부(朴隆阜), 덕산 현감(德山縣監) 황봉조(黃奉祖), 결성 현감(結城縣監) 송협(宋協), 먼천 군수(沔川郡守) 이선기(李善基), 무안 현감(務安縣監) 조정우(曹挺宇), 해남 현감(海南縣監) 정호례(鄭好禮), (이하 원본 4일. 어사 김수홍 보고) 장성 부사(長城府使) 최일(崔逸), 영광 군수(靈光郡守) 안진(安鎭), 영암 군수(靈巖郡守) 김익렴(金益廉), 김제 군수(金堤郡守) 소동도(蘇東道), 여산 군수(礪山郡守) 이휘조(李徽祚), 태인 현감(泰仁縣監) 서필성(徐必成), 칠곡 부사(柒谷府使) 김시설(金時髡), 선산 부사(善山府使) 신숭구(申嵩耆), 거제 현령(巨濟縣令) 권주(權霽), 삼가 현감(三嘉縣監) 최자해(崔自海), 초계 군수(草溪郡守) 조현(趙鉉), 칠원 현감(柒原縣監) 이시배(李時培),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응창(安應昌), 하양 현감(河陽縣監) 허섬(許暹),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찬한(李燦漢), 영해 부사(寧海府使) 박일성(朴日省), 영천 군수(永川郡守) 성진병(成震丙), 장기 현감(長鬐縣監) 손흠(孫欽)을 더러는 파면시키고 더러는 잡아다 추문(推問)하였다. 서천 군수(舒川郡守) 홍석무(洪錫武), 서산 군수(瑞山郡守) 윤격(尹檄), 태안 군수(泰安郡守) 민진량(閔晉亮), 금성 현감(錦城縣監) 원두추(元斗樞), 담양 부사(潭陽府使) 임유후(任有後), 인동 부사(仁同府使) 유정(俞掟),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성기(李聖基), 창녕 현감(昌寧縣監) 김상중(金尙重), 대구 부사(大丘府使) 이수강(李守綱), 밀양 부사(密陽府使) 이지온(李之溫)은 가자(加資)하게 하였으며,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성오(柳誠吾),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유상(朴由常), 천안 군수(天安郡守) 권순창(權順昌), 은진 현감(恩津縣監) 임일유(林一儒),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 당진 현감(唐津縣監) 윤세교(尹世喬), 아산 현감(牙山縣監) 이정악(李挺岳), 평택 현감(平澤縣監) 심익선(沈益善), 이산 현감(尼山縣監) 이관하(李觀夏), (이하 원본 4일. 어사 김수홍 보고) 흥덕 현감(興德縣監) 오정언(吳挺彦), 무장 현감(茂長縣監) 정시대(鄭始大), 만경 현령(萬頃縣令) 도거원(都舉元), 경산 현감(慶山縣監) 이희년(李喜年)에게는 모두 포상(褒賞)을 베풀었는데, 3도(道)의 암행 어사가 서계한 것을 인해서이다.

이 기사는 김수홍 등 3도에 내려간 암행어사들이 수령의 정치 득실에 따라 상벌을 내린

기록이다. 이 기록도 원본과 개수본 모두 나온다. 그런데 원본이 개수본과 마찬가지로 어사의 성명과, 해당 수령의 이름과 상벌에 대해 기재한 것을 좋았으나, 문제는 이 기록들이 개수본은 5일 기록에 모아서 기재한 데 비해, 원본은 4일, 5일, 6일에 흩어져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된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는 데 비효율적인 편찬을 면치 못하였다.

⑧ **상소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상세히 갖추어 싣고, 그 사이의 불필요한 글자는 해당 구절을 빼더라도 무방하다. 예에 따라 사직하는 상소나 차자의 경우는 반드시 모두 적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거취나 시비 같은 당시 정치에 관련된 사안은 역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종실록》이 22권인데 비해 《현종개수실록》은 28권으로, 분량으로 보아 6권이 늘어났다. 이는 약 1/4이 늘어난 셈인데, 그 늘어난 분량 중 상당한 부분이 바로 개수본에서 원본에 빠진 상소나 차자를 수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아마 분량으로 보아도 늘어난 분량의 반에 가깝지 않을까 추정된다.

물론 원본과 개수본의 기사가 동일한 것도 많다. 예를 들어, 《현종개수실록》 7년 3월 22일(임인), 영남 유생들의 복제 문제에 대한 소와 원자가 강할 글에 대해 논의한 상소는 사론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원본과 같다. 또한, ○ 복제에 관한 유생 유세철의 상소문, ○ 복제에 관한 유생 유세철의 상소문 - 장자서자도(長子庶子圖), ○ 복제에 관한 유생 유세철의 상소문 - 상복고증, ○ 복제에 관한 유생 유세철의 상소문 - 상복고증 부록 등도 개수본에서는 원본과 마찬가지로 수록했다.(단, 승정원이 복제 문제에 관한 유세철 등의 상소에 대해 반론한 계는 개수본이 더 상세하다.)

개수본에서 상소나 차자를 보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원본에 내용이 실려 있지만 개수본에서 상소 중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한 경우이다. 둘째, 원본에 상소 사실만 기록되어 있거나 아예 상소 사실 자체가 기록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 상소 내용을 보완하거나 상소 사실과 내용을 보완한 경우이다. 먼저 첫째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⑧-1. 즉위년 7월 3일(임술)

- 좌참찬 송시열이 상차하여 수원 산 문제를 논하다
- 전 찬선 권시가 상소하여 소명을 사양하다
- 영돈녕부사 이경석이 상차하여 수원 산 문제를 논하다

⑧-2. 3년 12월 27일(병인)

- 사직을 청한 대사간 민정중의 상소문

⑧-3. 4년 1월 7일(병자)

○ 시폐를 진달하고, 허물을 고칠 것을 간한 이민서의 상차

⑧-4. 4년 7월 26일(신묘)

[원본]

응교 이민적(李敏迪), 부응교 민유중(閔維重), 부교리 이익(李翊), 부수찬 여성제(呂聖齊)·이유상(李有相) 등이 대소(大疏)를 올렸다. 그 대강은 3가지로 성상의 궐실(闕失)·국가의 이병(利病)·백성들의 휴척(休戚)이었고, 그 세목은 16가지로 근학(勤學)·입지(立志)·청심(淸心)·양기(養氣)·경천(敬天)·외민(畏民)·사치를 금하도록 힘쓸 것·금병(禁兵)의 수를 제한할 것·지성으로 현인을 초빙할 것·신료를 자주 접견할 것·염분(鹽盆)을 혁파할 것·제둔전(諸屯田)을 혁파할 것·포흠(逋欠)을 탕척해 줄 것·민역(民役)을 고르게 정할 것·인족(隣族)을 침해하지 말 것·대간을 구임(久任)시킬 것 등이었는데, 상이 답하였다.

“계회(誠誨)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진달한 차자를 살펴 보건대 실로 으레 올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근심한 정성과 못 잊어하는 충성심이 말에 흘러넘치니, 어찌 늘 간직하며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목별로 진달한 일은 절목(節目)이 있게 마련으로서 일시에 헤아려 정할 수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처(議處)토록 하겠다.”

사신은 논한다. 상이 답은 이렇듯 너그럽게 내렸으면서도 실제로 채택해서 쓴 일은 없었으니 어찌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⑧-1 기사는 권시와 이경석의 기사가 바뀌어 있기는 하지만 원본과 개수본에 다 실려 있고, 개수본 기사의 내용이 상세한 경우이다. ⑧-2 기사도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기사를 축약할 수 있는 것이 실록 편찬이지만,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의 축약은 역사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하겠다.

한편, ⑧-3, ⑧-4 기사 역시 개수본이 원본보다 상세하지만, 개수본은 상소문을 전제하다 시피 하여 지나치게 길어진 결함이 있다. 대략 글자수로 보아 ⑧-3은 원본 대비 6배, ⑧-4는 원본 대비 10배 정도의 분량에 해당된다. ⑧-4에서 보듯이 원본은 이민적 등이 올린 ‘대소’의 제목만 실었는데, 제목만 실는 것도 정보전달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전제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한 편찬이 아닌가 한다. 아래 ⑧-6 기사는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개수본 내용이 상세한 기타 사례를 뽑아본 것이다.

⑧-6. 기타 내용이 축약되어 원본에 실려 있는 상소와 차자 사례

○ 5년 4월 1일(계사) 대사간 김수홍, 여덟 가지 폐단 상소

○ 6년 1월 7일(갑오) 이조 판서 김수항, 군주의 경계 상차

○ 6년 10월 9일(신유) 사간 이유 등, 산군 작포·공천·구언·훈국 병제·부세 시무 십조

○ 7년 1월 19일(경자) 좌의정 홍명하, 포흠곡 탕감·토목공사 중지·경연의 잦은 개최 등을 청한 좌의정 홍명하의 상차

이제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원본에 실려 있지 않은 상소, 또는 상소했다는 사실만 있는 상소를 개수본에서 수록한 사례를 살펴보겠다.

⑧-7. 3년 1월 23일(정유)

○ 예조 참판 김좌명이 전날의 하교대로 비용을 절약하게 할 것을 상소하다

⑧-8. 10년 4월 17일(기묘)

○ 영중추부사 이경석이 송시열의 상소에 대하여 상차하다

⑧-9. 11년 2월 18일(병자)

○ 대사성 남구만이 신덕 왕후를 태묘에 부모하는 일에 관해 상소하다

⑧-7 기사는 원본에 없는데, 김좌명은 두 대궐을 수리할 때 칸 자리와 벽을 바른 능지(菱紙) 등의 물건을 예전에 배설한 대로 둘 만한 것도 벌써 새로 바꾸었다며 비용 절약을 상소했는데, 개수본에서는 그 대략을 적어 보는 사람들에게 상소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⑧-8 기사도 원본에 없다. 이경석의 상소는 송시열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이경석은 이상진(李尙眞) 등 몇몇 사람을 두고 임금이 온양 온천에 행행하는데 나와보지도 않는다면 차자를 올렸던 것인데, 송시열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크게 노하여 소를 올리고 오지 않았다. 특히 손적(孫覿)에 빗대어 이경석을 모욕한 것은 이경석이 일찍이 인조 때에 명에 따라 삼전도의 비문을 지었는데, 찬양하는 말이 많아서 청의(淸議)에 기롱을 받은 까닭이었다. 이를 두고 개수본의 사론에서 “송시열이 조그만 일로 너무나 각박하게 배척하니, 논자들이 병통으로 여겼다.”고 했다. 이렇게 송시열이 이경석을 배척하자 그에 대해 해명한 상소로 올린 기사가 ⑧-8이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으니만큼 이경석의 상소를 실어주어야 논 의 전개를 알 수 있는데 원본에서 누락했다. ⑧-9 기사도 태조의 계비 신덕 왕후 부모에 대한 논의이므로 당연히 수록해야 하는데 원본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또한 개수본에는 과거 효종 때 경연 석상에서 승지와 사관만을 남게 한 뒤 함께 대계(大計)를 의논하였으나, 효종이 사관에게 의논한 내용을 쓰지 말라고 명한 까닭에 전해지지 않는 송시열의 정유년(1657, 효종8) 8월 차자와, 기해년(1659, 현종즉위) 7월에 올린 상소를 수록했다. 청나라와 갈등을 우려하여 실록에도 기록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또 송시열의 상소 내용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실록에 수록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효종 때 올린 차자를 《현종개수실록》에 수록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다.

이상 몇몇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수본에는 원본에서 빠지거나 소략하게 수록한 상소나 차자를 많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소략하거나 누락된 상소나 차자는 대체로 서인(西人)의 것이 많았다는 것도 원본 《현종실록》 편찬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공정하지 못한 편찬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편찬 양태였다. 그런데 이런 접근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⑧-9. 14년 7월 4일(신미)

[원본]

좌윤 조수익(趙壽益)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또 말하기를,

“신의 가정에 있었던 참혹한 변은 실로 윤상(倫常)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증명하는 일이 이미 흉악한 자취가 다 드러난 뒤에 있었으니, 엄형(嚴刑)으로 정죄(正罪)를 하는 것밖에는 결단코 신문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지연되어 한 해가 지났는데도 끝이 날 기약이 없이 부자간으로 하여금 서로 송사하게 하려는 듯하니, 법망(法網)이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이는 신의 말이 신용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소치이니 오히려 누구를 허물하겠습니까. 이 재앙의 혼단을 생각할 때 다만 앞드려 있어야 마땅하고, 더구나 숨이 가물가물하여 전혀 힘을 내어 조정에 나갈 희망도 없습니다.”

하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삼가 살피건대 조수익(趙壽益)은 한때의 명망있던 재상으로 불행하게 가정의 변을 만나 아버지가 아들의 일을 증언하는 것으로 본도(本道)에 정장(呈狀)하였으니, 죄인들의 정상은 묻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수익이 신축년에 올린 한 통의 상소로 하여 시의(時議)에 크게 거슬렸기 때문에 전후 방백(方伯)과 추관(推官)이 수익을 미워하는 자의 뜻을 받아 노망(老妄)으로 평계하고 그 사이에 의심을 두어 해가 지나도록 해결하지 않았다. 윤기(倫紀)와 법강(法綱)이 이에 이르러 땅을 쓴 듯이 없어졌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조수익은 어머니가 유성룡의 딸로, 남인에 속한다. 그러나 원본에서는 조수익의 이 상소를 신지 않았다. 부자간의 송사가 발생한 일이어서 피휘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본에 상소가 누락되는 것은 서인 기록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상소가 적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⑨ 모든 관직 임명[除拜]의 경우, 중요하지 않고 잡다한 관직이나 산직[冗散] 외에는 이조와 병조[兩銓]의 문서를 다시 살펴보아 상세히 기록한다.

⑨-1. 즉위 6월 5일(갑오)

[원본]

정유성(鄭維城)을 새로이 우의정으로 삼고, 권대운(權大運)을 좌부승지로, 유계(兪槩)를 대사성으로, 이시술(李時術)·안후열(安後說)을 교리로 삼았다.

[개수]

정유성(鄭維城)을 선발하여 우의정으로 삼고, 권대운(權大運)을 좌부승지로, 채충원(蔡忠元)을 형조 참의로, 유계(兪槩)를 대사성으로, 이시술(李時術)·안후열(安後說)을 교리로, 이경

억(李慶億)을 병조 참지로 삼았다.

⑨-2. 2년 8월 19일(을축)

[원본]

홍명하(洪命夏)를 판의금으로, 민응형(閔應亨)을 우참찬으로, 민응협(閔應協)을 대사헌으로, 남로성(南老星)을 동지의금으로, 홍처량(洪處亮)을 대사성으로, 유명운(俞命胤)·정창도(丁昌燾)를 지평으로, 이민서(李敏叙)를 교리로 삼았다.

[개수]

민응협(閔應協)을 대사헌으로, 유명운(俞命胤)·정창도(丁昌燾)를 지평으로, 홍중보(洪重普)를 우참찬으로, 홍명하(洪命夏)를 겸 판의금(兼判義禁)으로, 이민서(李敏叙)를 **부**교리로, 홍처량(洪處亮)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⑨-3. 4년 1월 21일(경인)

[원본]

권우(權隅)를 도승지로, 오두인(吳斗寅)을 집의로, 남구만(南九萬)을 응교로, 박승건(朴承健)을 장령으로, 심재(沈粹)를 지평으로, 이유상(李有相)을 정언으로 삼고, 안후열(安後說)을 발탁해 승지로 임명했다. 후열이 연소하면서도 문재(文才)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수하는 명이 있게 된 것이다.

[개수]

정익(鄭楫)을 승지로, 이유상(李有相)을 정언으로, 심재(沈粹)를 지평으로, 원만석(元萬石)을 형조 참의로, 남구만(南九萬)을 응교로, 박승건(朴承健)을 장령으로, 권우(權隅)를 도승지로 삼았다. 집의 안후열(安後說)을 승서하여 승지로 삼았다. 후열은 아직 준직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는 의망하지 않았는데, 의망에 첨가하라고 특명하여 제수한 것이다. 오두인(吳斗寅)을 집의로 삼았다.

⑨-1 기사는 《승정원일기》 같은 날짜의 기록을 근거로 할 때 개수본 쪽이 정확한 사례이다. ⑨-2 기사는 《승정원일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어느 쪽이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⑨-3 기사는 원본과 개수본 모두 합당한 기사이다. 안타까운 점은 원본과 개수본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승정원일기》가 불에 타고 복원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느 쪽이 정확한지 대체적으로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⑩ 각 연도의 과거에 합격한 인원은 ‘아무개 등, 몇 사람’이라고 적는다.

10조 시정기찬수법례와 관련된 원본과 개수본의 특이사항은 없다.

⑪ 군병의 숫자, 서울과 지방의 법제, 호구 숫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문서를 상고하여 상

세히 기록한다.

⑪-1. 2년 윤7월 3일(경진)

[원본]

홍명하(洪命夏)가, 애통해하는 교서를 내리면서 부디 유산(流散)하지 말라는 뜻으로 유시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완(李浣)이 훈국(訓局)의 군병 중에서 노쇠하고 잔약한 자들을 감하여 조금이라도 폐단을 덜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는데, **6백 명을 감하였다.**

[개수]

훈련 대장 이완(李浣)이 훈국(訓局)의 군병 중 늙고 병든 자 **5백 명을 면직하여** 돌려보내서 경비를 줄일 것을 청하고,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금군(禁軍)의 수를 줄일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⑪-1 기사는 훈련도감의 군병 수를 줄인 내용이다. 위의 기사는 전체적으로 개수본이 상세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나, 숫자가 상이하다. 현재로서는 그 차이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⑪-2. 4년 9월 11일(을해)

[개수]

흥년으로 인하여 어공(御供)을 감하고 또 백관들 녹봉도 각기 1섬씩 감할 것을 명하였다. 당시 삼남(三南)에 큰 기근이 들어 진흥청(賑恤廳)을 개설하고 조복양·유계·민정중을 당상으로 삼았으며 또 호조 판서 정치화로 하여금 함께 관장하게 하였는데, 어공을 감하는 것과 녹봉을 받는 백관들 또는 반료(頒料)에 의하여 요(料)를 받는 자들에 대한 감량은 모두 신축년 예에 준하였고, 호남·영남은 더욱 심하다 하여 대동미 징수의 수를 감했으며, 신역(身役) 대신 베를 바치는 자들도 그가 당한 재이의 경중에 따라 혹은 전감(全減) 혹은 감봉(減捧)을 하였다. 그리고 관작을 팔고 직첩을 주어 곡식과 바꾸게 하였는데, 노직(老職)으로 통정(通政)이 되는 경우 60세 이상은 쌀 4섬, 70세 이상은 3섬, 80세 이상은 2섬을 각각 바치도록 하였으며, 통정에서 가선(嘉善)으로 오를 때는 2섬을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실직(實職) 종류를 더 두어 찰방(察訪)·별좌(別坐)·주부(主簿)는 쌀 10섬을 바치고 판관(判官)은 11섬, 첨정(僉正)은 13섬, 부정(副正)은 14섬, 통례(通禮)와 정(正)은 15섬, 첨지(僉知)는 30섬, 동지(同知)는 40섬이었으며 사은(謝恩)이나 봉증(封贈)에 있어서도 정관(正官)과 똑같이 취급하였는데 다만 사족(士族)에 한하여 허락하였다.

추증(追贈)에 있어서는 직장(直長)·참군(參軍)·도사(都事)·별좌(別坐)는 쌀 2섬을 바치고 정랑(正郎)·좌랑(佐郎)·감찰(監察)은 쌀 3섬, 통례·첨정 이상은 4섬, 판결사(判決事)는 5섬, 참의(參議)·동지(同知)는 6섬, 좌·우윤(左右尹)과 참판(參判)은 7섬이었으며, 참하(參下)에서 5품·6품으로 오르거나 5품·6품에서 3품으로 오를 경우는 모두 1섬, 3품·4품에서 질(秩)이 오르는 자는 2섬이었고 서얼(庶孽)로서 허통(許通)되는 경우 양첩(良妾) 자식은 4섬, 천첩

(賤妾) 자식은 6섬이었다. 이미 상직(賞職)을 받고서 가설된 동지(同知)를 올려 받으려면 25섬을 바쳐야 하고 승(僧)으로서 통정을 받으려면 8섬, 교생(校生)은 10년 면강(免講)의 경우 4섬, 종신 면강의 경우는 8섬을 바쳐야 하며 보충대(補充隊)는 남자는 배 4필, 여자는 2필이었다.

각 관아의 공물(貢物) 값을 재감하여 진휼청에서 옮겨다 쓴 것으로는 전생서(典牲署)의 것이 5백 60섬 10말, 풍저창(豐儲倉)의 것이 8백 45섬 5말, 장흥고(長興庫)가 2천 5백 84섬, 상의원(尙衣院)에서는 배 1천 98필, 교서관(校書館)이 7백 98섬 9말, 관상감(觀象監)이 1백 47섬, 예빈시(禮賓寺)가 97섬, 제용감(濟用監)이 1천 9백 16섬 10말, 공조(工曹)가 3백 59섬 5말, 선공감(繕工監)이 6백 53섬 4말, 조지서(造紙署)가 43섬 5말, 사도시(司隲寺)가 1백 93섬 10말, 상의원이 1백 51섬 1말, 의영고(義盈庫)가 86섬 10말, 내섬시(內贍寺)가 1백 46섬 7말, 사재감(司宰監)이 1천 9백 13섬, 전의감(典醫監)이 7백 7섬 6말, 혜민서(惠民署)가 1천 3백 98섬 11말, 와서(瓦署)가 4백 61섬 14말, 귀후서(歸厚署)가 53섬 10말, 군기시(軍器寺)가 4천 82섬 7말로 이상 쌀의 통계가 1만 7천 2백 섬이었다.

그리고 또 기인(其人)의 가포(價布)도 8백 40필을 감했고, 전남도에서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 및 각읍의 관수미(官需米) 7천 8백 58섬을, 충청도에서 6천 2백 91섬을 감했으며 각 아문과 각영에서 가져다 쓴 은포(銀布)로는 충익부(忠翊府)에서 배 1천 2백 50필, 사복시(司僕寺)에서 백금(白金) 1천 5백 냥·배 1천 2백 50필, 상의원에서 배 1천 2백 50필·백금 2백 냥, 공조에서 배 3백 50필, 사옹원(司饔院)에서 배 2백 68필, 상평청(常平廳)에서 백금 5천 냥, 병조(兵曹)에서 여정포(餘丁布) 5천 필, 전남도 감영에서 군포(軍布) 2천 5백 필, 병영에서 1천 2백 50필, 좌수영·우수영에서 각각 5백 필이고, 경상도 감영에서 2천 5백 필, 통영(統營)에서 2천 5백 필, 좌병영·우병영에서 각각 1천 필, 평안도 병영에서 1천 5백 필, 비변사가 관리하는 배 5천 필, 황해도 감영에서 1천 5백 필, 병영에서 1천 필, 충청도 감영에서 신선포(新選布) 5백 필, 병영에서 7백 50필, 수영에서 5백 필이었다.

그리고 각 고을의 저치미(儲置米)로서 감량된 것과 첨가(帖價)의 쌀도 그 도에다 쌓아두고 굶주린 백성을 나누어 먹이도록 했으며 각 아문 각도에서 온 쌀과 배로는 재해를 당한 각도의 공물 값과 각종 수요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대주었다. 이상이 진휼한 규모의 대략이다.

⑪-2 기사는 군병, 법제, 호구 등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는 아니다. 다만, 흉년으로 어공과 백관들의 녹봉을 감하고 진휼을 시행하면서 파악된 통계이므로 부분적으로는 11조에 포함되기도 하고, 중요도도 높은 기사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원본에 단 한 줄만 나올 뿐이다. 재정, 민생 부문에 대한 원본 기록이 취약하게 보이고, 이 문제는 절을 바꾸어 사안별로 검토할 때 다시 논의할 것이지만, 시정기찬수범례 11조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원본이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⑪-3. 5년 6월 22일(계축)

[개수본]

인조조(仁祖朝) 이후로 강도를 보장(保障)으로 삼아 40, 50년 사이에 물자를 옮겨 저축하여 국력을 크게 갖추었었는데, 중간에 정축년의 병란을 겪어 완전히 없어졌다. 그뒤 정세가 조금 안정이 되자 더욱 잘 계획하여 거두어 모아 한결같이 완전하게 수선하고 저축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유수(留守)는 반드시 재능과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가려서 보내고 또 중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각사에 있던 기계와 재화도 또한 모두 나누어 보내 저축을 하게 하였다. 심지어는 내탕고에 있는 어용(御用)에 쓸 여러 물품들 까지도 나누어 보내 저축을 한 것이 많았다. 저축해 모은 것이 이미 많고 보니, 더러 빈 장부 및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계들이 있었다. 이에 민유중을 보내어 점검하고 조사하여 아뢰게 한 것이다.

본부에는 각궁(角弓)과 목궁(木弓)이 모두 5백 17장(張), 장전(長箭) 4천 5백 30부(部), 편전(片箭) 7천 3백 77부, 조총(鳥銃) 6백 74자루, 연환(鉛丸) 87만 2천 4백 개, 진천뢰(震天雷) 1백 40좌(坐), 대완구(大碗口) 및 대포(大砲)와 중포(中砲)가 모두 65좌, 소완구(小匭口) 30좌, 호준포(虎砲) 37좌, 화약(火藥) 2만 6천 8백 92근(斤), 석류황(石硫黃) 7천 5백 72근, 염초(焰硝) 7천 1백 16근, 철갑(鐵甲) 52벌이었다.

월곶(月串), 제물(濟物), 용진(龍津), 초지(草芝), 광성(廣城), 사각(史閣), 승천(昇天), 인화(寅火) 등의 각보에 나누어 둔 것은, 흑각궁(黑角弓) 1천 3백 50장, 교자궁(交子弓) 4백 50장, 목궁 1백 50장, 장전 2천 1백 부, 편전 9백 부, 대조총(大鳥銃) 5백 84자루, 소조총(小鳥銃) 2천 1백 50자루, 대포 1백 79좌, 진천뢰 63좌, 남만 대포(南蠻大砲) 12좌, 불랑기(佛狼機) 2백 44좌, 화약 1만 6천 2백 근, 군향미 11만 2천 3백 47석, 콩 2만 8천 2백 28석, 조(租) 5천 4백 56석이였다. 호조에서 이송한 은(銀) 1만 3천 냥, 면포 10만 8천 필이였다. 기타 주사(舟師)의 비용과 깃발이나 그릇 등의 물건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

⑪-4. 12년 12월 30일(정미)

[개수본]

이 해 진구(賑救)에 소용된 것은 쌀 4만 2천 4백 석, 콩 6천 5백 70석, 좁쌀 1만 1천 2백 석, 보리 9천 8백 석, 밀 9백 석, 은 6만 6천 8백 냥, 무명 45동, 포 2백 80동, 소금 5백 석이였다. 【외방에서 쓰느라 내려 보낸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⑪-3, ⑪-4 기사는 개수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⑪-3은 강도의 군비에 대한 내용이고, ⑪-4는 진흙미로 사용된 미두(米豆) 등 곡물 수량이다. 강도는 전략 요충지이므로 그에 대한 보고 내용은 수록하는 것이 찬수법례의 취지에 합당할 것이며, 진흙의 경우도 1670년(현종 11), 1671년(현종 12)에 극심한 대기근을 겪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실록에 수록하는 것이 당초 역사를 편찬하는 취지에 맞을 것이다.

⑪-5. 12년 2월 10일(임진)

[개수]

이때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났다. 호조의 삼창(三倉)에 저축된 것이 4만 석도 채 못 되어 두어 달도 버틸 수가 없었으므로 강도(江都)의 군향미(軍餉米) 3만 석과 관서(關西)의 쌀 3만 9천 5백 석을 가져다 경비를 보충하고, 또 강도의 쌀 2만 4천 석과 관서의 쌀 1만 5백 석을 가져오고 또 어영청의 보미(保米) 5천 석을 대여하여 진휼 자원을 채웠다.

경성의 기근이 날로 심하여 한 곡(斛)의 쌀 값이 은으로 3냥이었으므로 진휼청이 쌀 8천 3백여 석을 내되 한 섬의 값을 1냥 8전으로 정하였다. 또 목포(木布)로 계산하여 바치는 것을 허용하여 백성을 편리하게 하되 한 사람이 1냥을 넘지 못하게 하여 때를 타서 이익을 노리는 폐단을 막았다. 또 쌀 1만 2천 8백여 석을 내어 서울 백성에게 대여하되 호수(戶數)를 계산하고 등급을 나누어, 대호(大戶)는 1석, 중호는 10두, 소호는 5두, 독호(獨戶)는 2두를 주고, 봉료(俸料)를 받는 군사는 대호·중호·소호를 막론하고 모두 3두를 주었다. 이 때문에 굶주리는 자가 자못 구제되었다.

⑪-6. 13년 10월 30일(신미)

[원본]

한성부에서 호구(戶口)의 수를 올렸는데 식년(式年)이기 때문이다.

경중 5부(京中五部)는 원래 호수가 2만 4천 8백 호인데, 남자는 9만 8천 7백 13명이고, 여자는 9만 3천 4백 41명이다.

경기는 호수가 10만 7천 1백 86호인데, 인구는 46만 9천 3백 31명이다.

관동은 호수가 4만 6천 1백 45호인데, 인구는 21만 7천 4백 명이다.

해서는 호수가 9만 6천 49호인데, 인구는 38만 6천 6백 85명이다.

관북은 호수가 6만 8천 4백 93호인데, 인구는 29만 6백 14명이다.

호서는 호수가 17만 8천 4백 44호인데, 인구는 65만 2천 8백 명이다.

영남은 호수가 26만 5천 8백 호인데, 인구는 96만 60명이다.

호남은 호수가 23만 6천 9백 63호인데, 인구는 84만 9천 9백 44명이다.

관서는 호수가 15만 4천 2백 64호인데, 인구는 68만 2천 3백 71명이다.

경외 도합은 호수가 1백 17만 6천 9백 17호인데, 인구는 4백 69만 5천 6백 11명으로, 남자가 2백 54만 1천 5백 52명이고, 여자는 2백 15만 4천 59명이다.

제주는 호수가 8천 4백 90호인데, 인구는 남자가 1만 2천 5백 57명이고, 여자가 1만 7천 21명이다.

대체로 우리 나라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는데 호적에 들지 않은 여자가 매우 많다. 신해년의 기근과 전염병에 죽은 백성이 즐비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잇따랐다. 그런데 이것은 호적에 들어 있는 숫자만 의거해서 기록한 것이다.

⑪-5, ⑪-6 기사는 원본과 개수본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찬수범례에 합당하다. 차이가 있다면, ⑪-5 기사는 원본에 두 기사로 분리되어 수록되어 있다.

⑫ 도움이 되지 않는 번잡하고 쓸데없는 문자는 참작하여 다듬어서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이 되도록 힘쓴다

12조는 편찬 과정의 일반적 원칙이고 ‘번잡하고 쓸데없는 문자’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선별하는 것은 무리로 보이므로, 따로 논하지 않는다.

⑬ 조정[朝家]의 길흉(吉凶) 등 여러 의례 중에서 나라의 헌장(憲章)에 관계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 보여줄 만한 것은 문장이 비록 번거롭고 잡다해도 갖추어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⑬-1. 즉위년 5월 11일

[개수]

○ 이경석(李景奭)을 시장 제술관(諡狀製述官)으로, 조경(趙綱)·채유후(蔡裕後)·윤순지(尹順之)·이일상(李一相)·조수익(趙壽益)·조한영(曹漢英)·김수항(金壽恒)·조복양(趙復陽)·유계(兪槩)·이정기(李廷夔)를 찬집청 당상(撰集廳堂上)으로, 이단상(李端相)·조귀석(趙龜錫)·안후열(安後說)·김만기(金萬基)·김만균(金萬均)·임한백(任翰伯)·목내선(睦來善)·김익렴(金益廉)·오시수(吳始壽)·이정(李程)·황준구(黃雋耆)·정인경(鄭麟卿)을 낭청으로 삼았다.

○ 대신 및 정부 당상, 6조 참관 이상, 관각 당상이 모여 대행 대왕의 시호를 의정하여 선문 장무 신성 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선을 베풀어 두루 열어주는 것을 선(宣)이라 하고, 민첩하고 학문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히는 것을 장(章)이라 하고, 대사를 결정하여 정하는 것을 무(武)라 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 일이 없이 하는 것을 신(神)이라 하고, 선행을 포양하고 부세를 가벼이 하는 것을 성(聖)이라 한다.】으로, 묘호(廟號)를 효종(孝宗)으로, 전호(殿號)를 경모(敬慕)로, 능호(陵號)를 영(寧)으로 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열성 휘호(徽號)의 끝자를 상고해 보니 모두 효(孝)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효자로 묘호를 삼았으므로 거듭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황조(皇朝)의 시호를 상고하니, 모두 효자가 있으나 유독 효종에게는 다른 글자로 고쳤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신들이 의논해 확정하여 인(仁)자로 효자를 대신하였습니다.”

하였다. 시호는 처음 열문 의무 신성 지인(烈文毅武神聖至仁)으로 정하였으나 열문 의무 지인은 모두 열성의 휘호를 범하기 때문에 고쳤고, 능호는 처음 익(翼)자로 정하였으나 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고쳤다. 상이 영(寧)자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여러 신하들이 영(寧)은 곧 안녕의 뜻으로 마치 《서경(書經)》에서 말한 영고(寧考)·영왕(寧王)과 같고, 본조의 영녕(永寧)·숙녕(肅寧) 등의 전호(殿號)가 또한 이 뜻이라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에 좋다고 하였다.

⑬-2. 즉위년 12월 1일(정해)

[원본]

태학생 윤항(尹抗) 등이, 고 재신(宰臣) 이이(李珣)·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5차나 올렸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개수]

관학(館學) 유생 윤항(尹抗) 등이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珣)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선조(先朝) 때 허락하지 않았던 일을 경솔하게 처리할 수 없다.”

하였다. 소를 다섯 차례 올리고, 파주(坡州) 및 황해도 유생들도 누차 소를 진달하여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⑬-3. 2년 8월 20일(병인)

[원본]

《효종대왕실록》을 태백산과 오대산에 봉안하다

[개수본]

《효종대왕실록》을 강도(江都) 및 오대산(五臺山), 적상산(赤裳山), 태백산(太白山) 등의 곳에 봉안하였다.

⑬-1 기사의 시장제술관, 시호 기사는 원본에 누락되었는데, 이런 기사를 빠트려서는 안 된다. ⑬-2 기사는 원본에서 이이와 성혼의 시호를 밝히지 않은 점이 개수본과 다를 뿐 대체적인 내용은 같다. 그러나 ⑬-3 기사는 원본이 불충분하다. 효종실록을 봉안한 내용인데, 봉안 곳을 태백산과 오대산 두 곳만 기록하였다.

⑬-4. 원년 1월 28일(갑신)

전남도 유생 신성윤(愼聖尹) 등 3백 40인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니,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⑬-5. 2년 4월 17일(병신)

[원본]

고(故) 필선 윤전(尹焞)과 유생 권순장(權順長)·김익겸(金益兼)을 강도(江都) 충렬사(忠烈祠)에 【충렬사는 곧 순절(殉節)한 신하 김상용(金尙容)·심현(沈愼)·이시직(李時稷)·송시영(宋時英) 등 제인(諸人)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종향(從享)하였다. 윤전은 고 참의 윤황(尹煌)의 아우로서 다른 재능은 없었으나 사람이 순박하고 근심하였다. 정축년에 궁관(宮官)으로 강도(江都)에 들어갔다가 청(淸)나라 군대가 철수해 돌아갈 때 성 밖으로 끌려나가 그대로 살해되었다. 순장은 고 감사 권진기(權盡己)의 아들이고, 익겸은 고 참판 김반(金槃)의 아들로 태학(太學)에서 학업을 닦으며 모두 이름이 있었다. 김상용이 남루(南樓)에 있을 때 두

사람도 같이 누 위에 있다가 불길에 치솟아도 피하지 않고 죽었는데, 뒤에 헌직(憲職)에 추증되었다. 그런데 강도(江都)의 사자(士子)들이 윤전의 죽음은 분명치 못한 점이 있고 순장 등은 어미가 있는데도 먼저 죽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충렬사에 들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연신(筵臣) 유계의 진언에 따라 이렇게 명한 것이다.

⑬-4 기사는 문묘종사를 청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사실을 수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원본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한편, ⑬-5 기사는 강도 충렬사에 배향하는 사안인데, ⑬-4와 반대로 원본에 있고 개수본에 없다. 역시 개수본에서 수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본의 국가의 전례나 의례 기록의 경우 개수본이 대체로 갖추어 수록하였다. 또 개수본에 빠진 것이 원본에는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원본과 개수본 중 개수본 쪽이 좀 더 충실한 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⑭ 서울과 지방의 관리 출척이나 공적 또는 사적 시비는 반드시 그 대략을 뽑아 기록한다.

시정기찬수범례 14조는 원본과 개수본의 견해 차이가 가장 큰 범주가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두 실록이 다른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의 사론을 개수본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도 있다. 현종 연간의 주요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절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몇몇 사례를 통해서 공통점과 상이점을 알아보겠다. 먼저 아예 사론이 잘못 달린 경우가 있다.

⑭-1. 9년 5월 13일(경술)

[원본]

○忠淸道十五邑各司奴婢身貢指徵無處者，既許蠲減，而內司以直貢衙門，不令蠲減。監司閔維重具由以聞，命蕩減。

【史臣曰：“自上果知李東老執法之可惡，臺官不論之非是，則固宜切責臺官，以正不言之失，因治東老，以懲壞法之弊。而奈之何，初從東老縱囚之論，後因大臣之言，方施其罰耶。若此則雖如四凶之罪，亟舉竄殛之典，人將曰罪之者宰相也，幾何不威福下移耶。”】

[개수본]

상이 양심함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 및 삼사를 인견하였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대간은 십분 잘 가려서 임용해야 합니다. 소결(疏決)할 때 이동로가 집의로서 입시하여 살인한 죄수인 이세공(李世恭)을 풀어주기를 청하였는데, 어찌 이와 같은 대간이 있단 말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나, 중한 벌을 내려 뒷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살인한 죄수를 구원하려고 하였는데도 대관(臺官)이 논계하지 않았으니 괴이하다. 이는 실로 뒤폐단에 관계가 되니, 파직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위에서 과연 이동로가 법을 굽힌 것이 가증스럽고 대관이 논하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관을 심하게 책하여 말하지 않은 잘못을 바로잡고 인하여 이동로를 다스려 법을 무너뜨린 폐단을 징계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처음에는 이동로의 죄수를 석방하라는 논의를 따르고 뒤에는 대신의 말로 인하여 벌을 시행한단 말인가. 이와 같이 하면 비록 사흉(四凶)과 같은 죄를 지은 자에게 곧장 찬축하는 법을 시행하더라도 사람들은 ‘죄를 준 자는 재상이다.’고 할 것이니, 위복(威福)의 권한이 아래로 옮겨지지 않음이 얼마나 되겠는가.

⑭-1 기사는 원본과 개수본이 전혀 다른 곳에 사평이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본의 사론은 위치가 잘못되었다. 개수본처럼 양심합에서 이동로에 대한 징계 논의에 사평이 달려야 맞다.(한편 실록을 번역하면서, 지평 오시복과 신후재를 체차한 기사로 원본의 사평을 옮겼는데, 이 역시 적당하지 않다.)

⑭-2. 2년 4월 26일(을사)

[원본]

이조 판서 정치화(鄭致和)가 병을 이유로 사직하여 면직되었다.

사신은 논한다. 치화는 영상 태화의 아우이다. 사람됨이 영민하고 일처리하는 솜씨가 있어 내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모두 잘 다스렸다는 명성이 있었다. 그러나 여색에 골몰하고 성품 또한 거칠고 속되었다. 궁관(宮官)으로 심양(瀋陽)에 오래 있으면서 소현(昭顯)에게 장단맞춰 집을 짓고 술깃한 장난 거리를 미리 제공했다는 비난이 꽤나 있었으며, 또 김자점(金自點)에게 빌붙어 자리를 차지하였으므로 청의(淸議)에 천시되었다. 문벌이 좋은 탓으로 거듭해서 양사(兩司)의 장관을 역임하면서도 처음부터 상당히 저지를 받았다. 급기야 전장(銓長)에 제수되면서부터 물정이 그를 더욱 싫어해 대간의 글에서 조금 그 뜻을 엿보이자, 치화가 병을 이유로 인입(引入)하던 중 몇 차례 사직한 끝에 체직된 것이다.

[개수]

이조 판서 정치화(鄭致和)가 병으로 면직되었다.

삼가 상고하건대, 치화는 영상 태화(太和)의 아우이다. 사람됨이 주도면밀하고 관리의 재간이 있으며, 또 영갑(令甲)을 조심스레 지키고 엄약(廉約)으로 자신을 지켰다.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꽤 성적을 드러냈으나 풍절(風節)이 적고 학술(學術)이 없었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속리(俗吏)로 일컬었다. 문벌 때문에 화려한 벼슬을 두루 거쳐 이조 판서에 이르자 여론이 크게 불만스러워하고 대간의 상소에서 그 뜻을 슬며시 보이니, 치화가 병을 이끌어 누차 사직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비로소 체직되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치화가 궁관(宮官)으로 소현 세자(昭顯世子)를 모시고 심양에 들어갔을 때 세자의 비위를 잘 맞춘 일이 있고 또 김자점(金自點)에게 빌붙었다.”

하는데, 이 일은 사실과 틀린 쪽에 가깝다.

⑭-3. 2년 4월 26일(을사)

[원본]

함릉군(咸陵君) 이해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수원은 바로 3도(三道) 도회지로서 분명히 오환(五患)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덕망 있고 준결한 인물이 그 고장에서 나왔다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지난 일들을 증험해 보면 장래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이어 윤강이 지리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음을 꾸짖고는 홍제동을 극구 찬미한 다음 그 상소문을 내려 대신·유신들과 반복하여 논란할 것을 청했는데, 상이 내용을 알았다고만 답하였다. 상진과 이해는 시열의 눈에 동조하는 자들로서 기한을 늦추어 널리 찾아보자는 상진의 말은 그런대로 평계라도 된다면, 이해는 곧바로 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그 한두 유신들이 과연 얼마만큼 확히 아는 법안(法眼)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여러 지관들로서는 찬미하는 곳이 홍제동 아니면 수원 두 곳 뿐이었다. 홍제동은 선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쓸 곳이 못 된다는 하교가 있었다면, 수원이 비록 만세 이후에 오환이 있을지라도 의관(衣冠)을 간직해둘 곳이 수원 말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시열이 쓸 수 없는 자리임을 한 번 선창하자 조정 전체가 그리로 쏠려 수원을 쓰지 말자는 말이 무슨 청의(淸議)라도 되는 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상소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어리석은 것이라 하겠다.

[개수]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濟)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지리학을 신은 알지 못하지만, 일찍이 수원에 부임하였을 때에 그 곳의 형세를 익히 보았는데 이를 인사로 미루어 볼 때 결단코 국장에 합당치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수원은 3도의 경계를 접하고 땅은 모두 평야인데 그 읍거(邑居)만이 약간의 잔산 단록(殘山斷麓)이 되어 두어 겹을 둘렀을 뿐입니다. 이른바 피해야 하는 5환(患)이라는 것이 이런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국초 이래로 한 사람의 석덕 준사(碩德偉士)도 이곳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오직 무부 궁마(武夫弓馬)의 인재만 나왔을 뿐입니다. 반드시 닥쳐올 환란을 헤아리고 지난날의 징험으로 논할 때 결코 쓸 수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윤강은 홍제동이 나쁘다고 하며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고 있습니다. 신의 상소를 내려 다시 여러 대신 및 유신으로 하여금 반복해 가며 논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상가 상고하건대, 이해는 훈구(勳舊)로 병을 핑계대고 두문불출한 지 10년이 거의 되도록 입을 막고 세상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소를 올려 산릉을 수원에 쓸 수 없음을 극언하니, 그는 반드시 국가를 위한 원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혹은 그를 공격하여 송시열의 논의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 욕

십이 없는 이해로도 오히려 이와 같은 비난을 받았으니 그 나머지는 말할 게 뭐 있겠는가.

⑭-4. 3년 8월 14일(갑인)

[원본]

안후열(安後說)을 장령으로 삼고, 조복양(趙復陽)을 예조 참판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수항(金壽恒)과 조복양은 모두 명가(名家)의 자제들로서 당시 명예가 상당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입김 없이도 스스로 평탄하게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두표(元斗杓)가 발탁해서 임용하라고 청한 데 따라 서로 이어 승진해 임명되었으니, 두 신하의 입장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⑭-2, ⑭-3은 원본의 사론과 다른 개수본의 사평이다. ⑭-2에서 개수본은 ‘어떤 이의 말’이라는 표현으로 원본에 실린 사론을 간접적으로 지목하여 이견을 표시하였다. 정치화는 정태화(鄭太和)의 동생으로, 형 정태화의 막내아들 정재륜(鄭載崙)을 입양하였고 정재륜이 효종의 딸 숙정공주(淑靜公主)의 남편인 동평위(東平尉)가 됨으로써 효종과 사돈관계가 되었다. 정치화가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보필한 적은 있으나 원본 사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현(昭顯)에게 장단 맞춰 집을 짓고 술깃한 장난 거리를 미리 제공했다는 비난”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본의 사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전후로 홍문관 응교, 이조 좌랑 등을 역임했던⁴⁸⁾ 것으로 미루어 청의에 용납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자점에게 빌붙었다”는 지적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왜냐하면 효종 2년~3년에 있었던 김자점의 옥사는 김자점이 청나라와 내통하는 것도 모자라 신면(申冕) 등과 반역을 도모함으로써 조선의 조정과 재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정치화가 김자점에 게 동조했거나 ‘빌붙었다면’ 애당초 그의 아들 정재륜이 효종의 부마로 간택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이미 김자점 옥사 당시 처분이 있었을 것이다.

⑭-3 기사 역시 원본의 사론에 대해 개수본 사론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이다. 당시 효종의 능을 수원에 쓸지 논의가 분분했는데, 이해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본 사론에서는 조정에서 송시열의 의견에 쏠려 그렇게 되었다고 했으나, 그런 해석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이해는 인조 때 정사공신(靖社功臣)이었고 종친이었던 데다가 당시 다른 사람들도 각자 의견을 제시하던 중이었으므로 이해를 비롯한 조정 신하들이 송시열의 권위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원본 사론에는 종종 이렇듯 송시열이나 송준길에게 혐의를 돌리는 논의가 적지 않게 발견되지만 실제로 합리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가거나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다.⁴⁹⁾ 이 이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해가 죽었을 때 이 원본 사론을 적었던 동일한 편찬자들이 쓴 줄기에서 “이해는 공훈이 있는 귀족으로 겸손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비록 기국과 도

48) 인조실록 권42 19년 5월 15일(기축) 등.

49) 현종 원년 홍주세가 청망(淸望)에 들었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은 사건(《현종실록》 권3 1년 6월 10일(계사)) 등 원본 사론에서 이런 평가 내지 해석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많다.

량이 보통보다 뛰어났으나 권력 있는 직위에 쓰이지 않았다. 나이 70이 된 뒤에 연달아 소장을 올려 치사하기를 청해 끝내 사대부의 표준이 되었으므로, 식견 있는 자들이 옳게 여겼다.”⁵⁰⁾라고 평가한 것은 ⑭-3의 사론에서 서술한 이해의 성격과 배치된다.

⑭-4 기사는 원본에 사론이 있지만 개수본에서는 사론을 삭제하고 임명 기록만 남겨두었다. 이 원본 기사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사론에 나오는 김수항은 이 인사와 상관이 없는 인물인데 조복양과 함께 들어가 있다. 이는 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론의 성격을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사론에서 표현한대로, 김수항은 1646년(인조24) 반시(泮試) 수석, 진사시 장원, 1651년(효종2)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한 뒤로, 홍문관 사가독서 이후 부제학을 지냈고, 현종대에 들어와 도승지를 지냈던 인물이다. 특히 이 기사가 있기 몇 달 전에 이미 34세의 나이로 대제학에 임명되었던 김수항을 두고 원두표의 천거 운운하는 사론을 쓰면 오히려 사론의 신뢰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제학에 임명될 때 우의정 원두표 뿐 아니라, 영의정 정태화의 추천이 있었고, 특히 파산(罷散) 관원까지 대상으로 삼아 대제학을 임명하라는 영부사 이경석의 건의가 주요했기 때문이다.⁵¹⁾

조복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론의 말대로 조익(趙翼)의 아들로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고, 허적이 예조 판서였을 때 예조 참의를 지낸⁵²⁾ 조복양을 원두표가 예조 참판으로 추천하는 것이 흠이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이 사론은 조복양과 김수항에 대한 사론보다는 원두표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종실록》에서 유독 비판적으로 논평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원두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원본의 사론을 개수본에서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⑭-5. 2년 8월 3일(기유)

[원본]

사신은 논한다. 상이 태화의 체직을 허락한 것은 단지 그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훗날 다시 정승으로 삼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서필원이 조금도 가차없이 몰아부치며 소를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꾸짖은 것이다. 이 해 겨울에 태화가 과연 정승으로 들어 왔는데, 서필원의 소가 중도에 맞지는 않았어도 그가 곧이곧대로 감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론(士論)이 대단하게 여겼다.

[개수]

사신은 논한다. 상이 정태화의 체직 요청을 허락한 것은, 단지 그의 뜻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가 훗날을 기다려 다시 등용하려는 계획이었는데, 필원의 소장은 조금도 사정을 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꾸짖은 것이다. 이해 겨울에 태화는 과연 다시 정승이 되었다. 필원이 우직하고 과감하게 말한 것이 비록 법도에 맞지는 않지만, 사론(士論)이 훌륭하게 여겼다.

50) 《현종실록》 권22 11년 윤2월 3일(경인)

51) 《현종실록》 권5 3년 4월 17일(경신)

52) 《현종실록》 권5 3년 2월 26일(경오)

⑭-6. 2년 10월 1일(정미)

사신은 논한다. 심백은 전 승지 심광수(沈光洙)의 아들이다. 문사(文詞)의 능력이 모자랐다. 그런데 영남(嶺南)의 사인(士人) 정려(鄭欒)라는 자가 문장을 잘하면서도 환경이 불우하게 되어 오랫동안 심백의 집에 기숙하였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심백이 장원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꽤나 의심하였다.

⑭-5 기사는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준다. 첫째, 개수본에서 원본 사론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실과, 둘째, 인용하더라도 변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⑭-6 기사는 알성시(謁聖試)에서 우등한 심백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한 일에 대한 사론인데, 두 실록의 내용이 같다.

또한 개수본은 상황 이해를 위해 원본에 없는 사론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이 그 사례이다.

⑭-7. 11년 4월 24일(경술)

[원본]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좌참찬 송준길(宋浚吉)을 인견하였는데, 정원에서 뵈기를 청하여 입시하였다. 상이 술을 내오도록 명하고 여러 신료들로 하여금 각기 주량껏 마시게 하였다. 신료들이 모두 흠뻑 취해서 나왔다.

[개수]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좌참찬 송준길(宋浚吉)을 인견하였다. 이때 여러 승지들이 모두 면대를 청하여 입시하여 준길을 만류하고자 하였다. 도승지 장선징이, 세자를 보도하는 일이 급하니 지금 준길이 떠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개인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거둬서 그러한 뜻을 참아가며 허락을 해야겠다.”

하니, 준길이 사례하며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어 여러 조정의 은혜를 입었고 산림에서 고고하게 지내는 처사는 아닌지라 세자가 관례를 하는 때에 마지 못하여 올라왔습니다만, 질병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조금도 억지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예전에 선조(宣祖)께서 이황(李滉)을 부르자, 기대승(奇大升)이 아뢰기를, ‘이황이 오면 특별한 예우를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반드시 마음이 편치 못하여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께서는 은혜와 예우가 천고에 뛰어나시니 이 때문에 더욱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어찌 영원히 폐하를 사직할 뜻을 가지겠습니까.”

하였다. 파하러 함에 상이 명하여 술을 내렸다. 준길이 나가니, 상이 두 도(道)로 하여금 말을 지급하게 하고, 내의(內醫)로 하여금 약물을 싸가지고 따라가게 하였다.

살피건대, 효종 이후로 산야의 처사를 우대하는 것이 전고에 뛰어나, 특별한 예우를 진실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준길의 마음이 편치 못하여 이러한 청을 한 것이다. 예전에 선조 대왕께서 선정신 이이(李珥)에게 하문하시기를, ‘성혼(成渾)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라고 하자, 이이가 대답하기를 ‘혼자서 경제(經濟)를 담당하는 것이라면 잘할 것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으나, 그로 하여금 경연에 출입하며 상을 보도하게 한다면 보탬이 어찌 적겠습니까.’ 하였다. 성혼도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세속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왕왕 배해(裴楷)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니, 이 때문에 준길 등이 조정에 있는 것을 더욱 불안하게 여겼다.

⑭-8. 13년 4월 18일(계사)

[개수]

살피건대, 송준길은 이때 병이 이미 깊어진 몸이었는데 이 상소로써 죽음에 다다라 바치는 충성을 삼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간신(奸臣)을 논척한 내용이 특히 간절하고 통절하였다. 그리고 준길이 김정(金澄)을 친구한 후부터 상은 참설이 누차 들어감에 따라 준길 역시 편당을 한다고 크게 의심을 하였는데, 이때 와서 또 이번의 소가 있게 되자 상의 노여움이 크게 발하여 은의와 예우를 전부 없애버렸다. 이를테면 이상·이민적이 소를 올려 준길을 친구했을 때 번번이 계속해서 견책을 당한 것이다. 이는 실로 음양이 소장(消長)으로 나뉘는 일대 관건이었으며, 후일에 사류들이 낭패를 보게 된 것도 단지 예론(禮論)만이 그 부리였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⑭-7 기사에서, 원본은 현종이 양심합에서 송준길(宋浚吉)을 인견하고 술을 마신 사실만 기록한데 비해, 개수본은 인견했을 때 대화 내용까지 수록함으로써 기사가 풍부해졌다. 특히 송준길이 조정에서 불안해했던 이유를 사론으로 부연하여 설명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⑭-8 기사 역시 현종이 송준길을 의심하게 된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갑인예송에서 현종이 기해예송을 반복하는 처분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시정기찬수범례 14조항을 기준으로 《현종실록》(원본)과 《현종개수실록》(개수본)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외에 두 가지 더 고민해볼 문제가 있다. 첫째는 기사 분할과 관련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본은 개수본보다 기사를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하나는 같은 날의 기사인데 순서가 바뀌어 수록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기사 분할 사례를 살펴보겠다.

⑮ 기사 분할 및 기사 순서 차이 사례

⑮-1. 즉위년 6월 10일

[원본]

○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들건대, 이유태가 현재 성 밖에 있으면서 소를 올리고 영원히 돌아가려 한다고 하온대, 그에 대하여 입성을 하도록 권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곧 상관 유명운(兪命胤)을 보내 들어오도록 유시를 내렸는데, 유태가 답하기를,

“성상의 유시가 그와 같은데 어찌 감히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삼가 다시 성중에 들어가 또 한번 절박한 사정을 아뢰는 다음 물러가겠습니다.”

하였다.

○ 집의 이유태가 상소하여, 돌아가 노모를 모실 것을 다시 청하니, 상이, 영원히 갈 생각은 말라고 유시하고, 이어 본도로 하여금 음식물을 제공하게 하였다.

[개수]

○ 승정원이 아뢰기를,

“들건대, 이유태가 지금 도성 밖에 있는데 소를 올리고 귀향할 계획이라 합니다. 마땅히 권유하여 도성으로 불러들이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즉시 사관 유명운(兪命胤)을 보내 권유하여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유태가 답하기를,

“성상의 권유가 이에 이르니 어찌 감히 성급히 귀향하겠는가.”

하고 도성에 들어와 다시 소를 올리고 귀향을 청하였다. 상이 영원히 떠나갈 생각을 말라고 회유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유태가 노모가 있다고 하니 본도로 하여금 음식물을 주게 하라.”

하였다.

⑮-2. 7월 2일 신유

○ 심지원이 건원릉 서동과 불암산 화접동을 살펴보도록 청함

○ 윤선도로 하여금 산을 보러 간 일행들과 함께 가게 하라고 정원에 하교

⑮-1 기사는 원본처럼 분리하는 것보다 개수본처럼 합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고 이해도 쉽지 않을까 한다. ⑮-2 기사 역시 산릉을 살펴라는 청과 함께 전교가 있었으므로 합치는 편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낫지 않을까 한다. 특히 원본은 사헌부, 사간원의 인피 상황에 대한 기사 수록에서 다소 이런 문제점을 자주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

⑮-3. 3년 12월 25일(갑자)

○ 사간원이 광제화의 숙배 단자를 봉입한 승지를 추고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답하기를,

“승지를 추고하라고 청함으로써 배사(拜辭)를 견제하고 당류를 비호하다니, 어찌 그리 교묘한가. 그대들의 의도를 내가 해피하게 여긴다.”

하였다. ○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광제화를 제수한 지 여러 날이 지났고 또 벌써 사은 숙배를 해놓고서 자기 당류를 믿고

누워 움직이지 않다니, 매우 밋고 놀랍다. 마땅히 죄를 주어야 되겠지만, 우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다. 오늘 안으로 떠나도록 하라.”

하니, ○ 승정원이 아뢰기를,

“제화의 말이 대신을 침범했으니 누가 그의 망령됨을 모르겠습니까마는, 대각의 신하들이 명을 중지하라고 청하는 것은, 언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성상의 덕에 누가 될까 염려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사사로이 당류를 비호하여 세력으로 후원하면서 꺼리지 않기를 성상의 분부처럼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제화의 일 때문에 이런 뜻밖의 온당하지 못한 하교가 있게 되었는데, 어찌 신하들을 일체로 여긴다는 의리에 크게 손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대각의 논계가 정지되기 전에는 받들어 행할 수 없는 것이 옛 관례입니다. 한편에서는 굳게 간쟁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받들어 행한다면, 대각을 두어 바로잡는 책임을 맡긴 뜻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화의 하직 단자가 방금 올라왔습니다만, 감히 봉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들이 추고를 청하는 논의를 심하게 두려워하는구나. 하든 말든 그대들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 김우형·이하가 인피하여 체직을 청함. 하다 - 동.

○ 부교리 이익 등의 대면을 거절하자 광제화를 외직에 보내지 말라고 글을 올림.

⑮-4. 3년 12월 25일(갑자)

○ 사헌부의 궁가에 대한 논계에 엄히 답하자, 조복양과 이후가 인피하여 파직을 청함.

⑮-5. 6년 3월 28일(갑인)

[개수]

대사헌 정지화는 또 전번 일로 인피하고, 집의 송시철, 지평 어진익은 엄한 분부를 내려 감히 편히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정언 이익상은 마땅히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하지 않아 피척을 받는 중에 있다는 이유로 감히 처치할 수 없다 하여 모두 인피하였다.

사간 이정이, 한 가지 일로 네 번이나 인피하였으니 대관의 체면에 비추어 보면 번독스러움을 면할 수 없다 하여 정지화를 체차하기를 청하고, 미안한 전교가 뜻밖에 나오자 혐의하여 처치하지 못한 것은 형세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송시철·어진익·이익상을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의견을 같이할 수 없어 입락을 정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할 것이다. 미안스런 일이 있으며 일을 연유하여 번독스럽게 하는 것이 근래 대각이 숭상하는 바가 되었으니, 이미 괴이하게 여길 일도 아니다. 이른바 ‘대각의 체면에 비추어 볼 때 번독스러움을 면하기 어렵다.’는 등의 말은 실로 모호한 데 관계된다. 정지화도 출사시키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지화가 얼마 후에 이미 체차하고서 다시 그대로 두는 것은 결단코 그런 이치

가 없다고 하고, 다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⑮-3 날짜의 기사는 원본과 개수본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첫 번째 기사는 원본에 세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기사는 일련의 사건이므로 개수본처럼 한 기사에 통합하는 편이 옳다. ⑮-4 기사도 마찬가지로 경우이다. 원본에는 조복양 등의 인피 기사가 27일에 가 있는데, 실제로 인피를 이틀이나 지난 27일에 했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27일에 인피 했어도 25일에 함께 수록하여 사건 진행을 알게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편집으로 보인다.

⑮-5 기사 역시 원본은 정지화의 인피를 분리하여 29일에 수록했다. 그러나 《송정원일기》에 따르면 정지화 역시 28일에 체직을 청했으므로 원본이 오류일 뿐 아니라, 동일 사건에 대한 인피 기사를 번거롭게 분리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은 듯하다.

다음은 양사(兩司) 논계나 인피 기사가 아닌 대신, 당상을 인견했을 때의 기사를 분할한 경우이다.

⑮-6. 11년 10월 13일(정유)

○ 상이 양심함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였다. 호조 판서 권대운이 아뢰기를,

“가을 석 달 동안에 사용한 쌀이 이미 3만 석을 넘었는데, 과외의 용도가 많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축이 바닥이 날 판이어서, 백관의 봉록도 지급치 못하게 되었고, 군병의 급료는 더욱 잇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라 일이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고, 교리 김석주가 아뢰기를,

“석 달 동안 사용한 쌀이 이미 3만 석을 넘어섰다면, 이것은 상께서 절약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궐내에서 먼저 검소한 생활을 하시어 비용을 힘써 줄이시고 지성으로 백성을 구제한다면 나라의 비용을 혹 잇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기근이 극심하였는데도 공주의 집을 짓는 일이 그치지 않아 공력과 비용이 수만 금이 들었기 때문에 신료들의 말이 이와 같았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급한 일은 신역을 감면하는 일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신료들의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조복양(趙復陽)은, 재해의 경중을 막론하고 일체의 역을 모두 감해야 하며 앞으로 용도를 잇덜 수 있는가의 여부는 논할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의 경비에는 반드시 7, 8천 동의 목면이 있어야 용도에 잇덜 수 있는데, 지금 만약 한꺼번에 이를 감한다면 나라의 계책이 또한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심한 읍은 전부 감하고 그 다음은 반만 감한다면 혹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

신하들을 인견하여 국정을 논의한 기사는 대개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같은 기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⑮-6 기사는 원본에서 일부 기사를 분리하여, 좌의정 허적이 각도 신역(身役)의 감면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원본 15일 기사로 나온다. 이는 적

절하지 못한 편찬이다. 그뿐 아니라, 《승정원일기》를 참고하면 재정상황에 대한 호조 판서 권대운의 논의와 허적의 발언은 모두 13일자에 실려 있는 개수본이 정확하다.

한편 같은 날짜에 실려 있는 기사의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다.

⑮-7. 8년 12월 20일(경인)

[원본]

- 도목정
- 박사 이석번과 전라 병사 민진익 탄핵
- 영녕전을 중건하고 담당자에게 상을 내림

[개수본]

- 전라 병사 민진익을 추고함
- 영녕전을 중건하고 도감 도제조 이하에게 상을 내림
- 도목정

⑮-8. 10년 5월 18일(경술) - 이 경우도 기사 순서가 바뀌었다. 샘플로.

[원본]

- 《심경》을 강론하고, 송준길의 귀향 만류, 북도 정역의 괴로움 논의
- 전 판서 서필원 삭출 논의 정계
- 우참찬 조복양이 송준길을 만류하도록 청하다
- 신정·윤이성 등이 송준길을 만류하도록 청하다
- 지평 김덕원이 방목을 잘못 쓴 이유로 피험함

[개수본]

- 문학 신정 등이 찬선 송준길을 만류하기를 청하다
- 관학 유생 윤이성이 좌참찬 송준길을 만류하도록 청하다
- 우참찬 조복양이 송준길이 만류도록 청하다
- 영종추 이경석이 세 번 사직 상소를 올리다
- 지평 김덕원이 방목을 잘못 쓴 이유로 피험함
- 전 판서 서필원 삭출 논의 정계
- 《심경》을 강론하고, 송준길의 귀향 만류, 북도 정역의 괴로움 논의

⑮-7 기사는 내용이 거의 같다. 하지만 같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순서가 바뀐 경우인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⑮-8 기사는 신정과 윤이성의 청을 원본에서 분리한 점, 이경석의 사직 상소가 원본 21일에 실려 있는 점을 제외하면 역시 내용이 거의 같지만, ⑮-7과 마찬가지로 기사 순서가 바뀌었다. 다만, ⑮-8 기사의 경우 《심경》을 강론한 경연기사가 통상 맨 앞에 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본이 타당할 듯도 하지만,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사안과 인물의 평가

위에서 시정기찬수범례 14조항을 기준으로 원본과 개수본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구 실록의 장단점, 보완점을 확인해보았다. 그런데 찬수범례의 비교만으로는 당시 주요 현안이나 인물에 대한 두 실록의 차이점을 보여주기에에는 미흡하였다. 본절에서는 현종 연간 중요한 현안이었던 두 차례의 예송(禮訟)과 대동법, 호포법 등 민생 및 재정과 관련된 사안이 어떻게 원본과 개수본에 반영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송시열과 송준길, 원두표, 조복양, 윤선도, 권시, 허적, 조정 등은 원본과 개수본에서 평가나 서술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거기에는 콩쥐팍쥐식의 논리도 있지만, 나름의 논거를 읽어낼 수 있는 평가도 있고 해석을 할 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대목도 있다.

(1) 예송

① 원년 2월 4일(기축)

[원본]

우의정 이후원(李厚源)이 죽어 승지를 보내 조의를 표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후원이 정사훈(靖社勳)에 들었기 때문에 과거 급제가 늦었어도 벼슬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지론은 비록 대단히 각박하였으나 그렇다고 남을 해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 처제인 김익희(金益熙)와 함께 힘과 마음을 합하여 송시열·송준길의 뒤를 적극 밀었고, 입이 마르도록 그들을 찬양하여 드디어 임금이 신임하고 온 조정이 무턱대고 따르게 만들었다가, 끝에 가서 예를 그르치고 정통을 어지럽게 하고야 말았으니, 후원도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죄 어찌 적다고 할 것인가.

[개수]

원임(原任) 우의정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이 죽었다. 후원의 자(字)는 사심(士深)이다. 체격은 옷을 못 이길 것 같았으나 기상은 사람을 쏘는 듯 빛이 났다. 나이 26세 때 정사 공신(靖社功臣)에 참록(參錄)되었는데 늑장을 부리며 군읍(郡邑)에서 살다가 만년에 등제(登第)하였으며 대성(臺省)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 엄격한 풍도로 스스로 견지하였다. 젊어서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문하로 수학했는데 장생이 극구 칭찬하였으며 송시열 등과도 벗으로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시열 등이 조정에 있게 되면서는 서로 공동으로 의논들을 하였는데, 이 때문에 상대편 사람들의 질시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는 홍여하(洪汝河)로부터 나라를 그르친다는 배척까지 받았지만, 사류(士類)의 추중(推重)을 받은 것 또한 바로 이 점에서였다. 당시 부귀에 탐닉하지 않은 훈신(勳臣)과 귀척(貴戚)이 드물었건만 후원만은 청렴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 않았으며, 고사(故事)를 익히 알고 사리를 분명하게 따지는 점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비견할 만한 자가 흔치 않았다. 임종할 때에 유차(遺劄) 8조(條)를 진달했는데, 상이 보고

나서 정원에 하교하기를,

“간절하기 그지없는 충성심이 언외(言外)에 넘쳐 흐르니 더욱 비감이 든다. 늘 좌우명으로 삼아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추후에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그에게 내렸다.

② 4년 4월 19일(병진)

○ 세자를 책봉하여 가르치라는 수찬 홍우원의 상소문 - 동. 원본에는 사론+서필원의 상소가 추가되어 있다. 이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지.

[원본]

수찬 홍우원(洪宇遠)이 상소…… 삼가 살피건대, 기해년 초에 대례(大禮)가 어긋나고 잘못된 이래 윤선도의 소에 이르러서 비로소 장자(長者)와 서자(庶子)를 구분하고 종통(宗統)과 적통(嫡統)을 구별하는 내용이 완비되었는데, 송시열의 패거리가 이 때문에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선도를 특히 심하게 다스렸다. 이에 조경이 상소하여 선도를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홍우원이 또 조경을 이어 말을 한 것이다. 그가 예를 논한 곳을 보건대 명백하고 꼭 알맞아 단안(斷案)이라고 할 만했으며 또한 그 끝은 기상이 늙름하여 범하지 못할 바가 있었으니, 참으로 명언(名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경과 홍우원이 대죄(大罪)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천운이라고 하겠다.

승지 서필원(徐必遠) 등이 아뢰기를,

“윤선도가 전소(前疏)에서 예를 논하기만 한 정도라면, 사람마다 각기 소견이 다른만큼 구차하게 동조할 수 없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만 종통·적통의 설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는 요컨대 위로는 전하께서 듣고 의혹하게 만들고 아래로는 못 사람들을 동요시키면서 단연코 송시열의 죄안(罪案)을 삼으려 했던 것이니, 그의 음험한 의도가 과연 어떠했다 하겠습니까. 선도가 이런 설을 내놓게 된 본래의 목적은 성상으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즉시로 노여움을 발동하여 일망타진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물정(物情)이 분개하며 놀라워했던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우원은 그만 이에 대해 ‘명백하고 적확하여 뒤바꿀 수 없는 논이다.’고 하고, 또 ‘어찌 그에게 사람의 화를 일으킬 뜻이 있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어찌면 이토록까지 사람이 혼폐(昏蔽)하단 말입니까.

기년(期年)으로 복제(服制)를 정하는 것은 국전(國典)상에 근거할 대목이 있는 반면, 삼년복으로 단정지을 경우에는 《예경(禮經)》 상으로 증거될 만한 것이 없는데, 시열이 시종 삼년복에 대해 어려워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대체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제 문제와 종통·적통 문제는 본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선도는 그만 복제를 가벼운 쪽으로 의논한 것을 가지고 종통과 적통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귀결시켰습니다. 이는 인심이 미혹되기 쉽고 관계되는 것이 작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전후에 걸쳐 대신(臺臣)이 입이 닳도록 극력 쟁집하였던 것인데, 그 이유는 대체로 공의(公議)를 따르고 국시(國是)를 정하려고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원이 말하기를 ‘시열을 위해 그 잘못을 덮어두었다.’고 하였으니, 아, 사

람의 착하지 못함이 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선도의 이 말이 본래는 시열을 무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 귀결점을 찾아 보면 그야말로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용서해 주어 유배만 보낸 것도 살리기 좋아하는 임금의 덕 아닌 것이 없는데, 우원은 그만 감언(敢言)하다가 죄를 얻었다고 하였으니, 아, 또한 괴이하다 하겠습니까. 도신(道臣)이 현도(縣道)를 통해 올려보낸 소장이라서 감히 퇴각시킬 수 없기에 한편으로 봉입(捧入)하면서 소회를 아울러 진달드립니다.”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예(禮)에 장자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어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종통과 적통을 중요시해서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복제의 경중과 종통·적통 문제는 본래 상관이 없는 일이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누구를 속이자는 것인가. 하늘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서필원은 무엇에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항직(抗直)함으로 자임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어찌 통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

③ 4년 8월 5일(경자)

[개수]

전 부사 허목 상소. …… 당시 윤선도 등이 의례(議禮)를 틀리게 했다는 것을 공박하면서 모두 종통(宗統)과 적자(嫡子)를 언질로 삼았는데 그들 뜻은 은연중 마치 대통(大統)이 다른 곳으로 귀속이라도 될 염려가 있는 것처럼 하여 공동(恐動)을 하고 모함을 했으며, 나라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허목의 이 말도 그 뒤를 이어 나온 말이었다. 이보다 앞서 유언 비어가 이미 나돌고 있었는데, 송시열을 헐뜯는 자들이, 시열이 원자 탄생 소식을 듣고는 좋아하지 않았으며 밖에 있으면서 소장을 올릴 때도 하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만들어내어 중외에 퍼뜨림으로써 헐뜯고 이간질을 하였고, 허목의 상소 내용 또한 이러하여 머리와 꼬리가 서로 호응하여 후일 화가 자리 잡을 발판을 만들었던 것이다. 흉악한 사람들의 마음 씹셈이와 생각하는 것들이야말로 참으로 참혹하다 하겠다.

④ 12년 3월 8일(기미)

[원본]

검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죽었다. 김좌명은 영의정 김육(金堉)의 아들이고 왕비의 백부인데, 사람됨이 총명하고 재주가 많으며 모습이 아름다웠다. 젊어서 급제하고 이어서 중시(重試)에 뽑혔으며 집에서는 행실이 있고 부지런하게 직책을 수행하였다. 일에 밝고 익숙하며 잘 살폈으므로 말은 곳마다 잘 다스려졌다. 호조 판서였을 때에는 서리들이 꾀를 부리지 못하였고 병조 판서였을 때에는 무사가 두려워 복종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수선 묘도(隨羨墓道)의 제도를 썼으므로 대관 민유중(閔維重)에게 탄핵을 받았고, 또 등대(登對) 때에 번번이 당론(黨論)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극구 말하고 또 당시 무리들과 기해년의 상복 제도에 대해 논하면서 윤선도(尹善道)의 말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당시 의논에 크게 미움을 받았으나 또한 굽힌 적이 없었다. 중요한 일들을 오래 맡아 심력을 기울이다 병이 되어 죽었다. 그러나 성질이 거만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하였으며 귀공자의

버릇을 털어버리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단점으로 여겼다. 대례(大禮)가 바로잡힌 뒤에 그가 삼년설(三年說)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현종(顯宗)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개수]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죽었다. 김좌명은 자(字)가 일정(一正)이고, 영의정 김육(金瑬)의 아들이며 왕비의 백부(伯父)이다. 사람됨이 총명하고 재능이 많았으며 용의(容儀)가 아름다웠다.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어서 중시(重試)에 발탁되었으며, 집에 있을 때에는 행실이 훌륭하였고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부지런하였다. 사람됨이 분명하고 빈틈이 없어서, 전후로 호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지내면서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간소하고 고집스러워 논의가 편협하여 사류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습성을 버어버리지 못하여, 일찍이 아버의 초상을 당했을 때에 수선(隧羨)의 제도를 사용하여 간관 민유중(閔維重)에게 탄핵을 받았다. 또한 기해년에 복제의 논의가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소견을 치우치게 고집하며 윤선도(尹善道)의 말을 옳다고 하여, 청론에 크게 비난을 받았다. 을묘 간당(乙卯奸黨)들이, 예론(禮論)에 공이 있다고 하여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 충숙(忠肅)이란 시호를 내렸다.

원본과 개수본에 모두 나오는 김좌명의 줄기인 ④ 기사는 예송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줄기에서 어느 곳도 김좌명이 복제논쟁을 정통성=대통(大統)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① 기사는 원본에서 이후원이 송시열, 송준길을 밀었다는 말과 함께, 예론에서 정통(正統)을 어지럽혔다고 강조하였다. 대체로 서인과 남인이 각각 기해예송에서 자의대비 복제를 기년복과 자취 삼년복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평가가 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원본의 사론에 이 사안을 정통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예송은 복제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런 예송 논쟁의 성격을 심각한 정치 현안으로 전환시킨 것이 윤선도의 예설이었다.⁵³⁾

윤선도의 견해는 자의대비의 효종에 대한 상복은 차장자에 대한 자취삼년상이라는 점에서는 허목과 같다. 그러나 효종이 종통을 이었지만 적통이 아니라는 송시열의 주장은 효종의 적통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윤선도의 논리였다. 아울러 윤선도는 상소 끝에서 “삼년상 여부가 임금과 국운 여부와 관련된다.”고 못박음으로써 논쟁을 극단화했다. 물론 극단적인 논쟁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니었다.

그러나 윤선도의 상소가 올라올 현종 원년 4월 당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윤선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안이 더 이상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권시(權諤)도 삼년상을 옹호하기는 했지만 윤선도의 과격한 언사를 비판했고, 원두표 등 대신들은 물론,

53) 《현종실록》 권2 1년 4월 18일. 윤선도는, “신은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느냐 않느냐와, 이 말대로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군주의 세력이 굳건하고 못하는 여부와, 국운[國祚]이 연장되고 안 되는 여부를 점칠 것”이라고 문제의 성격을 확대했다.

논쟁 당사자였던 윤휴마저도 사안이 사화(士禍) 수준으로 전개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일단 확대된 정쟁이 그대로 가라앉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역사이다. 윤선도가 귀양을 갔고 1671년(현종12)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기년복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군주를 비하하고 종통을 두 갈래로 나눈다.[卑主貳宗]”⁵⁴⁾고 비난했던 논거는 윤선도 자신이 개입할 수 없었던 갑인예송의 씨앗이 되었고 악화된 모습으로 재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본에 실린 ② 기사에서, “예(禮)에 장자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어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종통과 적통을 중요시해서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복제의 경종과 종통·적통 문제는 본래 상관이 없는 일이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누구를 속이자는 것인가.”라고 사론을 달았던 것은 윤선도의 사론을 계기로 복제논쟁이 종통, 적통의 문제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종실록》을 편찬한 편찬자들은 기해예송이 벌어졌던 현종 원년과는 달리 복제논쟁을 효종의 정통성문제로 단정 짓게 되었던 셈이다.

개수본에 실린 ③ 기사에서는, “윤선도 등이 의례(議禮)를 틀리게 했다는 것을 공박하면서 모두 종통(宗統)과 적자(嫡子)를 연결로 삼았는데 그들 뜻은 은연중 마치 대통(大統)이 다른 곳으로 귀속이라도 될 염려가 있는 것처럼 하여 공동(恐動)을 하고 모함을 했으며, 나라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허목의 이 말도 그 뒤를 이어 나온 말이었다.”라고 하여, 복제논쟁이 대통=정통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음을 밝히고, 윤선도가 이 문제를 효종의 정통성 문제로 비화시켰음을 지적한 것은 바로 원본 편찬자들의 입장 변화와 그에 따른 예송의 사화화(士禍化)를 지적한 것이었다.

(2) 민생과 재정

④-1. 즉위 5월 27일(정해)

[개수]

이 해 봄에 기근이 들어 상평창이 3월부터 죽을 쑤어 기민을 구제하였다. 평안도 안주 등 25읍도 3월부터 구제를 실시하다가 이에 이르러 그만두었다.

④-2. 즉위년 6월 2일(신묘)

[원본]

그해 봄에 기근이 들어 상평창이 3월부터 죽을 쑤어 기민을 먹이다가 6월에 와서야 정지하였다.

④-3. 즉위년 6월 18일(정미)

[원본]

54) 《명재연보》 권1 33년(1660) 현종대왕 원년(경자) 4월

비변사가 접계(粘啓)하기를,

“상주(尙州)의 군보(軍保) 강사인(姜士仁)이 태어나기도 전에 역이 정해졌던 정상이, 감사 홍위(洪葳)의 계본 내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아약(兒弱)의 예에 의하여 군포를 건감해 주시고, 그 당시의 목사는 조사해내어 죄를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개수]

조정이, 상주(尙州)의 군보(軍保) 강사인(姜士仁)이 그 어미의 배 안에 있을 때 남의 고소를 입어 군역(軍役)에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니, 곧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자였다. 즉시 군포(軍布)를 감해 주게 하고 또 그 당시 수령의 처벌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은 민생의 큰 폐단이 되는데, 심지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아이까지 역무에 배정되니 이는 고금에 없었던 일이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겠다.

④-1, ④-2 기사는 상평청 활동 기사인데, 원본에 나오지 않은 기사가 개수본에 나오거나 개수본에 나온 기사가 원본에 나오지 않은 경우이다. ④-3 기사는 어린 아이에게 군포가 징수되는 폐단에 대한 비변사의 계인데, 둘 다 실려 있으며 개수본에 사론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⑤-1. 원년 1월 7일(계해)

[개수]

좌참찬 송시열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어제 삼가 들건대, 상신(相臣)이 공안(貢案)을 개정할 일로 연석(筵席)에서 진달드렸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사소하나마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 있었기에, 신이 부득불 대략적으로 진달드릴까 합니다.

신이 선조(先朝) 때 공안에 대해서 언급하자 선왕께서 미친한 신을 돌아보시며 이르기를 ‘이 일은 열성조(列聖朝)에서 늘 변통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경이 시험삼아 몇 사람과 함께 개인적으로 서로들 상의하여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불가능하면 그냥 놔둬도 무방하다. 오늘날은 인정이 걸핏하면 분분해지니, 이서배(吏胥輩)들이 만약 공안을 장차 고친다는 말을 들으면, 필시 시끄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편해질 듯싶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먼저 헛소문을 내어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 하셨습니다.

이에 신이 명지(明旨)를 받들고 나와, 현재 우상(右相)인 신 정유성(鄭維城) 및 연성군(延城君) 신 이시방(李時昉)과 함께 공동으로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 다시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이는 많은 것을 덜어 적은 것에 보태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균등하게 해 주려는 것일 뿐이니, 대단하게 건감할 곳은 없을 듯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어공(御供)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데도 재물을 허비하는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

장 심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천하기 짝이 없는 도라지 나물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여염의 하천배들도 싫증을 내고 내버리는 물건인데 1년 동안 어공에 쓰느라고 드는 비용이 무려 백미(白米)로 3백 90석(石)이나 됩니다. 또 이시방의 말을 듣건대, 어공을 담당하는 곳에서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호조에서 매년 더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하였더니, 선왕께서 크게 놀라시며 이르기를 ‘이렇게까지 되었던 말인가. 이런 종류는 일일이 써서 가지고 오라. 긴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모조리 감하겠다.’ 하고, 또 분부하기를 ‘외방에서 진상하는 물건 가운데 혹 냄새가 좋지 못하다 하여 내버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물을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니 매우 아까운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대답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모름지기 명(明)나라의 법을 준용하여 공상(供上)에 관계되는 일체의 물건은 모두 안에서 사서 쓰도록 한 뒤에야 백성들이 그나마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선왕께서 분부하기를 ‘앞으로 시험삼아 조용히 상량(商量)해 보도록 하자.’ 하였는데, 그 뒤 일이 완결되기도 전에 선왕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아, 비통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상신(相臣)이 말한 바 ‘그 뒤 계달하지 않은 것은 필시 편리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 듯합니다.

《주역》에 말하기를 ‘궁(窮)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하였는데,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적게 변하면 적은 이익이 있고 크게 변하면 큰 이익이 있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볼 때 백성의 곤궁함과 재물의 고갈됨이 이토록까지 극도에 이르렀는데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본 채 끝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선왕께서 당시에 가지셨던 마음과 매우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신이 직접 덕음(德音)을 받든 것이 늘 귀에 들리는 듯하기에 지금 감히 눈물을 흘리며 진달드렸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양찰하시어 용서해 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진달한 말들은 곧 경이 선조(先朝) 때 명을 받든 일인데, 경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상과 연성군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그들만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는가. 바라건대 경은 흥측한 말에 동요되지 말고 마음을 바꿔 올라와서 국가의 대사로 하여금 선조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오로지 경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하였다.

⑤-2. 4년 3월 12일(경진)

[개수]

호남에 대동법을 설행하였다. 1결당 가을에 쌀 7말, 봄에 6말을 봉납하되 올 10월부터 신결(新結)에서 수확한 쌀을 봉납하여 내년 9월까지로 하였다.

본도는 임인년(266)의 시기전(時起田)이 19만 8백 55결인데 복호전(復戶田) 2만 1천 84결을 제하면 실결수는 16만 9천 7백 71결이다. 1결마다 13말을 거두면 14만 7천 1백 34석이 되는데 6만 1천 2백 80석은 상납하고 8만 5천 9백 16석은 본도에 유치(留置)하여 중외의 비용에 충당한다. 28사(司)의 【봉상시·기인(其人)·제용감·장흥고·의영고·풍저창·사포서·

사도시·예빈시·공조·사축서·선공감·전설사·내섬시·전생서·내의원·혜민서·사재감·전의감·군기사·교서관·상의원·내자시·분봉상시(分奉常寺)·조지서·장원서·귀후서(歸厚署)·와서(瓦署).】 원공물(元貢物) 및 전세 조공물(田稅條貢物), 예조와 관상감의 각종 종이, 공조의 칠전(漆田) 전칠(全漆)과 기인 작지(其人作紙), 호조의 역가 작지(役價作紙), 각 관아의 경주인방자(京主人房子)의 고가(雇價), 조지서의 저전(楮田) 소출(所出), 장원서의 과원(果園)의 결실(結實), 비변사의 유지의(濡紙衣)와 세폐상차목(歲幣上次木)267) 내궁방의 부레풀[魚膠]과 정근(正筋), 탄일(誕日)과 삼명일(三名日)【정조(正朝)·단오(端午)·동지(冬至).】에 진상하는 갑옷·투구·말과 마장(馬裝), 사복시의 분양마(分養馬)와 마장에 대한 작지, 훈련 도감의 진사(眞絲)와 부레풀, 인수궁(仁壽宮)의 물선(物膳),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고사리, 내의원의 우황·웅담(熊膽)·사향(麝香), 영접 도감의 경비(京婢)와 방자(房子)의 대가는 모두 쌀로 마련하는데, 본청에서 지급한다. 1년에 지급하는 수를 통계하면 5만 6천 8백 89석이다.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신조(新造)와 개삭(改槳), 본도의 정해진 삭선(朔膳)과 진상 방물, 내의원의 약재와 청대죽(靑大竹), 종묘에 천신하는 물선, 감사가 임지(任地)에 도착하여 진상하는 단오 선자(端午扇子), 내궁방(內弓房)의 유물(油物), 공조에서 진상하는 선자,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의 영수(營需)와 오영장(五營將) 및 군관(軍官)의 요미(料米), 각 관아에서 쓰이는 유청지(油淸紙地), 사객(使客) 및 감사에게 지공(支供)하는 가교(駕轎)·모물(毛物)·종이, 석전제(釋奠祭)의 폐백과 우포(牛脯), 사직과 사액 서원의 폐백, 봄·가을로 군사 훈련할 때의 호궤(犒饋) 값, 경기전(慶基殿)의 제물(祭物)과 참봉(參奉)의 양찬(糧饌) 값, 월과(月課)·군량(軍糧)·군기(軍器) 값, 해운 판관(海運判官)의 지지가미(紙地價米)를 모두 계산하면 3만 7천 7백 32석인데 본도에 유치한 쌀로 충당한다.

그런 뒤에 8천 1백 84석이 남는데 이 남은 쌀로 1년 동안 드는 각종의 쇠마(刷馬)와 서울에 상납하는 미포(米布)의 운송비인 선가(船價)·마가(馬價)와 기타 별역(別役)에 책응(責應)하는 비용을 삼는다.

연해(沿海)의 읍은 쌀로 상납하고 산군(山郡)은 벼로 환산하여 상납하는데 쌀은 먹을 수 있는 쌀로 하고 벼는 다섯 새[五升] 35척(尺) 벼로 한다. 풍흉을 가리지 않고 쌀 6말 5되에 벼 1필로 환산한다. 각사(各司)의 공물가(貢物價)는 해읍과 산군을 가리지 않고 미포로 교급(交給)하여 풍흉에 조절하는 바탕을 삼는다. 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위전(位田)의 3세(稅)도 본관에 정급(定給)한다. 관아에서 쓰는 마태(馬駄)와 인부(人夫)는 모두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게 하여 말 한 마리, 인부 한 사람도 백성에게서 사사로이 차출하지 못하게 한다. 내외의 크고 작은 비용은 모두 선혜청에서 재량을 받고, 연말에 문서를 정리하여 대조조사해서 남은 쌀이 있으면 회록(會錄)한다. 과외로 민력을 사용할 경우 연호(烟戶)를 반드시 아뢰어 분부를 받고 나서 쓰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는다. 삼공(三公)을 도제조로 삼고, 또 중신(重臣) 2명을 제조로 삼되 호조 판서는 예겸(例兼)한다. 호서의 대동법과 함께 선혜청에 합설(合設)한다.

⑤-3. 5년 11월 1일(무자)

[개수]

이보다 앞서 대사간 남구만(南九萬)이 공안(貢案)을 개정하기를 계청하였는데,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전부터 의논하는 자들이 공안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많이 말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변통하지 못한 것은, 대개 사세상 곤란한 점이 있어서였습니다. 지금 간관이 이와 같이 아뢰어 청하였으니, 호조와 예조 판서, 선혜청 당상, 본사 유사 당상이 회동하여 공안에 실려 있는 각종의 원수(元數)와 정해 놓은 국용(國用)의 식(式)을 계산하되, 토산물이 아니고 한 철에만 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배정할 만한 것을 반복해서 강구하고 편리 여부를 따져본 다음, 품의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그러나 그후에 묘당에서 끝내 시행하지 않았다.

살피보건대, 우리 나라 근래의 폐단 중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피폐해져 조식도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흘러온 폐단이 점차 쌓여 문득 전례가 되어, 위아래가 모두 준행하여서 고칠 수 없게 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삼사(三司)의 관원이 혹 한 해가 넘도록 쟁집하고 입이 닳도록 말하여 허락받은 것을 묘당에서 매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 오랫동안 방치시키면서, 위로는 임금의 명을 폐기시키고 아래로는 물의를 막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 국사가 어찌 해볼 만할 리가 있겠는가. 시장(柴場)이나 염분(鹽盆)·어전(漁箭)을 혁파하는 일과 같은 것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모두 윤허를 받았으나 끝내는 실효가 없으며, 이른바 소결청(疏決廳) 및 공안을 개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윤허가 내린 후에 또한 모두 폐기하였으니, 대신들이 국사를 피함에 불충스럽고 명령을 어김에 거리낌이 없는 바, 통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⑤-4. 7년 10월 26일(계유)

[개수]

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표류해 온 남만인(南蠻人)에 대해 답할 서계의 일을 물으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난해 청나라 사신이 나올 때에 남만인들이 갑자기 홍제교의 주변에 나와 갖가지로 호소하였기 때문에 전라도에 나누어 두었는데, 왜국으로 도망쳐 들어간 자들은 필시 이 무리일 것입니다.”

하고, 승지 민유중이 아뢰기를,

“신이 호남에 있을 때에 보았는데, 이 무리들이 연로에서 구걸하다가 신에게 호소하기를 ‘만약 저희들을 왜국으로 보내준다면 저희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도망쳐 왜국으로 들어간 것이 의심할 게 없습니다.”

하자,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남만인이 타국으로 도주하였는데도 지방 관원이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았으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본도에 명해 조사하여 아뢴 다음에 치죄하라고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각 관서에서 노비를 허명으로 기록하는 폐단을 한 번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대 조정에서 일찍이 조사하여 정리한 적이 있었으니, 지금 도감이 또한 이에 따라 국(局)을 설치하여 그 일을 맡아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별도로 청 하나를 설치할 것 없이 본도로 하여금 문안을 수정하여 비국에 보내게 한 다음 비국의 당상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되, 비국의 당상 이외에도 이 직임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임명하시어 그들과 상의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호남 산간 고을에 끼치는 대동법의 폐단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말하였기 때문에 막 폐지하였다. 그런데 지금 어사 신명규가 올린 서계(書啓)를 보니, ‘백성들이 다시 시행하였으면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일의 이해가 어떠한가?”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산간 고을에 대동법을 폐지한 뒤로 호남 사람이 심지어 신에게 허물을 돌리면서 편지를 보내 책망하였는데, 대체로 당초에 폐지하기를 원한 고을은 다만 두서너 개의 큰 읍뿐이었고 그 나머지 작은 읍들은 모두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의 뜻에는 폐지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었는데, 삼사의 신하가 서로 앞을 다투어 불편하다고 하였고 관찰사도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유중은 그 당시 감사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도 전일에 경솔하게 폐지하자고 청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자, 유중이 아뢰기를,

“신이 서울에 있을 때에 이미 산간 고을에는 대동법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도에 안찰사로 나가 죽 고을들을 돌아볼 때에 곳곳마다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 모두 폐지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대동법의 편리 여부에 대해 물을 때에 민정을 자세히 열거한 다음 치계하여 폐지하자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폐지한 뒤에 또 들으니, 민간에서 도리어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폐지하기 전에 크고 작은 고을들이 모두 일시에 쌀을 많이 내는 것과 목면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을 큰 폐단으로 여기었는데, 폐지한 뒤에는 경각사(京各司)가 상납하는 공물의 값을 모두 면포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상납할 때 너물로 쓰는 것과 뿔자받는 폐단은 대동법에 없었고 공물로 바치는 벼 품질이 전보다 더 정밀하고 좋아 하였으므로 사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불편하다고 한 것이며, 경각사 주인 무리들도 공물의 가격이 대동법을 시행할 때보다 못하다고 원망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백성의 소원에 따라 다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유중이 또 아뢰기를,

“단 본도의 대동법에 매긴 1결에 납부하는 13두를 올봄부터 영원히 1두를 감해 줄 것입니다마는, 12두도 여전히 너무 많다고 봅니다. 지금 1결에 11두의 제도로 정한다면 크고 작은 고을을 막론하고 백성들이 반드시 편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12두의 제도는 처음에 비해 감해졌는데 지금 또 1두를 감해 준다면 백성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필시 용도에 부족한 우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남은 쌀을 모아 두어 불시의 수용으로 삼되, 만일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 거두어들일 쌀을 감해줌으로써 백성의 힘을 덜어 주도록 한 것은 선대 조정에서 대동법을 시행할 때의 본 의도였으니, 지금 다시 더 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산간 고을에 대동법을 다시 시행하기로 의논해 정하였으니, 명년 봄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명년 가을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명년 목화가 나오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니, 가을이 된 뒤에 받기로 기한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중이 아뢰기를,

“대동의 쌀을 춘추로 나누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는 이에 따라 나누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리하다고 하나, 호남은 구결은 줄어들고 신결이 늘어남으로 인해 해당 관청에서 신결에 따라 두 분기에 낼 쌀을 춘궁기에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괴롭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호서의 예에 의하여 가을의 쌀은 구결의 수로, 봄의 쌀은 신결의 수로 나누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호조 판서 김수흥이 아뢰기를,

“각사가 공물을 상정(詳定)한 원래 수량 이외에 모두 더 적용하는 수량이 있으므로 사실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공물 주인 무리들이 날마다 하소연하자, 할 수 없어서 삼분의 일을 주기도 하고 사분의 일을 주기도 하는데, 일이 매우 구차하고 소략합니다. 대체로 그 값을 베로 계산하면 3백여 동이나 되고 쌀로 계산하더라도 5천여 석에 밀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백성에게 더 부과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서 재물이 생길 길도 없습니다. 삼가 보건대, 평안도의 전세는 으레 받아서 각 고을에다 놔두고 회록(會錄)하고 있으므로 본도에서 곡식이 많아 늘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본도의 전세로 연도를 한정하여 가져다 사용한다면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 일은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도 전세는 연해안과 강변 그리고 직로(直路)를 제외한 그 나머지 고을들은 2년을 한도로 가져다 쓰도록 허락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⑤-5. 8년 2월 9일(갑인)

선혜청이 아뢰기를,

“지난해 온천에 거동하신 뒤로 본도의 역(役)을 견감해 주기 위해 온 도내의 받아들일 대동미에 대해 1결당 2두를 감해 주었으며, 부근의 14개 고을은 1결당 3두를 감해 주기도 하고 2결당 2두 5승을 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계하면 1만 8천 2백 18석인데,

두 해에 감해 준 것이 무려 3만 6천 4백여 석이나 됩니다. 본청의 수용이 형편이 없는데다 지금 각사(各司)에 줄 공물가(貢物價)의 수량이 매우 많으나 다른 데서 가져다 쓸 길도 없습니다. 호조에서 세금으로 받아놓은 콩 8천 2백 63석을 가져다 사용하여 만분의 일이나마 보탬이 되게 해 주소서.”

하니, 상이 윤택하였다.

원본과 개수본을 비교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바로 ⑤-1, ⑤-2 기사 같은 경우가 아닌가 한다. 인조대부터 대동법 시행을 주도하던 김육은 1658년(효종9) 9월 5일에 세상을 떴다. 호서(湖西) 대동법을 추진 중 신임 감사로 대동법 반대론자였던 권우(權堧)가 천거되자, 김육은 현지 실정을 잘 아는 감사가 중요하다면서 서필원(徐必遠)을 천거하였다. 누구도 김육이 대동법을 추진하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송시열은 스승인 김집과 김육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때도 김육의 의도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김육의 마음을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송시열은 훗날 김육에 이어 현종대 대동법 실시의 후원자가 되었다. 이는 양전을 바탕으로, 전결에 대한 공물 분정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졌다. 대동법 실행 일반에 대한 규정인 ‘사목(事目)’에 따르면, 호서 대동법에서는 결당 10두씩 거두어 총 83,164석(石)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는 기존 공물 및 진상의 액수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전결에 따라 부과되었으므로, 가난한 백성들이 실감한 감세 효과는 몇 배에 달하였다.

⑤-1 송시열의 상소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공안을 개정해야 전세로 상정할 공물의 숫자가 줄고, 그 숫자가 줄어야 전세로 된 대동미 징수액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공안 개정은 대동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조건에 가까웠다. 특히 진상(進上) 공물은 대동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진상 공물 개정은 그 자체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기도 했다. ⑤-3 남구만의 상소는 바로 그런 맥락을 보여주는 기사인데, 원본에서 누락하였다.

효종 때 호서 대동법이 호응을 얻고 정착되어가자, 호남 지방에서도 대동법 시행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대동법을 반대하던 산군(山郡)까지도 대동법 찬성으로 돌아서, 원래 호남 산군 대동법은 효종 10년 가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효종이 5월에 세상을 떠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번 늦어진 산군의 대동법은 현종 7년에 가서나 확정되었다.

현종이 즉위한 뒤, 김육과 함께 효종대 대동법의 주역이었던 이시방은 송시열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송시열은 곧 대동법 실시를 요구하는 차자(劄子)를 올렸다. 이것이 ⑤-1 기사이다. 이에 조정의 논의를 거쳐 전라감사에게 의견을 묻고는, 이듬해 그러니까 현종 원년 가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주무 당상관이었던 이시방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현종 원년의 흉년은 대동법 실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아 다시 연기되었다가, 1663년(현종4)에 이르러서야 산군 대동법이 결정되었다.

이것이 ⑤-2 기사이다. 이런 중차대한 기사를 누락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663년 결정된 호남 대동법은 공물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1666에(현종7)에 다시 확정되었다. ⑤-4 기사는 그 논의를 보여준다. 그런데 원본에서는 남만(南蠻) 표류인의 처리에 관한 기사는 남겨두었으면서도, 바로 이어 논의되었던 호남 산군 대동법 논의는 누락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편찬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1662년(현종3)에 양전이 실시되었고 공물가는 결당 12두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1664년(현종5)에 경기 선혜법이 다시 정비되었다. 규정 외의 부과액이 대동미로 통합되었고, 백성들에 대한 추가 수취가 금지되었다. ⑤-5 기사는 그 과정에서 선혜청의 운영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인데도 원본에 누락되었다.

⑥-1. 3년 4월 12일(을묘)

[개수]

사헌부가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에 옥을 설치하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에 이르러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 사람을 잡아가두어 고문을 가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죄의 등급을 결단하는 것이 형조와 다름없으니 이는 성조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 대신의 진달을 인하여 전하께서 앞으로는 내수사에서 죄인을 처결할 경우 형조의 도류안(徒流案)에 기재하도록 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있으면 내수사에서 논죄하여 결단한 뒤에 다만 문안(文案)을 형조로 이송할 뿐이니 사체가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름없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내수사의 옥과 내수사 관원의 인신(印信)을 일체 혁파하여 왕된 자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⑥-2. 4년 11월 4일(무진)

[개수]

그 이튿날에도 남구만이 입대하여 차자의 뜻을 일일이 아뢰었는데, 상이 조종조 때에 내려준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부터 새로 떼어주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타이르면서 끝내 듣지 않았다.

산림과 천택은, 오랜 옛날에는 우형(虞衡)이 관장하였는데, 어염(魚鹽)에서 생기는 이익의 경우는 관중(管仲)이 제(齊)나라를 풍요하게 만든 기반이었으며, 한(漢)나라 때 제도에도 수형 소부(水衡少府)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용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형의 직임도 활용하지 못했고, 어염에서 산출되는 이익을 모조리 사설(私室)에 돌아가게 함으로써 산림의 경우 불을 질러서 개간한 것까지도 모두 제궁(諸宮)의 둔장을 설치하는 데로 들어가고, 바다에 인접한 어염의 경우는 모두 세력자에게 떼어주는 명목으로 들어갔다. 시폐를 논의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였으니 그야말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커다란 폐단이었다. 양사가 1년이 넘게 쟁집하였지만 상은 견제(牽制)로 끝내

면서 용단을 못 내렸다. 간혹 처음에는 혁파하였다가도 끝내는 예전처럼 그대로 두어 누적되는 폐단이 나날이 불어나고 백성의 산업이 갈수록 궁해지게 되어, 양민은 갈수록 줄어들고 공법(公法)은 시행되지 않았으니 이루 다 탄식할 수 있겠는가.

⑥-1, ⑥-2 기사는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선조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내수사는 왕실 재정의 기반이 되었고, 왕실의 권위 때문에 특권을 누리며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기 시작했다. 어장(漁場)과 천택(川澤), 개간지를 절수(折受)받아 기존에 백성들이 누리던 공유지의 혜택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뜻있는 관료나 학자들은 끊임없이 내수사 혁파를 주장했던 것이다.

⑥-1 기사는 내수사가 별도의 감옥을 운영하는 폐단을, ⑥-2 기사는 둔전, 어염(魚鹽)을 특권적으로 전유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런 기사는 모두 원본에서 누락되었다. 민생과 재정의 변통에 대한 기사는 원본에서 이렇게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소략하게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1665년(현종6) 10월 10일(임술)에 올린 부제학 조복양 등의 상차는 대동 수미·양역·공안·수포·조적 등의 폐단을 논한 풍부한 내용이었으나 원본에서는 간단히 개혁내용만 언급한 뒤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끝부분만 전제하였다. 반면 상차의 중요성 때문인지 개수본에서는 거의 전제하였다.

⑥-3. 6년 10월 10일(임술)

부제학 조복양 등이 차자를 올려 학문을 힘쓰고 덕정을 힘써 닦을 것을 청하였으며 또 호오(好惡)를 분명히 하고 유현(儒賢)을 나오게 하고 민역(民役)을 견감시키고 공안(貢案)을 고치고 양사의 계사를 따르고 이무(李瑢)의 죄를 풀어주고 옥송(獄訟)을 잘 다스리고 교화를 밝히고 진연을 정지하는 등의 일에 대해 누누이 진달하였으며, 끝에 아뢰기를,

“진실로 원컨대 전하께서는 큰 뜻을 진작하여 통렬히 스스로 극책(剋責)하시고 기왕의 잘못을 깊이 징계하여 전일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마소서. 그리고 천도(天道)를 높고도 멀다고 여겨 경외하는 마음을 늦추지 말고, 민사(民事)를 완만히 해도 된다고 여겨 보호하고 구휼하는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말고, 유신이 이미 떠났다고 하여 학문에 힘쓰는 정성을 태만히 하지 말고, 국세가 돌이키기 어렵다고 여겨 큰일을 하려는 뜻을 포기하지 마소서. 이것으로 신공(臣工)들을 책려하고 이것으로 사물에 수응(酬應)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덕이 연마되어 민심이 기뻐하고 천의(天意)를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의 답이 양사에 내린 것과 같았다.

(3) 상이한 인물 평가

① 송시열

①-1. 즉위년 5월 16일(병자)

○ 송시열이 효종 지문(誌文) 찬술의 교체를 청하는 계

①-2. 즉위년 6월 4일(계사)

○ 송시열이 흥여하의 상소에 자신을 배척했다고 올린 사직 상소

①-3. 즉위 6월 12일(신축)

[원본]

비변사가 송시열을 본사의 제조로 임명할 것을 청하였다. 시열이 얼마 후 귀향하여 여러 해를 두고 오지 않았는데도, 제조의 직은 그대로 띠고 있는 채 한 번도 사의를 표한 일이 없었고 비국에서도 감히 그의 체직을 아뢰지 못했는데, 그의 기염이 대단하기가 이 정도였다.

[개수]

비변사가 송시열을 그대로 본사의 제조에 차임할 것을 청하였으니, 대개 이판을 체직하면 겸직한 제조도 함께 체직되기 때문이다.

삼가 상고하건대, 시열이 물러난 후 이공(貳公)·중추(中樞) 등의 직임을 비록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조정은 직무가 없다는 이유로 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비국 당상의 직임도 일찍이 사양하였으나 면직을 얻지 못하였다. 조정이 체직하지 않는 것은 또한 성상의 예우가 쇠하지 않아 부름의 명령이 계속되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 것 때문이었는데, 질투하는 자들은 이로써 시열을 질시하여 기세의 성대함이 이와 같다고까지 하니 매우 심하다.

①-1, ①-2는 원본과 개수본이 거의 같다. 이밖에도 송시열과 관련된 사실은 두 실록이 같은 경우가 많다. 차이는 ①-3 기사처럼 사론에서 발생한다. 원본에서 송시열의 겸직 체직을 청하지 않은 이유를 ‘(송시열의) 기염이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논거가 자못 박약하다. 개수본의 사론처럼 송시열에게 직무를 띠게 하려는 뜻과 흔히 있는 예우로 보아도 무방할 일이기 때문에 개수본에서 원본 사론을 옆두에 두고 ‘질시’라고 표현한 것이 그리 과하지 않은 반박으로 보인다.

①-3. 즉위년 7월 29일(무자)

[원본]

심유의 조부 심집이, 남한 산성에서 강화할 때 임시 대신(大臣)의 직함을 지니고 오랑캐 진중으로 갔었는데, 그들과 대화할 때 형편없는 것들이 많았다. 이에 효종이 나라를 팔고 구차히 살기를 꾀했다 하여 관작을 추탈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때 와서 심유가 시열의 기세를 빌려 신원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개수]

삼가 살피건대, 《정원일기》에

“심집이 오랑캐의 진영에 이르자 강화하는 일을 가지고 마부대(馬夫大)가 묻기를 ‘너희 나라가 저번에도 가짜 왕자(王子)로 우리를 속였는데, 이번에 온 왕자는 진짜 왕자(王子)인가?’ 하니, 심집이 두려워 어쩔 줄 모르다가 답하기를 ‘이번 역시 가짜 왕자이다.’ 했다. 오랑캐가 크게 화를 내고 즉시 돌려 보내면서 말하기를 ‘세자(世子)가 나온 연후에야 강화를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했고, 정축년(1637, 인조15) 겨울 헌부의 계사에 이르기를

“심집이 감히 왕의 가짜 동생이니 임시 대신이니 하는 말을 청인(淸人)에게 하여 박난영(朴蘭英)이 진짜 왕의 동생이고 진짜 대신이라고 답한 말과 크게 어긋나게 되었는데, 이 때 문에 그들을 화나게 만들어 난영이 해를 입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사행(使行)을 면하고자 하며 나라를 팔아먹고 화를 일으킨 정상이 지극히 형편없는데, 단지 관직만 삭탈하는 것은 아이들 장난과 같습니다. 먼 변방으로 정비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심집이 죄가 비록 무거우나 사실상 다른 마음이 없었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무인년(1638, 인조16) 2월에 이르러 헌관이 탑전에서 연달아 아뢰니, 상이 답하기를

“심집의 일에 대한 논계는 지나친 듯하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것도 아니고 또 사행(使行)을 면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갑자기 논죄한다면 죽어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또 그 사람을 보건대 간사한 마음이 없는 자이다. 지금에 이르러 논집하는 것은 부당하다.”

했다. 그 후 대각의 논계에 또

“설사 두려워서 말을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는 역시 큼니다.”

하니, 이튿날 상이 비로소 문의 출송(門外黜送)을 명하였고, 오래지 않아 종백(宗伯)10)으로 삼았다.

이상 대각의 계사 및 성상의 비답을 보면 심집의 일에 대해서 당시의 실정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의 아들 동귀(東龜)가 효행(孝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관직을 추탈당한 것을 억울하게 여겨서 등에 종기가 나기까지 하였다. 죽음에 임해 그 아들에게

“나는 죽어도 반드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죽자 과연 그랬다. 그 아들이 감겨 주려고 했으나 감겨지지 않았는데, 듣는 자들이 슬퍼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이 일을 경연에서 아뢰었으나 신원되지 못했고, 오랜 뒤에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그 억울한 상황을 진달하니, 특별히 그의 관직을 회복하게 하였다.

①-4. 1년 11월 15일(병인)

[원본]

이조 판서 송시열이 회덕(懷德)에 있으면서 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는데, 윤선도(尹善道)의 상소 내용을 길게 인용하여 피험하니, 상이 우악하게 비답하고 불허하였다. 이때 시열이

사직소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당시 사필(史筆)을 잡은 자가 필시 충실히 기록했을 것인데도 이때에 이르러 기록하지 않았으니, 너무 거칠고 포악하여 일부러 덮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①-3에서 조부 심집의 신원을 청한 심유를 두고 송시열의 기세를 빌려고 했다고 비판했는데, 개수본에서는 《승정원일기》를 근거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원본의 근거 없는 감정적 추정보다 개수본의 이런 방식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①-4 기사의 사평은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상소의 내용이 ‘거칠고 포악’했다면 논란이 되었을 것이고, 인형하여 사직하는 상소는 내용이 이전 상소와 같을 경우 상소한 사실만 기록하고 내용은 수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배경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송준길

송준길에 대한 원본의 사론은 송시열과 매우 흡사하다. 1659년(현종즉위) 6월 5일(갑오)에 올린 송준길의 차자가 원본보다 개수가 상세한 것은 원본과 개수본의 일반적인 성격, 즉 상소나 차자를 개수본이 비교적 상세히 수록했던 편찬 방침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②-1. 즉위년 7월 11일(경오)

[원본]

이조 판서 송준길이 청대하고 입시하여, 맨 먼저 옥당의 일에 대해 아뢰기를,
“준엄한 전지 아래 옥당 신하들의 기상이 시름에 쌓이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화평한 하교를 내리시어 다시 들어와 입직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마땅히 경의 말을 따르리라.”

하였다. 준길이 또 아뢰기를,

“건좌의 산은 모든 면이 편리하고 수원 산은 하나하나가 불편하므로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이 꼭 수원을 쓰지 말자고 하는 데는 깊은 뜻이 따로 있으나, 그것을 감히 소장이나 차자에다 번거롭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준길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비기(秘記)에 ‘국가에 일이 있으면 수원에서 변이 일어나 서울과 나라 안이 불안해질 것이다.’고 한 말이 있는데, 그 때문에 모두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듣지 못했던 말인데 사실이 그렇다면 경들이 뜻이 있어 한 일이구나.”

하였다. 준길이 또 아뢰기를,

“송시열이 불안해하는 것은 오로지 흥여하 상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날 선대왕께서 온 나라를 시열에게 맡기고 그의 말이면 듣지 않은 말이 없었으며, 그가 하려는 것이면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릉 문제로 전후 누차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깔끔한 그의 마음에 개탄스러운 생각이 없지 않아 떠나고 싶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어 자기의 직을 갈고 다시 시열을 제수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수원은 서울 인접의 중진(重鎭)으로서 하루아침에 읍을 옮긴다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조정 신료들이 난색을 표하는 자가 많았고 그리하여 산릉을 정하는 논의가 오래도록 결정이 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준길이 유자(儒者)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여, 마치 화복(禍福)으로 상대에게 충격을 주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는 듯이 하였으므로, 식자들이 비웃었다.

②-2. 즉위년 12월 5일(신묘)

[원본]

삼가 살피건대, 윤문거가 비록 조용히 물러나 있는 사람으로 자처하고는 있으나, 다리 병으로 걷지 못하고 있으니 그에게 무슨 계책이 있다면 문의하면 될 것인데, 그를 헌장으로 추천하였으니 의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박장원을 발탁하여 참판으로 제수했다가 금방 지방의 감사에 그대로 했으니, 관동의 구임(舊任)으로서 남궁(南宮 예조)의 새 자급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그런데 송준길이 한 마디 하자 대신들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일들이 대체로 이 모양이었다.

②-3. 즉위년 12월 19일(을사)

○ 상이 이관 송준길을 인견함

②-1 기사는 효종의 산릉을 선택하는 논의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원본 사론에서 “송준길이 유자(儒者)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여, 마치 화복(禍福)으로 상대에게 충격을 주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는 듯했다.”는 지적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비기(秘記)’를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그 비합리적 근거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②-2 기사에서 다시 송준길을 두고, “송준길이 한 마디 하자 대신들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한다. 송준길이 산릉으로 인정받았지만 대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가 조금 약한 듯한 확대해석이나 비난이 원본 사론에 자주 보이는데, 이는 당초 개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거이기도 했다. ②-3 기사처럼 매우 긴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원본에서 전혀 신

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현종실록》의 흠결이었다.

③ 원두표

개수본의 원두표 줄기에, “성질이 자못 거칠고 오만하여 사론의 추앙을 받지 못하였다. 인조 말년에 김자점과 틈이 벌어져 각각 봉당을 세워 배척을 하였는데, 얼마 뒤에 김자점이 모역으로 죽음을 당하자, 의논하는 자들은 또한 원두표를 군자의 당이라고 여기지 않았다.”⁵⁵⁾고 하였듯이, 원두표는 《현종개수실록》을 편찬했던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원본 사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 원두표는 송시열, 송준길에 대한 원본의 사론과 다른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그 배경이 분명하지 않다. 먼저 아래 자료를 보기로 한다.

③-1. 2년 윤7월 13일(경인)

○ 우의정 원두표가 산전세와 승려에게서 쌀 거두는 일을 의논함.

③-2. 3년 6월 3일(갑진)

[원본]

사신은 논한다. 상이 궁가(宮家)의 일에 대해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병통을 아직 없애지 못한 관계로 그 일에 조금만 언급이라도 되면 번번이 미안한 분부를 내리곤 하였다. 그래서 조복양이 매우 간절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막연하게만 듣고 살피지 않았다. 그런데 원두표는 나라의 인친(姻親)으로서 정축(鼎軸)에 몸을 담고 있는 신분인 만큼 그 한 마디가 성상의 뜻을 유도하기에 충분할 텐데, 그런 말을 개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상을 따라 대관(臺官)을 비난하고 배척함으로써 인군(人君)이 대각을 경시하는 폐단을 열어놓았으니, 그야말로 같이 임금을 섬길 수 없는 자라 하겠다.

③-3. 3년 6월 25일 병인

[원본]

사신은 논한다. 원두표가 전례(前例)까지 인용하면서 스스로 변명하려고 한 그 의도가 교묘하기도 하다마는 그 말은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서필원이 상소한 내용을 보건대, 대체로 만리를 상신(相臣)의 아들이라고 배척하면서 본관록(本館錄)에도 끼이지 못했는데 도당록(都堂錄)에는 참여되었다는 것이었다. 모르겠다면, 윤환(尹暄) 등 제인(諸人)도 모두 본관록에 끼이지도 못했는데 집안의 형세를 발판삼아 만리처럼 무턱대고 도당록에 참여되었던 사람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두표가 사정(私情)을 따랐다는 이름을 면해 보려고 걸맞지도 않는 전례를 억지로 인용하면서 구차하고 아리송한 설로

55) 《현종개수실록》 권11 5년 6월 27일(무오)

상이 듣고 속계꿈 하려 한 것이니, 그 교활한 정상이야말로 사정을 따른 죄보다도 훨씬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상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만 속덕이니 원로니 하는 등의 말로 도리어 높여주는 비답을 내렸으니, 정말 애석한 일이다. 사정을 따른 죄는 두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날 권점(圈點)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만리가 궁액(宮掖)과 인척(姻戚)으로 연결되고 두표의 위세가 융성해지자 서로들 다투어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려고만 했을 뿐 수치스럽기 그지없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두표가 일찍이 선조(先祖) 때에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선왕의 뜻이 용무(戎務)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문득 뜻을 맞춰 호감을 사며 능력을 과시할 계책을 내어 총애를 굳히고 진출할 발판을 삼으려 하였었다. 그리하여 삼남(三南)에 영장(營將)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던 것인데, 명분이야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백성만 병들게 함으로써 국가에 원망이 돌아가게 했었다. 그런데도 선왕께서는 수고했다고 여겨 가복(加卜)토록 명하여 정승으로 삼았던 것인데, 급기야 정승이 되고 나서는 오로지 상의 의도를 점쳐 미리 비위를 맞추고 현능(賢能)한 인재들을 투기하고 질시하는 것만을 일삼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의 손자가 의빈(儀賓)까지 되자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해지면서 끝없이 탐욕스러운 행동을 자행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곤 하였다. 그런가 하면 요망한 첩(妾)에게 들킨다 빠져 그녀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심산으로 남의 노비와 토지를 약탈하여 욕심을 채워주었으며, 저택이 너무 사치스럽고 전원(田園)도 매우 광활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김자점(金自點)이 죽고 나자 또 다른 김자점이 나왔다.’고 하였다. 윤선도(尹善道)가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상소를 올려 두표를 논하기를 ‘그의 사람됨을 보건대, 재주는 많으나 덕은 적고, 이익을 좋아하여 의로움을 해치고, 험특하고 음흉하며, 성질이 사납고 꾸밈이 셈을 품고 있다.’ 하였는데, 조금도 어김없이 그의 모습을 완전히 모사(模寫)해 내었다고 하겠다.

③-1 기사는 아예 원본에서 누락했다. ③-2 기사에서는 “인군(人君)이 대각을 경시하는 폐단을 열어놓았으니, 그야말로 같이 임금을 섬길 수 없는 자”라고 극언했다. 개수본의 줄기에서도 “지위에 오른 지가 오래지 않아 정승으로서 한 일이 드러낼 만한 것은 없었다.”고 하여 원두표가 정승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었지만, 원본의 사론만큼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런 배경의 일단을 ③-3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본 사론에서는 효종 때 윤선도가 원두표를 공박한 것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했다. 1651년(효종2)에 친청파(親淸派)였던 김자점(金自點)의 역모사건이 발생했다. 김자점의 둘째 아들 김식(金弼)이 자복했듯이, 이 사건은 ‘원두표와 산당[山人]인 송시열과 송준길’ 등 서인 청론(淸論)을 제거하려던 사건이었다. 김자점 역모사건을 계기로 효종은 김육(金堉), 정태화(鄭太和) 같은 대신 외에, 당색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심지원(沈之源), 산당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외척인 원두표(元斗杓)를 정치 기반으로 삼았다.⁵⁶⁾ 효종 3년에는 대북계인 정세규(鄭世規 1583~1661)를 이조 판서로, 심지원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는데, 윤선도는 이런 효종의 조제보합(調劑補合)을 배

경에서 조정에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효종의 정국 운영 구상을 깨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윤선도가 원두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윤선도는,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는 재주는 많으나 덕이 적고, 이득을 좋아하고 의리가 없으며, 사납고 교활하며, 포학하게 화심(禍心)을 감추고 있으므로,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장차 원두표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길게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원두표가 제대로 죽기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 전하께서는 빨리 원두표를 먼 지방에서 한가히 살도록 명하여 연말까지 한가롭게 놀게 하다가 나라의 형세가 굳어지고 조정이 안정된 뒤에 그가 새로워지거든 다시 등용하소서.⁵⁷⁾”라고 통렬히 비난했다.

원두표는 외척이자 정사(靖社) 2등공신인데다 서인 청론인 산당(山黨)을 김자점과 청나라로부터 보호했던 인물로, 효종의 정국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이었다. 개수본 원두표 줄기에서, “집에서는 효성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고 기백과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다. 임종에 임해서 올린 상소에서, 간절하게 사류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사류들도 이것을 훌륭하게 여겼다.”고 평가한 대목이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결국 이 상소 인해 윤선도는 교체되었다. 무엇보다 윤선도가 원두표를 이토록 정면으로 비판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⁵⁸⁾ 윤선도의 상소에서 알 수 있듯이 원두표에게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정국에 대한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사관은 “윤선도는 사람됨이 바르지 못하고 가정생활이 볼 만한 것이 없었으며, 부귀와 사치가 도를 넘고 방종한 행실이 짝이 없었고”, “임금의 뜻을 몰래 흔들고 귀를 어지럽히려는 흉측한 계책을 꾸민다.”고 윤선도를 폄하했던 한편,⁵⁹⁾ 윤선도는 “조정에 하품(下品)의 인재만이 자리를 차고 있다.”고 응수했다.

④ 조복양

원두표와 함께 원본의 사론에서 폄하가 눈에 띄는 사람이 조복양이다. 당시 이유태, 유계, 김수항, 김수홍 등 서인(西人)의 많은 관료와 산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사론이 있지만, 대체로 원본 사론의 정면 비판은 몇몇 인물에 국한되어 있었다.

④-1. 1년 9월 16일(무진)

[원본]

이조 참의 조복양(趙復陽)이 분부에 따라 수천 마디 말을 진언하고, 자기 아버지 조익(趙

56) 심지원의 셋째 아들 심익현(沈益顯)이 효종 3년 숙명공주와 혼인하고, 원두표의 손자인 원몽린(元夢麟)이 6년 숙경공주와 혼인했다. 정태화의 아들 정재륜(鄭載崙)도 5년 숙희공주와 혼인했다.

57) 효종실록 권9 3년 11월 7일

58) 허목이 말했듯이, “매사에 남들과 다르려고만 했다.”는 윤선도의 성격도 이유가 될지 모르겠다. 《해남윤씨문헌권》 14 〈충헌공유사〉

59) 효종실록 권8 3년 3월 27일 및 권9 3년 10월 22일

翼)이 저술한 《심학도설(心學圖說)》을 올렸다. 그가 논한 구황의 계책이란 것은 병조가 비축한 오래된 면포와 사복시가 저장한 은화를 각종 군포와 노비의 신공으로 대체하라는 것과 남한 산성과 강도(江都)의 비축미를 방출하여 양호(兩湖)의 대동미로 대체하고, 그곳의 본곡(本穀)은 수량을 감하여 거두어 각도 각 고을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명년 봄 진휼하는 밀천으로 삼게 하자는 것이었다. 대체로 다른 사람이 이미 논한 것이거나 혹은 비국에서 이미 강구한 진부한 말들이었다.

④-2. 2년 12월 16일(신유)

○ 이조 참의 조복양의 상소

④-3. 12년 1월 10일(임술)

○ 예조 판서 조복양의 줄기

[원본]

예조 판서 조복양(趙復陽)이 죽었다. 조복양은 좌의정 조익(趙翼)의 아들인데 병이 난 지 며칠 안 되어 죽었다. 상이, 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을 주라고 명하고 세자도 관재(棺材)를 내렸다. 조복양은 젊어서 글재주가 있어 호화로운 관직을 두루 거쳤으나 조정에 있는 동안 일궈낸 만한 일은 없었고 당론(黨論)만 좋아하였다. 전조의 권한을 잡게 되어서는 벼슬을 판다는 비방이 많이 있었으므로 식자가 비루하게 여겼다.

[개수]

예조 판서 조복양(趙復陽)이 죽었다. 복양은 자가 중초(仲初)이며 좌의정 조익(趙翼)의 아들이다. 법도 있는 가문에서 성장하여 일찍 명성이 있었고 벼슬에 오른 이래로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쳤다. 전부(銓部)의 장관과 문형(文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사론(士論)을 힘껏 받쳐주어 여러 동료들에게 중망을 얻었다. 오래도록 추밀(樞密)에 있으면서 시설한 바가 많았고 누차 진휼청 당상이 되어 마음을 다해 진구하여 전후로 백성들을 살려낸 것이 매우 많았다. 이 해에 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죽게 되자, 복양이 전세(田稅)를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백성들의 힘을 펴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다가 대신과 탁지(度支)의 반대에 부딪쳐 탄식해 마지않았으며, 병이 위독해짐에 이르러서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상소를 하여 그 이해득실을 진달하여 상께서 깨달으시기를 바랐으니, 그가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을 사랑한 것이 이와 같았다. 그가 죽자 상이 그가 아낀 말을 생각하고 묘당에 의논하여 시행하였다. 뒤에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④-2 기사는 원본에서 누락된 조복양의 상소이다. ④-1 기사는 조복양의 구황책에 대한 비판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말했던 진부한 내용이라고 냉소적으로 소개했다. 당연히 이런 뉘앙스는 줄기에도 이어진다. ④-3 기사이다. 원본에서는 조복양이 당론을 좋아했다고 비난했지만, 개수본에서는 사론(士論)을 지지하고 백성들을 진휼한 인물로 평가했다.

⑤ 허적

마침 조복양을 다루었으니 허적으로 인하여 조복양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사료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⑤-1 기사에서 원본은 “조복양은 감히 동인과 서인을 두루 등용하여 적체됨이 없다는 말을 진달하였다.”며 비판했다. 반면 개수본에서는 “허적은 처음에는 반드시 조복양을 임금을 속이고 당파를 비호한 죄에 빠뜨리려고 하였다.”며, 허적의 처신을 두고 ‘간사하고 변화무쌍한 작태’라고 비판하였다.

⑤-1. 9년 4월 26일(갑오)

[원본]

사신은 논한다. 허적이 정승에 제수되어 등대하면서 먼저 이 일을 발론하여 조복양에게 무고죄를 가하려고 하였는데, 대개 조복양이 당론에 몹시 준열하여 한쪽 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좌명과 조복양이 동서(東西) 편당의 유무로 탐전에서 서로 다투었으니,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조정이 존엄하지 못하고 기강이 해이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조복양은 감히 동인과 서인을 두루 등용하여 적체됨이 없다는 말을 진달하였는데, 이 당시에 말로 죄를 받은 자가 몇 사람이며, 재주가 있으면서도 배척을 받은 자가 몇 사람이었던가. 그런데도 감히 임금 앞에서 이렇게까지 속였으니, 몹시도 거리낌이 없는 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위에서는 죄를 주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감히 다 말하지 못하니, 아,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겠다.

[개수]

또 논한다. 허적이 정승에 제수되어 등대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발론하여 조복양에게 무고죄를 가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조복양이 당론에 몹시 준열하여 한쪽 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허적은 처음에는 반드시 조복양을 임금을 속이고 당파를 비호한 죄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상의 뜻을 끝내 움직이지 못할 것을 안 다음에는 이에 다시 폐단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서로 화합시키는 데 있었다고 대답하였으니, 간사하고 변화무쌍한 작태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다.

⑤-2. 10년 1월 21일(을묘)

[원본]

사신은 논한다. 허적은 대신의 신분이므로 말을 하면 반드시 쓰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선인 하나도 추천하지 못하고서, 탐학하고 추악한 일개 음관(蔭官)을 서용하라 청하니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이 허적에게 묻기를 “공은 어찌서 김익훈(金益勳)을 서용하라 청하여 여론을 놀라게 하였습니까?” 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그가 재주가 있음을 알겠는가? 우암(尤菴)이 【시열의 별호이다.】 권하기에 부득불 그렇게 하였다.” 하여 듣는 이들이 웃었다.

⑤-3. 11년 2월 29일(정해)

○ 허적이 유군포를 거두지 않은 수령에게 죄줄 것을 청함.

⑤-2 기사는 허적을 비판하는 원본 사론이다. 허적이 김익훈을 서용하라고 청하여 남이들이 놀랐던 모양인데, 사론에서는 허적이 송시열의 권유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대답을 비웃고 있다. ⑤-3 기사는 원본에 누락되어 있다. 이렇듯 원본에서는 허적 관련 기사가 누락되거나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처음에 허적이 《현종실록》 편찬 총재관이었지만 나중에 권대운으로 바뀌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종실록》 편찬 사업과 허적은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경신환국 직전 허적은 윤희와 체찰부 설치 등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한 적이 많았다. 특히 허적은 윤희가 오정창의 사객(私客)인 이서우(李瑞雨)를 홍문관으로 추천했을 때 “대북의 자손을 갑자기 청요직(淸要職)에 등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⁶⁰⁾ 복인, 특히 대북에서 기호 남인으로 자정하면서 영남 남인과 체류를 모색했던 윤희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허적의 태도는 불만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런 불만이 사론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⑥ 윤선도

윤선도에 대한 원본과 개수본의 기사 일부는 예송을 다루면서 언급했거니와, 여기서는 몇몇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⑥-1. 즉위년 8월 30일(무오)⁶¹⁾

[개수]

고 판서 김시양(金時讓)의 《부계기문(涪溪記聞)》【부계(涪溪)는 종성(鍾城)의 지명이다.】에 이르기를

“윤선도가 상소하여 이첨의 죄를 논하면서 아울러 승종과 희분이 이첨의 간사함을 알고서도 말하지 않음을 논하였다. 선도는 유가(柳家)와 인척 관계로 그의 뜻을 받아 상소했기 때문에 이런 말로써 그의 흔적을 가리웠던 것이다. 이첨의 무리가 탄핵하여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었을 때 내가 부계(涪溪)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윤선도와 친척의 친분이 있어 서로 왕래하였는데, 곧은 말을 하여 죄를 입었다는 것으로써 스스로 고상한 척하는 태도가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공의 상소는 여러 신하는 그냥 두고 유독 윤희분과 박승종이 말하지 않은 것만 논하였으니, 역시 쇠퇴한 세상의 말이다.’ 하였다. 이극건(李克健) 역시 상소하여 이첨을 논핵하다가 종성(鍾城)으로 유배되어 스스로 자신이 윤희분과 상의하여 상소했다고 자랑하였다. 내가 우연히 묻기를 ‘공은 윤상(尹相)과 아는가?’ 하니, 이극건이 말하기를 ‘진소할

60) 《숙종실록》 권10 6년 10월 2일(정해)

61) 《현종실록》에는 현종 즉위년 9월 1일(기미)에 실려 있다.

때 자주 윤희분의 집에서 모였으므로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였다. 내가 윤선도와 대화하면서 이극건의 말을 언급했더니, 윤선도는 안색이 변하면서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했다. 반정(反正) 초기에 상소했다가 유배된 유생들이 모두 6품직에 초배(超拜)되었는데, 지평 임숙영(任叔英)이 말하기를 ‘윤선도의 상소는 윤희분의 뜻을 받은 것으로 「김제남(金梯男)이 역모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했으니, 죄를 면한 것만도 다행입니다. 포상해 발탁해서는 안 됩니다.’고 하였다. 깨끗한 인사들이 이 의논을 옳게 여겼으므로 단지 금오랑(金吾郎)을 제배했다.”

고 하였다. 김시양(金時讓)이 윤선도(尹善道)와는 친척의 친분이 있어 서로 가까웠는데도 기록한 바가 이상과 같으니, 당시 선도의 마음 씀씀이를 대개 알 수가 있다.

⑥-2. 1년 10월 28일(경술)

[원본]

지평 윤원거(尹元擧)가 이산(尼山)에 있으면서 소를 올려 사직하니, 상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원거는 정축년 이후 과거를 보지 않고 또 조정에 나오지도 않아 자못 명망이 있었으며, 권시·윤희와 친했다. 두 사람이 윤선도(尹善道)를 두둔하여 송시열의 비위에 거슬렸는데, 원거가 매번 두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하여 크게 동배(同輩)들의 배척을 받았다.

[개수]

지평 윤원거(尹元擧)가 연산(連山)에서, 자신이 학문을 닦은 실상도 없이 허명(虛名)으로 정사(徵士)의 예우를 받는 것이 참람하다며 소를 올려 해면을 비니, 상이 너그러운 비답으로 윤허하지 않았다.

원거는 윤진(尹愔)의 아들이다. 윤진이 궁관(宮官)으로서 강화도에서 순절하자 원거가 정축년 이후로 과거에도 응하지 않고 벼슬도 하지 않았는데, 비록 정밀한 학문은 없어도 사람됨이 강개하고 기절이 있어서 사류(士類)의 인정을 받았다. 효종 말년에 비로소 대간의 선발 물망에 올라 앞뒤로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다 부임하지 않았다.

⑥-3. 6년 2월 27일(갑신)

[원본]

윤선도를 광양(光陽)으로 옮겨 유배하였다. 윤선도를 옮겨 유배할 때 처음에는 상이 단지 남쪽 지방에 정배하라고만 말하고 안치를 감동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금부가 정배단자(定配單子)에 안치로 써 넣었다. 이에 상이 정원에 묻기를,

“이미 정배로 전교하였는데 금부에서는 성명(成命)이 없었는데도 안치로 써 넣었으며, 정원에서조차 어찌하여 봉입하였는가?”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당초에 안치를 감동하라는 분부가 없었으므로 금부에서 이와 같이 써 넣은 것이며 신들도 봉입한 것입니다. 성상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고쳐 써서 들이게 하

소서.”

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이미 명이 있었으면 거기에 의거해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미 정배로 부표하여 내린 뒤에 금부가 감히 이배 안치(移配安置)로 써 넣은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하니, 판의금 홍중보 등이 황공하여 도리어 도사(都事)와 하리에게 허물을 돌리면서 아뢰기를,

“막중한 정배 단자를, 전지 안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지 전안(前案)에 따라 ‘안치’ 두 자로 흐리멍덩하게 써 넣었으니, 일이 몹시 놀랍습니다. 해당 도사는 태거(汰去)시키고 본부의 아전은 중한 쪽으로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이에 윤선도를 광양(光陽)으로 옮겨 유배하였다. 윤선도의 집이 해남(海南)에 있어서 광양과 몹시 가까웠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모두 분통해 하였으나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⑥-1 기사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1616년(광해군8) 12월 21일, 윤선도는 당대 최고의 권신(權臣) 이이첨(李爾瞻)을 정면으로 겨누어, “신하된 자가 나라의 권력을 혼자 쥐게 되면 자기의 복심(腹心)을 요직에 포진시키고 상과 벌[威福]을 자기를 통해 행사합니다. 어진 자가 이렇게 해도 안 될 일인데, 만약 어질지 못한 자가 이렇게 한다면 어찌 나라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지금 훌륭한 상께서 위에 계시어 임금과 신하가 각기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가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신이 삼가 예조 판서 이이첨(李爾瞻)의 하는 것을 보니 불행히도 이에 가깝습니다.”⁶²⁾라고 상소했다.

이때 윤선도가 유희분이나 박승종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고, 후대에도 유희분과 박승종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⁶³⁾ 김시양의 기록은 이런 말을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개수본에 제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개수본에서는 윤선도의 이이첨 비판이 ‘소인이 소인을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⑥-2 원본 기사는 윤선도를 옹호하다가 곤란을 겪은 윤원거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개수본에서는 그런 언급이 빠져있다. ⑥-3 기사는 윤선도가 광양으로 이배될 때의 기사이다. 개수본에서는 “윤선도를 광양(光陽)으로 옮겨 유배하였다.”고 짧막하게 기록한 반면, 원본에서는 이배 논의와 배경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⑦ 허목(許穆)

허목은 윤선도와 마찬가지로 예론을 사화로 끌고 갔다는 비판을 들었다. 원본의 평가는 윤선도와 같고, 개수본의 평가 역시 윤선도와 같다.

62) 《광해군일기》 권110 8년 12월 21일(임자)

63) 《효종실록》 권8 3년 4월 11일 대사헌 윤강(尹絳)의 계

⑦-1. 1년 9월 24일(병자)

[원본]

삼척 부사(三陟府使) 허목(許穆)이 사은(謝恩)한 뒤에 나이가 이미 지났으니 외직을 제수 함은 관례가 아니라고 이조에 정장(呈狀)하였다. 이조가 ‘허목은 조정에서 특별히 등용한 인물이라 보통 관원과 다른 점, 나이는 이미 넘었으나 근력이 쇠하지 않았으며 본부 또한 번잡한 곳이 아니니, 그대로 부임시키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수령의 나이는 근래에 거듭 밝힌 일이니 고쳐 차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계품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허목이 예를 논하여 소를 올린 뒤로 다시는 대간의 직에 의망되지 않았는데, 대개 송시열의 의논과 상반되어 시열에게 붙은 자들이 모두들 눈을 부릅뜨고 도왔기 때문이다. 그 소는 예의 본의가 이와 같다고 논했을 뿐, 한 마디도 시열을 침해한 말이 없었는데, 이렇게 극도로 미워하여 끝내 외직에 보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15년 동안 이름이 사판에 오르지도 못했다. 시열의 시기심이 이와 같았으니, 윤선도(尹善道)가 먼 변방에 안치된 것이야 무슨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아, 너무 심하다.

[개수]

삼척 부사(三陟府使) 허목(許穆)이 연한이 이미 지났다는 것으로 이조에 정장(呈狀)하였다. 이조에서 허목은 보통 관원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근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계품하여 부임하게 하였다.

허목이 처음 의례소(議禮疏)를 올렸을 적에 사람들은 그가 다른 뜻을 품은 것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 뒤 본정(本情)이 점점 노출되어 국본(國本)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조정을 공동(恐動)시키기에 이르러서는 선도(善道)의 종통(宗統)·적통(嫡統)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 합치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비로소 그가 간특하다는 것을 알았다.

⑧ 윤휴

아래는 윤휴가 밀소를 올린 기사인데, 개수본에는 상소는 수록하지 않고 사론만 수록했다. 반대로 원본에는 밀소만 수록되어 있고, 아무런 사론도 없다.

⑧-1. 15년 7월 1일(계해)

[개수]

윤휴가 밀소(密疏)를 올렸는데 답하지 않았다.

윤휴는 열신(孽臣)의 자식으로서 유자의 이름을 빌어 집에 있으면서도 불의를 자행하였고, 또 선유(先儒)의 학설을 공척하였다. 송시열 등도 처음에는 그에게 속아 추중 장허를 하였고, 민유중은 심지어 울곡(栗谷)이 다시 태어났다고까지 칭도하였는데 그 후 시열이 그의

마음 씹씹이에 의심이 가 그 길로 절교를 하였던 것이다. 급기야 기해년 예론(禮論)이 있는 후로는 사람들도 모두 그가 화심(禍心)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그를 다 결눈으로 보았으며 제명(除命)도 끊기고 말았는데, 그는 암암리에 이정(李禎)·이남(李楠) 두 형제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그의 집이 이정·이남이 사는 곳과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면 서로 찾아 그들 사이가 매우 비밀스러웠다.

언젠가는 정의 집 어귀에서 나졸들에게 체포되었다가 스스로 윤 장령(尹掌令)이라고 말하고 풀려난 적도 있었으며, 금상(今上) 초기에는 정을 위하여 모사를 꾸미고 양궁(兩宮)을 이간질하기 위하여 상에게 자전(慈殿)의 동정을 잘 살필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사람을 시켜 익명으로 상변(上變)을 하게 하고 자기는 밀소를 올려 자기와 의견을 달리 한 조정 신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였는데 경신년에 이르러 대신(臺臣)이 그의 죄상을 논하였고, 상은 그에게 사사(賜死)를 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휴가 죽고 나자 그가 이정·이남과 역모를 꾀했던 일이 점점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정형(正刑)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기도 하였다.

갑인년에 조정 논의가 크게 달라지고 있을 때 민정중이 승릉(崇陵)의 장사(匠事)를 감독하고 있으면서 저보(邸報)를 보고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윤희중(尹希仲)이 장령(掌令)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근래에 비록 잘못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염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가 이번에 틀림없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하여, 그 말을 듣고 웃지 않은 자가 없었다. 혹자는 이 일을 두고서, 소인(小人)에게 속임을 당한 군자(君子)가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데 이번 일이 정중 등에게 흠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채경(蔡京)에게, 문정호공(文定胡公)이 진회(秦檜)에게 다 속임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는 이 두 사람의 악한 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재주는 쓸 만한 점이 있었으므로 두 공(公)이 사람을 잘못 알아본 과실을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하지만, 윤휴는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고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김좌명(金佐明) 이하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여 말한 이가 많았고, 이일상(李一相)의 아우 이단상(李端相) 등도 처음에는 윤휴를 좋은 선비로 여겼었는데 이일상은 극구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보통 말할 때도 반드시 윤휴가 역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상이 사람을 알아보는 지감이 꼭 정중 등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다만 윤휴에게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이 분명했고 그가 말한 것이 공정했던 것이다.

대체로 사대부로서 윤휴를 사실 이상으로 추켜세웠던 자들은 모두가 윤휴와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기에 노력한 자들이었다. 윤휴같이 허풍스럽고 망녕스럽고 어리석은 패륜자로서 몇 해 사이에 포의(布衣)로 시작하여 경상(卿相)이 되고, 오만하게 대현(大賢)으로 자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정·이남 무리들이 끼어 올려준 힘 뿐만이 아니라 평일에 사류(士類)들이 역시 그를 추종하고 장허해왔기 때문에 그가 허명을 키워 천충(天聰)을 형혹할 수 있었으니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이외에도 원본과 개수본에서 상이한 평가를 받는 인물들은 많이 있다. 조경(趙綱), 권시(權總)도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윤선도의 예론을 옹호했던 전력으로 인해 원본의 사론에서는 높임을, 개수본의 사론에서는 폄하를 당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절을 가름하기로 한다.

⑨-1. 5년 1월 9일(임신)

○ 부호군 조경의 상소문과 사론

[원본]

부호군 조경(趙綱)이 상소하기를,

“신축년에 한 마디 말씀을 올렸다가 죄를 얻었습니다만 이는 대체로 변변치 못한 의견이
나마 정성껏 바치려는 뜻에서였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늘 담
고 있는 충성심을 끝내 제대로 펼쳐내지 못한 채 세상의 표적이 되고 말았는데, 이는 실로
늙고 망령된 나머지 나온 발언이었던 만큼 비록 삼위(三危)에 귀양갔다 하더라도 신이 어떻
게 감히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전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에 힘입어 거의 다
죽어 가는 어리석은 신하를 기보(圻輔)에서 전대로 눌러살게 해주시어 나이 90이 된 노모에
게 변변찮은 음식이나마 아침 저녁으로 보살펴드리게 하였으니, 하늘과 같은 성은에 대해서
는 신의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명
(叙命)을 내리기까지 하셨으니, 아무리 일월(日月)의 비춤에 사사로움이 없고 봄 우레가 칩
거하던 생물을 깨움에 미미한 곤충도 제외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법이 너무 느슨하게 되
고 유사(유사)가 의혹할까 삼가 두렵기만 합니다.”

하니, 상이 몸을 조리하고 올라오라고 답하였다.

조경이 경인년 이후로 시골에 물러가 있었지만 조야(朝野)에서 그를 중하게 의지하고 있
었는데, 신축년에 한번 소를 올리면서 시의(時議)에 중하게 거스름을 받아 그의 아들 조위
봉(趙威鳳)과 함께 폐고(廢錮)되고 말았으므로 사류(士類)가 매우 애석하게 여겼었다. 그러
다가 이때에 이르러 서명(叙命)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상소한 것이다.

[개수]

처음에 윤선도가 예론(禮論)을 빌려서 사림(士林)을 화로 얹으려 하였는데 조경(趙綱)이
그 논의에 부회하여 흉악한 선도를 친구하여 직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존오(李存
吾)가 고려가 망해가던 무렵에 항언(抗言)하던 것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사람의 편파
적인 것이야 진실로 책망할 것이 없지만 상서롭지 못한 그의 말은 더욱 놀랍다. 예론의 득
실에 대해서는 비록 시비가 분분하여 분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선도가 화를 떠넘길 계획을
하였다는 것을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그 누가 그의 속셈을 환히 알지 못하겠
는가. 그의 당여가 된 자 중에 약한 자는 몰래 도와 주고 강한 자는 드러내서 구원하였는데
장문을 드러내어 정직하다고 친구한 경우는 조경으로부터 출발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비꼬
이고 기탄없음이 너무도 심하다.

⑨-2. 13년 1월 24일(신미)

○ 전 우윤 권시의 졸기

[원본]

우윤(右尹) 권시(權僖)가 죽었다. 권시는 젊어서부터 몸가짐이 구차하지 않고 언론이 편벽되지 않아 벗들에게 추앙을 받았다. 병자 호란 뒤에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문경(聞慶)의 산중에 살면서 경서와 사기를 즐기며 노년을 마치려고 하였는데, 효종조에 이르러 산림의 선비로 부름을 받아 수 년 내에 참판의 지위에 이르렀으니, 임금과의 만남이 융성하다고 하겠다. 기해년 예론(禮論)이 일어났을 때 양송(兩宋)과 대립하였고, 소를 올려 윤선도(尹善道)를 구원하다가 당시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러 폐고(廢錮)당한 채 죽었다.

[개수]

전 우윤 권시(權僖)가 졸하였다. 권시는 고 좌랑 권득기(權得己)의 아들이다. 소시적부터 또래들 사이에 유명하였고, 정축년 이후 식구가 모두 문경(聞慶)의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공주(公州)로 돌아가니, 이유태가 그를 보고 나서 송시열·송준길 등에게 칭찬을 하였다. 송시열이 드디어 그와 더불어 서로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고 이어 자기 딸을 권시의 아들에게 혼인시켰다. 사류(士類) 가운데 송시열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너나없이 권시를 조정에 추천하여, 기축년부터 누차 현직에 제수하여 불렀고 예우까지 덧붙였다.

정유년에는 송준길과 함께 잇따라 조정에 나아가 벼슬을 하여 몇년 안되는 사이에 대뜸 재신의 반열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학술이 허술하고 문사가 난잡하였으며, 그저 술이나 좋아하고 사람들과 농담이나 즐길 따름이었다.

급기야 경자년에 소를 올려 윤선도를 두둔할 때 그 내세운 논리에 더욱 조리가 없어, 마침내 청의(淸議)에 욕을 먹고 여러 해 동안 이름이 조적(朝籍)에 끊겼다가 만년에 송준길의 말로 인해 다시 기용되어 우윤에 제수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이때 와서 졸하였다.

권시가 재학(才學)과 견식(見識)에 있어서는 비록 입에 올릴 만한 것이 없었으나, 불우하게 지낼 때에도 끝까지 그 일로 유감을 품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대개 그의 성품이 무던하고 모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현종실록》의 편찬과정과 개수논의 및 그 실재를 살펴보았다. 《현종실록》은 숙종 원년(1675) 5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숙종 3년(1677) 9월에 편찬을 마쳤으니, 대략 2년 5개월이 걸린 셈이다. 그런데 숙종 6년(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들이 실각한 뒤, 이미 편찬되었던 《현종실록》의 기록이 부정확하고 왜곡되었다는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종 연간에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는 정책과 사건이 여럿 있었으니만큼 그를 둘러싼 이해와 관점의 차이가 낳은 결과였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실록이 《현종개수실록》이다. 개수(改修)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종개수실록》은 《현종실록》을 다시 편찬한다는 기조로 편

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과정을 살펴보았다. 개수 당시 어떤 배경과 관점에서 개수에 임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조선초기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14개조의 실록찬수범례 별로 두 실록을 비교했고, 두 실록에서 사실 기술이나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주요 사건과 인물을 확인하였다.

당초 《현종실록》의 개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22권에서 28권으로 권질도 6권이 늘었고, 인물, 사건에 대한 기사도 내용이 많아졌다. 김수항을 비롯한 개수론자들은 《현종실록》이 ① 일정한 범례나 사실 기재의 요령이 없다, ② 《승정원일기》만 증빙자료로 써서 경솔하게 만들었다, ③ 상소 등의 기록이 곡절을 알 수 없게 소략하다, ④ 인대, 입시 설화의 기록이 맥락이 없다, ⑤ 주요 전장을 상소하기 어렵다, ⑥ 찬술한 뒤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수 작업도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승정원일기》만 가져다 베끼고, 그것도 제대로 고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개수를 통해서, 《승정원일기》의 재참조, 장계(狀啓), 졸기(卒記), 상소문 등이 대폭 보완되었고, 날짜의 수정, 재변의 보완, 관직 임명, 기타 통계자료도 보강되었다. 그러나 재변 기록의 경우, 《현종실록》이나 《현종개수실록》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아마 편찬자들끼리 정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

역시 중요한 것은 인물에 대한 평가이다. 송시열, 송준길에 대해 남인이 편찬한 《현종실록》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논리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나아가 기타 원두표, 조복양 등 뜻밖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검토는 이 시기 정치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현종개수실록》 역시 이들에 대한 《현종실록》의 평가를 뒤집으면서도 비판의 논리와 강도에서 사안과 인물에 따라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기록에 대해 현상적으로 접근할 경우 보다 풍부한 논의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종실록》을 개수했다지만, 사실은 보완했을 뿐이고, 수정은 주로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이루어졌다. 즉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일은 개수본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문제는 각각 ‘기억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고구해야 할 주제이다. 그러나 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초점이었지,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이후 《숙종실록》에 대한 보궐정오나 《경종실록》의 수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III. 《숙종실록》의 편찬과 보궐정오

1. 머리말
2. 《숙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 1) 《숙종실록》의 편찬
 - 2) 《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
3. 《숙종실록》과 보궐정오의 비교
 - 1) 숙종 초년에 대한 인식
 - 2) 노소 분당과 외척 비판
 - 3) 장희빈 처리와 세자 보호론
 - 4) 병신처분과 정유독대
4. 맺음말

1. 머리말

《숙종실록》은 조선 제19대 국왕인 숙종의 재위 기간(1674~1720)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숙종실록》은 숙종이 승하한 뒤 실록을 편찬하는 관례에 따라 반년 후인 경종(景宗) 즉위년(1720) 11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영조(英祖) 4년(1728) 3월에 완성하였다. 실록 편찬에 9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숙종의 재위 연수가 47년이나 되어 기사 분량이 많았고, 편찬 도중에 노론·소론의 정쟁으로 신임옥사(辛壬獄事)가 생기는 등 정국이 자주 바뀌고 편찬 책임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기 때문이다.¹⁾

그런데 영조 3년(1727) 9월에 《숙종실록》 편찬이 끝나고 인쇄(印刷)를 마치자 바로 정미환국(丁未換局)이 발생하여 노론의 정호·민진원 등 백여 명이 파면되고, 소론의 이광좌·조태억(趙泰億) 등이 정권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정권을 잡은 뒤 실록에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데가 많다고 하여 《숙종실록보궐정오》를 편찬하였고, 이를 《숙종실록》각 권 말미에 함께 첨부하였다.

원래 실록을 개수(改修)하려고 했으나 《현종실록》의 개수에서 보듯이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숙종실록》은 워낙 분량이 많아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빠진 기사를 보충하여 추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보궐정오(補闕正誤)’를 편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른 실록의 개수, 수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계에서 《숙종실록》에 대한 보궐정오가 소론들의 발의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사실과, 《숙종실록》에 노론 중심의 시각으로 서술된 사안에 대한 수정 및 빠진 기록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기사를 확인하면서 그 차이와 성격을 연구한 적은 없었다. 물론 개별 연구자들은 사안별로

1) 《숙종실록》 해제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였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숙종실록》과 보궐정오에 대한 이해의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먼저 《숙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궐정오 당시 어떤 배경과 관점에서 개수에 임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어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두 실록의 기사를 날짜별로 비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개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역시 《현종실록》과 마찬가지로 14개조의 실록찬수법례를 염두에 두고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를 비교해보겠다. 《현종개수실록》과는 달리 보궐정오는 보궐과 정오, 즉 빠진 기록을 보완하고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다는 두 방향에서 찬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주로 두 실록에서 사실 기술이나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주요 사건과 인물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이유를 검토하는 데 치중하려고 한다. 이것이 본고에서 확인하려는 두 번째 측면이다.

2. 《숙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1) 《숙종실록》의 편찬

《숙종실록》의 정식 명칭은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이며, 모두 65권 73책으로 간행되었다.²⁾ 1720년(경종즉위) 11월, 《숙종실록》 편찬을 위해 총재관으로 김창집(金昌集)을 임명했다. 김창집은 11월 28일, 경종으로부터 당상과 낭청 구성을 허락받았지만 실록 편찬에 착수할 수 없었다. 호서(湖西)의 유생(儒生) 이몽인(李夢寅) 등이 소를 올려 김창집이 윤지술(尹志述)을 구해(救解)한 일과 청나라 사신에게 글을 써 주어 임금을 옥보였다고 탄핵했기 때문이다.³⁾ 이후 1721년 4월 1일에 다시 시작된 실록편찬은 영조(英祖) 4년(1728) 3월에 끝났다. 실록 편찬에 9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숙종의 재위 연수가 47년이나 되어 기사의 분량이 많았고, 편찬 도중에 노론·소론의 정쟁으로 신임옥사(辛壬獄事)가 생기는 등 정국이 자주 바뀌고 편찬 책임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경종 즉위년 김창집의 사임으로 공백이 되었던 실록청은 4월 1일에 당상과 낭청 구성을 마쳤다. 이후 술한 변동을 겪지만 일단 이 시기 임명되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실록청 도청 당상

행 이조판서 송상기(宋相琦)

2) 권1·2를 1책으로 묶었고, 권13·14·15·32·34·38·50은 상·하 2책으로 각각 나누었다. 권35는 상·중·하 3책으로 되어 있다.

3) 《경종실록》 권2 즉위년 12월 16일(무신)

행 사직 이관명(李觀命)
행 도승지 이광좌(李光佐)

도청 낭청

홍문관 교리 김제겸(金濟謙)
부사직 유척기(兪拓基)
사헌부 지평 이덕수(李德秀)
전 부수찬 조문명(趙文命)

1방 당상

행 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
의정부 좌참찬 조도빈(趙道彬)
이조참판 심택현(沈宅賢)
예조참판 이 조(李肇)

1방 낭청

홍문관 부교리 신 방(申昉)
전 현령 윤 순(尹淳)
전 수찬 홍현보(洪鉉輔)
부사과 홍용조(洪龍祚)
사간원 정언 서종급(徐宗汲)

2방 당상

행 호조판서 민진원(閔鎭遠)
한성부 판윤 이만성(李晩成)
형조참판 이태좌(李台佐)
이조참의 김재노(金在魯)

2방 낭청

홍문관 교리 신 석(申皙)
홍문관 부수찬 서종섭(徐宗燮)
전 수찬 김민택(金民澤)
부사과 김 고(金槀)
부사과 정석오(鄭錫五)

3방 당상

예보판서 이의현(李宜顯)
 사헌부 대사헌 이 재(李緯)
 호조참판 홍치중(洪致中)
 행 홍문관부제학김운택(金雲澤)

3방 낭청

홍문관 수찬 이중협(李重協)
 사간원 헌납 어유룡(魚有龍)
 전 지평 임징하(任徵夏)
 전 지평 김용경(金龍慶)
 전 사서 이봉년(李鳳年)

실록청 관원이 갖추어지자, 이어 4월 6일 실록청 응행사목(應行事目)을 확정했다. 응행사목은 대체로 같지만 장소 등 몇 군데 차이가 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설국처는 창덕궁 비변사에 설치하고, 각 방은 의금부 당직, 사복시 직방, 상의원 직방에 나누어 설치하되, 실록청이라고 부른다.

하나, 당상과 낭청은 본직으로 있는 관청에 직속하는 일을 면제하고 모든 공식 회의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며 제사(祭祀)에 차출하지 않는다. 복제와 식가도 면제해주시며, 조사 받을 인원은 공사죄(公私罪)를 막론하고 공무를 보도록 한다. 승지나 대간으로 임명하더라도 이전의 관례에 따라 교체하지 말고, 낭청 중에서 파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입계하여 군직(軍職)에 부처 관직을 띠고 근무하게 하십시오.

하나, 한림 1명이 구례대로 항상 근무하면서 임무를 살핀다.

하나, 별공작 감역원 1명은 선공감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나누어 정송한다.

하나, 당상과 낭청의 인신(印信) 각 1과(顆)는 해당 관청에서 가져오도록 한다.

하나, 각 방 서리 17명은 각사의 요포(料布)를 받는 서리를 분정하여 부리고, 서사(書寫) 1명과 서고지기(庫直) 4명 및 사령 17명은 호조와 병조에서 급료를 지급한다.

하나, 사초를 등록할 때 소용되는 종지와 붓, 먹, 기타 물품 및 아문이 없는 관원의 자리 등은 해조에서 준비한다.

하나, 수직(守直)할 군사(軍士)와 다모(茶母) 등은 각 해사(該司)에서 정송한다.

하나,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하여 시행한다.⁴⁾

4월 8일에는 숙종 때의 시정기를 달수를 계산하여 차례로 내어오기로 했다. 5월 4일, 지춘추관사 권상유(權尙游)와 동지춘추관사 조도빈을 패초하면서, 시정기를 내어왔다. 그런데

4)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규장각 14165). 이하 편찬과정에서 특별한 각주가 없는 것은 이 의례에 따른 것이다.

숙종대 시정기가 워낙 많다보니 한꺼번에 나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갑인년(1674, 숙종즉위)부터 정사년(1677, 숙종3)까지 4년 동안의 시정기를 우선 봉출했고, 《승정원일기》도 가져 오게 했다. 특이한 점은 시정기를 이봉(移奉)할 때에 신방(申昉) ‘별검춘추(別兼春秋)’로 삼아 옮겼는데, 이렇게 따로 직명을 만드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 아닌가 한다.

동시에 관원들로 하여금 날마다 출근하고, 묘시에 출근하여 유시에 퇴근한다는 ‘묘사유과(卯仕酉罷)’를 제대로 시행하게 했다. 아울러 실록청찬수법례를 정하였다.

1. 사관의 시정기, 주서(注書)의 일기, 서울과 지방의 겸춘추(兼春秋)의 기록 외에, 비변사 장계축(狀啓軸), 의금부 추안(推案) 및 형조의 참고할 만한 중요하고 핵심적인[緊關] 문서, 사변(事變)과 추국(推鞠)에 대한 주서 일기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검토하여 갖추어 적는다.

2. 모든 조칙(詔勅) 및 우리나라[本朝]의 유관 교서(敎書)는 찾아내어 기록한다.

3. 이름 있는 신하는 졸기(卒記)를 작성하는데, 빠진 대목이나 소략한 데가 있으면 일시의 공론이나 혹은 문집의 비문과 지문(誌文)을 참고하여 상세히 보충하여 기록한다.

4. 매일 매일의 날짜는 갑자(甲子)만 기록한다.

5. 모든 재변의 경우, 관상감 초록(抄錄)을 하나하나 첨가하여 적는다. - 지방의 바람, 비, 지진 등 각각의 사항은 그 당시 보고한 문서[啓聞]를 반드시 살펴보고 갖추어 기록한다.

6. 대간의 논계(論啓)는, 첫 번째 논계[初啓]의 경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적고, 잇달아 올린 논계[連啓]의 경우는 단지 ‘연계’라고만 적고, 혹시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으면 뽑아낸다.

7. 대간의 논계는 단지 ‘사헌부’, ‘사간원’이라고만 적고, 와서 보고한 사람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다만 첫 번째 논계했을 때는 성명을 모두 적는다. 중대한 시비가 걸린 사안의 경우는, 다른 의견을 꺼낸 경우도 적지 않으면 안 된다. - 어사(御史)의 성명 및 관리를 쫓아낸 일[黜陟], 폐단을 변통한 일 등도 상세히 기록한다.

8. 상소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상세히 갖추어 신고, 그 사이의 불필요한 글자는 해당 구절을 빼더라도 무방하다. 예에 따라 사직하는 상소나 차자의 경우는 반드시 모두 적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거취나 시비 같은 당시 정치에 관련된 사안은 역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모든 관직 임명[除拜]의 경우, 중요하지 않고 잡다한 관직이나 산직[冗散] 외에는 이조와 병조[兩銓]의 문서를 다시 살펴보아 상세히 기록한다.

10. 각 연도의 과거에 합격한 인원은 ‘아무개 등, 몇 사람’이라고 적는다.

11. 군병의 숫자, 서울과 지방의 법제, 호구 숫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문서를 상소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12. 도움이 되지 않는 번잡하고 쓸데없는 문자는 참작하여 다듬어서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이 되도록 힘쓴다.

13. 조정[朝家]의 길흉(吉凶) 등 여러 의례 중에서 나라의 헌장(憲章)에 관계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 보여줄 만한 것은 문장이 비록 번거롭고 잡다해도 갖추어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4. 서울과 지방의 관리 출척이나 공적 또는 사적 시비는 반드시 그 대략을 뽑아 기록한다.

실록청찬수법례, 즉 시정기찬수법례를 다른 실록 편찬 때와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시정기에 대한 산절이 시작되어 불과 채 한 달이 안 되어 각 방에 나누어 준 시정기의 산절이 거의 끝났다. 물론 지난 번 꺼내온 4년분의 시정기이다. 이어 6월 11일에 대교 박사성(朴師聖)이 무오년(1678, 숙종4)부터 신유년(1681, 숙종7)까지의 4년간 시정기를 이봉했고, 이 시정기도 7월 10일경에 끝났다.

이때도 실록청에서 늘 발생했던 문제, 즉 실록청 관원들이 모두 겸관이었기 때문에 본직과 관련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았고, 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업무공백이 많았다. 또 각 방별로 시정기 산절에 편차도 생겼다.⁵⁾

무엇보다 이 시기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33세 된 경종의 후사가 없자 동생 연잉군(延礽君 뒤의 영조)을 왕세자로 책봉했다. 소론측은 반대했지만, 경종은 1721년 8월에 대비 김씨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현시켰다. 그리고 많은 실록청 관원이 세제(世弟)를 위한 관원에 차출되었다.⁶⁾ 이어 경종은 10월에 세제에게 청정(聽政)하게 했다.⁷⁾ 청정은 신료들의 반대로 환수하는 등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10월 28일에는 청나라에 왕세제 책봉을 알리게 되었다.

이런 와중인 12월,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 박필몽(朴弼夢) 등이 소를 올려 세제 청정을 상소한 조성복과 청정을 하게 한 노론 4대신을 파직시키라고 청했다.⁸⁾ 결국 노론 4대신인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가 유배를 갔고, 다수의 노론 인물들이 삭직되었다. 게다가 1722년 3월, 노론측이 세자 시절의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이 있었고,⁹⁾ 당국자들은 이를 기화로 노론 4대신을 사사(賜死)했다.¹⁰⁾

이 기간 동안 실록청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목호룡의 고변이 있던 1722년(경종2) 3월에도 시정기 산절을 계속되어, 임신년(1692, 숙종18)부터 정축년(1697, 숙종23)까지 6년간의 시정기를 거의 산절했고, 무인년(1698, 숙종24)부터 계미년(1703, 숙

5)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신축년 11월 5일. 2방 서역(書役)이 가장 적체되어 있었다.

6) 《경종실록》 권4 1년 8월 23일(신사). 이 날 세제를 맞이할 관직을 제수했는데, 대부분이 실록청 당상과 낭청을 겸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창집을 세제사(世弟師)로, 이건명(李健命)을 세제부(世弟傅)로, 송상기(宋相琦)를 좌빈객(左賓客)으로, 최석항(崔錫恒)을 우빈객(右賓客)으로, 이관명(李觀命)을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이만성(李晩成)을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이희조(李喜朝)를 찬선(贊善)으로, 박사익(朴師益)을 보덕(輔德)으로, 김제겸(金濟謙)을 겸보덕(兼輔德)으로, 신철(申哲)을 겸필선(兼弼善)으로, 조문명(趙文命)을 문학(文學)으로, 윤순(尹淳)을 사서(司書)로, 황제(黃粹)를 설서(說書)로, 유승(兪崇)을 대사간(大司諫)으로, 홍정필(洪廷弼)을 부교리(副校理)로, 이덕수(李德壽)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7) 《경종실록》 권2 1년 10월 13일(경오)

8) 《경종실록》 권5 1년 12월 6일(임술)

9) 《경종실록》 권6 2년 3월 27일(임자)

10) 《경종실록》 권7 2년 4월 22일(병자). 이이명과 김창집은 이 날 사사했고, 이건명은 8월 19일(임신)에 처참했으며, 조태채는 10월 29일(신사)에 사사했다.

종29)까지 6년간의 시정기를 다시 실록청에 이봉했다. 또 5월 20일에, 무인년부터 계미년
까지 시정기 산절을 마치고, 갑신년(1704, 숙종30)부터 기축년(1709, 숙종35)까지 6년간의
시정기를 이봉했다. 7월 21일에는 이들 시정기 산절을 마치고, 다시 나머지 숙종 연간 11
년분의 시정기를 마저 한꺼번에 이봉하였다.

이후 1723년(경종3) 1월 6일, 3방이 시정기 산절 서역을 거의 마쳤고, 15일에는 1방도
서역을 마쳤다고 알려왔다. 또 2방도 2월 7일에는 산절 서역을 마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
아 이 무렵 시정기 산절에 관한 한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거의 아
홉 달 동안 실록 편찬은 지지부진했다. 아무래도 신임사화로 편찬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대폭 줄었고, 김창집에 이어 총재관이 되었던 조태구(趙泰耆)가 1723년 5월 사면하고, 6월
에는 다시 좌의정 최규서(崔奎瑞)로 바뀌었다가, 또 9월에 최석항(崔錫恒)으로 바뀌는 등 지
휘체계도 혼란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실록청 총재관은 1724년 5월 25일 다시 이광좌(李
光佐)로 바뀌었다. 실록청의례에서 보듯이 이 사이에는 실록 편찬이 늦어지고 있다는 걱정
과 빈번한 총재관 변경을 제외하고 막상 실록 편찬과 관련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가 1724년 8월에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英祖)가 즉위했던 것이다.

영조가 즉위한 뒤에도 이광좌는 대제학(大提學) 조태억(趙泰億)을 다시 신칙하여 《숙종실
록》을 부지런히 찬수하기를 청했다. 그런데 막상 조태억은 일이 많으며 나이 젊고 벼슬이
낮은 사람을 얻어서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725년 11월에는 실록청 당상이 이조(李
肇) 한 사람뿐이었으므로, 간성 군수(杆城郡守) 이덕수(李德壽)와 윤순(尹淳)은 당상관에 보
임했다.¹¹⁾ 이어 1725년(영조1) 2월 28일, 노론 정호(鄭澍)가 총재관이 되었고, 5월에는 이
관명(李觀命)이 총재관을 맡았다. 그렇지만 이해 9월에 이르러서도 실록편찬이 끝날 날은
요원하였다.

올해 9월 15일, 대신,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기사관 신노(申魯)가 아뢰었다.
“신은 실록청 일을 아뢰겠습니다. … 실록을 주관하는 낭청이 연이어 나갔으니, 실록 편찬
의 기약이 없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실록 당상은 본래 6명인데, 3명이 외방에 있고, 출
근하는 사람은 3명 뿐입니다. 하루에 찬수하는 것이 불과 3일의 실록이니, 이렇게 계산해보
면 1년이 되어도 겨우 3년의 실록만 찬수할 수 있을 뿐이고, 45년 실록을 다 완성하려면
15년이 걸릴 것입니다. … 그 사이에 또 공사(公私)의 일로 개좌할 수 없을 것이니, 몇 십
년이 걸려도 필시 실록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변(事變)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말하자면, 현묘실록은 갑인년 이후 소인배[群壬]들이 찬
수했기 때문에 경신년 이후 개수했습니다. 옛날로 예를 들면, 송나라 철종 원우 실록은 채
변 등이 수정했기 때문에 고종조에 개수하려고 했나 이미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가 없었습니다. … 지금 만약 실록이 수십 년 늦어지면 이전의 우환이 장차 끝이 없을 것이

11) 《영조실록》 권2 즉위년 11월 20일(경신)

니, … 현재 조정 신하 중 당상에 합당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니, … 숫자에 제한하지 말고 가정(加定)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신노의 말을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 경종의 줄곡이 끝나 《경종실록》도 편찬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런데 아직 《숙종실록》조차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이 겹쳤던 것이다. 아무튼 《숙종실록》은 완성해야 할 상황이었다. 다시 실록청에 박차를 가하여 《숙종실록》 편찬을 추진했지만, 당연히 《경종실록》 편찬은 1726(영조2) 4월이 되도록 시작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따라 《경종실록》 편찬을 위한 시정기의 산절과 《숙종실록》 찬수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민진원(閔鎭遠)이 총재관이 되었고, 이의현(李宜顯)·이재(李緯)·이병상(李秉相)·김재로(金在魯)·유척기(兪拓基) 등이 도청 당상(都廳堂上)이 되어 실록 편찬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1727년(영조3) 2월에 거의 편찬이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의견들이 《숙종실록》을 먼저 마치고 《경종실록》을 찬수하자는 견해가 많았다. 《경종실록》의 권질이 많지 않았으므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지 《숙종실록》 편찬을 마치고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해 11월 3일경에는 《숙종실록》 인쇄를 마쳤고, 표지를 씌우는 장황(粧潢)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이해 7월 영부사(領府事) 민진원(閔鎭遠)과 판부사(判府事) 이관명(李觀命)과 우의정(右議政) 이의현(李宜顯) 등 1백 1명이 파면되는 환국이 단행되었다.¹²⁾ 영조는 노론을 배척하고 다시 소론을 등용하는 정국 변동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주로 영조 즉위 후에 이루어진 《숙종실록》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숙종실록보궐정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숙종실록》의 최종 간행은 《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을 기다려야 했다.

2) 《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

1727년 2월에 끝난 《숙종실록》 찬수는 이후 인쇄절차를 밟았다. 시정기 산절부터 초초(初草), 중초(中草), 정초(正草)까지를 통상 좁은 의미의 찬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인쇄할 분판에 활자를 배치하고 간인하여 교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간인, 교정 과정이 끝나면 인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 7월의 정미환국은 《현종실록》 개수 때와 마찬가지로 실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해 9월 21일에 있었던 영조와 대제학 윤순의 대화를 보자. 당시에는 사관 이광부(李光溥)와 이성기(李聖起)가 입시하였다.¹³⁾

12) 《영조실록》 권12 3년 7월 5일(기미)

13) 《승정원일기》 영조 3년 9월 21일. 실록에는 단지 ‘대화가 사사(史事)에 언급되자’ 윤순이 먼저 보궐정오를 만들자고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영조실록》 권13 9월 21일(갑술). 의례 역시 《승정원일기》대로 영조가 먼저 보궐 발언을 한 것으로 적었다.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에는 정미년 9월 24일로 나오지만, 대화가 있었던 날짜는 21일이었다.

영조 : … 지금 사역(史役)이 거의 끝났으니, 세도(世道)가 공평하지 못하여 기재된 내용에 혼탁한 것이 많을 것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보궐(補闕) 작업이 하루가 급하다. 경이 숙배한 뒤이니 다시 혐의할 바는 없을 것이다. 이후의 실록 사안은 경이 힘쓰도록 하라.

윤순 : 신은 선조(先朝) 때 … 오래 낙향해 있었습니다. … 뜻밖에 또 분수가 아닌 명을 내리시니 한층 황송합니다. … 그렇지만 사국(史局)은 신이 정세에 구애되어 여전히 한번 사진(仕進)할 생각도 없습니다. … 다만 선왕의 50년 위대한 업적에 대해 신의 불학무식한 채주로 어찌 그 만분의 일이나마 본받아 성상의 부탁하시는 뜻에 부응하겠습니까. 또한 그 중 빠진 곳을 보완하는 일이 진실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이 또한 어찌 감히 시비를 분별하여 망령되어 증보하겠습니까. 대개 당목(黨目)이 나뉜 지 오래되어 사람들이 각각 문견(聞見)에 익숙하여 그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앞사람들이 편찬한 곳에 치우친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니, 신이 비록 이정(釐正)하고자 하여도 신 또한 당목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으로, 백대 이후에 어찌 반드시 공론(公論)이 되겠습니까? … 신이 갑진년(1724, 경조 4) 겨울 조정에 나왔을 때도 잠시 말았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신하의 마음에 어찌 일시가 급함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신에게 내리신 명은 대개 빠지거나 누락된 데[闕遺]를 보충하고 시비(是非)를 바로잡으라는 뜻이니, 신의 식견이 얕은데 장차 신이 어떻게 백대의 신사(信史)를 바로잡겠습니까. …

영조 : 이번 일이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경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내가 경 등 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단지 문학(文學)만 취한 것은 아니다. …

윤순 : 신이 어찌 주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상교가 이에 이르렀으니, 신이 감히 힘을 다해 나중이라도 갚는 의리를 다하겠습니다.

영조 : 실록 편찬을 경이 담당하겠다는 뜻이 있으니 참으로 기쁘다.

윤순 : 실록 찬수의 규정은, 당상은 단지 문자만 모으고, 총재관에게 물어서 정하는 것입니다. 전 총재관은 처음부터 실록 편찬을 담당하여 전말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절목을 새로 정하였지만, 총재관 직임은 이미 교체되었기 때문에 송인명(宋寅明)의 말로 보아 날마다 사진(仕進)하더라도 할 일이 없습니다. 총재관을 차출한 뒤에야 절목을 강정(講定)하여 보완하여 고칠 수 있을 것이며 공역(工役)이 쉽게 끝날 것입니다.

영조 : 전 총재관은 비상한 상황을 만나 의리에 처하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고 있다. … 총재관이 대신 나오지 못했지만 시임과 원임은 본래 이동이 없으니 수보(修補)할 때 시임과 원임에게 붙어서 하면 좋을 것이다. …

영조 : 보궐할 때 40년 시정기를 실록과 서로 비교하여 두 초본을 써서 전 총재관에게 보이고 만들면 유실할 우려가 없을 듯하다.

윤순 : 보궐(補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결루(缺漏)된 것을 첨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밖에 혹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게 되면, 신 등 몇몇 사람으로서는 임의(任意)로 고치기 어려울 듯하니, 이 또한 총재관이 있어야 강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 : 교정(校定) 여부는 대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보궐(補闕)

과 정오(正誤)에 대한 뜻 때문에 서로 의논했는데, 단지 첨가하는 글자의 숫자가 조금 긴 것은 보궐(補闕)이라는 두 글자로 이름 붙이더라도 정오(正誤)란 뜻이 저절로 그 가운데 들어 있게 될 것이다.

윤순 : 참교(參校)할 때 혹 시비가 치우친 곳을 발견하게 되면, 이는 더욱 사실이 누락된 경우와 달라서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단 보궐과 정오는 명목이 각각 다릅니다. 개정(改正)한 것을 보궐 아래 붙여놓으면 대단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록 《강목(綱目)》을 보더라도 역시 허다한 명목이 있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영조 : 경이 《강목》의 일로 말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윤순 : 《통감강목(通鑑綱目)》의 경우는 후세의 선비들이 증정(證定)했기 때문에 혹은 정오(正誤)로 이름 하기도 하고 혹은 발명(發明)으로 이름 하기도 했으나, 이번 실록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지난번에 이 일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어찌 사필(史筆)에다 사심(私心)을 부리려 했겠습니까마는, 다만 당의(黨議)가 이미 나누어지고 문견(聞見)이 같지 않았던 탓으로 시비(是非)와 여탈(予奪)이 올바르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별도로 수찬(修撰)하여 첨부할 때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한 것을 둘 다 보존하여 두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을 보궐(補闕)하는 아래에다 섞어 기록하는 것은 편치 않은 일입니다.

영조 : 경이 실록청에 가서 편찬된 실록 한 통을 보고, 그 중 교정할 일을 요지로 적어 총재관이 나오기를 기다려 처리하라. 이름을 정하는 일은 우선 원임, 시임에게 묻되, 청대(請對)하든지 초기(草記)로 품계하면 될 것이다.

대화에서 나온 ‘전 총재관’이란 파직된 민진원을 말하는 듯하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윤순을 인견한 자리에서 《숙종실록》의 개정을 언급한 것은 영조였다. 동시에 《숙종실록》 개정을 ‘보궐정오’라고 부른 것도 영조였다. 이후 윤순은 개정판 《숙종실록》의 명칭에 대하여 보궐과 정오를 함께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발명’이나 ‘정오’ 같은 《자치통감강목》에 대한 주석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명칭을 단일화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인견은 9월 18일 영조가 송인명과 이광좌를 만났을 때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때의 기록을 보자.

실록청 당상(實錄廳堂上) 송인명(宋寅明)이 《숙종실록(肅宗實錄)》을 개수(改修)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를 불러서 하문하니, 이광좌도 개수할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편차(編次)에 따라 보궐(補闕)할 것만을 허락하였다. 이때 《실록》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국면이 갑자기 바뀌어 역사를 찬수하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논척을 받아 물러나고 당상과 낭청들이 모두 시인(時人)으로 차임되었다. 송인명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실록(實錄)》은 백세(百世)의 공의(公議)가 있는 것이므로 양쪽의 시비(是非)가 편벽되어 있는 부분은 마땅히 산삭(刪削)해야 됩니다. 숙종(肅宗)의 처분(處分)은 춘하추동(春夏秋冬)이 각기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아서 출척(黜陟)과 진퇴(進退)가 모두 사의(事宜)에

맞게 되어 있는데도 한쪽에 좋게 되어 있는 것은 기재하고 좋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뽑아 버렸기 때문에 의논이 분분(紛紛)하여 귀결되지 않고 있으니, 조가(朝家)에서 처분(處分)이 있는 후에야 봉행(奉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재관(摠裁官)이 인협(引嫌)하면서 출사(出仕)하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안타깝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이러하니, 마땅히 헤아려 조치하겠다. 개수(改修)하고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총재관이 들어온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 총재관 이광좌와 당상(堂上)·낭청(郎廳)들을 명소(命召)하였다. 이광좌가 인협한 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총재관의 직임을 체면(遞免)시키자, 그제야 이광좌가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이광좌에게 이르기를,

“조금 전에 송인명의 말을 듣고서 이미 그 대체적인 사실은 알았다. 근래 당의(黨議)가 횡류(橫流)하고 있어 《실록(實錄)》도 또한 모두 사의(私意)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부터 신칙(申飭)했던 것이다.”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이 본 내용도 과연 송인명이 진달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본 것이 어느 해의 책이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병신년(1716, 숙종42), 정유년(1717, 숙종43)과 신사년(1701, 숙종27) 기록이었습니다. 상소(上疏)를 지엽적인 말만 기재하였으며, 사람의 생졸(生卒)도 간혹 누락된 경우가 있었고 혹은 꾸며서 지은 것도 있으니, 지금의 도리로서는 개수(改修)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전부 개수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따로 기록하려고 하는가?”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외간의 의논들은 모두들 말하기를 ‘아주 귀중한 《실록(實錄)》을 이런 식으로 남겨 전하게 할 수는 없으니 고쳐야 할 부분은 개수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대략 산삭(刪削)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개수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합니다. 이밖에도 편말(編末)에 부록(附錄)하는 법규(法規)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우선 의논들을 다 들어본 뒤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卿)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당당(堂堂)한 《실록(實錄)》이니만큼 전부 개수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현종(顯宗)의 《실록》은 이미 완성되어 비장(秘藏)했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별록(別錄)을 수찬(修撰)하였습시다만, 지금의 경우는 《실록》을 아직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이니 개

수해야 됩니다. 국가에 혹시 병혁(兵革)의 화(禍)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들 무리가 다시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개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보셔야 합니다.”

하였다. 이집(李穡)이 말하기를,

“전부 개수하려고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세변(世變)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의견으론 이미 완성된 책자는 개수하지 말고 누락된 것만을 별록(別錄)하는 것이 사의에 있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황정(黃暹)은 말하기를,

“국가의 중대한 처분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모두 호오(好惡)에 의해 기재했으니, 개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집(李穡)이 말하기를,

“대신의 의향은 비록 이러하지마는, 만약 다 개수한다면 어찌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광좌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궐루(闕漏)된 데 따라 편말(編末)에다 별록(別錄)하는 것이 일이 양쪽 모두가 온편하겠습니다.”

하고, 송인명은 말하기를,

“누락된 부분을 따로 첨록(添錄)하여 편말에 붙인다면 뒷날 다시 개수할 걱정이 없을 듯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大臣)이 본 병신년조(丙申年條)가 그러하다면 그 밖의 다른 것은 알 수가 있겠다. 그 당시의 당상(堂上)은 한결같이 모두 삭출(削黜)하라. 이미 완성(完成)된 책은 단연코 개수(改修)할 수 없으니, 각각 편말(編末)에 별록(別錄)을 붙이게 하라.”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담당 당상(堂上)을 삭출(削黜)하는 것은 뒷날의 폐단에 관계가 있습니다.”

하고, 송인명은 말하기를,

“비사(祕史)는 원래 국가에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제 사사(史事) 때문에 죄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삭출하라는 명령을 정지하였다.¹⁴⁾

결국 《숙종실록보궐정오》는 송인명의 발의에 따라 이광좌가 재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광좌는 자신이 보았던 《숙종실록》 일부를 근거로 기록에 왜곡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어 개수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광좌의 전면 개수론에 대해 이집은 별록을 만들어 첨부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개수를 청했던 이광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4) 《영조실록》 권13 3년 9월 18일(신미)

보궐 방식으로 논의를 유도한 것은 영조였다. 하지만 이광좌와 송인명은 《숙종실록》의 개수를 요청했지만, 당시 편찬을 맡았던 당상관들의 삭출 논의에서는 역사 편찬 때문에 죄를 주어서는 옳지 않다고 반대함으로써 왕권이 역사 편찬에 개입하거나 역사 편찬으로 처벌을 당하는 전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런 《숙종실록》의 보궐정오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사관인 검열(檢閱) 정익하(鄭益河)는 개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임금의 비사(祕史)를 중히 여기는 뜻이지만 보궐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며, 비사의 내용은 외인(外人)이 알 바가 아닌데, 지금 보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소 구적(仇敵)이었던 사람들이므로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곱 가지의 의혹을 제기하였다.¹⁵⁾ 다음은 정익하의 상소 내용 중 일부이다.

46년간의 《실록(實錄)》의 권질(卷秩)이 모두 74편(編)인데, 그들이 기필코 병신년, 정유년, 신사년의 것만을 먼저 가져다가 본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중 첫 번째입니다.

허다한 권질(卷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천만 가지의 일뿐만이 아닌데, 지금 권략(闕略)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과 국가의 전례(典禮)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신(諸臣)들의 소차(疏筭)와 은졸(隱卒) 죽은 신하를 측은히 여김의 특은(特恩)에만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중 두 번째입니다.

8년에 걸쳐 겨우 완성한 서책(書冊)을 감히 전부 개수(改修)하자고 청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평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말하기를, ‘오늘날 개수한 뒤에 만일 다시 개수하기를 청하는 자가 있게 된다면 어찌 나라의 체모에 큰 손상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개수하기는 똑같은데도 나라의 체모에 손상되는 것이 유독 전후(前後)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중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개수하기를 청했다가 성의(聖意)가 망설이시고 자기들 중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에 보궐(補闕)이 정오(正誤)의 뜻을 겸하는 것으로 우물쭈물 말을 했는데, 보(補)와 정(正), 권(闕)과 오(誤)는 그 뜻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필코 두 가지의 뜻을 날합(捏合)하여 공교하게 하나의 명칭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중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어찌 큰일이겠느냐는 등의 말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마치 떠벌릴 의도가 없는 것 같았으나 아침에 청대(請對)하였다가 저녁에 또 같이 들어가서 비사(祕史)의 내용을 전하고 말하여 임금의 귀를 놀라게 하면서도 조금도 돌아보며 꺼리는 것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중 다섯 번째입니다.

사역(史役)은 사역이고 조정은 조정인데 조정의 번복(翻覆)이 사역(史役)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려가 없을 수 없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사사(史事)를 빙자하여 성의(聖意)를 얻

15) 《영조실록》 권13 3년 9월 18일(신미). 이 상소는 정익하가 어떤 일로 파직되어 승정원에서 봉입하지 않았다.

탐하고 시험해 본 정상이 현저히 드러났으니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중 여섯 번째입니다.

남의 불공정(不公正)에 대해서는 진실로 말하기 쉬운 것이지만, 자신이 무사(無私)하게 한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한 것은, 바로 한 무제 때 승상인 공손홍(公孫弘)이 ‘어떻게 신이 거짓을 하는지 알겠습니까?’라고 한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사심(私心)과 무사(無私)에 대해 기필할 수가 없다면 남의 공정(公正)과 불공정(不公正)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중 일곱 번째입니다.

정익하는 사가(史家)의 필법(筆法)은 매우 엄중하고도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인데, 개수를 주장하면서 아무일, 아무일이라고 직접 임금 앞에서 지직한 과실도 비판하였다. 그가 정철(鄭澈)의 5대손이고, 정종명(鄭宗溟)의 현손으로 노론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숙종실록》 개수(보궐)에 반대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의 이런 우려가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또 정익하의 일곱 가지 의문 제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신년, 정유년, 신사년만 거론한 이유나,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과 국가의 전례(典禮)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신(諸臣)들의 소차(疏箴)만을 문제 삼은 이유를 물었던 것은 《숙종실록》 개수를 거론하는 의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또 개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보궐정오’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귀결된 점도 정익하가 보기에 는 《숙종실록》 개수론의 논리적 약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숙종실록》 보궐에 대한 반대는 정익하에 그치지 않았다.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윤득징(尹得徵)·김약로(金若魯)·이성해(李聖海) 등도 상소하여, “《숙종실록》은 이미 편마(編摩)가 끝나서 50년 동안의 훌륭한 공과 아름다운 업적이 70여 편(編) 가운데 환히 포열(布列)되어 있으니, 그 장부(臧否)·여탈(與奪)의 조심한 것과 상략(詳略)·취사(取捨)의 살핍에 있어 각기 권도(權度)가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제 이에 편사(偏私)한 마음으로써 감히 이를 변란(變亂)시킬 계책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대로 무함하는가 하면 쓸데없는 말로 강청(强請)하면서 사체(事體)의 엄중함은 돌보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만 통쾌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으니, 어찌 통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라며, 한두 사람의 사적인 호오(好惡) 때문에 멋대로 나중에 논의하여 사안에 따라 첨보(添補)하고 편차에 따라 증부(增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¹⁶⁾

이들은 모두 섬에 정배되었는데, 보궐 반대론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부사직(副司直) 김유경(金有慶)도 《숙종실록》 보궐에 반대하면서, 이를 두고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연산군에게 무고하여 무오사화(戊午士禍)을 일으켰던 유자광(柳子光)과 같은 화(禍)에 비유하였다. 특히 그는 신임사화로 《숙종실록》 편찬 담당자들이 노론 중심에서 소론으로 대대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 누구도 아닌 신임사화의 단초를 열었던 김일경(金一鏡)을 실록청 당상으로 삼았던 점을 거론하여 보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일경은 목호룡을 사주하여 고변하게 한 뒤 노론 4대신을 죽게 하였다가, 영조 즉

16) 《영조실록》 권13 3년 9월 25일(무인)

위년에 참형을 당했던 터였다. 상소가 올라가자 영조는 김유경을 제주 대정현(大靜縣) 절도에 안치시켰다.¹⁷⁾

이렇게 시작된 《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은 3방으로 나누지 않고 도청만 운영하였다. 같다. 보궐 총재관(補闕總裁官)에 이광좌(李光佐), 도청 당상(都廳堂上): 윤순(尹淳), 송인명(宋寅明)이 임명되었으며, 낭청은 6명을 정원으로 삼았는데, 서명빈(徐命彬), 이종성(李宗城), 정우량(鄭羽良), 조현명(趙顯命), 이정응(李挺應), 황정(黃晟)이었다.¹⁸⁾ 《보궐정오》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윤순은 실록 중 긴요한 부분을 주려 인출하여 어람(御覽)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하여 영조의 허락을 얻기도 했다.¹⁹⁾

이렇게 하여 이듬해 1728년(영조4) 2월 25일에 찬수가 거의 끝나고 인쇄를 시작하기 위해 분판등록 낭청을 차임했다. 7명의 낭청에 13명을 더 임명하여 인쇄를 제때 끝내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기존에 찬수가 끝난 《숙종실록》과 새로 만든 《보궐정오》를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²⁰⁾ 이 대화는 기존 《숙종실록》에 대해 《보궐정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보궐정오》를 편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광좌 : 사국(史局)의 보편(補編) 작업이 거의 끝나서, 오늘부터 써내어 장차 인쇄 작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책명(冊名)을 의정(議定)하려다가 어쩌다보니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영조 : 지난번 물어보려다가 미처 묻지 못하였다. ‘보궐(補闕)’을 권마다 첨입하는가, 아니면 따로 한 부를 만드는가?

이광좌 : 당초 한 부를 따로 만들려고 했으나, 고열(考閱)에 편하기 때문에 각 권 말에 넣으려고 합니다. 본책이 매우 상세하여 (별책으로 만들 경우 쌓아놓으면) 하단 한두 길에 들어가거나 너댓 길에 들어가기도 하여 보입(補入)하는 뜻이 아닌 듯하고, 또한 시비득실(是非得失)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

윤순 : 책명(冊名)을 ‘보궐’로 하려고 했는데, 찬수한 뒤 다시 보니 추후에 고친 데가 있어 대신이 이미 진달했습니다. … ‘보궐’이라고 이름 하면 포괄하지 못할 듯하여 품정하고자 합니다.

송인명 : … 자연 누락된 곳이 있어서 거두어 기록했으니 보궐이고, 왕왕 시비가 사실과 다른 곳이 있으니 부득불 고쳐서 기록했으니, ‘보궐’이라고 하면 명실(名實)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정오(正誤)라고 이름 하면 또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 둘 중 하나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네 글자를 합쳐서 이름을 짓겠습니까?

영조 : 비사(祕史)에 관한 일은 물을 수 없다. 수사(修史)의 규칙에 대해서는 고사기(古史記)와 같은가?

17) 《영조실록》 권13 3년 10월 26일(무신)

18)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에는 별도로 명단이 없다. 《숙종실록보궐정오》에 연인원이 나오는데, 위의 6명은 의궤 정미년 12월 26일 기사에 춘추관 계에서 따로 확인한 것이다.

19) 《영조실록》 권14 3년 12월 26일(정미)

20) 《승정원일기》 영조 4년 2월 27일

윤순 : 《자치통감(資治通鑑)》과 같습니다.

영조 : 강(綱)이 있는가?

송인명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큰 글자로 강(綱)을 썼지만, 《자치통감(資治通鑑)》은 큰 요지를 써서 서술했습니다. 이는 큰 요지를 쓰고 아래에 서술하면서, 역사를 편수한 사람이 자신의 소견을 써서 사단(史斷)으로 삼았습니다.

윤순 : 사단(史斷)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사론(史論) 같은 것입니다.

송인명 : … 이전 사람들의 역사 편수는 빠트리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시비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 부득이 거두어 기록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했습니다만 문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조 : 한 부의 책에도 시비에 서로 피차가 있다.

이광좌 : 한쪽 편의 사람이라도 포(褒)한 경우도 있고 폄(貶)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조 : 지난번 찬수한 것 중에는 없는가?

이광좌 : 색목(色目)이 같아도 그 중에 포폄이 있습니다.

영조 : 쫓겨난 것 중 기린 것은 본디 넣었을 것이고, 깎은 것은 넣지 않았는가?

윤순 : 지난번 위태로운 말에 대해서도{向來爲危怖之言矣} 역사를 편수할 때 어찌 감히 색목을 돌아보겠습니까. 색목이 같아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했지만, 항상 사람의 말을 따지지 않고 모두 기록했습니다. 색목이 같거나 다르거나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 너무 심한 사안도 없지 않고 또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부득불 추후 변별했습니다. 단점이 있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도 거두어 넣었기 때문에 시비가 상반된 곳이 있지만, 또한 그대로 두었습니다.

송인명 : 지난번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극히 찬동했으니 다시 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기린 곳이 없으니, 고쳐 쓴 데에도 겹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연 이와 같습니다.

영조 : 경 등은 사필(史筆)에 사사로운 뜻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 피차의 소견이 같지 않으니 포폄의 차이가 이상할 것이 없다. 시비에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경 등의 뜻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광좌 : 윤순과 송인명은 모두 책명에 두 글자를 쓰면 포괄하지 못하니, 네 글자를 다 쓰는 것이 의당하다고 합니다.

윤순 : 실록 하단에 보첩한 데다가 각각 이름을 쓰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보궐이라고 하면 정오(正誤)의 뜻이 들어가지 않고, 정오라고 쓰면 보궐(補闕)의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조 : 네 글자 중 두 글자를 빼자는 것은 무슨 뜻인가?

송인명 : 네 글자 중 두 글자를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글자를 빼면 결국 치우치게 됩니다. 네 글자를 다 쓴 뒤에야 비로소 포괄할 수 있습니다.

영조 : 네 글자 중 두 글자를 빼는 것이 어렵다면 합쳐서 이름을 붙이겠는가?

송인명 : ‘보정(補正)’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광좌 : ‘알존(遏存)’과 같습니다. 《맹자(孟子)》에 “인욕(人欲)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한다.”고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두 글자만 잘라내어 ‘알존’이라고 하기 때문에 웃음을 샅습니다. 지금 ‘결오(闕誤)’자가 있어서 문자가 되는 것이고, 만일 단지 ‘보정’이란 글자만 쓰면 ‘알존’과 같기 때문에 네 글자를 모두 쓴 뒤에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영조 : ‘보정’이라고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만, 보정이란 명칭은 좋지 않다. 호의(戶議 호조참의 송인명)가 두 글자를 빼자고 하지만, 오십보 백보이다. ‘보결정오’라고 시원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이광좌 : 이전 사람들이 쓸 때 사건을 거론하지 않고 대략 총괄해서 말했습니다. 자고로 국가에서는 비사를 보지 않고 당나라 임금(당태종)이 국사(國史)를 보려고 했을 때 사관(房玄齡)이 죽기로 다투었고, 선유(先儒 범조우(范祖禹)도 비판했습니다. 보면 많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고례와 국법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

영조 : 나도 헤아리고 있고, 비사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이다. 장차 책명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묻는 것이다. 실록 중의 사실은 모르더라도 알아야 할 데는 있느니라.

이광좌 : 한림(翰林)의 시정기 역시 오류가 많습니다. 피차에 각각 시비가 있어서 적절히 따르기 어려우며 또한 단지 음청(陰晴)만 기록한 곳도 있고 상소 역시 다 빼버리고 기록하지 않아서, 만일 《승정원일기》가 없었으면 역사 편수가 어려울 뻔했습니다. 선조의 46년 동안 한림도 피차 색목이 다른 사람이 반반이었으므로, 상세한 데도 있고 소략한 데도 있어서 본래 사초를 보존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영조 : 보존하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경의 말에 일리가 있지만 세도가 이와 같아서 보존하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사실이 모두 전사(全史)에 들어가 있으니 반드시 보존할 필요는 없다.

이광좌 : 그때의 역사 찬수에 사사로운 뜻이 있으면 그 포폄과 시비가 한 편만 남을 것이니, 세초한 뒤에는 장차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조 : 산야(山野)에 절로 공론(公論)이 있다.

이광좌 :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선묘조(宣廟朝) 임진년 전부터 고려(高麗) 때의 시정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병화(兵火)에 휩쓸렸고, 그 나머지는 사관(史官)들이 때웠기 때문에 사그리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오년 환도(還都) 이후 시정기는 갑진년까지 15년 동안이 있었습니다만, 광해군(光海君) 초기 대북(大北)이 선조 말년 시정기에 자신들의 악행을 직서(直書)했기 때문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

윤순 : 세초(洗草)라는 것은 중초(中草)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에서 나온 것이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인명 : 자고로 명신(名臣)은 대부분 본초(本草 본래 사초)를 보존하기를 청했지만, 열성(列聖)께서 모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순 : 그렇게 하면 한림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대(百代)의 시비에 대해 《승정원일기》처럼 고루 갖추지 못하면 그 논의는 후일에 모두 믿지 못할 것입니다. 국사를 만

든 뒤에 태워버리면 일기처럼 오래 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본래의 의도는 사관을 별도로 두어 오래 전해질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시정기를 사각(史閣)에 두지 않고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광좌 : 양편의 사초를 모두 두게 되면 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대화는 이광좌가 《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이 끝났으니 총재관 직임을 사직하려고 하자 영조가 《경종실록》 편찬이 남았으며 만류하는 것으로 마쳤다. 다소 길지만 인용해둔 것은 그 대화 자체가 필자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상세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숙종실록》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보궐정오》의 편찬을 시작했지만, 이광좌, 윤순, 송인명은 ‘보궐’, ‘정오’, ‘보정’, ‘보궐정오’ 등 그 이름을 가지고도 치열하게 명실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윤순은 각기 듣고 본 바가 다르므로 색목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숙종실록》의 존재가치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한림의 시정기, 즉 사초를 세초하지 말자는 주장이 새롭지만, 이 주장 역시 만세의 공론인 역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세초를 하지 말자는 논의는 《숙종실록》을 찬수한 뒤인 1727년(영조3) 11월에도 윤순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었다. 거의 같은 논리로 해를 넘겨 다시 제기된 셈인데, 전례가 없던 일이라 이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여 공론을 유지하자는 취지에는 영조도 공감하였던 것이다.

이 논의가 있고 이튿날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의 인쇄 작업에 들어갔다. 3월에 《숙종실록》은 총 73권, 다섯 곳의 사고에 분장할 권수 총 365권을 장황 작업까지 마쳤고, 3월 26일 춘추관에 봉안했다. 또한 상례대로 시정기와 중초 등 편찬 자료를 세초하기로 했다. 관례대로 의례를 작성하였는데, 응행사목(應行事目)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의례(儀軌) 5건, 형지안(形止案) 5건을 수정하여 5곳의 실록 봉안처에 나누어 보관한다.

하나. 처소는 전의감(典醫監)에 설치하되, 본청을 ‘실록의궤청’이라고 부른다.

하나. 당상과 낭청이 사용할 인신(印信) 각 1과(顆) 및 방석이나 요[鋪陳]는 앞서 나누어 준 것을 그대로 사용한 뒤 돌려주며, 도청 당상과 낭청은 전례대로 의례를 수정할 동안 본래 근무하던 관청[本司]에 나가 근무하는 일을 면제하고, 공식 회의[公會]에 참석하지 말고 제사(祭祀)·월과(月課)·시사(試射)에도 차출하지 않는다.

하나, 부리는 원역(員役) 중, 서리(書吏) 4명은 요포(料布)가 있는 서리이니 그대로 부리고, 서사(書寫) 5명, 사령(使令) 2명의 경우는 사례에 요포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요포에 폐단이 있으니, 요포가 있는 관청의 글씨 잘 쓰는 서리 5명, 사령 2명을 옮겨 차출하여 일을 시키되, 고지기 1명은 호조와 병조에서 규례에 따라 요포를 지급하도록 한다.

하나, 종이·붓·먹 및 사용할 여러 물품은 해당 관청에서 조달하게 하고, 태만한 관리는 분

관으로 태(筴)를 쳐서 죄를 주고 바로 가둔다.

하나, 수직군사(守直軍士)와 다모(茶母)는 병조와 형조에서 정하여 보낸다.

하나,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이리하여 곧 세초를 마치고 외방 4사고에 봉안하려던 실록은 10월이 돼서도 세초를 하지 못했는데, 이는 무신난(戊申亂) 때문이었다. 이인좌의 난으로도 불리는 정변은 3월 26일 이인좌가 체포되어 공초를 받으며 일단락되었지만,²¹⁾ 이후 추국(推鞠)이 이어지는 등 사건처리를 두고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28년 10월에도 결국 세초를 하지 못하고, 《경종실록》 편찬이 완료되면서 함께 세초하려다가 1731년(영조7) 6월에 세초와 함께 상전(賞典)을 내렸다. 이때 《숙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인물만이 아니라 《숙종실록보궐정오》 편찬 참여자들에게도 같이 포상하였다.

3.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의 비교

《숙종실록보궐정오》는 숙종대의 역사에서 소론 측의 입장을 천명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었고, 《숙종실록》에 오류와 왜곡이 많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보궐정오》는 소론 측의 당론을 반영하는 편파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고친 실록의 명칭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숙종실록》에 대한 보궐-정오, 즉 빠진 기록을 보완하고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두 방향에서 편찬된 것이 《숙종실록보궐정오》였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광좌가 신사년(1701, 숙종27), 병신년(1716, 숙종42), 정유년(1717, 숙종43)을 언급하면서 《숙종실록》의 불공정성, 불완전성을 지적했던 것처럼 특정 시기의 사건에 대한 ‘보궐정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종 초반 남인정권에 대한 인식, 1680년(숙종5) 경신환국(庚申換局) 이후 노소 분당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건, 1694년의 갑술환국 이후 세자(世子 경종)의 보호와 장희빈(張禧嬪)의 처리 문제, 병신처분(丙申處分) 등 주요 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1) 숙종 초년에 대한 인식

①-1. 숙종 권3 1년 4월 25일(계축)

[원본]

이옥(李沃)을 헌납(獻納)으로, 남천택(南天澤)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남천택은 남천한(南天漢)의 아우이다. 또 특별히 윤휴(尹鑄)을 승진시켜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윤휴의 아버

21)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6일(병자)

지 윤효전(尹孝全)은 광해군(光海君) 때에 위훈(僞勳)에 서록(敍錄)되어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이었고 대북파(大北派)가 되었었다. 윤희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고, 병자년(1636)과 정축년(1637)의 호란을 당한 뒤에 호서(湖西)에 우거(寓居)하면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권시(權譔)·이유태(李惟泰)·윤선거(尹宣舉) 등과 교유(交遊)하였으며, 이이(李珥)·성혼(成渾)을 추존(推尊)하였다. 송시열(宋時烈) 등은 그의 재주와 학문을 사랑하여 나이를 잊고서 사귀었다. 윤선거가 윤희를 더욱 존중(尊重)하여 경국 제세(經國濟世)할 인재로 인정하였다. 그 뒤에 민정중(閔鼎重)이 효종조(孝宗朝)에 천거하자 친히 가서 만나보겠노라고 하시기에 이르렀고, 송시열 등은 그를 추천하여 지평(持平)을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포의(布衣)라 일컫고는 끝내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의 명성(名聲)이 더욱 크게 떨치어서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모두 윤포의(尹布衣)로 일컬으면서 그 얼굴을 서로 알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일상(李一相) 형제만은 한 마을에 살았기에 윤희가 착하지 못함을 알고서 항상 말하기를 ‘이 사람이 출세(出世)를 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칠 것이다.’ 하였다. 이단상(李端相)이 일찍이 금중(禁中)에서 민정중을 책망하기를 ‘들으니 그대가 희중(希仲)을 혹 백이(伯夷)에 비기고 혹 제갈량(諸葛亮)에 견준다 하니 이 무슨 말인가?’ 하였다. 희중은 윤희의 자(字)이다.

[보궐]

특별히 윤희(尹鑄)를 승진시켜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윤희가 예제(禮制)를 의논할 때 본래 화(禍)를 일으킬 마음이 있었으니, 평일(平日)에 교유(交遊)하던 자가 진실로 능히 작은 조짐을 보고서 크게 나타날 것을 알아, 이를 조기(早期)에 절교하였더라면, 진실로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인년(1674, 현종15) 이전의 윤희의 죄는 다만 예제(禮制)를 의논하였던 일 하나뿐이었으니, ‘대고(大故)가 아니면 절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논하든지, ‘숙계(宿契)를 추념(追念)하여 차마 갑자기 절교하지 못하였다.’고 했다면, 이는 또한 충후(忠厚)한 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또 윤선거(尹宣舉)가 윤희에게 글로 경계하였건만, 경계를 하여도 듣지 않아서 또 그를 절교하였는데, 그가 권권(眷眷)하게 편지로 송시열에게 권면하여 송시열로 하여금 윤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죄고(罪愆)를 관대(寬大)하게 하려고 한 것은 또한 세도(世道)를 근심하고 당화(黨禍)를 염려한 뜻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어찌 뜻을 얻은 뒤에 서로 붙어서 악(惡)을 함께 한 무리들과 방불(彷彿)한 것이겠는가? 그런데 초사(初史)를 편수한 자가 반드시 이부와 오정창(吳挺昌) 등을 끌어 썼으며, ‘애중(愛重)하라.’고 말한 것을 오멸(汚蔑)의 계획으로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다.

①-2. 숙종 권5 2년 1월 6일(기축)

[원본]

이때 윤희(尹鑄)가 여러 번 사직 상소를 올려서 자기 말이 채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물러가기를 청하였는데, 재차 사관(史官)을 보내어 효유(曉諭)해 머물게 하였다.

[보궐]

윤희(尹鑄)가 병거(兵車)의 제조를 정지했다 하여 소(疏)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에 눈물을

뿌리고 영결(永訣)한다는 말이 있어, 임금이 연달아 비망(備忘)을 내렸는데, 그 말의 뜻이 특별히 융숭하였다. 사관(史官)을 보내어 유지(諭旨)를 전하니, 윤휴가 오랜 만에 나왔다. 윤휴의 이른바 대계(大計)라는 것은 병거를 만드는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기황(飢荒)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많이 만들기를 일삼기 때문에 임금의 뜻이 조금만 어려워하면 언제나 퇴임하겠다고 임금에게 청하였으니, 그 패망(悖妄)됨이 심하였다. 무릇 송시열(宋時烈)이 고론(高論)을 제창한 뒤로 자취를 산림(山林)에 의탁한 자가 언제나 이를 빙자하여 진신(進身)하는 길로 삼았다. 송시열은 효종의 분발하여 유위(有爲)하려는 뜻을 만났던 것이니, 본래 이러한 말을 올릴 만하였지만, 윤휴에게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나이 어린 임금이 새로 왕위를 이어 국세(國勢)가 고위(孤危)하였으니, 주자(朱子)가 이른바 ‘구구한 동남(東南)의 일을 이루 다 근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휴가 큰 소리로 공갈하여 간과(干戈)를 움직여 보려고 꾀했으나, 다행히 당시의 여론이 허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라를 그르치고 일을 낭패시킨 죄는 그 살덩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상되겠는가? 아! 윤휴는 특별히 한 창자 없는 사람일 뿐인데, 처음에 어떻게 하여 이름을 도둑질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①-3. 숙종 권5 2년 7월 12일(임진)

[보궐]

윤휴를 배척하는 임금의 유지에 대해 탁남과 청남으로 갈리다

①-4. 숙종 권7 4년 6월 12일(신사)

[원본]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민정중(閔鼎重)이 진소(陳疏)하여 윤휴(尹鑄)의 패륜(悖倫)하고 의(義)를 업신여긴 상황을 극론(極論)하고, 일찍이 더불어 교유(交遊)하고 천거한 것으로 책임지고 사직(辭職)하는 상소

(숙종이) 대답하기를,

“이번 한재(旱災)가 몹시 참혹하여 국사(國事)가 안정되지 않은 날을 당하여 삼가고 협동할 의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黨)을 한가지로 하여 다른 이를 벌죄(伐罪)하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으니 내가 실로 개탄스럽다.”

하였다.

[보궐]

(숙종이) 대답하기를,

“동료 사이에 서로 삼가고 협화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니, 내가 실로 개탄하여 이를 책망한다. 【원소(原疏)의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이 민정중(閔鼎重)의 소(疏)를 보면, 그 윤휴(尹鑄)가 《중용(中庸)》의 주(注)를 고치고 예(禮)를 논(論)한 뒤에 끊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송시열(宋時烈)이 어찌 당여(黨與)로써 배척하지 않고서 도리어 유독 갑인년 전에 이미 죽은 윤선거(尹宣舉)만을 미워하며 싫어하였으니 어찌된 것인가? 이와 같이 하면서 공심

(公心)을 자허(自許)하니, 사람들이 누가 믿겠는가?”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민정중(閔鼎重)은 윤휴(尹鑄)를 따라 교유(交遊)한 지가 가장 오래였으며, 섬기기를 심히 근신(謹愼)하였다. 일찍이 집을 윤휴가 사는 곁에다 짓고, 집경(執經)하기를 다시 청하여 문생(門生)으로 자칭(自稱)하더니, 이에 이르러 드디어 배반하였고, 또 상장(上章)하여 윤휴를 배척하였으니, 시의(時議)가 그르다고 하였다.

①-5. 숙종 권13 8년 4월 27일(갑진)

[원본]

문외 출송(門外黜送)한 죄인 허목(許穆)이 죽었는데[死], 나이는 88세이었다.

[보궐]

허목(許穆)이 졸(卒)하였다. 허목은 옛날 사람의 풍모와 흰 털이 섞인 눈썹으로서 학(鶴)과 같은 자태가 있었다. 학식이 넓고 성품이 아담하며 옛것을 좋아하였고, 문장(文章)은 고상하고 간결하였으며, 전법(篆法)은 매우 기이하였고, 속류(俗流)에 비하여 특별히 다른 것이 있었으나, 학문은 실지의 공부가 없었다. 대개 송시열(宋時烈)의 예론(禮論)으로써 효종(孝宗)을 깎아 박대하였다 하여 반드시 고묘(告廟)하여 법대로 적용하려고 한 것은, 그가 중한 일을 평계하여 남을 얹어서 해치는 죄과에 스스로 들어감을 몰랐던 것이다. 또한 허목은 조경(趙綱)과 함께 묘문(墓文)을 많이 지었는데, 혼조(昏朝 광해군대)의 여파(餘派)에서 조경은 척도(尺度)가 매우 엄하였으나, 허목은 그렇지 못하여 사물의 청탁(淸濁)에 분별이 적었다. 만년(晩年)인 갑인년 이후에 여러 사람을 따라서 조정에 들어간 지 반 년 만에 경상(卿相)에 이르렀는데, 자기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서 직임(職任)을 받았으니, 늙어 쇠약하여 일이 전도되고 착오가 나서 하는 일마다 웃음거리를 남겼다. 그러므로 삼자(三者)가 모두 마음 수양의 깊고 얕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윤휴(尹鑄)와 허적(許積)과는 다른 점이 있어서 이따금 좋은 언론(言論)이 있기도 하였다. 그 일을 논한 차자(筴子)에,

“남구만(南九萬)이 유배되고 허견(許堅)의 무리가 마침내 무사하였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외게 되었다. 애당초 사서(史書)에서는 ‘사(死)’라고 썼는데, 이후로 당론(黨論)으로 유배되었던 이하진(李夏鎭)의 경우에도 모두 이 예(例)를 썼으니, 얼마나 심한 일인가?

①-1~①-4은 윤휴에 대한 평가, 또는 윤휴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①-5는 허목의 졸기인데, 원본에 단 한 줄만 기록한 데 비해서 기록한 데 비해 《보궐정오》에서는 비교적 상세히 평론하였다.

①-1 기사의 초점은 윤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송시열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특히 윤선거가 윤휴에게 경계하였다가 경계를 하여도 듣지 않자 절교하였으면서도 송시열에게는 윤휴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 일은 관대하게 세도(世道)를 근심한 것이라고 하여, 송시열이 생각하듯 윤선거가 윤휴와 절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었

다.

①-2 기사도 얼핏 보기에는 윤희가 조정에 나온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 송시열이 고론(高論)을 제창한 뒤로 산림(山林)이라고 일컫는 자가 이를 빙자하여 조정에 나아가는 길로 삼았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²²⁾ 그리고 송시열에 대한 이런 비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노소(老小) 분립과 외척비판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①-3 기사는 《보궐정오》에서 뭔가 오해한 듯하다. 청남, 탁남은 숙종 원년 송시열을 유배 보내면서 그의 처벌에 대해 허목, 윤희 등의 강경론(청론)과 허적으로 대표되는 온건론(탁론)을 가리킨다. 이 시기 《숙종실록》 기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①-4 기사는 흥미로운 데가 많다. 우선 민정중의 상소에 대한 숙종의 비답 중 원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송시열을 책망하고 윤선거를 옹호하는 말이다. 이는 ①-1 기사에서도 나타났던 기조이다. 둘째로 주목을 끄는 곳은 첨부된 사론으로, 민정중에 대해 ‘시의(時議)가 그르다’고 했다는 대목이다. 민정중은 한때 윤희를 효종에게 추천했던 당사자였고, 효종 8년 송시열이 이조판서로 윤희를 찬선(贊善)에 임명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었다. 민정중은 두 차례의 예송을 거치면서, 귀양 가 있던 송시열의 논의를 지지하고 윤희의 견해와 처신을 비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김석주-허적 등 남인-삼복(三福)이 연대하여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의’라 함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보궐정오》에서는 민정중이 허적, 윤희 등에게 그릇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민정중에 대한 사론의 논거로 삼은 셈이다. 이런 사실은 노론과 소론의 분당이 경신대출척 이후 남인과 삼복에 대한 처벌의 강온론으로 해석하거나 1681년 윤증이 송시열을 비판한 〈신유의서(辛酉擬書)〉로 인한 회니시비(懷尼是非)로 보는 것은 매우 현상적인 관찰임을 보여준다. 이미 숙종 초년에 대한 인식에서 소론은 남인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영조 초반 《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자들의 기억에서는 그러했던 것이다.

①-5 기사는 원본에서 내용이 거의 없었는데, 아마 삭제관작되어 귀양 가 있었기 때문에 ‘졸기(卒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허목의 죽음을 두고 원본은 ‘사(死)’라고 썼고, 보궐정오에는 ‘졸(卒)’이라고 하여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특히 보궐정오에서는 이하진(李夏鎭)의 경우에도 원본에 ‘사(死)’라고 썼음을 지적하여²³⁾ 심하다고 비판하

22) 숙종 원년 경기(京畿) 진사(進士) 성호석(成虎錫) 등이 소를 올려 송시열의 석방을 청하면서 송시열을 귀양 보내 재변이 발생했다고 한 적이 있다. 《보궐정오》에서는, “송시열이 예론(禮論) 때문에 죄를 입었음은 진실로 너무 억울하였다. 그러나 초사(初史 《숙종실록》)를 편수(編修)한 자가 당시의 재이(災異)만을 나열하여 써서 송시열을 멀리 귀양 보낸 것의 응험(應驗)이라 한 것은 부회(傳會)에 지나지 않았다. 식자들이 비웃었다.”는 비판적 사평을 첨부하였다. 《숙종실록보궐정오 권3 1년 4월 10일(무술)》 상소에서 할 수 있는 천인감응론이지만, 《보궐정오》 편찬자들은 조소하였다.

23) 《숙종실록》 권13 8년 6월 26일(임인) 기사에, “운산(雲山)으로 멀리 귀양 보냈던 죄인 이하진(李夏鎭)이 죽으니, 나이가 55세였다.[雲山遠竄罪人李夏鎭死 年五十五]”라고 했던 것을 가리킨다. 이하진은 이익(李瀾)의 아버지이다.

고 있다. 이 역시 ①-1~①-4의 윤희에 대한 기사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깔린 기초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차례의 예송, 또 윤선도가 예송을 복제논쟁에서 사화(士禍)로 비화시키는 데 대해 윤증(尹拯)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해예송 때 윤선도를 귀양 보내는 일에 반대했던 권시(權謬)에게 보낸 편지에서, “3년이 옳다는 견해를 기년(暮年)이 옳다는 견해로 바꾸실 것을 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이 일이 이미 크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격하여 끝없는 화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만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 발단은 단지 조금도 긴요하지 않은 복제(服制)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라고 하여, 단순한 복제 논쟁이 화근이 된다고 우려한 점에서, 3년, 기년 논의에서 비켜서 있는 듯 보이지만 기존 서인의 논리를 그대로 잇고 있으며, “단번에 다툼의 실마리를 막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호기를 부려 죽음에 이르도록 연연해하며 지키면서 결국 성취한 것은 겨우 선류를 해치는 윤선도를 구호하고 참소하는 유세철(柳世哲)을 도와주는 일뿐이신지요.”라고 하여 권시가 윤선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²⁴⁾

이런 점에서 보면, 경신대출척 이전의 숙종 초년에 대한 보궐정오의 인식은 일관성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서인이나 남인 모두 우려했던 예송이 사화로 비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윤선도의 상소나, 그 현실화인 갑인예송과 그 이후 정국에서 실제로 사화 수준의 정변을 보인 세력에 대한 비판의식은 상당히 낮아졌거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숙종 당시 살았던 서인과 영조 당시 《숙종실록보궐정오》를 편찬하던 소론 사이의 인식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보궐정오’가 ‘보궐’, ‘정오’만이 아니라, ‘포폄’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①-3 기사처럼 보궐한 기사도 있지만, 나머지 ①의 기사는 보궐도, 정오도 아닌, 사론을 통한 포폄 기사를 추가한 것이다. 사론을 통한 포폄도 보궐로 볼 수 있기에 ‘보궐정오’가 명실상부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보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확인해두고 넘어간다.

2) 노소 분당과 외척 비판

②-1-1. 《보궐정오》 권13 8년 8월 16일(신묘)

전(前) 집의(執義) 윤증(尹拯)이 상소하여 사직(辭職)하니, 특별히 유지(諭旨)를 내렸다. 이어서 재앙을 그치게 할 방책을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가 위아래에서 함께 서로 경계하고 행동하여 한결같은 마음의 성실이 하늘과 서로 통한 후에야 진실한 사업이 시행되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이를 어찌 다른 것에서 구하겠습니까? 오직 성상(聖上)께서 뜻을 세우는 여하에 달려 있으며, 성상의 뜻을 세우는 것은 실로 성상의 학문의 정진(精進)에 달려 있습니다.”

24) 《국역 명재유고》 권9 〈탄옹(炭翁)에게 올리다〉

하였다. 〈임금이〉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려서 속히 서울에 올라오게 하였다. 얼마 안되어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발탁하여 임명되었으나, 또한 명(命)을 받들지 않았다.

②-1-2. 《보궐정오》 권15 10년 5월 11일(병자)

- 제주(祭酒) 박세채(朴世采)가 현도 진소(縣道陳疏)하여 윤증(尹拯)을 신구(伸救)함

②-1-1, ②-1-2 기사는 원본에 없는 내용으로, 이른바 ‘보궐’에 해당한다. 그리고 숙종 초년의 기록에 대한 《보궐정오》의 기사에서 윤선거의 처신을 모범적으로 평가했던 연장에서 윤증에 대한 기사도 작성되었다. ②-1-1 기사처럼 원본에 없는 기록이지만 윤증을 부르는 숙종의 명을 보궐하거나²⁵⁾ 원본에 있더라도 훨씬 상세하게 보궐하면서 숙종의 윤증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기사도 있다.²⁶⁾

②-1-2 기사는 박세채가 윤증의 입장을 옹호하며 구원한 내용인데, 이 역시 원본에 없는 기사를 보충한 것으로, 《보궐정오》 편찬자들의 시각을 드러낸다. 본고에서 따로 다루지 않겠지만 윤증만이 아니라 박세채에 대한 기사도 보충되었거나²⁷⁾ 원본에 비해 상세하다.²⁸⁾

이상이 윤증과 박세채에 대한 긍정적, 우호적 평가라면, 아래에서 살펴볼 송시열, 김석주, 김만기에 대한 기사와 사론은 그와 대조적이다. 《보궐정오》 편찬의 근거와 과정을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직접 기사를 보면 그런 논리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진다. 먼저 송시열에 대한 기사를 비교해보겠다.

②-2-1. 숙종 권12 7년 7월 21일(임신)

[원본]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이민서(李敏敍)가 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윤증(尹拯)을 부르도록 청하고, 시독관(侍讀官) 오도일(吳道一)도 그렇게 말을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비(正妃)가 탄생(誕生)한 바는 모두 대군(大君)·공주(公主)라고 일컬으니, 노산군(魯山君)도 당연히 대군으로 일컬어야 한다.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이 모두 타당하게 여기자 마침내 대군으로 추가하여 일컫도록 명하고, 승지(承旨)를 보내어 그의 묘(墓)에 치제(致祭)하도록 하였다. 이민서가 윤선거(尹宣舉)의 처(妻) 이씨(李氏)를 정려(旌閭)하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윤선거가 병자년 호란(胡亂) 때 망령되게 북지왕(北地王) 심(諡)의 일을 의방(擬倣)하려다가 이씨(李氏)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

25)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4 9년 2월 4일(병자). 행 호군 윤증이 부르는 명을 사양한 기사로, 《숙종실록》에 없다.

26)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4 9년 2월 10일(임오), 3월 23일(을축). 둘 다 숙종이 수찰을 내려 윤증에게 전유한 기사로, 《숙종실록》에 있지만 전유 내용이 간곡하고 상세하다.

27)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6 11년 5월 13일(임신). 박세채가 김익훈(金益勳) 사건으로 송시열과 대립하면서 향리(鄉里)로 물러가 있던 상황에 대한 기사는 원본에 없다.

28)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4 9년 2월 4일(병자). 박세채가 조정에 나아가 올린 세 조목의 차자 역시 원본에 요약해서 수록한 반면, 보궐정오에서는 거의 전제했다.

다. 이씨는 죽었으나 윤선거는 죽지 못하고 인해서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스스로 낙심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민서가 이씨의 억울한 죽음을 민망하게 여겨 임금에게 아뢰어 정표(旌表)하게 하였는데,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자못 정리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다고들 하였다.

[보궐]

고(故) 집의(執義) 윤선거(尹宣舉)의 처(妻) 이씨(李氏)를 정려(旌閭)하도록 명하였다. 주장(晝講) 때에 지사(知事) 이민서(李敏叙)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병자년, 정축년 호란(胡亂) 뒤에 절의(節義)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들은 거의 모두 정문(旌門)을 세워 주고 포상(褒賞)하였는데, 유독 윤선거의 처 이씨에게만 그것이 빠졌습니다. 대체로 이씨가 적(賊)의 칼날이 급박하게 닥치려는 때를 당하여 자신이 더럽혀지고 욕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결단하여 조용히 죽음을 택하였으니, 의열(義烈)이 더욱 뛰어납니다. 그런데 윤선거는 그와 약속을 하였지만 함께 죽을 수 없었으므로 몹시 한스럽게 여기며, 일생(一生)을 죄인으로 자처(自處)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조정에 올려서 청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도 여지껏 감히 진달하여 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열(義烈)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바이니, 작설(綽楔 정려(旌閭))하는 전례(典禮)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정려(旌閭)하도록 하였다. 이씨(李氏)는 바로 징사(徵士) 윤증(尹拯)의 어머니이다. 이씨(李氏)가 절의(節義)에 죽은 것이 애당초 어찌 윤선거(尹宣舉)와의 약속에 관계되었겠으며, 윤선거가 일생 동안 폐인(廢人)으로 자처(自處)한 것이 어찌 전적으로 이씨를 위하여 몹시 한스러워 하는 데서 말미암았을 뿐이겠는가? 처음 사초(史草)를 정리한 자가 인용한 북지(北地)의 왕사(王事)는 송시열(宋時烈)의 만년(晩年)에 화를 내고 원망하는 말씨(口氣)를 본받아 서술하여 은연(隱然)히 두 사람을 어두운 데 처하게 하였으나, 공변된 의논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식자(識者)들이 그것을 그르게 여겼다.

②-2-2. 숙종 권14 9년 3월 5일(정미)

[원본]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치사(致仕)하니, 봉조하(奉朝賀)로 삼았다. 송시열이 조정에 나온 뒤에 연이어 휴치(休致)의 청을 올려서 그 말이 더욱 간절하였으나, 임금이 매번 위로하여 유시하고는 윤허하지 않았었다. …… 이 뒤에도 성균관[泮宮]의 유생(儒生) 이징주(李徵舟) 등이 세 번 소(疏)를 올려 휴치(休致)를 윤허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조지겸(趙持謙)의 당여(黨與)들이 매양 휴치(休致)를 윤허한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대개 겉으로는 높이는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난처(難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심술(心術)의 좋지 못한 것이 이와 같았다.

[보궐 : 7일(기유)]

송시열(宋時烈)이 휴치(休致)를 청하였다. 【상세한 것은 위에 보인다.】 송시열의 휴치를 사사로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비록 꼭진히 그의 소원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정의 입장에서 말하면 휴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곧 조종조(祖宗朝)의 옛 법이다. 간혹 다행히 이론 자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지, 연고 때문에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박세채(朴世采)·조지겸(趙持謙)등 여러 사람이 휴치(休致)를 허락하지 말도록 청한 것은 특별히 사체(事體)로서 말한 것인데, 처음 역사를 편찬한 자들이 ‘겉으로 높이면서 가만히 곤궁하게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이때에 송시열의 행위를 공의(公議)가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선비들이 오히려 내속(內屬)되어 드러나게 배척하지 못한 것은 단지 숭상한 지가 특별히 오래 되었으므로 차마 하루아침에 잘라버리지 못해서였다. 그러니 가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병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심술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역시 당인(黨人)의 참소하여 얹어매는 수단이니, 이는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김수항(金壽恒)이 본 직임의 평소의 늬료(廩料) 외에 또 주육(酒肉)과 늬속을 더 주도록 청한 것은 비록 넉넉히 예우(禮優)하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녹봉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정사를 그만두고 벼슬을 쓴다면 다시 직임을 맡지 않는 것이며, 이미 직임을 맡지 않는다면 또 어찌 그 책임의 녹을 주어야겠는가? 그 직임의 녹뿐만이 아니고 평소의 늬료 외에 더 준다면, 이는 명색만 휴치(休致)하고 식록(食祿)은 도리어 그 직책을 맡은 사람보다 우대하는 것이다. 사양하거나 받는 예절은 구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송시열은 단지 전문(箋文)을 올리고 머리를 조아려 사례했을 뿐 끝내 힘써 사양함이 없이 편안하게 받았으니, 예의를 분변하지 않고 만중(萬鍾 많은 봉록)을 받는 자가 바로 송시열을 이룸인가?

②-2-3. 숙종 권14 9년 4월 14일(병술)

[원본]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그 누이를 문병하려고 김화(金化)에 갔다. 대체로 송시열이 그 때 이미 쉬려고 물러나와 있었기 때문에 출입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처음에 듣지 못하였다가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능원(陵園)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일행을 만나고 돌아와서 아뢰고 약품을 지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어의(御醫)를 보내어 약품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였으며, 또 사관(史官)을 보내어서 빨리 갔다가 돌아오도록 유시하게 하였다.

[보궐]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관동(關東) 지방에 놀러 가면서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는데[奉朝賀宋時烈往遊關東, 而不告于朝], 좌상(左相) 민정중(閔鼎重)이 그 사실을 아뢰자, 의원을 보내어 호행(護行)하도록 명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송시열(宋時烈)이 조정의 의논에 불평이 쌓여서 누이의 문병을 핑계로 그대로 관동 지방을 유람하였다. 아! 성상(聖上)의 기대가 이와 같고, 시사(時事)의 근심됨이 이와 같은데, 이미 분명한 말과 바른 의논으로 국가의 일에 언급함도 없었고, 또 현

실을 도피하는 행동을 일으켰으니, 그가 말한 ‘종국(宗國)이 장차 망할까 걱정되어 차마 중국을 멀리 떠나지 못한다.’라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②-2-1, ②-2-2 기사는 원본과 보궐정오 모두 나오지만 보궐정오에서 원본의 기사를 보충하면서도 다른 평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즉, 보궐이면서 동시에 정오에 해당하는 기사이다. ②-2-1 기사에서, 이민서가 정려(旌閭)를 청하는 계를 보완하고, 정황 설명에서도 이씨의 절의를 상세히 밝혔다. 아울러 윤선거의 죽음에 대한 원본의 평가가 왜곡되었음을 지적하였다.

②-2-2 기사는 이에 비해 정오 쪽에 가까운 기사이다. 보궐정오에서는, “박세채(朴世采)·조지겸(趙持謙)등 여러 사람이 휴치(休致)를 허락하지 말도록 청한 것은 특별히 사체(事體)로서 말한 것인데, 처음 역사를 편찬한 자들이 ‘겉으로 높이면서 가만히 끈궁하게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여 원본의 사론을 비판한 점이 그것이다. 조지겸은 뒤에 외척 김익훈(金益勳)을 논핵한 일로도 보궐정오에서 높이 평가 받는다.²⁹⁾

또한 늬료를 주자고 청한 김수항(金壽恒)과 늬료를 강력히 사양하지 않은 송시열을 함께 비난하였다. 하지만 신하가 치사할 때 조정에서 늬료를 주어 예우하던 것이 상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보궐정오의 비판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된다.

②-2-3 기사는 원본에서 ‘누이의 병문안을 갔다’고 한 데 비해, 보궐정오에서는 아예 ‘조정의 의논에 불평이 쌓여서 누이의 문병을 핑계로 그대로 관동 지방을 유람하였다’고 했으니, 이 정도면 불신과 야유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전제로 사료를 읽어야겠다. 원본대로라면 치사한 뒤 앓고 있는 누이에게 간 것이고, 보궐정오대로라면 조정에 불만을 품고 무책임하게 떠나 누이 병문안을 핑계로 놀러간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시열의 《연보》에는 누이가 아들인 이덕로(李德老)의 금화(金化) 임지에 있어서 가는 길에 고성(固城) 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풍악(楓岳 금강산)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부폭(三釜瀑), 단발령(斷髮嶺), 정양사(正陽寺) 등 당시 인기 있는 답사지를 여행 다닌 일정 역시 기록했다.³⁰⁾ 이를 보면 누이에게 간 것도 맞고 유람을 다닌 것도 맞다. 그런데 보궐정오에서 이미 ‘분명한 말과 바른 의논으로 국가의 일에 언급함도 없었다’고 했으면서 굳이 온나라의 기대를 저버린 양 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77세로 치사한 신하가 누이를 찾는 길에 관동지방을 여행하는 것이 그리 흠이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골은 송시열이 1687년(숙종13) 상소를 올려 “윤후(尹鑄)에게 중독(中毒)되어 그만단 사람이 됨으로써 세도(世道)에 방해가 된 것이며 … 윤선거에 대한 견해는 배치되지만 사귀는 의리는 변함이 없다”며 윤증을 이전처럼 대우하라고 숙종에게 청했을 때³¹⁾도 메워

29)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6 11년 7월 4일(임술) 조지겸의 졸기. “김익훈(金益勳)의 무고(誣告)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송시열(宋時烈)과 김수항(金壽恒) 등이 기구(耆舊)의 사류(士流)로서 그 사건에게 꺾여 들어가서 편들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조지겸은 보잘것없는 작은 후진(後進)이지마는 이에 능히 특립(特立)하여 흔들리지 않고서 청의(淸議)를 제창하니, 제물을 스스로 사랑하는 선비들이 바람에 끌리듯이 따라 왔었다.”라고 하며, 공명정대했다고 평가했다.

30) 《국역 송자대전》 부록 권9 《연보》 8 1683년(숙종9, 77세)

지지 않았다. 보궐정오에서는, “예론(禮論)이 있기 이전에 송시열이 사문 난적(斯文亂賊) 윤휴(尹鑄)를 대우하였을 때 어떻게 했었는가? 진선(進善)에 의망(擬望)했을 적에는 당시의 공의(公議)에 물려서라고 핑계하여 이미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했고, 《중용(中庸)》의 주석을 고친 잘못을 책망할 때에 이르러서는 대략 관대한 말만 하고 지나가 한때 끝내 버리고 마는 것에 지나지 않았었다.”며 진즉 송시열이 윤휴를 내치지 않은 것을 비판했고, 윤증에게 윤휴를 부호(扶護)했다고 말했던 송시열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³²⁾

②-3-1. 숙종 권6 3년 6월 3일(무신)

[보궐]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윤휴(尹鑄)·허목(許穆)이 상소한 말을 가지고 글을 아뢰어 사직(辭職)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재물을 손상시키고 나라를 병들게 한 것은 혹 신(臣)의 죄라 하더라도, 군사를 강하게 하고 권세를 중하게 하였다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라건대, 여러 사무에서 벗어나 물러가서 선인(先人)의 분묘(墳墓)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비답(批答)하여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석주(金錫胄)는 지위가 높고 부귀한 집안으로, 나이가 젊고 품행과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이 없었는데도 특별히 임금의 외척(外戚)이라는 이유로 대신(大臣)이 된 자이다. 높은 벼슬을 바라고 총애를 확고히 하려는 계책을 써 갑자기 사람들의 기대 밖에 뛰어올라 발탁되었다. 몇 달 안에 서전(西銓)12)의 장(長)에 이르러 기무(機務)를 겸하여 총괄하게 되어서는 무릇 군국(軍國)의 큰 일을 손에 쥐고 결정하지 않음이 없었다. 김석주 또한 대신(大臣)으로서 총애를 받아 일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과 서로 인연을 맺어서 뜻을 굽혀 받들었고, 교대로 성원하여 그 사사로운 일을 도와 주었다. 귀현(貴顯)한 사람들 중에 이익을 좋아하고 수치를 모르는 무리들이 또 따라서 붙좃아, 두 번이나 체직(遞職)되었는데도 그대로 있게 하도록 청하여 그 뜻에 아부하였다. 김석주는 교만하고 자부심이 많으며 스스로 방자하여 삼가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서, 둔전(屯田)을 넓게 만들고 자기가 부리는 하인을 나누어 두었으며, 걸핏하면 토목 공사를 일으켜 군사와 백성을 피곤하게 하였다. 무릇 나라를 병들게 하고 정치를 해치는 일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았으나, 재집 대신(宰執大臣)들이 감히 배척하지 못하고 대각(臺閣)에서도 감히 논하지 못하였다. 간혹 어떤 한두 사람이 글을 올리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의 과실(過失)에 미치게 되면, 김석주는 문득 아랫사람을 원망하고윗사람에게 구하여 매우 크게 말하였는데, 신신(薰臣)·석보(碩輔)로서 자신이 안위(安危)를 맡고 있다가 두려워하고 꺼리는 참소를 당하여 조정의 위에 계신 분에게 용납되지 못하게 된 것처럼 하였고, 반드시 보전(保全)함이 총애를 움직일까 두렵다는 말로 따듯한 뜻을 얻도록 기한 후에야 그만두었다. 아아! 또한 이상하도다! 예전에 이르기를, ‘배우지 못한 원숭이가 나무에 오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김석주의 죄이겠

31) 《숙종실록》 권18 13년 2월 4일(임자)

32)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8 13년 2월 4일(임자)

는가?.

②-3-2. 숙종 권7 4년 2월 3일(갑진)

[보궐]

임금이 병이 생겨 외척 김석주와 의관만을 입시하게 하다

임금이 편치 않으시어, 약방 제조(藥房提調) 허적(許積)·김석주(金錫胄) 등이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입진(入診)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단지 의관(醫官)만 입진(入診)하라고 명(命)하였다. 그러나 대내에서 김석주를 불러 아울러 입시(入侍)하게 하였으니, 대개 김석주가 의술(醫術)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허적과 승지(承旨)·사관(史官)은 모두 입시하니 못하였다.

사관(史官)은 논한다. 군신(君臣)의 사이에 접견(接見)하는 예(禮)는 지극히 엄격하고 또 중하거늘, 더구나 김석주는 외척(外戚)의 중신(重臣)으로서 바야흐로 중병(中兵 체찰사)을 장악하고 있는즉, 내전(內殿)으로부터 비록 소명(召命)이 있더라도 마땅히 예(例)에 의거하여 품복(稟覆)하여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을 갖춘 뒤에 바야흐로 입진(入診)해야 옳은 것인데, 이제 바로 무단(無端)히 입시(入侍)하였으니, 멀리하고 피혐(避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척리(戚里)가 사사로이 뵈는 폐단이 이로부터 열리게 되었으니, 듣는 자가 해괴하게 여겼다.

②-3-3. 숙종 권11 7년 5월 3일(을묘)

교리(校理) 임영(林泳)·심수량(沈壽亮), 부교리(副校理) 오도일(吳道一), 수찬(修撰) 심유(沈濡), 부수찬(副修撰) 송광연(宋光淵)이 응지(應旨)하여 7조목(條目)의 차자(劄子)를 올리고, 말미(末尾)에 말하기를,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와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가 병권[兵柄]을 도맡고 전형(銓衡)을 관장(管掌)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批答)을 내려 다르다고 책망하였다. 【원소(原疏)에 대한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이때 두 척신(戚臣)의 기세가 어떠하였는가 하면, 폐부(肺腑)의 친속(親屬)으로서 세상에 드문 공(功)을 세우자, 주상(主上)께서 양성(仰成)하는 바 되고 온 세상이 붙좃는 바 되어, 산과 바다를 이전(移轉)할 만하고, 음양(陰陽)을 순식간에 변개(變改)시킬 만하였다. 그런데 저 두세清流(淸流)가 하늘을 태울 만한 불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비린(批麟 임금)을 거스름의 주벌(誅罰)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른 말을 하여 그 기세를 꺾고 마침내 청의(淸議)를 창도(倡道)하였다. 풍채(風采)가 늠름하여 진심을 다하는 신하의 자세와 전상(殿上)의 범이라고 불린 송(宋)나라 유안세(劉安世)에 진실로 부끄럽지 아니하였으니, 기쁘고도 위대하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삼가서 공박하는 말을 소홀히 하고 위에서는 곡돌(曲突 미연)에 망지함의 경계에 어두웠으니, 애석하다.

→ 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5월 3일(을묘) 4번째기사

②-3-4. 숙종 권15 10년 3월 14일(경진)

[보궐]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가 청대(淸對)하여 임금에게 아뢰어서 수안 군수(遂安郡守) 김도명(金道鳴)이 새 진영(鎭營)의 전결(田結)을 농간을 부려서 속여 보고한 정상(情狀)을 가지고 구안(舊案)에 의거하여서 침점(侵占)을 당하는 폐단을 끊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또 연경(燕京)에 갈 때에 강도(江都)의 은(銀)을 의관(醫官)과 역관(譯官)에게 꾸어준 일로써 인구(引咎)하였다. 이어 별도로 동래(東萊)의 역인(譯人)에게 신칙하여 먼저 그 왜관(倭館)에 넘겨진 물화(物貨)의 값을 받게 하고, 또한 호조(戶曹)로 하여금 다른 세금을 받지 말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또 그대로 따랐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김석주가 청대하여 말한 것은 이 몇 가지 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대저 둔전(屯田)의 폐단이 오래되었다. 옛날의 둔전은 군인의 식량이 되는 것인데, 지금의 둔전은 모두 군문(軍門)에서 사사로이하는 바가 되어, 반은 무익(無益)한 용도로 돌아가며, 따로 아문(衙門)을 세워서 죄에서 빠져나가 숨는 숲으로 만든다. 전정(田政)이 현관(縣官)에서 말미암지 않고 군액(軍額)이 사마(司馬 병조)에 관계되지 않아 무릇 정역(征役)이 모두 관여함이 없어서 여러 고을에 폐를 끼치고 양민(良民)에게 해(害)를 옮기니, 이는 진실로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이다. 그때에 대간(臺諫)에서 소장(疏章)을 계속 올려 정파(停罷)를 청하던 것은 대개 또한 일국(一國)의 공론(公論)이다. 김석주는 자신이 묘당(廟堂)에 있으면서 변통(變通)을 생각하지 않고, 또 여러 진(鎭)을 내지(內地)에 설치하고 둔전(屯田)을 넓혀서 본고을로 하여금 감히 말붙이지 못하게 한다. 김도명이 교활하여서 그 빼앗고자 하는 바가 반드시 나라를 위하는 데에서 나음을 알지 못하니, 김석주의 도리를 굽혀 여러 둔전(屯田)을 옹호함이 그 또한 다르겠는가? 더욱이 의관과 역관의 무리의 무관(貿販)은 진실로 사부(士夫)가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바인데도, 김석주는 이미 군수(軍需)를 꾸어 주고 이를 갚지 못하기에 이르러서는 또 따라서 변명을 하며 임금 앞에 여쭙어서 말이 많기에 이르니, 남의 비방을 면하고자 하여도 어렵다.”

②-3-1~②-3-4 기사는 김석주에 대한 기록이다. ②-3-1~②-3-2 및 ②-3-4 기사는 원본에 없는 보궐 기사이다. 김좌명(金左明)의 아들로 현종비인 명성왕후의 사촌인 김석주에 대한 보궐정오의 평가는 이중적이다. ②-3-1 기사처럼 윤후, 허목과 대립각을 세우는 김석주의 정치적 입장과 척신으로서의 김석주의 입장이 그것이다.³³⁾

33) 이는 김석주의 졸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5권 10년 9월 20일(계미). “그러나 덕망이 높은 구신(舊臣)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과 같은 여러 사람도 바야흐로 인진(引進)한 것을 이롭게 여겨 농락을 받으면서도 걸핏하면 그 사직(社稷)의 공을 칭도하였고, 오로지 후기(喉氣)도 우러러 감히 한 마디의 말조차 서로 어기지 못하였다. 산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힘은 세상에서 꺾을 자가 없으니, 이 일대(一隊)의 청의(淸議)가 화복(禍福)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공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김석주는 또 스스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힘써 공의(公議)와 다투어 드디어 당론(黨論)의 분열을 이루게 하였으니, 그 세도(世道)의 불행함이 진실로 컸는데, 일종의 의발(衣鉢)을 서로 전수(傳授)하면서 곡경(曲逕)을 크게 열고 행문(倖門)을 막지 못하였으니, 이사명(李師命)과 김춘택(金春澤)에 이르러 지극하였다.”

그러나 ②-3-1 기사에서 나타난 윤휴, 허목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김석주는 경신대출척 이후 방점이 옮겨진다. ②-3-2 기사의 ‘척리가 사사롭게 군주를 만나는 전례’를 만드는 조짐이 되었다가, ②-3-3 기사에서는 기세가 등등한 외척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외척 김석주는 두세 명의 청류(淸流)의 비판을 받는다. 이는 인조 이후 훈척과 청론의 대립구도를 옮겨온 관점이며, 더 길게는 선조 연간 심의겸(沈義謙)의 낭청 추천에서 비롯된 동서 대립의 연장에 있다.

②-3-4 기사는 보궐정오에서 김석주가 병조판서나 체찰사로 있으면서 둔전을 개혁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둔전을 모두 군문(軍門)에서 사사로이 관리하면서 김도명이 둔전을 침탈한 사실만 보고한다면 이는 분명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다.

그러나 심의겸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그랬듯이, 숙종 초반 김석주, 김만기에 대한 논의 역시 외척에 대한 반대가 긍정적 의미의 청론인지 여부는 그리 간단치 않다. 특히 숙종 8~10년 전후에 벌어진 노소 분당의 배경이 복잡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김만기에 대한 보궐정오의 기사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②-4-1. 숙종 권14 9년 2월 2일(갑술)

[원본]

지평(持平) 박태유(朴泰維)·유득일(兪得一)등이 김익훈(金益勳)에게 법을 시행하고 멀리 귀양보내라는 논계

[보궐]

지평(持平) 박태유(朴泰維)·유득일(兪得一)등이 김익훈(金益勳)에게 법을 시행하고 멀리 귀양보내도록 발의(發議)하여 아뢰기를,

“김익훈은 간특(奸慝)한 무리로 훈척(勳戚)의 세력을 끼고 외람되게 장수의 직임을 맡았고, 공과 상을 탐하였습니니다. 바로 김환(金煥) 등이 염탐할 때에는 상하가 화답하여 응대하여 마침내 고변서(告變書)를 급히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니다. 허새(許璽)·허영(許瑛) 등의 무리가 비록 흉계를 모의한 것으로 법에 따라 복주(伏誅)되었으나, 증거로 끌어낸 여러 사람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익대(全翊戴)의 실상에 이르러서는 김익훈과 김환이 거짓으로 통하고 지향하는 뜻이 서로 합하여, 처음에는 군뢰(軍牢)를 보내 밤중에 협박하여 무고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김환과 전익대가 함께 그 집에 나아가 사정을 힐문(詰問)하여 공초(供招)를 받아 구류(拘留)시켰으니, 그간의 허실을 김익훈이 어찌 모를 이치가 있겠습니까? 당초 김환이 전익대를 달래고 협박하여 유명견(柳命堅)의 의심할 만한 자취를 염탐해 내려고 하였는데, 이미 모역(謀逆)한 사실을 알고도 함께 고발하지 않았다면, 전익대가 비록 김익훈을 인연해서 남을 무고하여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했더라도, 김익훈으로서는 배척하여 거절했어야 마땅하고, 어쩔 수 없었다면 저로 하여금 상변(上變)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청(鞠廳)을 설치한 여러 날 뒤에 분명히 허위임을 알고도 고변서를 칭탁하여 비밀리 고발하고 실정을 가렸으니, 그 죄상을 추구해 본다면 전익대와 어찌 멀다고 하겠습니까? 전익대가 이미 승복하였는데 김익훈의 죄를 어찌 관직을 삭탈하여 내쫓는

데 그치겠습니까?…”

하니, 【비답(批答)은 위에 보인다.】 마침내 두 신하를 거제(巨濟)와 진도(珍島)로 내쫓으라는 명이 있었다. 이에 대신과 삼사(三司) 그리고 여러 승지들이 명을 도로 거두도록 힘써 다투었다. 【처음의 사초(史草)와 참고하여 보라.】 대체로 전익대(全翊戴)가 자백함으로써 공론이 다시 격렬하여 이 아람이 마침내 발의(發議)되었다. 비록 김수항(金壽恒)이라 하더라도 힘써 해명하여 구원할 수 없었으며, 송시열(宋時烈)도 처음에는 대간(臺諫)의 의논을 옳다고 하였고, 청류(淸流)들도 흠족히 그를 따랐다. 그 때 마침 송시열이 병이 있어 외부 손님을 대하지 않았는데, 김만기(金萬基) 형제만이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하며 김익훈(金益勳)을 위해 애걸하였다. 대저 송시열을 받드는 자들이 지극한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서, 때로는 초피(貂皮) 이불과 해송(海松) 죽(粥)을 주었다는 말이 있었다. 송시열도 이미 기운이 쇠약해서 사정(私情)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마침내 처음의 견해를 변경하여 젊은 무리들이 김익훈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퍼뜨리며 유득일(兪得一)을 매우 준엄(峻嚴)하게 배척하였고, 민정중(閔鼎重) 역시 이것으로 소원(疏遠)함을 당하였다.

송시열이 사람을 만나면 번번이, ‘좌상(左相)이 어찌 분명한 외척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므로, 【적(赤)은 방언(方言)에 분명(分明)이라는 말이다.】 민정중이 그 말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빨리 꺾여 들게 되었으며, 젊은 무리들도 많이 앞서의 견해를 변경하여 송시열에게 아부하며 두 마음을 품으므로 대각(臺閣)의 의논이 마침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당목(黨目)이 생겼다. 소론으로 이름한 자는 조지겸(趙持謙)·최석정(崔錫鼎)·오도일(吳道一)·한태동(韓泰東)·박태보(朴泰輔)·박태유(朴泰維)·임영(林泳)·서종태(徐宗泰)·심수량(沈壽亮)·신완(申琬)·유득일(兪得一) 등 여러 사람이고, 노론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선(李選)·이수언(李秀彦)·이이명(李頤命)·이여(李畬) 등 여러 사람이다. 전배(前輩)인 송시열(宋時烈)·김석주(金錫胄) 이하 노론을 돕는 자가 많았고, 소론을 돕는 자는 박세채(朴世采)·이상진(李尙眞)·남구만(南九萬) 등 여러 사람인데, 노론은 훈척(勳戚)을 끼고 세력으로 억누르며, 청의(淸議)를 가진 자를 많이 말살시켰으므로 이제 송시열을 다시 사류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②-4-1 기사는 김익훈을 비판하는 기사인데, 김익훈을 귀양 보내라는 논거는 원본에도 실려 있다. 김익훈은 숙종비 인경왕후의 아버지인 김만기의 숙부로, 숙종이 즉위한 뒤 어영대장 등 군권을 잡고 있었다. 김석주와 함께 경신환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 1682년 남인 허새(許璽)의 모역사건 당시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서인 청류, 후일의 소론에게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위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만기 형제가 송시열의 제자로 김익훈을 구원했던 사실을 명기한 점이다. “송시열이 병이 있어 외부 손님을 대하지 않았는데, 김만기(金萬基) 형제만이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하며 김익훈(金益勳)을 위해 애걸하였다.”고 확정함으로써, 외척=김익훈(김만기)=김석주=송시열과 이를 비판하는 소론으로 조지겸(趙持謙)·최석정(崔錫鼎)·오도일(吳道一)·한태동(韓泰東)·박태보(朴泰輔)·박태유(朴泰維)·임영(林泳)·서종태(徐宗泰)·심수량(沈壽亮)·신완(申琬)·유득일(兪得一) 등을 천명한 점이다.

이 연장에서 김수항에 대해서는 ‘명색이 사류(士流)이지마는, 기꺼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 오히려 병권(兵權)을 두 외척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비판이 가능하였다.³⁴⁾ 요컨대, “하물며 송시열(宋時烈) 같이 사림(士林)의 중망(重望)을 진 이나 김수항(金壽恒) 같이 선왕(先王)의 유명(遺命)을 받은 자가 김익훈을 위하여 영구(營救)의 기치(旗幟)를 세웠다.”는 것이다.³⁵⁾ 보궐정오 편찬자들이 볼 때, 김수항은 송시열과 함께 “비록 문아(文雅)를 일컬을 만하나 그 기량과 식견이 짧고도 얇은 까닭에 옳지 않은 거조가 있어서 끝없는 폐단을 열었던” 인물로 인식되었다.³⁶⁾

결국 원본에서 “나이 젊고 부박(浮薄)한 무리들이 선배(先輩)에게 반대하여서 윤휴(尹鑄)와 허목(許穆)의 당(黨)을 몰래 돕고 있었다.”³⁷⁾는 사평에 대응하여, 보궐정오에서 “초사(初史)를 수찬(修撰)한 자가 사류(士類)들을 원수로 보아서 문득 윤휴(尹鑄)와 허목(許穆)을 몰래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무욕(誣辱)을 가하고는 김수항(金壽恒)을 지주(砥柱) 같은 중진으로 돌리려 하였으나, 어찌 백대(百代)의 공안(公眼)을 속이겠는가?”³⁸⁾라고 반박했던 것이다. 여기서 각각 말하는 ‘나이 젊고 부박한 무리’, ‘사류’는 소론이며, ‘선배’는 노론이 된다. 이때부터 ‘사류(士類)’는 소론만을 가리킨다.³⁹⁾ 이는 보궐정오의 입장에서 보면, ‘정오’에 해당하는 기사이다.

3) 장희빈 처리와 세자 보호론

1689년(숙종15) 기사환국으로 장희빈 집안과 결탁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된 뒤, 보궐정오의 기사와 사론은 원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 서인 청류를 자부하는 소론 자신들이나 사류(士類)가 아닌 훈척(勳戚)으로 분류했던 노론이나 모두 그 과정에서 조정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함께 장희빈 소생의 원자(元子) 책봉도 시기상조라고 반대했고,⁴⁰⁾ 인현왕후의 폐비에도 반대하였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열, 김수항,⁴²⁾ 이사명 등

34)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3 8년 2월 19일(정유). 훈련대장 김만기가 면직되던 날의 사론이다. 그러면서도 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도 같은 외척이지만 자기 몸을 단속하는 것은 김익훈, 김만기와 달랐다고 덧붙였다.

35)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5 10년 3월 27일(계사)

36)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5 10년 3월 25일(신묘)

37) 《숙종실록》 권16 11년 7월 4일(임술)

38)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6 11년 7월 4일(임술)

39) 1688년(숙종14) 영의정 남구만(南九萬)과 우의정 여성제(呂聖齊)를 복변에 안치하라고 명했을 때에도 ‘박세채(朴世采)가 사류의 영수(領袖)’라고 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했다.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9 14년 7월 14일(갑신)

40) 《숙종실록보궐정오》 권20 15년 1월 10일(무인). 《숙종실록》이 더 상세하기 때문에, 이 날 기사는 왜 보궐정오를 달았는지 의아스럽다.

41) 《숙종실록보궐정오》 권21 15년 5월 4일(기해). “폐비 교문(廢妃敎文)을 중외에 반포(頒布)하였는데, 민암(閔黯)이 지은 것이다. 기사년(己巳年)의 곤극(坤極 중전)을 폐하였을 때에 흉당(凶黨)이 이미 힘써 다투어서 천의(天意)를 돌이키지 못하고, 또 따라서 중용(懲惡)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언 송정규(宋廷奎)가 인현왕후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청했을 때도, “송정규는 생각이 윤의(倫義)의 중대한 데에 미쳐서 감히 첫째 뜻을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금령을 무릅쓰고 이 상소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칭찬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숙종실록보궐정오》 권22 16년 9월 15일(임인)

42) 《숙종실록보궐정오》 권20 15년 윤3월 28일(을축), 김수항의 줄기에서 “김수항은 스스로 강방(剛方)함을

에 대한 평가는 앞서 살펴본 사평(史評)의 연장에 있었고, 이들의 원자 책봉 반대가 갖는 원칙의 측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5년 뒤 1694년(숙종20) 갑술환국으로 노소 연립정권이 성립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 갑술환국이 이제 장성한 숙종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노론과 소론 모두 국면의 주도권은 없었지만, 폐서인(廢庶人)되었던 인현왕후의 복귀, 민암(閔黯) 등 ‘군부(君父) 우롱한 자’, ‘진신(縉紳)을 도륙하려 한 자’들에 대한 처벌, 무엇보다 세자와 세자 생모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의리(義理)와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고민과 논리가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의 차이를 가져왔다.

③-1-1. 숙종 권26 20년 4월 17일(갑신)

[보궐]

영의정 남구만이 배명(拜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였다. 남구만이 임금에게 조당(朝堂)의 회의(會議)를 중지시킬 것을 아뢰고, 이내 승정원의 진계(陳啓)한 여러 신하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경연에서 한 말은 위에 보인다.】 그 때 일월(日月)이 다시 새로워지고 천지(天地)에 태운(泰運)이 회복되어 명분을 바로잡고 윤리를 펴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였다. 승정원에서 회의를 하자고 아뢰었던 것은 진실로 창졸하게 명령을 받들어 당황한 가운데 거조를 잘못된 데서 나온 것이다. 사체(事體)와 의문(儀文)의 흠결이 있을 것을 염려한 점은 있으나, 중대한 바가 있어 다른 것은 개교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소절(小節)에 구애되어 대의(大義)에 어두웠던 것으로서 이미 실수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회의’라는 두 글자에 있어서는 복위(復位)시키고 폐위시킨 일에 대해서 의란(疑難)하고 잡의(雜議)하려 한 것 같은 점이 있으니 크게 윤리에 어긋나고 더욱 망발이 된다. 남구만이 조정에 나오자마자 먼저 이존(二尊)447)이 없다는 뜻을 밝혀 거듭 견책과 처벌을 요구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명분을 바로잡고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그의 주대(奏對)한 말에 또한 실수가 있었다. 아마 그의 생각에는, 중전이 이미 복위가 되어 온 나라가 함께 경하하는 바 되었는데, 만일 또 죄로써 회빈(禧嬪)을 출처(黜處)시킨다면 아무래도 동궁(東宮)에게 상처를 입힐 염려가 있을 것이니, 바로 환강(還降)이라 칭하는 것의 형적이 없게 됨만 같지 못하다고 여기었던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의리의 바를 진달하고 다시 안타까이 여기는 말을 하여 곡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피력했던 것인데, “기사년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는 등의 말은 결국 실언(失言)을 면치 못하였다. 처음 사초(史草)를 찬수(纂修)하는 이가 만일 이것을 가지고 그 과오를 논죄하여 장점은 허여하고 단점은 비평했다면 누가 그 점을 승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바로 상도를 위반하고 윤리에 어긋나서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는 것으로서 단죄하였으

자임했지만 국량이 작았기 때문에 괴팍한 데 가까웠고, 스스로 견확(堅確)함을 허여했지만 사심(私心)이 성했기 때문에 전횡에 가까웠다. 스스로 세도(世道)를 담당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훈척(勳戚)들에게 부림을 당했고, 스스로 사문(斯文)을 호위한다고 일컬었지만 부역(扶抑)에 중도(中道)를 잃음을 면치 못하는 등 실제로 사무에 통달하는 능력이 모자랐다.”고 했다.

니, 이미 본정(本情)의 밖에 죄를 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날 주륙(誅戮)한다.’는 말도 또한 국면(局面)이 누차 바뀌어 도거(刀鋸)448)가 서로 이어질 경우 진신(摺紳)이 거의 장차 남아나지 못하게 되어 종사(宗社)가 반드시 따라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탕평(蕩平)으로써 우리러 경계하고 평서(平恕)로써 스스로 힘쓰고자 하였던 것이니, 이것도 또한 시국을 구제하는 요도(要道)와 국가를 위하는 심려(深慮)에서 나온 것이며 일신(一身)의 사사로운 이해 관계를 위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의논하는 이가 그 괴로운 심정과 피나는 정성을 양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보복(報復)하는 사정(私情)에 통쾌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후욕(詬辱)을 더한 것은 더욱 공평한 마음으로 사람을 논평하는 도리가 아니다. 서문중(徐文重)의 상장(上章)의 의논과 윤지완(尹趾完)의 공봉(供奉)의 의논은 또한 식견이 모자라 능히 의리를 살리지 못한 데 연유하여 그런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무식한 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요는 갑자기 변한 상황을 만나 창황히 과오를 저지른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세백(李世白)은 또한 어찌 당인(黨人)이 일찍이 추중(推重)하던 바가 아니겠는가마는 회의(會議)를 계청(啓請)한 죄는 이것보다 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의논하는 자가 이른바 ‘흉당(凶黨)에게 아부하였다.’는 것은 저쪽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고 이쪽에 대해서만 책망한 것이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이와 같이 하고서 스스로 공론(公論)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그 역시 웃을 만한 일이다.

③-1-2. 숙종 권26 20년 4월 26일(계사)

[보궐]

영의정 남구만이 청대(淸對)하였다. 국옥사(鞠獄事)를 논하여 민암·장희재를 형신(刑訊)하지 말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정죄(定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경연(經筵)에서 아뢴 내용은 위에 보인다.】 세도(世道)가 쇠미하고 당론(黨論)이 성한 뒤로부터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빈번이 다 득실(得失)에 요행심리를 갖고서 간혹 치밀하게 은닉하는 자취가 없지 않았는데, 시국이 번복된 뒤로 밀고를 분분하게 하여 반드시 다 성안(成案)을 하였다. 당국(當國)한 자가 만일 명청(明清)으로써 듣고 애경(哀敬)으로써 절충하지 않는다면 분개하고 미워한 나머지 화기를 손상하여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경우가 적을 것이니, 이것이 한 번 죄망(罪網)에 들게 되면 빈번이 스스로 그 실정을 다하지 못하고 옥석(玉石)이 모두 불타게 됨을 면치 못하는 까닭이다. 갑술년의 옥사는 단서가 뒤섞여 나와 정상이 모두 노출되어 조사(朝士)들에게 관련된 부분도 또한 많았었는데, 그 근본을 요약해 본다면 모두가 당사(黨私)의 잘못된 풍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조사하는 이가 만일 엄중한 체통을 구실로 삼아 보복을 자행했다면 한 쪽의 사람들은 아마 남아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남구만이 능히 공평한 마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일체를 당습(黨習)의 알력으로 돌리고 두세 명의 괴수 이외에는 모두 관대하게 처리하여 만연(蔓延)에 이르지 않도록 하였으니, 비록 죄를 징벌하는 법전에는 불쾌한 것 같지만 그 세상의 화를 구원하고 나라의 명맥을 부지한 공로는 가리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일의 설은 너무 안배(按排)한 것 같았고 팔의(八議)를 부연하고 양찬(兩竄)을 구제한 의논은 또한 용서하는 데 지나친 듯하니, 견식

이 있는 사람이 그 공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비평하기도 하였다.

갑술환국 이후 희빈 장씨의 지위와 세자의 보호 문제를 놓고 당시 의리론(義理論)과 심장려설(深長慮說)로 크게 나뉘었다고 보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인 듯하다.⁴³⁾ 숙종은 갑술환국 이후 기사환국 이전처럼 남구만을 영의정으로, 박세채(朴世采)를 좌의정으로 삼아 남구만의 심장려설을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계 개편 진용으로 보여주었다. ③-1-1, ③-1-2 기사는 바로 그런 남구만의 심장려설이 정당함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두 기사 모두 심장려설에 담긴 의리론 측면의 결함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③-1-1 기사에서, 남구만이 “만일 또 죄로써 희빈(禧嬪)을 출처(黜處)시킨다면 아무래도 동궁(東宮)에게 상처를 입힐 염려가 있을 것이니, 바로 환강(還降)이라 칭하는 것의 형적이 없게 됨만 같지 못하다고 여기었던 것이다.”라고 한 말은 세자를 곡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기사년과 다른 것이 없다”는 실언(失言)도 했다고 지적했다. 원본에서 이런 실언을 비판했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상도(常道)를 위배하고 윤리에 어긋나서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다.”고 단죄한 것은 실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③-1-2 기사도 남구만이 옥사가 만연(확대)하는 것을 경계했다고 하면서도, 장희재(張希載) 일당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안배하고 용서함으로써 실수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을 인정했다. 장희재의 옥사를 맡았던 판의금부사 신여철(申汝哲), 지의금부사 이세백(李世白) 등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했고, 소론에 우호적이었던 대사간 신회(申懷)도 의리론의 입장에서 남구만과 숙종을 비판했다.

1696년(숙종22) 이의징(李義徵)의 아들 이홍발(李弘渤)이 장희재 집안과 모의하여 종 업동을 시켜 나무로 세자 나이와 이름을 써서 장씨 선영에 묻고, 남을 시켜 고변한 일이 발생했다. 남구만과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은 장씨에게 사건이 미칠까 걱정하여 업동만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인화(李仁華) 등은 상소를 올려 유상운 등을 통렬히 비판했는데, 이 때 보궐정오의 논리도 동일하였다.⁴⁴⁾

③-2-1. 숙종 권35 27년 10월 12일(을축)

[원본]

중전을 모해한 사건에 대한 유학(幼學) 박규서(朴奎瑞)의 상소문

[보궐]

내옥의 일로 상소한 유학 박규서의 일을 승정원에서 계품하니 도로 내주게 명하다

흉인(凶人) 박규서(朴奎瑞)가 내옥(內獄)의 일을 가지고 흉악한 상소를 올리고, 이어서 최석정(崔錫鼎) 등 여러 사람들을 두루 비방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원래의 상소는 위에 보인다.】 그때 변고가 궁위(宮闈)에서 일어나자, 임금의 노여움이 바야흐로 대단하여, 온전히 은혜를 베풀자고 논한 사람들이 이미 모두

43) 이상식,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44) 《숙종실록보궐정오》 권35 27년 8월 23일(무인)

죄를 받았으므로, 세상에서 모두 무서워 떨면서 종사(宗社)와 나라를 걱정하였다. 이에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바야흐로 또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몰래 괴귀(怪鬼)한 자들을 사주하여 어지럽게 상소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임금의 떠보게 하였으니, 박규서와 임창(任敞)이 그 창귀(佯鬼)였다. 박규서의 상소 가운데 인용한 박소(薄昭)와 무후(武后) 등의 말은 더욱 흉패(凶悖)하고 윤기(倫紀)가 없는 것으로 임금의 뜻을 도발(挑發)하여 오로지 그 인자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임금의 어질고 밝음에 힘입어 마침내 다른 일은 없었다. 당인(黨人)들이 돌아보고 바야흐로 은혜를 온전히 하자는 의논을 주장하는 데 힘을 다하였지만, 일찍이 박규서를 죄주자는 한 마디 말도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의 의혹스러움을 어찌 면할 수가 있었겠는가?

③-2-2. 숙종 권35 27년 11월 9일(임진)

[원본]

좌찬성(左贊成) 윤증(尹拯)이 상소하여 동궁을 보호하는 뜻을 진달함. … 윤증이 일찍이 기사년의 경시(更始) 후에 대사헌으로서 글을 올렸으나 한 마디도 시사(時事)에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분이 엄정(嚴正)한 날에 이르러 이 소를 바쳐 스스로 정성을 다하는 계책을 삼았으니, 그 마음 씀이 바르지 못함을 식자(識者)들이 더욱 비루하게 여겼다.

[보궐]

좌찬성 윤증이 시골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동궁(東宮) 보호하는 뜻으로 진달하니, 임금이 유의(留意)하겠다고 답하였다. 【원소(原疏)와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윤증이 분의(分義)를 청탁하고 초야에 있으면서, 감히 세도(世道)로써 자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한 마디 말도 조정에 미치지 않았으나, 이륜(彝倫)에 관계되는 바에 이르러서는 의리상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기사년의 곤극(坤極)의 기울어짐과 신사년의 국본(國本)의 위태로움은 모두 종사의 준망이 매인 일로서, 신하된 자가 말이 없을 수 없는 일이나, 기사년의 변고는 윤증이 갑자년(1684, 숙종10)부터 폐고(廢錮)되어 유신(儒臣)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리로 보아 척(尺)을 굽혀 심(尋)을 펼 수 없으니, 윤증이 말하지 않은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그 대사헌(大司憲)으로 거두어 부른 데 미처서는 일이 이미 여러 해가 지나갔고, 또 역률(逆律)로써 논하겠다는 금령이 있었고, 또 어묵(語默)하였다는 의(義)로 얹어 징벌(徵辟)에 나가지 않은 선비를 죄로 폐고되었다가 한 번 부름을 받았으니, 또한 입을 열어 국사(國事)를 논할 때가 아니었으므로, 다만 사직소의 말미에 직신(直臣)이 죽기를 무릅쓰고 간(諫)한 것을 애도하여 그 일을 깊이 슬퍼하는 뜻을 보였고, 신사년의 일은 연소(延召)의 명이 특이하게 융숭하였으나, 때가 이미 8년이었으며, 몸은 비록 나가지 않았으나 군상(君上)이 마음을 경주(傾注)함이 이와 같았으니, 일이 국가 준망에 매인 것은 의리로 보아 진실로 말해야 하고, 그 일이 또한 화기(禍機)가 미연(未然)에 잠복하고 있어서 세자의 보호에 힘써야 하는지라, 이것이 윤증이 파계(破戒)하고 진언(進言)하여 반드시 성인(聖人)의 자애(慈愛)에 대한 변동이 없었음을 힘쓰게 하여 그 충성을 다한 것이다. 대저 과묵(寡默)한다는 것은 곧 그 본래의 규모(規模)이며, 또한 급작스레 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요컨

대, 모두 자신의 죄책으로 칭탁하는 말로 돌렸으니, 전후(前後)의 의리에 처(處)함이 그 과실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처음 사책(史策)을 편수한 자가 이미 기사년의 말할 수 없는 처지임을 살피지 않고, 아울러 신사년의 보호의 의논과 함께 무함(誣陷)과 저훼(詆毀)를 추가(追加)하여 ‘스스로 바르지 못한 것을 본받았다.’는 등의 말로써 그 심술(心術)을 단정하였으니, 당인(黨人)들이 사리(事理)를 살피지 않고 억지로 굴레를 씌워 만든 말이란 모두 이와 같으리라.

1701년 숙종은 세자의 생모 희빈 장씨로 하여금 자진(自盡)하라는 명을 내렸다.⁴⁵⁾ 왕비 민씨(閔氏)가 창경궁 경춘전(景春殿)에서 승하한 8월 14일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자진하라는 명이 있기 이틀 전, “대행왕비(大行王妃)가 병에 걸린 2년 동안에 희빈 장씨는 비단 한 번도 기거(起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궁전(中宮殿)’이라고 하지도 않고 반드시 ‘민씨(閔氏)’라고 일컬었으며, 또 ‘민씨는 실로 요사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취선당(就善堂)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神堂)을 설치하고, 매양 2, 3인의 비복(婢僕)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이것을 참을 수가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 제주(濟州)에 유배(流配)시킨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먼저 처형하여 빨리 나라의 형벌을 바로잡도록 하라.”고 명을 내린 뒤의 일이었다.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 민씨를 무고(巫蠱)한 사건의 결과였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자 보호론이 등장했다. ③-2-1 기사는 세자 보호의 명분 아래 흥역(凶逆)에 대한 토죄(討罪)를 늦춘 윤지인(尹趾仁), 이명세(李命世), 이봉징(李鳳徵)을 논핵한 박규서의 상소와, 그에 대한 보궐정오의 사평이다. 박규서는 이 상소에서 1696년(병자년) 장씨 선영 흥물 사건 때 상소를 올려 유상언을 비판했던 이인화가 옳았음을 상기시켰다. 이미 사헌부, 사간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소를 돌려주었지만, 장희빈이 사사했던 이 신사년 사건은 병자년의 상황과 달랐다.

그러나 박규수가 세자의 위상을 혼든 것은 아니었다. “춘궁이 금일에 당한 일은 실로 전고(前古)에 드문 참경(慘境)이니, 여러 신하들이 춘궁을 위하여 애통해 하고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감히 이것을 가지고 내려진 성단(聖斷)에 곧 쟁집(爭執)할 수 없었던 것은 대개 의리(義理)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한 바와 마찬가지로, 토역의 엄중함과 세자 보위는 별개라는 뜻이었다. 왜냐하면 세자는 의리가 인현왕후에게 있기 때문이다. 생모는 희빈 장씨이지만 중법상의 어머니는 인현왕후이므로, 장씨 집안을 흥역으로 토죄하는 것은 세자의 지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의리론의 출발이었다.

하지만, 보궐정오의 편찬자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③-2-2 기사인 윤증의 상소는 편찬자들의 인식을 대변한다. 그리고 윤증에 대한 변론이기도 하다. 이후 내내 소론의 심장려설은 세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노론의 의리론은 세자 폐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단순

45) 《숙종실록》 권35 27년 9월 25일(기유)

도식이 보궐정오의 논리 속에 이어졌다. 그리고 그 논리는 경종대 신임사화로 이어졌으며, 그런 점에서 보궐정오는 신임사화의 합리화이기도 하였다.

4) 병신처분과 정유독대

신사년 옥사 이후 잠시 소론이 주춤했지만 물러났던 최석정(崔錫鼎)이 이듬해인 1702년(숙종28)에 복귀하여 영의정에 오르고, 파직되었던 남구만과 유상운도 석방되었다. 그렇지만 숙종은 달라져있었다. 그는 인현왕후에 대한 의리론을 강조했다. 아직 인식 차이는 존재했지만 그런대로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디나 꼬투리만 있으면 사단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신사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동궁을 모해하려한다는 설이었다. 보궐정오의 편찬자들의 걱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1706년(숙종32) 충청도 유생 임부(林溥) 등은 동궁 모해설을 들고 나와 신사년 옥사 때 사건을 담당했던 관리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⁴⁶⁾ 대상은 대부분 노론이었다. 이 일로 노론 조태채(趙泰采), 이이명(李頤命)이 체직, 파직되었다. 결국 임부의 상소는 임보의 유배, 신사년 담당자인 김춘택의 정배라는 어정쩡한 절충으로 끝났다. 이는 세자에 대한 충역 의리가 언제고 다시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일은 《가례원류(家禮源流)》 찬자 논쟁을 계기로 내린 병신처분(丙申處分)과 그 이듬해 정유독대(丁酉獨對) 이후 세자의 청정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이 사이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의 조부(祖父) 최명길(崔鳴吉)의 병자호란 때 처신이 논란이 일었는가 하면,⁴⁷⁾ 직장(直長) 이세덕(李世德)은 임부(林溥)가 신사년 옥사를 언급하며 이세덕 자신의 스승 윤증(尹拯)이 시세(時勢) 때문에 출사하지 않는다는 등 허망한 말로 끌어들이었다고 반론하는⁴⁸⁾ 등 사안이 잠잠해지지 않았다. 마침내 윤증 자신이 나서 ‘사정(私情)이 위태롭고 고달픈 이유로써 스스로 구학(溝壑)에서 평생을 보내기로’ 했음을 해명하기에 이르렀다.⁴⁹⁾

다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 터졌으니, 1716년(숙종42) 《가례원류(家禮源流)》 편찬자를 놓고 벌어진 논쟁과 숙종의 처분, 이른바 ‘병신처분(병신처분)’이다. 《가례원류》를 윤증이 부친인 윤선거를 편찬자로 간행하고자 했는데, 이 본래의 편찬자가 유계(兪槩)이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편찬자로 알려진 유계는 금산(錦山)에 있는 윤선거와는 문을 마주하여 살았다. 유계는 조정에 올라가면서 중본(中本 중초본)을 문인(門人) 윤증(尹拯)에게 부탁하여 일을 끝내도록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윤선거도 책의 교정과 편찬을

46) 《숙종실록》 권43 32년 5월 29일(병술)

47) 《숙종실록》 권43 32년 3월 9일(정묘). 이 사안에서도 보궐정오 편찬자들은 최석정의 해명 상소를 전제했다.

48) 《숙종실록보궐정오》 권43 32년 6월 11일(정유). 이 부분은 《숙종실록》에 나오지 않는 기사이다.

49) 《숙종실록보궐정오》 권43 32년 6월 21일(정미). 《보궐정오》 편찬자들은 “유현(儒賢)이 본심을 스스로 밝힌 것을 초사(初史)의 편수(編修)한 자가 알지 못할 이치가 없는데도 고의로 ‘와양(譌讓)’ 등의 글자를 써서 모욕하고 회롱하는 뜻을 드러내 보였으니, 이 말을 한 자도 그가 바른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숙종실록》에는 ‘와양’이 아니라 ‘겸양(謙讓)’의 뜻을 보였다고 했다.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결국 편찬자 논란이 벌어졌다.

④-1-1. 숙종 권56 41년 11월 10일(임인)

[원본]

전라도 유생(儒生) 유규(柳奎) 등 8백여 명이 상소하여 《가례원류》 사안을 변론함.

[보궐]

전라도 유생(儒生) 유규(柳奎) 등 8백여 명이 상소하여 《가례원류》의 일을 변론하였다.

【원소(原疏)와 비사(批辭)는 위에 보이는데, 긴요한 단락으로 삭제된 것은 보충한다.】 그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그 책은 모두 3백 65절로 되어 있는데, 2백 5절은 바로 윤선거(尹宣舉)가 쓴 것이고, 1백 9절은 바로 유계(兪槩)가 쓴 것이며, 3절은 결손(缺損)된 것을 윤증(尹拯)이 보충하여 쓴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윤증 및 고(故) 참판(參判) 이유태(李惟泰)와 유상기(兪相基)의 아버지 유명운(兪命胤)이 젊었을 때 쓴 것입니다. 《거가잡의(居家雜儀)》와 《거상잡의(居喪雜儀)》는 통틀어 12장(張)인데, 5장은 유계가 쓴 것이고, 7장은 윤선거가 쓴 것입니다. 초본(草本)의 수적(手蹟)이 모두 윤증의 집에 있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대저 윤선거와 유계는 도의(道義)로써 교유(交游)하며 여택(麗澤)의 도움을 얻어 사례(四禮) 속에 힘을 다한 것이 이와 같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그것을 서로 수정하고 함께 편집한 뜻은 후학(後學)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려는 데 있었을 따름이었고, 피차가 모두 일찍이 자가의 사유(私有)나 자기의 공으로 삼으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단은 그 초본에 있는데, 지금은 아래에 보인다.】 선정신(先正臣) 박세채(朴世采)가 윤선거에게 준 편지에 대략 이르기를, ‘듣건대 문장(文丈)께서 시남(市南)과 함께 일찍이 《가례원류》를 수찬했는데, 고금의 예설을 모두 찾아 모아서 길흉에 변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잘 갖추어졌다고 하니, 한 번 보기를 원합니다.’하고, 또 윤선거의 행장을 지은 가운데 이르기를, ‘《가례(家禮)》의 손익(損益)과 본말(本末)의 뜻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음을 병통으로 여겨 유공(兪公)과 함께 《의례(儀禮)》에서 취(取)한 것을 원(源)이라 하고, 제유(諸儒)들의 논설(論說)을 유(流)라 하여 한 책을 이루었다.’ 하였는데, 시남은 바로 유계의 호(號)입니다.”

하고, 【이 문단은 함께 편찬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 아래에 있다.】 또 말하기를,

“이상(李相) 【바로 이이명(李爾命)이다.】 이 말하기를, ‘유봉(酉峰) 【유봉은 윤증이 살던 곳이다.】의 책본(冊本)은 곧 7권으로 가장 상세하게 갖추어졌으니, 모름지기 그 책본을 얻어서 입간(入刊)해야 한다.’ 하였는데, 대개 유상기가 이이명에게 보인 것은 다만 이 4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윤증이 경연에서 있었던 말을 물으니, 유상기가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저 유상기는 오로지 이 일을 위해 상경했었는데, 유상기가 상경했을 때에는 유봉을 찾아보고 애당초 한 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다가 돌아올 때에 미처서야 대신(大臣)의 말을 전하면서 경연에서 한 말은 숨겼으니, 이는 그 뜻이 경연에서 아뢰었을 때 함께 편집한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말하기가 어려웠고, 또 책본(冊本)을 입수(入手)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처럼 함호(含糊)하였던 것입니다. 그 정태(靜態)가

진실로 이미 가증스럽습니다...”

하였다.

④-1-2. 숙종 권57 42년 1월 25일(병진)

[원본]

《가례원류》의 후서를 지은 자신의 죄를 처벌할 것을 요청한 대사헌 권상하의 상소

[보궐]

대사헌(大司憲) 권상하(權尙夏)가 상소(上疏)하여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을 논하여 운운하고 【원소(原疏)는 위에 보인다.】 비지(批旨)를 운운 【위에 보인다.】 하였다. 《가례원류》의 곡절은 지난 겨울 유규(柳奎)가 상소한 데에 상세하거니와, 그것은 유계(兪槩)·윤선거(尹宣擧)가 함께 써서 함께 엮은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그 초본(草本)이 윤증(尹拯)의 집에 간직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필적(筆蹟)이 분명히 있다. 유계가 조정에 나아가게 되어서는 윤선거 부자가 가다듬고 보탠 것이 초본(初本)보다 열 네댓 군데 더 보이므로 두 집에서 소장(所藏)한 편질(編帙)의 다과(多寡)가 같지 않다. 이이명(李頤命)이 아뢰어 청한 것은 유계의 초편(初編)인데, 유상기(兪相基)가 윤증으로부터 빌어서 간행(刊行)한 것은 윤선거가 고쳐 완성한 것이니, 윤증의 집 자체가 빌려주려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상기가 남의 중용을 받아 반복(反覆)한 것이 변변치 못하다. 이것이 윤증이 왕복하여 마지않은 까닭이지 다투려는 뜻은 아니었는데, 권상하는 송시열(宋時烈)의 문인(門人)으로서 무릇 윤가(尹家)의 일을 만나기만 하면 이 일을 힘껏 배척하니, 그 함께 엮은 사실에 대하여는 들어서 아는 것이 없는 듯이 하면서, 다만 유계가 죽을 때에 뒷일을 윤증의 집 부형들에게 부탁한 것만으로 집요하게 이 글을 부탁한 증거로 삼아 마치 윤증이 죽은 스승을 저버리고 틀어쥐어 자기 물건으로 삼은 듯이 하고, 심지어는 소진(蘇秦)·장의(張儀)의 수단과 형칠(邢七)의 낭패로 지목하기까지 하였다. 대개 송시열이 만년에는 혈기로 용사(用事)하고 사기(辭氣)는 분려(忿戾)하였는데, 문도(門徒)가 따라 익히고 좇아 행한 것도 오로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본바탕이 신중하고 성실한 권상하로서도 구기(口氣)가 이처럼 분박(噴薄)하였다. 심지어 송시열이 쓴 묘문(墓文) 가운데에 윤휴(尹鑄)를 편들어 화(禍)를 빚어냈다고 한 말은 더욱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또 한결같이 자명(自明)하니, 권상하가 어찌 말할 만한 것이겠는가? 실로 송시열의 유폐(流弊)가 후학(後學)에게 병통이 된 것이다. 임금의 분부 가운데에 경(卿)은 평온한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시비가 어디 있는지는 밝히되 온화하고 조용하여 꺾박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음에 후서(後序)한 글은 짓지 않았어야 옳다고 분부한 것과 뜻을 같이 하여 예대(禮待)하는 체모를 잃지 않은 것이니, 그 당시의 사신(史臣)이 이 분부를 사림(士林)에서 근심하였다고 한 것 또한 우습지 않겠는가?

④-1-3. 숙종 권57 42년 3월 4일(을미)

[원본]

없음

[보궐]

승지(承旨) 심수현(沈壽賢)이 김순행(金純行)의 소(疏) 【김순행의 소는 위에 보인다.】로 인하여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윤행교(尹行敎)와 말하다가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을 언급했는데, 그 곡절을 물었더니, ‘선정(先正)의 본의가 이 글을 간행하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함께 엮은 실상을 미처 밝히기 전에 지레 먼저 간행하기가 미안했는데, 유상기(兪相基)가 곧 내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득 의심과 분노가 일어나 마침내 절교를 고하게 되었고, 곧 등본(謄本)으로 서둘러 인쇄에 들어갔다.’ 하였으므로, 과연 연주(筵奏) 때에 대략 들은 바를 아뢰었을 뿐입니다. ‘오가서(吾家書)’라는 석자로 말하면 본디 선정이 일찍이 입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윤행교의 글 가운데에 ‘세상에서 전하기를 우리 집 글이라 한다’는 말이 있되, 대개 그 뜻은 비록 함께 엮은 것이기는 하나 뒤에 와서 우리 집에서 완성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집 글인 줄 안다는 것인데, 이것을 선정이 스승을 저버린 증거로 지적하여 심지어는 양양(攘羊)이니 동리(同利)이니 하는 따위의 말로 마음대로 근거 없어 험뜯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하였다. 대개 김순행의 무리가 심수현이 윤행교의 글 가운데에 있는 ‘오가서’라는 석자를 윤증의 말이라고 연주(筵奏)한 것을 갖고 가로챈 것이라고 무함한 것은 참으로 분변(分辨)할 것도 못된다. 더구나 김순행의 외할아버지인 윤항(尹抗)과 그 아우인 윤충(尹攄)은 윤증의 종형제인데, 송시열(宋時烈)이 일찍이 윤휴(尹鑄)의 아들이라 욕하여 반드시 항제(抗濟)·충제(攄濟)라 불렀으니, 대개 윤휴의 아들로 의제(義濟)·하제(夏濟)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윤항의 집 자손이 송시열을 원수로 여겼는데, 김순행은 그 외손으로서 송시열을 위하여 윤증을 무함하는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드디어는 그 외삼촌에게 절교당하였다.

④-1-4. 숙종 권58 42년 8월 24일(신해)

[원본]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상소하여 윤선거(尹宣舉) 문집의 판(板)을 헐기를 청하니, …… 임금이 답하기를,

“근래 신구의 소가 나와서 논의가 어지러우므로, 경(卿)이 혹 이 때문에 편안하지 않는 단서를 다시 일으킬까 염려하여 이처럼 차자로 아뢰었는데, 그 논열(論列)한 것이 매우 명백하다. 윤선거의 본집 가운데에 있는 글이 망령된 것이 심하나, 신구를 견책하기를 청한 글에 끝내 윤택하지 않은 것은 내 뜻이 바로 경의 차자의 말과 같기 때문이었다. 소두(疏頭) 이홍제는 정배(定配)하고 엄경수는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말며, 이어서 그 판본을 헐어 없애게 하여 시비를 밝히는 뜻을 보이고, 이제부터 이러한 다투어 변명하는 소는 일체 봉입하지 않는다면, 어지러운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정원(政元)을 시켜 이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드디어 이홍제를 태인현(泰仁縣)에 정배하였다.

[보궐]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상소하여 윤선거(尹宣舉)의 문집(文集)의 판(板)을 헐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여 그 판을 헐고 소유(疏儒) 이홍제(李弘躋)를 태인현(泰仁縣)에 정배(定配)하였다. 【원소(原疏)와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아! 김창집의 죄를 이루 주벌(誅罰)할 수 있겠는가? 사문(斯文)의 다툼이 30년이 되어도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어그러지고 격렬하여 신구(申球)의 소에 이르러 극심하였는데, 김창집은 자신이 보상(輔相)의 자리에 있으면서 매우 배척하여 막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괴귀(怪鬼) 같은 무리의 여론(餘論)을 주워 모아 호흡(呼吸)하여 그 불을 일으키고 흔들어 올려서 그 물결을 일으키며 쉽게 풀이하고 억지로 맞추어 유자광(柳子光)의 수단을 마음껏 부려 이미 죽어서 뼈가 된 사람의 화(禍)를 빚어 만들었다. 임금의 뜻이 처음에는 배척하다가 마침내 바뀌게 한 것도 김창집이고, 대간(臺諫)의 의논이 공정하다가 곧 가라앉게 한 것도 김창집이며, 마침내 젊은 선비들이 매우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 격렬하여져서 스스로 왕옥(王獄)에 갇히게 한 것도 김창집이고, 잇따라 귀양 보내어 사림(士林)이 거의 피를 흘리게 한 것도 김창집이다. 저 신구의 무리를 무엇이 꾸짖을 것이 되겠는가? 그런데 대신(大臣)으로서 차마 이런 일을 하니, 세도(世道)의 변함이, 아! 또한 참혹하다.

④-1-1~④-1-4 기사는 《가례원류》사건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병신처분’에 이르는 핵심 기사들이다. ④-1-1 기사에서, 유규(柳奎) 등 8백여 명이 상소하여 “《가례원류》는 모두 3백 65절로 되어 있는데, 2백 5절은 윤선거가 쓴 것이고, 1백 9절은 유계가 쓴 것이며, 3절은 결락된 것을 윤증이 보충한 것”이며, 유계의 후손 유상기(兪相基)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숙종은 “유상기가 실상을 완전히 숨긴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대사헌(권상하)가 지은 서문은 추후에 보았는데, 이른바 서서후문(書序後文)은 짓지 않았어야 옳았다.”고 답하였다. 권상하가 지은 서문 뒤의 소설(小說)에, “아버지와 스승의 처지에 이런 소진(蘇秦)·장의(張儀)의 교묘한 수단을 부렸고 형칠(邢七)의 낭패(狼狽)가 있었다.”며 윤증을 비판한 데 대한 증재였다. 형칠의 낭패란, 형칠이 정호(程顥)에게 배우고 사마광(司馬光) 등의 문하에 출입하고서 출세하였는데, 뒤에 스승을 배반하고 왕안석(王安石)·채경(蔡京) 등에게 붙어서 스승을 무함한 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자 권상하는 후서(後序)를 지은 자신의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④-1-2 기사가 그것이고 보궐정오에서는 다시 권상하의 상소를 비판하고 원본에 실린 사론에서 “임금의 비답(批答)이 또 이러하였으므로 사림(士林)이 매우 근심하였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원본에 적힌 사론은, 숙종이 “선정의 도덕으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한 비답을 두고 한 말이었다. 물론 선정은 곧 윤증이니, 숙종의 말은 윤증이 그렇게 남의 책을 자기 것으로 했을 리 없다는 뜻이었다.

④-1-3 기사는 원본에 없고 보궐정오에만 나온다. 승지 심수현(沈壽賢)이 김순행(金純行)의 상소를 비판한 내용인데, 이 역시 《가례원류》 판본 형성 과정에 대한 사실과 인식 차이에 기초하였다. 한편 이 기사는 윤증 집안 내에서조차 《가례원류》의 저자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에서 《가례원류》가 논란이 되자 어떤 식으로든 판단과 정리가 필요했고, 그 결과가 병신처분이라 불리는 ④-1-4 기사이다. ④-1-4 기사는 김창집이 《가례원류》가 들어간 윤선거 문집의 판을 헐라고 청했고, 숙종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보궐정오 편찬자들이 “젊은 선비들이 매우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 격렬하여져서 스스로 왕옥(王獄)에 갇히게 한 것도 김창집이고, 잇따라 귀양 보내어 사림(士林)이 거의 피를 흘리게 한 것도 김창집이다.” 이라고 했듯이, 신임사화에서 김창집이 맨 먼저 사사되는 기화가 여기에서 싹트다고 할 수 있다. 보궐정오 편찬자들이 보기에 ‘세도(世道)를 참혹하게 변화시킨 자’이므로.

격렬하기로는 병신처분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판부사(判府事) 조상우(趙相愚)는 윤선거의 문집 판본을 헐라는 명을 거두고 상소에 대한 금령(禁令)을 풀기를 청하면서 아울러 김창집을 공박했다.⁵⁰⁾ 윤선거 문집의 판본을 헐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는 서종태의 차자가 올라갔으며,⁵¹⁾ 대사간에 제배된 이세면이 윤선거 문집의 판본을 헐라는 명을 거행할 수 없다 하여 체직되었다.⁵²⁾ 병조 참판 이대성의 상소⁵³⁾와 좌윤 이광좌의 상소도 이어졌다.⁵⁴⁾

그러나 사태는 바뀌지 않았다. 병신처분 이전에 숙종의 태도는 가닥을 잡고 있었다. 7월에 이조판서 최석항과 이조참판 이광좌를 파직했는데, 도목정(都目政)을 시작하여 끝내지 못하였는데 전관(銓官)이 다 파직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⁵⁵⁾ 또 경기·충청·전라 세 도의 유생(儒生) 신구(申球) 등 60인이 상소하여 윤선거가 곧 효종께서 잘못이 있어서 그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는 두거설(杜舉說)을 꺼냈다고 비판하였다.⁵⁶⁾

이런 흐름 속에서 숙종은 병신처분을 단행하였다. 윤증과 송시열을 둘러싼 부자(父子)와 사생(師生)의 시비에 대한 논란이 두거설로 번지고 군부(君父) 경중설(輕重說)로까지 번지자 숙종은 조정의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의리주인(義理主人)인 군사(君師)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숙종은 홍문관에 송시열(宋時烈)이 편찬한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교정, 간행하라고 명했고,⁵⁷⁾ 송시열과 송준길을 배향한 화양서원(華陽書院)과 흥암서원(興巖書院)에 사액하였다.

④-2-1. 숙종 권60 43년 7월 19일(신미)

[원문]

하교(下敎)하기를,

50) 《숙종실록보궐정오》 권58 42년 9월 4일(경신)

51) 《숙종실록보궐정오》 권58 42년 9월 8일(갑자)

52) 《숙종실록보궐정오》 권58 42년 9월 10일(병인)

53) 《숙종실록보궐정오》 권58 42년 9월 12일(무진)

54) 《숙종실록보궐정오》 권58 42년 9월 27일(계미)

55) 《숙종실록》 권58 42년 7월 6일(계해)

56) 《숙종실록》 권58 42년 7월 25일(임오). 신구(申球) 등은 윤선거가 효종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거’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공격했는데, 이에 대해 7월 29일 오명준(吳命峻)은 윤선거가 단순히 ‘임금을 경계하는 술잔’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해명한 것이다.

57) 《숙종실록》 권58 42년 9월 24일(경진)

“5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온 끝에 안질(眼疾)이 더욱 고통스러워서 물체를 보아도 더욱 희미해 수응(酬應)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었으니 국사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그리하여 국조(國朝)와 당(唐)나라 때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세자(世子)에게 청정(聽政)하게 한다.”

하였다.

[보궐]

왕세자(王世子)에게 청정(聽政)할 것을 명하였다. 이날 아침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는데 임금이 특명(特命)으로 좌상(左相) 이이명(李爾命)을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임금이 안질(眼疾) 때문에 수응(酬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통(變通)시키는 방도가 있어야겠다는 분부가 있자, 이이명(李爾命)이 갑자기 세자(世子)를 곁에 두고 참견(參見)하게 하라는 말을 하니, 임금이 이에 대한 아무런 가부(可否)가 없이 당(唐)나라 때에 변통시켰던 일을 바로 하문(下問)하였다. 이이명은 세 번이나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대신(大臣)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자고만 청하였는데,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의 대답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기색이 있었다. 이들이 물러가고 나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에 앉아서 유독 이이명(李爾命)만을 부르고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을 저지시켜 입시(入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이명(李爾命)이 초대(初對)에서 임금의 뜻을 헤아리고서 즉시 추창(趨蹌)하여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야 물러나왔는데, 그때의 말을 비밀에 부치고 전하지 않았으므로 중외(中外)의 인심이 흉흉하여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술렁였다. 이날 저녁 임금이 다시 이이명과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등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였는데, 드디어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무진년(1688) 원자(元子)를 책봉(冊封)할 적에 온 조정이 간쟁(諫爭)하였으나 당초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유독 이사명(李師命)만이 이미 흉심(凶心)을 품고 있었으므로 기사년(1689)에 이르러 과연 주사(誅死)되는 일이 있었다. 갑술년(1694)에 이르러서는 이사명(李師命)의 서형(婿兄)인 김춘택(金春澤)이 기세를 마구 부렸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지목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하교(下教)하기를,

“감히 강신(強臣)·흉열(凶孽)이 국본(國本)을 동요시키는 경우에는 역률(逆律)로 논죄하겠다.”

하였는데, 비록 대신(大臣)의 말로 인하여 이 분부를 환수(還收)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실로 깊이 걱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밖으로 명의(名義)를 핑계한 사람들이 늘 보호(保護)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논을 이기지 못하였다. 불행하게도 신사년(1701)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승하하여 동궁(東宮)이 의지할 곳을 잃었던 데다 장씨(張氏)마저 죄로 죽었기 때문에 처세(處勢)가 더욱 위외(危疑)스러워짐에 따라 보호하던 대신(大臣)들은 모두 유찬(流竄)되었다. 그리하여 사류(士流)들이 조정에 용납될 수가 없었고 반대로 노당(老黨 노론)들의 기세가 날로 치성하여져 갔다. 이리하여 국민(國人)들의 의혹이 이사명(李師命)과 김춘택(金春澤)의 집안으로 많이 귀착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생겨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에 와서 독대(獨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사명(李師命)의 아우인 이이명(李爾命)이었다. 아! 우리나라 조정의 조의(朝儀)는 광명정대(光明正大)하여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을 인입(引入)하지 않고서는 상하가 접견하지 않았었다. 영릉(寧陵) 효

중) 때 한번 독대(獨對)가 있었는데 이는 극비(極秘)를 요하는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평상시에 본받을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이명이 이미 당(唐)나라 때의 고사(故事)에 대한 하문을 받들었고 계속해서 혼자만을 불렀으니, 당폐(堂陛)의 한 걸음 앞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이는 그의 가슴속에 먹은 마음이 버티고 있어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의기양양(意氣揚揚)하게 소매를 내저으면서 자기집으로 들어가듯이 한 것이니, 사람을 물리치고 무릎을 맞대고서 한 말이 비록 충언(忠言) 지계(至計)가 있더라도 어찌 스스로 비밀을 폭로(暴露)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임금의 지척(咫尺) 사이에서 인신(人臣)으로서 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말을 들었으면, 한나라 때 사단(史丹)이 청포(靑蒲)에 엎드려 간(諫)한 것과 당나라 때 이필(李泌)이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고 청한 것을 그 자신의 임무로 삼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무엇 때문에 대신(大臣)을 불러 번거롭게 의논한단 말인가? 이미 불러서 의논했다면 김창집(金昌集)의 경우는 또한 마땅히 이런 마음을 두지 말고 자애(慈愛)하여 사이가 가깝게 하는 의리로써 천륜(天倫)을 개도(開導)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간(諫)해서 성의(聖意)를 확연(廓然)히 깨우치게 해야 했는데도 끝내 한마디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서둘러 청정(聽政)시켜 대리(代理)하게 하자는 청을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참으로 춘궁(春宮)을 애대(愛戴)하여 영문(令聞)을 드러내어 밝히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거듭 마음을 떠보면서 천천히 도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다행히 천충(天衷)이 뉘우쳐 덕음(德音)이 내려짐을 힘입어 국본(國本)이 영원히 공고하여졌고, 인심(人心)이 아주 결정되어 사직(社稷)은 끝내 반드시 영장(靈長)이 해와 달이 일식(日蝕)·월식(月蝕)에서 다시 밝아오는 것을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 한가닥 안개와 음산한 무지개가 어떻게 회식(晦蝕)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30년 동안 빚어온 흥심을 이때에 마음껏 부릴 뻔하였는데 임인년(1722)의 옥사(獄事)에서 그 전모가 다 드러났으니, 그 거괴(渠魁)를 따져보면 이이명(李頤命)이 앞잡이인 것이다. 백대(百代) 뒤에 이것을 가지고 시종 화계(禍階)가 은밀히 싹터 나오고 흉악한 계획이 크게 발현(發現)된 것을 살펴본다면 그 한 맥락(脈絡)이 관통(貫通)될 뿐만이 아니었으니, 이루 다 주벌(誅罰)할 수가 있겠으며 이루 다 주벌할 수가 있겠는가?

④-2-2. 숙종 권60 43년 7월 28일(경진)

[원본]

숙종과 이이명의 독대에 대한 영중추부사 윤지완의 상소와 비답

[보궐 27(기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지완(尹趾完)이 상소(上疏)했는데, 【위에 보인다.】 비답(批答)이 있었다. 【위에 보인다.】 윤지완은 갑술년에 남구만(南九萬) 등과 함께 세자를 보호(保護)해야 한다는 의논을 주장하면서 항상 노당(老黨)들의 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하였다. 이이명(李頤命)이 독대(獨對)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방금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도 벌떡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노신(老臣)이 죽을 곳을 얻었다.”

하고는 가마를 타고 빨리 도성(都城)으로 들어와 붓을 내둘러 소장을 기초하였는데, 그 사기(辭氣)가 너무도 늙름하였으므로 사류(士流)들이 믿고서 걱정을 놓을 수 있었다. 도성 사람들이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서로들 말하기를,

“윤 영부사(尹領府事)가 들어왔으니, 국가가 무사히 보존될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비록 엄중한 비답(批答)을 내려 지척(指斥)하였지만 은연중 사로(四老)1228)가 태자를 도왔던 공이 있었다. 이이명(李頤命)도 도성 밖으로 달려 나아가 대죄(待罪)한 채 다시 들어와 정승이 되지 못하였으니, 군정(群情)을 진정시키고 간모(奸謀)를 꺾은 것은 곧 이 한 통 상소(上疏)의 힘이 많은 작용을 한 것이다. 아! 윤지완(尹趾完)같은 사람은 나라의 안위(安危)를 맡길 만한 중신(重臣)이라고 할 만하다.

④-2-1 기사에서 원본은 왕세자 청정 사실만 전달한 데 비해, 보궐정오는 독대 자체와 함께 그간 왕세자 보호론의 입장에서 청정이 자칫 왕세자에 대한 음해로 내달을 상황을 우려하였다. 효종 때 독대 이후 승지와 사관이 배석하지 않는 독대가 없었다는 보궐정오 사론의 말은 사실이며, 또 독대는 조선의 정치운영에 정당하지도 않았다. 특히 남구만, 윤증, 최석정, 서종태 등 소론 중역들이 세상을 뜨고, 윤선거, 윤증 부자의 관작마치 추탈당한 상황에서⁵⁸⁾ 숙종이 이이명과 세자청정을 논의한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소외감은 컸을 것이다.

이에 윤지완은 “전하께서 어떻게 상국(相國)을 사인(私人)으로 삼을 수가 있으며 대신(大臣)도 또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승의 지위를 임금의 사신(私臣)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숙종과 이이명 모두를 비판했다. ④-2-2 보궐정오 기사는 이 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지사(知事) 강현(姜鉉)이 정사를 대리(代理)하게 한 일로 인하여 소장을 올려 궁위(宮闈)를 엄중히 할 것을 청하였다.⁵⁹⁾ 숙종은 반교문을 통해, 왕세자의 인망이 높고 실덕(失德)이 없다는 점, 대신들과 논의에 앞서 자신이 대리청정을 결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⁶⁰⁾ 소론이 주장하는 왕세자 보호론, 대신 이이명과 독대를 통한 의사결정의 의혹을 차단하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과정과, ‘보궐정오’의 실재를 살펴 보았다. ‘보궐정오’의 탄생은 학문의 연원과 정치적 입장이 달라진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낳은 산물이었다. 당초 《숙종실록》을 개수(改修)하려고 했으나 분량이 많아 빠진 기사를 보충하여 추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보궐정오(補闕正誤)’를 편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숙종실록》의 편찬과 개수 과정을 살펴보았다. 보궐정오의 출발은 근

58) 《숙종실록》 권59 43년 5월 29일(임오)

59) 《숙종실록보궐정오》 권60 43년 7월 28일(경진)

60) 《숙종실록》 권60 43년 10월 3일(계미)

원적으로 인간의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며, 정치상황의 변화, 즉 환국(換局)은 구체적 계기이다. 그런데 《현종개수실록》과는 달리 보궐정오(보궐과 정오, 즉 빠진 기록을 보완하고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다는 두 방향에서 찬수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시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궐의 사례를 굳이 예시할 필요가 없지만, 정오, 즉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는 날짜를 바로잡는 일부터⁶¹⁾ 서종태의 줄기에 나타나듯 “초사(初史)에는 한 가지도 공정(公正)한 사필(史筆)이 없었다. 서종태는 당인(黨人)에 대해 몹시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폄척(貶斥)과 무함(誣陷)이 유독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발휘한 것이 상세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므로, 이에 거듭 상세히 기술하여 이를 보충한다.”⁶²⁾는 식의 적극적인 사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숙종실록》의 개수를 논의할 때 이광좌가 자신이 보았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말했던 신사년(1701, 숙종27), 병신년(1716, 숙종42), 정유년(1717, 숙종43)은 《숙종실록》과 《보궐정오》의 견해가 많이 달랐고, 그 내용도 많았으므로 본고에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61) 《숙종실록보궐정오》 권56 41년 2월 1일(무진)에, “초사(初史)에는 기사(己巳)로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는다.”라고 하였다.

62) 《숙종실록보궐정오》 권63 45년 2월 21일(갑자). 보궐정오의 사평과는 달리, 《숙종실록》에서도 “서종태는 사람됨이 겸손하고 공손하며 고상하고 정제(整齊)하였으니, 문학으로 지위가 태사(台司)에 이르렀다. 비록 정승으로서 일컬을 만한 업적은 없었으나 지론(持論)이 과격하지 않았고, 자신을 단속하여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므로 문하에 잡된 문객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이로써 칭찬하였다.”라고 하여, “초사(初史)에는 한 가지도 공정한 사필(史筆)이 없었다.”는 보궐정오의 지적은 조금 지나친 느낌이 있다. 초사란 《숙종실록》을 말한다.

IV. 《경종실록》의 편찬과 수정

1. 머리말
2. 《경종실록》의 편찬과 수정
 - 1) 《경종실록》의 편찬
 - 2) 《경종실록》의 수정
3.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의 비교
 - 1) 왕세제의 건저(建儲)
 - 2) 김일경과 목호룡의 고변
 - 3) 복권과 출향의 갈림길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에 있었던 네 차례의 실록 수정 중 마지막 수정은 《경종실록》의 수정, 즉 정조 초반에 있었던 《경종수정실록》의 편찬이었다. 그동안 학계에서 실록의 수정 자체가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도 못했지만, 《경종실록》의 수정은 《영조실록》 편찬과 함께 이루어져서 마치 결다리인 듯 인식되었던 것도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늦추었던 이유가 될 것이다. 이제 본고에서 두 실록을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수정과 보완’이라는 수정작업의 성격과 몇몇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록이 정치성을 띠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실록 편찬이다. 수정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졌으니, 이런 방향으로 수정되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 있지만, 실록이 역사기록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방향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방향을 이루는 실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논의를 통해 《경종실록》 수정의 실제와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경종실록》의 편찬과정과 수정논의 및 실제 수정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 해당 실록 부록과 현존하는 《경종실록찬수청의궤》, 《경종실록수정청의궤》 및 기타 연대기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정 대상이 되었던 주요 사건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721년(경종1년)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聽政)과, 그에 이은 김일경(金一鏡)의 옥사, 이듬해 목호룡(睦虎龍)의 고변과 노론 4대신의 죽음, 윤선거(尹宣舉) 부자의 복권과 송시열(宋時烈)의 도봉서원(道峯書院) 출향(黜享)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의 기사를 年月日별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비교작업은 실록 편찬을 위한 시정기찬수범례를 참고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안을 기준으로 잡았다.

수정 작업의 명칭을 어떻게 표현하든, 빠진 기록의 보완과 잘못된 기록의 수정이라는 두 측면이 다 존재한다.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사론은 거의 예외 없이 수정 대상이 되게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위에 든 사건을 범주로 살펴면서, 이러한 보완과 수정의 두 측면을 유의하려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몇몇 단서를 통하여 《경종실록》의 수정은 물론 해당 시대사 인식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경종실록》의 편찬과 수정

1) 《경종실록》의 편찬

《경종실록(景宗實錄)》은 조선 왕조 제20대 국왕인 경종(景宗)의 재위 기간(1720~1724) 4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정식이름은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실록(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이며, 모두 15권 7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경종실록》은 영조(英祖) 2년(1726)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8년(1732) 2월에 완성하였다. 불과 7책의 분량이 작은 실록임에도 6년간의 긴 세월이 걸렸다. 이는 첫째, 경종이 승하한 뒤에 즉위한 영조 초반 아직도 《숙종실록》 편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숙종실록》을 편찬하고 《경종실록》 편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둘째, 노론-소론간의 대립이 심하여 1727년(영조 4)의 정미환국(丁未換局), 1728년의 무신란(戊申亂: 李麟佐의 난) 등 몇 차례의 정국 변동이 있었고, 신임옥사(辛壬獄事)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총재관 이하 당상과 낭청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정치세력이 바뀔에 따라 편찬 방향 역시 변화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을 비교하기 전에 《경종실록》 자체를 먼저 사료비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쉽지만 따로 기회를 갖기로 하겠다.

1726년(영조2) 4월 27일, 우의정 홍치중(洪致中)의 《경종실록》 산절(刪節) 발언과, 이어서 벌어진 논의를 보자.⁶³⁾

홍치중 : 대행조(大行朝) 실록은 《숙종실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편찬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정기(時政記) 산절 역시 아직 청(廳)을 설치하지 못하여 사안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실록청 도청 당상 외에 그 나머지 여러 재상도 많이 있고, 또한 산절과 찬수는 차이가 있으므로, 실록은 비록 훗날을 기다리더라도 산절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3) 《경종대왕실록산절청등록》 병오년 4월 27일.

영조 : 산절도 청의 이름이 있는가?

심택현 : 찬수청이라고 하는데, 대신의 말은 도청 당상과 낭청 및 각 방 당상과 낭청 중에서 내자고 했습니다.

홍치중 : 국휼(國恤) 뒤에 바로 시정기 산절 작업을 시작하고 이어 실록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도청의 당상과 낭청이 있는 것이지만, 단지 산절만 할 경우에는 굳이 그 사례에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조 : 산절은 찬수와 다른가?

홍치중 : 다릅니다. 《승정원일기》를 시정기와 참고하여 《승정원일기》 중 실록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부표(付標)합니다. 시정기 중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붉은 붓으로 지워서, 찬수할 때 고열하기 편하도록 합니다. 이는 도청 당상과 사체가 조금 다릅니다.

영조 : 경자년(1720, 경종즉위)에는 산절할 때 몇 사람이 하였는가?

심택현 : 대신(大臣)은 산절이 찬수와 다르다고 합니다만, 그 역시 사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경자년에도 수년 뒤에 비로소 산절 작업이 끝났습니다. 당상은 도청 당상 3명, 각방 당상 각 3명이었습니다.

홍치중 : 실록과 관련된 사안은 신이 이미 소회가 있기 때문에 감히 양달했습니다. 총재관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이 의당할 듯합니다. 지금 국휼 뒤 바로 할 일인데 3년이 거의 다 되도록 아직도 시작하지 못했으니 어찌 흠결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종 연간의 연수가 많지 않으니 산절 작업도 필시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조 : 당초 《숙종실록》과 함께 편찬하려고 했으니, 대행조 실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실록을 완성하기를 기다린 뒤 한 것이다. 이는 산절일 뿐이므로 산절 당상만 차출하여 하고, 실록은 이 작업을 마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홍치중 : 단지 산절만 하면 총재관과 도청 당상을 이전대로 해도 구애될 꼬투리가 없을 듯합니다.

영조 : 오늘 말한대로 거조를 내어 실록청에서 참작하여 품처토록 하라.

이렇게 해서 《숙종실록》 완성 후에 편찬하기로 했던 《경종실록》은 홍치중의 의견에 따라 우선 산절 먼저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실록청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현재 《숙종실록》 편찬을 진행하고 있는 실록청과 따로 경종대 시정기 산절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이어 1방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여 산절을 담당하게 했다. 그래도 응행사목(應行事目)은 있어야 했다.

하나, 설국처는 평시서(平市署)에 설치하고 실록산절청이라소 부른다.

하나, 당상과 낭청은 본직으로 있는 관청에 직속하는 일을 면제하고 모든 공식 회의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며 제사(祭祀)에 차출하지 않는다. 복제와 식가도 면제해주시며, 조사 받을 인원은 공사죄(公私罪)를 막론하고 공무를 보도록 한다. 승지나 대간으로 임명하더라도 이전의 관례에 따라 교체하지 말고, 낭청 중에서 파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입계하여 군직

(軍職)에 부쳐 관직을 띠고 근무하게 하십시오. 월과(月課)·전경(專經)·시사(試射)·삭서(朔書)에 뽑힌 사람은 전례에 따라 아울러 모두 현탈(懸頭)한다.

하나, 당상의 인신(印信) 1과(顆)는 해당 관청에서 가져오도록 한다.

하나, 본청 서리 5명 각사의 요포(料布)를 받는 서리를 분정하여 부리고, 서고지기(庫直) 1명 및 사령 4명은 병조와 호조에서 급료를 지급한다.

하나, 사초를 등출할 때 소용되는 종지와 붓, 먹, 기타 물품 및 아문이 없는 관원의 자리 등은 해조에서 준비한다.

하나, 수직(守直)할 군사(軍士)와 다모(茶母) 등은 각 해사(該司)에서 정송한다.

하나, 각사의 태만한 관리들은 분패(粉牌)를 쓰고, 하인은 즉시 가두고 태형을 친다.

하나,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하여 시행한다.

그러나 산절청 당상에게 일이 많았고 며칠 사이에 자주 바뀌는 폐단이 생겼다. 이는 낭청도 마찬가지 사정이었다. 실록 편찬의 구조적인 문제인 겹직 때문이었다. 그래도 연수가 적었기 때문에 시작한 지 두 달만인 8월 20일, 춘추관에서는 시정기 산절을 마쳤다고 보고했다. 실록산절청 총재관은 민진원(閔鎭遠)이 맡았고, 당상은 김흥경(金興慶), 심택현 등이 맡았다.

산절을 해놓고 기다리던 차에, 1727년(영조3) 《숙종실록》이 완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자 곧바로 《경종실록》 찬수 당상과 낭청을 겸춘추로 차출하였다. 별도로 각 방을 두지 않고 도청만 설치하였다.

실록청 도청 당상

예조판서	이집(李穡)
행 부제학	서명균(徐命均)
전 대사간	송인명(宋寅命)

도청 낭청

홍문관 교리	여선장(呂善長)
홍문관 부교리	신치운(申致雲)
홍문관 수찬	임광(任珖)
전 사서	박문수(朴文秀)

《경종실록》 찬수청은 별도로 각 방을 두지 않고 도청만 설치하였다. 그래도 격식에 맞추어 실록산절청이 아닌 실록청으로 명칭을 바꾼 응행사목을 정하였다. 응행사목은 관청 명칭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으므로 생략한다. 이어 실록청찬수범례를 정하였다.

1. 사관의 시정기, 주서(注書)의 일기, 서울과 지방의 겸춘추(兼春秋)의 기록 외에, 비변사

장계축(狀啓軸), 의금부 추안(推案) 및 형조의 참고할 만한 중요하고 핵심적인[緊關] 문서, 사변(事變)과 추국(推鞠)에 대한 주서 일기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검토하여 갖추어 적는다.

2. 모든 조칙(詔勅) 및 우리나라[本朝]의 유관 교서(敎書)는 찾아내어 기록한다.

3. 이름 있는 신하의 빠진 서본(書本) 및 소략한 기록으로 혹 일시의 공론이나 혹은 문집의 비문과 지문(誌文)을 참고하여 상세히 보충하여 기록한다.

4. 매일 매일의 날짜는 갑자(甲子)만 기록한다.

5. 모든 재변의 경우, 관상감 초록(抄錄)을 하나하나 첨가하여 적는다. - 지방의 바람, 비, 지진 등 각각의 사항은 그 당시 보고한 문서[啓聞]를 반드시 살펴보고 갖추어 기록한다.

6. 대간의 계(啓)는, 첫 번째 계[初啓]의 경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적고, 잇달아 올린 계[啓]의 경우는 단지 ‘연계’라고만 적고, 혹시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으면 뽑아낸다.

7. 대간의 논계는 단지 ‘사헌부’, ‘사간원’이라고만 적고, 와서 보고한 사람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다만 첫 번째 논계했을 때는 성명을 모두 적는다. 중대한 시비가 걸린 사안의 경우는, 다른 의견을 꺼낸 경우도 적지 않으면 안 된다. - 어사(御史)의 성명 및 관리를 쫓아낸 일[黜陟], 폐단을 변통한 일 등도 상세히 기록한다.

8. 상소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상세히 갖추어 신고, 그 사이의 불필요한 글자는 해당 구절을 빼더라도 무방하다. 예에 따라 사직하는 상소나 차자의 경우는 반드시 모두 적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거취나 시비 같은 당시 정치에 관련된 사안은 역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모든 관직 임명[除拜]의 경우, 중요하지 않고 잡다한 관직이나 산직[冗散] 외에는 이조와 병조[兩銓]의 문서를 다시 살펴보아 상세히 기록한다.

10. 각 연도의 과거에 합격한 인원은 ‘아무개 등, 몇 사람’이라고 적는다.

11. 군병의 숫자, 서울과 지방의 법제, 호구 숫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문서를 상소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12. 도움이 되지 않는 번잡하고 쓸데없는 문자는 참작하여 다듬어서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이 되도록 힘쓴다.

13. 조정[朝家]의 길흉(吉凶) 등 여러 의례 중에서 나라의 헌장(憲章)에 관계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 보여줄 만한 것은 문장이 비록 번거롭고 잡다해도 갖추어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4. 서울과 지방의 관리 출척이나 공적 또는 사적 시비는 반드시 그 대략을 뽑아 기록한다.

산절을 마친 《경종실록》의 초초, 중초, 정초를 만드는 등록은 이듬해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가 1728년(영조4) 무신년이였다. 이인좌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이 와중에 관원들은 당상이든 낭청이든 추국청에 불려가고 찬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 무렵, 6월 6일, 《숙종실록》을 봉안하러 강화부 정족산성(鼎足山城)에 갔던 이주진(李

周鎭)이, 실록 상자 48부(部) 중에, 손상된 것이 10여 부라고 보고했다. 이를 일시에 수선하기 어려우니 가장 많이 파손된 태조, 성종, 세종 실록을 담은 세 부만 《경종실록》을 봉안할 때 교체하기로 했다.

이윽고 12월 14일, 각 방에 나누어 찬수하던 《경종실록》 편찬이 마무리되었다. 《경종실록》은 당초 노론 민진원이 총재관을 맡았다. 그러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권이 된 뒤 좌의정(左議政) 이집, 우의정(右議政) 조문명(趙文命)이 총재관(總裁官)을 거쳤고, 대제학(大提學) 이덕수(李德壽), 부제학(副提學) 서명균(徐命均) 등이 도청 당상(都廳堂上)이 되어 편찬을 주관하였다. 그런데 조문명, 서명균 등은 완론(緩論)에 속하는 인물들이어서 《경종실록》 자체도 그리 날카롭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사론이 많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숙종실록》이 편찬된 뒤, 이광좌(李光佐) 등이 《숙종실록》에 빠진 기록과 오류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숙종실록보궐정오》가 편찬되었다. 《경종실록》 편찬 단계에 이르면 계속된 실록의 수정은 이제 ‘주목사(朱墨史)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아닌 당파 사이의 대립이라는 정치현실에 휘둘린 결과라는 쪽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된다. 바로 《경종실록》 편찬 이후의 세초(洗草)에 대한 논의는 거듭된 실록 수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의 두 사료를 보자.

실록청 당상 윤순(尹淳) : 연전에 윤상백(尹尙白)이 예문관에 있을 때에 세초(洗草)하지 말자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 회계(回啓)하지 못했습니다.

영의정 이광좌 : 사초(史草)에는 한림(翰林)의 공정한 말과 강직한 필법(筆法)이 많으니, 세초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윤순 : 국초에는 세초하는 예가 없었는데, 선조실록을 찬수할 때에 대북(大北)의 당인(黨人)들이 …… 공의(公議)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비로소 세초를 창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후에 그 예에 따라 세초하였으니, 훌륭한 역사의 필법을 장차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영조 : 세초하는 것은 그 뜻이 있으니 …… 혹은 보고 들은 것이 각기 다름으로 인하여 반드시 시비(是非)를 다투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⁶⁴⁾

이광좌가 한림의 시정기를 세초하지 말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실록을 찬수할 즈음에 만약 사사로운 뜻을 따라 그 포폄(褒貶)과 시비(是非)를 임의로 조종하여 한 조각의 문서를 만든 뒤에 시정기의 초고(草稿)를 세초해버린다면, 참으로 옳고 그른 것을 후세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세초는 근래의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하고 하였다.⁶⁵⁾

첫 번째 사료에 나오는 영조 3년 윤순의 말을 먼저 보자. 그의 말 중에서 국초에는 세초

64) 《영조실록》 권14 3년 11월 25일(정축)

65) 《영조실록》 권15 4년 2월 27일(무신)

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세초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전부터 세초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만, 대체로 사초의 관리 원칙이 정해진 뒤인 성종실록 편찬 무렵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로 세초는 사초의 누설로 인한 사회문제를 우려한 예방조치이자, 실록편찬 마지막 단계의 예식으로써 관례화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윤순이 선조실록을 편찬한 뒤 대북(大北) 정권의 실록편찬 담당자들에 의해 세초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윤순의 세초에 대한 지식이 틀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사료인 1728년(영조4)의 논의에서도 윤순은 여전히 세초는 예전에 없던 것으로 근래에 생긴 규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순 정도의 학식과 경륜에도 불구하고 세초를 이렇게 이해하게 된 배경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배경은 계속된 실록의 수정이 아니었나한다. 즉 수정작업의 최대 난관은 바로 편찬 후 사초가 세초되기 때문에 원래의 사초는 수정작업에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계속되는 수정의 경험은 세초의 애당초 의미까지도 다시 해석되게끔 만들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한다. 윤순의 말 중 마지막 대목이 바로 세초를 하면 ‘훌륭한 역사의 필법’을 잃는다는 것인데, 사초를 근거로 실록을 만들면 되었지 또 사초를 보존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 전래의 상식이었으며, 윤순의 말에 대한 영조의 답변이 바로 그 상식의 확인이었다.

그러면 의도했든 아니든 윤순이 사초를 남기자는 말의 함의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보면 그것은 실록은 편찬 때 당과의 이해가 반영되어 ‘훌륭한 역사의 필법’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사초를 남겨 놓아야한다 말로 귀결된다. 두 번째 사료인 이광좌의 말이 또 다른 증거이다.

이광좌가 사관의 사초가 담고 있는 공정성과 필법을 높이 사는 뜻으로 세초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실록 편찬의 불공정성이며 그 불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세초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논의가 바로 《숙종실록》 수정 논의의 와중에서 있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대로 계속된 실록 수정이 세초 논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광좌의 주장은 영조의 반대로 좌절되고 세초는 관례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세초는 실록편찬 뒤에나 있는 간헐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세초 논의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논의의 함의는 영조 11년의 한 사건과 관련하여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초를 둘러싸고 벌어진 에피소드인데, 주지하듯이 사초는 세종 때에 이미 국법으로 엄격히 관리토록 정하였고, 이후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에 대한 경험에서 종종 2년에는 편찬 중의 사초를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게 함으로써 사초관리는 작성부터 세초에 이르기까지 매우 철저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사초를 불태운 일이 영조 11년에 발생하였다.⁶⁶⁾ 무슨 이유에선지 경연에서 사초를 태울 것을 주청하였고 이를 영조가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록으로는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없고 또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도 상세하지 않다. 영조는 누차 자신이 시

66) 《영조실록》 권40 11년 2월 13일(갑인)

킨 일이 아니라고 하교하였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담당 사관들도 사초의 소각을 방관하였다는 점이다.

영조 3년과 4년의 세초 논의가 실록 편찬 단계의 문제라면, 영조 11년에 있었던 사초의 소각은 기사(記事) 단계의 문제로 사관제도라는 체계의 근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소재가 전임사관인 한림의 기사 영역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그 변화가 사초에 대한 것이든, 사관에 대한 것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같은 방에 있는 이상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1732년(영조8) 2월 14일, 다섯 곳의 사고에 분장할 《경종실록》 35권의 장황을 마쳤다. 18일에는 춘추관에 실록을 봉안했다. 관례대로 의궤를 만들고, 3월 13일에 중초를 함하여 네 궤짝을 세초했다. 16일에는 비망기를 내려 실록 편찬에 참여한 관원들에게 상전(賞典)을 내림으로써 《경종실록》 편찬은 끝났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2) 《경종실록》의 수정

《경종실록》에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과 신임사화(辛壬士禍)의 전개과정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신왈(史臣曰)’이나 ‘근안(謹按)’이라고 시작되는 논평 즉 사론(史論)에는 소론 측의 입장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노론 측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경종실록》의 편찬자들이 주로 소론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종실록》을 찬수할 때부터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다.

조정이 뒤바뀌는 때를 만나 ……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선조(先祖)의 실록은 지극히 엄하고 중대한 것이니, 겨우 끝난 찬수(纂修)와 절반이나 이루어진 인역(印役)을 전적으로 한쪽편 사람들의 농락하는 손에 맡겨둘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에 새 당상(堂上)이 인역(印役)을 속개(續開)한 날에 신은 과연 옛 동료들을 책면(責勉)하여 매일같이 다시 출사(出仕)케 하였습니다. …… 하늘을 뒤덮는 한 개의 그물이 사국(史局)에 높이 펼쳐지매, 권흥(權凶)에게 굽히려 하지 않는 자는 아주 먼 변방에 찬축(竄逐)되었고, 조금이라도 말이 사국(史局)의 일에 미치는 자는 절도(絶島)에 투배(投配)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새로 들어온 낭청(郎廳)이 있어 온 사국(史局)을 속여 몰래 인판(印板)을 뽑아냈는데, 신이 교열(校閱)할 즈음에 우연히 깨닫고는 ‘저들이 제멋대로 이미 인쇄한 판(板)을 뽑아낸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사책(史冊)을 변란(變亂)시키려는 뜻이다.’라고 생각하여 뜻을 같이하는 여러 동료와 더불어 합사(合辭)로 봉장(封章)해 그 간악함을 적발해 내려 하였으나, 또 일종의 의논이 있어 ‘몰래 뽑아낸 뜻은 반드시 개편(改編)하려는 계책일 것이니, 그들이 개편하여 바치기를 기다려 의리(義理)로 책망하고 등문(登聞)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마음속으로 참고 견디면서 시일을 보냈습니다. ……

사국(史局)의 식례(式例)는 인쇄해야 할 판(板)에 혹은 자구(字句)가 의사(疑似)하여 마땅히 총재(摠裁)의 강질(講質)을 거쳐야만 할 것이 있을 경우, 분판(粉板)을 감히 씻지 못하고

주자(鑄字)를 감히 치워버리지 못한 채 모두 간수해 두고 삼가 기다리는 법이니, 비록 오래 되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곧 서둘러 분판을 찢고 갑작스레 주자를 치워버렸으니, 어찌 세도(世道)의 큰 변괴(變怪)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등록(騰錄)을 맡은 여러 낭청들을 꾸짖으며 심지어 ‘이 무리들은 일개 서역(書役)을 담당할 관원에 불과하니, 사국(史局)의 이면(裏面)은 감히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도청관(都廳官)도 또한 서역을 담당할 관원이니 똑 같은 서역을 담당할 관원인데, 자기는 몰래 사판(史板)을 뽑아내고 남은 도리어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려 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교만 방자하고 그릇되고 어긋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러나 같은 말로 공초를 바쳤던 사람들이 모두 먼 변방으로 찬축(竄逐)되었으니, 구차하게 죄를 면한 부끄러움은 신이 스스로 해명(解明)하기가 어렵습니다.⁶⁷⁾

위는 《경종실록》 편찬 당시 교정을 맡았던 주서(注書) 이수해(李壽海)가 올린 상소이다. 이수해는 이 상소를 올린 뒤 당습(黨習)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으로 유배를 갔다. 1729년 12월에는 첨예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숙종의 1701년 신사 처분(辛巳處分 장희빈(張禧嬪)에 대한 사사(賜死))에 대한 기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영조는 “강희(康熙) 40년인 신사년 8월 14일에 인현왕후(仁顯王后)께서 승하하신 뒤에 따라서 옥사를 처분하게 되었고, 그 대처분(大處分)의 내용과 비망기의 뜻이 지극히 명확하고 엄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후세에 민멸(泯滅)하게 될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 제기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다. 또한 이미 국승(國乘)에 자세하게 실려 있기에, 여기에는 갖추어 기록하지 않는다. 대략 이렇게 범례(凡例)를 기록하여 후세에 남긴다.”라고 하여,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⁶⁸⁾

이어 1731년 5월 실록이 완성되자 세초 논의가 등장한 것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다. 1732년 3월 춘추관(春秋館)의 요청에 따라 실록을 사대사고(四大史庫)에 봉안한 후 시정기와 중초(中草)를 세초하였다. 그러나 1732년 4월 헌납 민정(閔挺)은,

경종(景宗)의 행록(行錄)에 박상검(朴尙儉)의 옥사를 신지 않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선조(先朝)의 대처분(大處分)이기는 하지만, 민몰(泯沒)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록을 비록 이미 봉안하였다 하나, 행록이 붙어 있는 권(卷)은 더 써넣고 고쳐서 인쇄하여 뒷날 포쇄(曝曬)할 때에 추가로 가져가서 간직하게 하십시오.⁶⁹⁾

라고 상소했다. 영조는 이미 박상검 옥사가 실려 있으니 행록에 굳이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경종실록》의 별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신임사화가 무옥으로 확정된 이후, 1741년 11월에 헌납 이천보(李天輔)에 의해 제기되었다.

67) 《영조실록》 권21 5년 3월 25일(기사)

68) 《영조실록》 권24 5년 12월 25일(을축)

69) 《영조실록》 권31 8년 4월 20일(정미)

이천보 : 무안(誣案)을 불살라 버린 뒤에 나라의 기강이 비로소 밝아졌는데, 사국(史局)의 전례를 보면 대저 일이 국시(國是)에 관계된 것은 열성조(列聖朝)의 실록을 가끔 추후에 별록(別錄)한 것이 있습니다. 대개 의리(義理)란 것은 일시의 의리가 아니고 바로 만세의 의리이니, 만약 단지 일시에만 펴고 사책(史冊)에 명백히 기재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만세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저 실록은 사체가 비록 지극히 중대하지만 의리가 이미 정해지면 혹은 그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고 혹은 그 빠진 것을 보충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실록(實錄)》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이제 구례를 고거(考據)하여 따로 일록(一錄)을 만들어 석실(石室)에 보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 이것은 진실로 옳지 않습니다. 이미 보유(補遺)하여 말할 것이 없는데, 만일 별록을 만든다면 더욱 사리(事理)에 맞지 않습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은 수말(首末)을 합하여 하나로 만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를 원용하여 칭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실록의 별록은 사체(事體)가 진실로 어떠하겠습니까?

영조 : 이번의 대훈(大訓)은 앞으로 만들 실록에서도 전록(前錄)의 빠진 것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다. 이번의 처분(處分)으로써 어찌 전록(前錄)에 이은 속록(續錄)을 낼 수가 있겠는가?⁷⁰⁾

영조의 비답으로 《경종실록》의 별록을 만드는 일은 다시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편만 된다면 언제고 다시 제기될 수 있었다. 정조 초반이 바로 그때였다.

영조에 이어 정조가 즉위한 뒤에도 선왕(先王)인 영조 시대의 실록을 줄곡을 마친 즉시 편찬하여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 즉위년에도 줄곡제가 거행되었던 8월 9일⁷¹⁾ 이전에 이미 춘추관에서 실록 편찬을 위해 관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⁷²⁾ 그렇지만 이는 제안에 그쳤을 뿐, 정작 편찬의 시작은 해를 넘기고 말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의리를 밝히는 기록’의 편찬, 즉, 《명의록(明義錄)》 편찬 때문에 발생한 사태였다.

정권교체가 가져오는 정치세력의 판도와 지형의 변화는 어느 정치제도 아래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군주제 아래에서는 최고권력이 종신제라는 점과 군주권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하여 세력 변화는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정조는 부친인 장헌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운을 겪었고, 영조 연간에 세손(世孫)이었던 자신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둘러싼 찬반의 소용돌이도 겪어야 했었다. 그런 정조의 왕권은 즉위 초반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취약성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게 만든 요인이었다.

70) 《영조실록》 권54 17년 10월 30일(신유)

71) 《정조실록》 권2 즉위년 8월 9일(무신)

72) 《英宗大王實錄廳儀軌》, 병신년 7월.

즉위 후, 당연히 정조는 자신이 왕세손으로 있을 때부터 지지 세력이었던 서명선(徐命善)·홍국영(洪國榮)·정민시(鄭民始)·김종수(金鍾秀)를 중심으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⁷³⁾ 아울러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을 사사(賜死)하는⁷⁴⁾ 등 외척 풍산 홍씨와 경주 김씨를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정조 스스로 이들에게서 ‘시달림을 받았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으므로 그 처리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정조의 정국 운영 구상은 ‘사림의 정치이념을 지향하고, 척리를 배척한다[右賢左戚]’는 슬로건으로 나타났다. 바로 《명의록》은 이런 정조 즉위 초반의 정치상황을 기록한 책이었다.

충역(忠逆)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황경원의 상소를 계기로, 정조는 실록편찬도 뒤로 미루고 《명의록》 찬집청을 설치하였다.⁷⁵⁾ 정조도 《명의록》의 수록 우선순위와 체재를 제시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고, 《명의록》의 자료로는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참고하였다. 《명의록》의 편찬 동기는 홍인한 등을 역적으로 사사하고, 정조를 지지했던 홍국영(洪國榮)·정민시(鄭民始) 등의 충절을 선양한 뒤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기 위해서였으며, 책은 이듬해인 정조 원년 3월에 완성되었다.⁷⁶⁾ 이후 정조 원년 8월에 있었던 홍상범(洪相範) 등의 반역사건을 포함하여⁷⁷⁾ 《속명의록》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이듬해 정조 2년 2월에 완성되었다.⁷⁸⁾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실록은 정치성을 띤다. 주로 정치행위를 기록의 대상으로 삼으며, 또 다른 아닌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들이 그 정치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실록이라는 모습으로 편찬하기 때문이다.⁷⁹⁾ 그런데 실록 편찬의 관례와는 다르게 《명의록》 편찬 때문에 실록 편찬이 늦추어졌던 정조 초반의 상황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성과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실록에 내재한 정치성으로 인하여 관례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실록 외적인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관례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정조 초반 정국의 긴박성이라는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군주의 권력과 정국의 안정이라는 현안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긴박성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어느 군주든 초반에 겪는 일반적인 통과리례가 아니었을까? 광해군 즉위 초반, 인조 즉위 초반이 그러했다. 심지어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실록의 복간(復刊)을 추진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긴박성은 상대적인 온도 차이는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시기에는 정조 초반과 같이 다른 편찬에 밀려 실록 편찬이 늦추어지는 이탈이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

73) 유봉학, 「정조시대 정치론의 추이」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89쪽.

74) 《정조실록》 권1 즉위년 7월 5일(갑술)

75) 《정조실록》 권2 즉위년 8월 24일(계해)

76) 《정조실록》 권3 원년 3월 29일(을미)

77) 《정조실록》 권4 원년 8월 11일(갑진)

78) 《정조실록》 권3 2년 2월 27일(무오)

79) 본고에서는 ‘실록의 정치성’이란 주제를 제한적으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종종 필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실록의 부정적 성격을 지적하는 ‘선입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권력투쟁이라는 부정적 인상 말고도, 협력이나 조정 등 정치의 긍정적 영역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개념적인 접근이 필요한 주제일 것이다.

이다.

이런 진단은, 영조 이래 실록의 위상이 점차 하강하고 있었던 흐름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해가 쉽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해석이다. 영조 17년에, 사관 자천제가 당색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공론이 일고, 이에 따라 사관의 공정성이 의심되면서 사관들의 자율성과 공정성의 상징이었던 자천제(自薦制)는 권점제(圈點制)로 바뀌었다. 이러한 흐름은 정조대 일성록의 편찬과 맞물리면서 내용으로 보나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나 실록 자체의 위상이 예전만 같지 못한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의 정치성’이라는 주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결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겠지만, 적어도 위의 두 진단이 일단 정조 초반 《명의록》 편찬에 밀린 실록 편찬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영조실록》 편찬을 위한 응행사목이 마련된 뒤에도 몇 가지 사안이 발생하여 실록 편찬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는 앞서 살펴본 대로 《속명의록(續明義錄)》 편찬으로 이어진 홍상범 등의 반역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경종실록》의 수정 논의였다.

《경종실록》의 수정 논의는 실록청 도청 당상에 임명되었던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가 노론 4대신 중 이건명(李健命)이 종부(從父)이므로 공정한 역사편찬이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한 데서 나타난다.⁸⁰⁾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상소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조대에 있었던 충역 논의를 정리하라는 압박이었고, 이는 불가피하게 《경종실록》의 수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8월 3일에 전 정랑 이사렴(李師濂)이 《경종실록》의 수정을 건의였다.⁸¹⁾ 그가 예문관에 봉직할 때, 태백산 사고에 있는 실록을 포쇄하다가 《경종실록》을 보고,

사대신(四大臣)의 정충(貞忠)과 위열(偉烈)은 만고의 악역(惡逆)으로 배척하고, 조태구(趙泰耆)·최석항(崔錫恒) 등 흉악한 역적의 괴수(魁首)는 마음을 다하여 종묘사직을 지탱한 것으로 추장(推獎)하였으며, 여타의 무망(誣罔)하여 더럽히는 말도 한두 가지만이 아니어서, 흑백(黑白)이 뒤바뀌게 되고 충신과 반역이 거꾸로 되어 있다.

고 통탄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속명의록》의 편찬이 끝나갈 무렵에 《경종실록》을 수정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⁸²⁾ 《영조실록》의 편찬과 《경종실록》의 수정 중에서 어떤 쪽을 먼저 거행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던 중, 일단 동시에 거행하기로 하고 도청과 3방의 당상과 낭청을 임명하여 실록 편찬을 시작하였다. 이때 설치한 실록청은 얼마 뒤에 용호영(龍虎營)으로 다시 옮겼다.⁸³⁾

80) 《英宗大王實錄廳儀軌》, 정유년 6월 29일

81) 《景宗大王實錄修正廳儀軌》(藏 2-3691)

82) 《英宗大王實錄廳儀軌》, 무술년 2월 초4일, 초5일

83) 《英宗大王實錄廳儀軌》, 무술년 윤6월 초1일

이때 실록청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우선 실록청 관원의 명칭을 변경한 일일 것이다. 정조는,

실록은 이미 역사의 이름이고, 춘추도 역사의 이름이니, 지금 ‘실록’이니 ‘춘추’니 함으로써, 관제(官制)는 짜임새가 없어지고 관직명은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뒤로 실록청의 여러 신하들 중에서 2품 이상은 ‘지실록사(知實錄事)’,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라고 부르고, 3품 이하는 ‘실록수찬’, ‘편수’ 등의 관직을 품계에 따라 계하하라.⁸⁴⁾

고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통적인 지춘추관사, 동지춘추관사라는 명칭을 바꾸는 조치였다. 이런 논의의 배경은, 앞서 관직명을 ‘실록춘추(實錄春秋)’라고 내용상 중복되게 붙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⁸⁵⁾ 실록청이 이미 춘추관 소속기관이었으므로 큰 의미가 있는 조치는 아니었지만,⁸⁶⁾ 관례적인 일이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정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한편, 편찬관들을 임명하고 《영조실록》 편찬을 시작하였지만, 《영조실록》 편찬이 순탄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정조는 《명의록》과 《속명의록》 편찬으로 실록 편찬이 늦어진 데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리 실록의 위상이 낮아지고 정치 현안이 급박했다 하더라도, 왕조의 선례인 실록 편찬이 늦어지는 일은 사왕(嗣王)으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록청 당상과 낭청이 모두 정조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실록 편찬은 언제나 지연될 소지를 안고 있는 사업이었다. 왜냐하면 실록청이 임시 기관이었으므로 편찬관은 모두 겸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찬관들은 본래 관청의 사정, 전직(轉職) 등 신분 변동, 신병(身病) 등의 사유로 매우 변동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겸직이라는 본래의 한계가 정조 초반 《영조실록》의 편찬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하는 실록 편찬이었던 데다, 예상대로 편찬이 진척되지 않자 정조는 매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⁸⁷⁾ 정조는, 실록청 당상과 낭청들이 모두 영조의 교화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陶甄] 살았던 사람들임을 강조하기도 하고, 수시로 신칙하면서 편찬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사관을 보내 실록청을 적간(摘奸)하였다. 앞서 실록청 관원 명칭의 변화도 사실은 이런 독려와 상관이 있었다. 실제로 정조의 말을 보면,

실록청의 초기(草記)에 매번 ‘춘추관 낭청’이라고 적는 것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청의

84) 《英宗大王實錄廳儀軌》, 무술년 2월 24일

85) 《정조실록》 권5 2년 2월 24일(을묘)

86) 나중에 지실록사 김종수와 조준(趙琬)이 예문관에서 실록을 상고하려고 했을 때, 관직명에 ‘춘추’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 약간의 곤란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 《英宗大王實錄廳儀軌》, 경자년(1780, 正祖 4年) 4월 29일

87)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채제공에 대한 정조의 불만이다. 《英宗大王實錄廳儀軌》, 무술년 11월 22일, 기해년 8월 26일

낭청이 와서 바치려고 하지 않고, 한림을 시켜 대신 바치기 때문이다. 몹시 성실하지 못한 태도이므로, 한림을 모두 ‘실록 낭청’이라고 부르라고 전교를 내려라.⁸⁸⁾

라고 하여, 실록청의 낭청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편찬 사업이 해를 넘기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조는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가 실록을 편수할 처소를 따로 서운관(書雲觀)에 마련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었다.⁸⁹⁾

이렇게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유나, 신병, 관직 이동 등으로 변동이 잦았던 ‘兼春秋’, 즉 실록청 관원을 통하여 《영조실록》은 차츰 모습을 갖추어갔다. 이제 실제 편찬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대체로 정조 5년 3월에 이르러, 우선 ‘교정이 끝난 사초(史草)’, 즉 ‘재견본(再見本)’을 토대로 인쇄 작업이 시작되었다. 인쇄 작업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장을 인출하였는지 점검하면서 이루어졌다.⁹⁰⁾ 분량이 많았으므로 교정한 것부터 우선 분판에 옮겨 1년 단위로 인쇄에 들어갔다.⁹¹⁾ 이리하여 인출한 권수가 83권이었는데, 실록을 다섯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하여야 했으므로 통틀어 415권을 인출하였다.⁹²⁾ 여기에 《경종수정실록》을 인출한 15권(3권, 5사고)을 합하여 《영조실록》과 함께 7월 초3일에 봉안하기로 하였다.⁹³⁾

《영조실록》과 함께 진행되었던 《경종실록》 수정은, 수정이 끝나자 구본(舊本)의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본과 구본을 함께 남겨둔 일이 있었고, 송나라 때에 범조우(范祖禹)가 수찬한 사서(史書)로 말하면, 장돈(章惇)·채변(蔡卞) 등이 또 다시 고치고 그 뒤에 범충(范冲)이 다시 바로잡았는데 전후의 두 본이 또한 함께 유행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주묵사(朱墨史)’라 하였다면, 두 본을 모두 남겨 두는 것은 또한 고례(古例)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⁹⁴⁾ 이로써 현재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 두 본이 함께 전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 실록 수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일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남김으로써 역사의 평가를 객관화하는 합리적인 처리방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렇게 모든 편찬 사업과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자, 그간의 일을 총정리할 실록 청의례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실록청의례의 편찬도 관례에 따라 사목(事目)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실록청의례를 작성하였고, 7월 25일에 《경종수정실록》의 초초(初草)와 중

88) 《英宗大王實錄廳儀軌》, 무술년 2월 27일

89) 《英宗大王實錄廳儀軌》, 기해년 2월 11일

90) 《英宗大王實錄廳儀軌》, 신축년 3월 23일

91) 《英宗大王實錄廳儀軌》, 신축년 3월 24일

92) 《英宗大王實錄廳儀軌》, 신축년 6월 20일

93) 《英宗大王實錄廳儀軌》, 신축년 7월 초1일

94) 《선조수정실록》 이후, 조선 후기에 수정된 실록이 원본과 수정본, 두 부가 모두 남게 된 것은 바로 이 ‘朱墨史’의 전례에 따른 전통이었다.

초(中草), 초견본(初見本)과 재견본(再見本), 영조 때의 시정기, 《영조실록》의 초초, 중초 및 초견본과 재견본을 잘게 잘라 보관하였던 19개짜 분량의 자료를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하였다. 세초와 함께, 관례대로 실록 편찬의 노고를 위로하는 상전(賞典)과 선운(宣醢)을 끝으로 하나의 실록 편찬과 다른 하나의 실록 수정을 마감하였다.

3.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의 비교

1) 왕세제의 건저(建儲)

①-1. 경종 권4 1년 7월 24일(계축)

[원본]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이 졸(卒)하였다. 천수(天壽)는 61세요, 시호는 효간(孝簡)이니, 김주신은 숙종 계비(繼妃)의 아버지이었다. 천품이 염정(恬靜)하고 의도(儀度)가 단아(端雅)하였으며, 소시적부터 문사(文辭)를 좋아하여 사우(士友)들이 추앙하고 허여하였다. 국구(國舅)가 되어서는 더욱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 평소에 검약함이 한사(寒士)와 다름이 없었고, 벼슬길에 나아가 일을 처리할 적에는 자신을 낮추기에 힘썼으며, 가내의 행위도 독실하여 숙모를 어머니처럼 섬겼고, 형의 자부(子婦)를 거두어 집을 지어주고 생계를 꾸려 주었다. 조정의 일에는 일찍이 간섭함이 없었고 또한 부탁하는 일도 하지 않았으니, 시론(時論)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소의 친구들도 혐의를 받을까봐 왕래를 끊었지만 김창집(金昌集)만은 척의(戚誼)가 있다 핑계하고 아무 때나 거리낌없이 왕래하였는데, 간혹 그에게 띄여 그릇된 방면으로 인도되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세상이 점점 말 못할 지경에 빠져들어 힘으로 만회(挽回)할 수가 없음을 보고서 근심과 울분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날마다 전국 술[醇酎]만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여 수명을 재촉하였다 한다.

[수정]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김주신(金柱臣)이 졸(卒)하였다. 김주신의 자(字)는 하경(廈卿)으로, 인원 왕비(仁元王妃)의 아버지이다. 숙종 22년(1696)에 생원(生員)에 합격되어 순안 현령(順安縣令)이 되었다가 인원 왕비가 중궁에 정위(正位)되자 김주신이 영돈녕부사로 승진되고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에 봉해졌다. 몸가짐이 근밀(謹密)하였고, 지성으로 나라를 위하였다. 성상이 즉위하여 환관(宦官)이 용사(用事)하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일찍이 김주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왕실이 조석에 장차 망할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김주신도 울었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선왕(先王)의 개자(介子 다음 아들)인 연잉군(延昞君)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덕행이 있으니, 공이 만약 왕대비께 아뢰어 저사(儲嗣)로 삼는다면 환관을 베어 죽일 수 있고, 중국(宗國)도 또한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김주신이 말하기를,

“감히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금 후에 김주신이 졸(卒)하니, 나이 61세였다. 임금이 발애(發哀)하고, 소선(素膳)을 들었으며, 시호(諡號)를 ‘효간(孝簡)’이라 하였다. 김주신이 이미 졸(卒)한 지 26일 만에 왕대비가 연잉군을 세워 세제(世弟)로 삼았다. 아! 종사(宗社)가 오늘날에 이르러 억만년(億萬年) 왕업의 기초(基礎)를 세우게 된 것은 모두 김주신의 힘이다.

①-2. 경종 권4 1년 8월 20일(무인)

[원본]

임금은 평소에 병이 많아 계사(繼嗣)를 두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국세(國勢)는 위태하기가 철류(綴旒)592)와 같았다. 삼종(三宗)의 혈맥으로는 다만 주상과 아우 한 분이 있으니 천명(天命)과 인심의 스스로 귀착(歸着)되는 바가 저군(儲君)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가 이미 정해졌으니 명명(命命)이 한 번 내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대신들은 조정에 모여 의논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또 교외(郊外)에 있는 동료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4, 5인의 재정(在廷) 동료와 함께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하여 광명 정대한 일로 하여금 전도(顛倒)와 솔략(率略)함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임금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서 반드시 자성(慈聖)의 수필(手筆)을 얻은 후에야 봉행(奉行)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찌 연석(筵席)에서 주사(奏事)하는 체통이라 하겠는가? 이때에 임금은 오래도록 혼전(魂殿)의 향사(享祀)에 친제(親祭)치 않았고, 상제(祥祭) 후에도 아직껏 산릉(山陵)에 전알(展謁)하지도 못했으므로 군신들이 여러 번 말을 하였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명릉(明陵)을 전알(展謁)하겠다는 명을 내렸었다. 이것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여야 할 일인데도 김창집은 정섭(靜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써 탑전(榻前)에서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이 일로써 더욱 그를 의심하였다.

[수정]

- 위의 사론을 빼고 나머지 동일.

①-2'. 경종 권4 1년 8월 20일(무인)

[수정]

뒤에 영조[英宗] 계축년(1733, 영조9)에 민진원(閔鎭遠)이 영조에게 고하기를, “경자년(1720, 경종즉위) 국휼(國恤) 후에 여러 신하들이 서로 만나면 번번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여 말하기를, ‘사왕(嗣王)의 성후(聖候)가 불예(不豫)하시고, 더욱 후사를 두실 희망이 끊어졌으니, 국사(國事)를 장차 어찌 하겠는가?’ 하여, 이에 건저(建儲)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신은 말하기를, ‘국사가 비록 급하지만 즉위한 지 한 해를 넘기지도 않았는데, 바로 건저한다면 중외(中外)에서 성후(聖候)의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터에 반드시 의혹이 있을 것이다. 힘을 다해 곁에서 보좌하여 3년이 지난 뒤에 마땅히 건저를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였고, 김창집은 말하기를, ‘왕자가 여러 분 계시다면 마땅히 일찍 건저를 의논하

여 인심을 붙잡아 매어야 하겠지만, 우리 임금의 아드님은 단지 한 분이 계실 뿐이니, 천명과 인심이 다시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는가? 「3년 뒤에 해야 한다.」는 말이 진실로 옳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조정의 신하들이 건저를 급하게 여겼으나, 김창집은 끝내 종전의 견해를 고집하였고, 고(故) 판서(判書) 이만성(李晩成)은 신을 꾸짖기를, ‘종사(宗社)의 계책이 시급하니, 어찌 늦출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축년(1721, 경종1)에 이르러 대소(臺疏)가 갑자기 나오자 신은 ‘이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일개 대관(臺官)이 갑자기 상소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였습니다. 비답(批答)이 내려진 뒤에 김창집이 신을 빈청(賓廳)으로 나가는 길에 지나다가 보고, 신에게 말하기를, ‘3년의 뒤를 기다리려 하였는데 지금 대소가 나왔습니다. 이미 말이 나왔으니 극력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 논의가 이미 나온 뒤에는 경각도 지연시킬 수 없으니, 반드시 오늘밤 정성을 다하여 극력 진달해서 꼭 정책(定策)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지연된다면 종사(宗社)의 변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하니, 김창집이 그렇게 여기고 곧바로 대궐에 나아가 여러 재신(宰臣)들을 부르기를 청하여, 유문(留門)한 다음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청대(請對)하여 ‘동조(東朝)에 입품(入稟)하여 대책(大策)을 결정한 뒤 다시 신 등을 불러서 하교하실 것’을 진달하고, 함문(閣門) 밖으로 물러나와 기다렸습니다. 3, 4경이 되도록 소명(召命)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이 일은 경각이 매우 급하니, 지금 다시 청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군부에게 재촉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파루(罷漏) 뒤 신이 말하기를, ‘일이 재촉하는 것 같은 것은 소절(小節)이고, 구대(求對)하여 입시하는 것은 대사이니, 곧바로 조속히 청대함이 마땅하다.’ 하자, 여러 대신들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습니다. 즉시 승전색(承傳色)에게 구대를 청하여 날이 밝아지려 할 때 입시하니, 어좌(御座)의 곁에 서안(書案)이 있었고, 서안 위에는 글이 있었습니다. 경묘(景廟)께서 서안을 돌아보며 가리키시기에, 대신이 가져다가 받들어 보니, 자전(慈殿)의 언교(諺敎)와 경묘의 친필(親筆)이었습니다. 좌상(左相) 이건명(李健命)이 받들어 읽으니, 입시한 여러 신하들이 모두 실성(失聲)하여 눈물을 흘려 울고 물러나왔습니다.”

하였다.

①-1 기사는 김주신의 졸기를 둘러싸고 원본과 수정본이 보여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별하였다. 수정본에서는 김주신이 인원왕후를 통해 왕세제를 책봉했기 때문에 공로를 기렸는가 하면, 원본에서는 대체로 호평을 하면서도 김창집에게 잘못 인도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였다.

①-2 기사는 왕세제의 건저에 대한 기록이다. 원본과 수정본 모두 경종과 대신들의 논의 과정을 수록하였지만, 원본에는 “그러나 당일 대신들은 조정에 모여 의논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또 교외(郊外)에 있는 동료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4, 5인의 재정(在廷) 동료와 함께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하여 광명정대한 일이 전도되고 소략함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임금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서 반드시 자성(慈聖)의 수필(手筆)을 얻은 후에라야 봉행(奉行)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찌 연석(筵席)에서 주사(奏事)하는 체통이라

하겠는가?”라고 비판적인 사론을 첨부했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①-2' 기사는 1733(영조9)에 민진원(閔鎭遠)이 영조에게 아뢰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즉 왕세제의 건저는 경종에게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자전(慈殿)의 언교(諺敎)와 경묘의 친필(親筆)’을 보고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원본 기사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이는데, 이렇게 수정본은 경종 연간 이후의 기록이라도 수록하여 수정을 진행한 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①-3. 경종 권4 1년 8월 21일(기묘)

[수정]

가)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옛적에 송(宋)나라의 한기(韓琦)가 영종(英宗)을 책립(冊立)함에 있어서 일찍이 장승(張昇)과 더불어 평소에 의논하지 않았으므로 장승이 한기를 힐난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나와 평소에 의논하지 않았는가?’ 하니, 한기가 응답하지 않다가 장승이 물러가자 한기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만약 평소에 의논했다면 어찌 사직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았겠는가?’ 하였습니다. 김 충헌공(金忠獻公 김창집)이 조급하게 서둘러서 밤중에 정책(定策)한 일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았지만, 또 조태구(趙泰耆)와 평소에 의논하지 않았으니, 그도 한기의 지혜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나) 사신은 논한다. “처음에 임금이 동궁에 있을 때 이이명(李爾命)이 와내(臥內)에서 독대(獨對)하니, 사람들이 혹 ‘이이명이 연잉군(延昞君)을 익대(翼戴)하려 한다.’고 의심하였는데, 오직 임금만은 이이명의 독대한 까닭을 알고 있었다. 임금이 즉위하자 영의정 김창집 등이 저사(儲嗣)를 세울 것을 청하니, 임금이 혼연하게 연잉군을 세워 세제(世弟)로 삼고, 마치 독대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같이 하여 일찍이 추호(秋毫)도 꺼림칙하게 여김이 있지 않았으니, 천하의 지극히 인자(仁慈)하고 크나큰 도량이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

청정이 결정되자 왕세제(영조)는 명을 거두어달라고 상소했다. 그런데 왕세제 연잉군을 궐내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고 위호를 왕세제로 결정한 날, 수정본의 사론이 두 편 실렸다. ①-3의 가), 나)가 그것이다. 가)는 건저 당일 김창집의 정책(定策)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고, 나)는 경종이 동궁에 있을 때 이이명이 숙종과 독대했던 정유독대(丁酉獨對 1717년) 때부터 남들의 의심과는 달리 경종이 이이명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때 와서도 흔쾌히 연잉군을 세제로 삼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원본 편찬자들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경종실록》은 당시 왕세제가 되었던 영조 치하에서 편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봉휘가 왕세제의 책정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었을 때, “건저(建儲)하는 일이란 임금의 질환이 끝내 후사를 둘 수 없다면 윤서(倫序)대로 계승하게 되는 것은 다만 조만(早晚)이 있을 뿐이고, 지금 미리 세운 것은 더욱 국세(國勢)를 공고히 하자는 것인데도 유봉휘(柳鳳輝)의 상소는 명호(名號)가 이미 정해진 뒤에 나왔으니, 그 말이 매우 망령되다 하겠다. 그의 뜻은 비록 김창집의 무리가 경종(景宗)에게 무례(無禮)하였음을 분하게 여기고 밋게 본

데서 나왔고, 스스로 경종을 위하여 한 번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만 대체로 이것도 당론(黨論)이 가려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 통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유봉휘를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하였다.⁹⁵⁾

2) 김일경과 목호룡의 고변

영조가 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왕세제 건저에 대한 논의는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가 비교적 절차 문제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던 데 비해, 학문적 정치적 연원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권상하에 대한 줄기인 ②-1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1. 경종 권4 1년 9월 2일(경인)

[원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권상하(權尙夏)가 청풍(淸風)의 시골집에서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임금이 애도의 윤음(綸音)을 내리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예장(禮葬)케 하였으며, 또 관판(棺板)과 제수(祭需)도 지급케 하고 본도로 하여금 3년을 한하여 그대로 월름(月廩)을 지급케 하였다. 권상하는 어려서부터 명유(名儒)인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풍의(風儀)가 아름답고 언론이 좋아 성균관에 유학할 때부터 이름이 있었다. 송시열이 윤증(尹拯)과 서로 절교하게 되자 문인 중에 후사(後事)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급속하게 추허(推許)하여 송시열이 별세할 때에는 매우 은근한 부탁을 받았었다. 갑술년 이후에는 그 문도들이 더욱 서로 추중(推重)하였고 조정에서도 유현(儒賢)으로 대접하였으며, 여러 번 징초(徵招)에 응하여 마침내 대배(大拜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권상하는 학문이 정심(精深)하지 못하고 주위모아 외고 말하는 것이 다만 송시열의 여서(餘緒) 뿐이어서 이 때문에 김창협(金昌協) 형제(兄弟)가 매우 경멸하였다. 숙종(肅宗)이 온천(溫泉)에 거동할 때에 권상하는 좌찬성(左贊成)으로 조정에 나왔는데, 임금에게 말한 바가 성학(聖學)을 권면하고 치도(治道)를 도울 만한 것이 없고 다만 송시열이 항상 말한 바 ‘천지간(天地間)에는 오직 「직(直)」자 한 글자만이 있을 뿐이다.’와 ‘대의(大義)를 위하여 설치(雪耻)를 하여야 한다.’는 것뿐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듣고 비웃었다.

[수정]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가 졸(卒)하였다. 권상하의 자(字)는 치도(致道)인데, 견확(堅確)하고 중후(重厚)하였으며 학문을 익히기를 매우 부지런하고 독실히 하였다. 권상하는 송시열(宋時烈)을 사사(師事)하였는데, 송시열이 매우 존중하여 그가 거처하는 집에 써주기를, ‘한수재(寒水齋)’라 하였다. 송시열이 초산(楚山)에서 화(禍)를 입었을 때 세도(世道)를 권상하에게 부탁하고, 이어서 옷과 책을 그에게 물려주었는데, 옷은

95) 《경종실록》 권4 1년 8월 22일(경진)

바로 주자(朱子)가 지은 야복(野服)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었으며, 책은 바로 이이(李珣)가 손수 쓴 《경연일기(經筵日記)》 초본(草本)으로, 김장생(金長生)이 송시열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다. 처음에 송시열이 일찍이 장식(張栻)의 우제사(虞帝祠)의 의리에 따라 명(明)나라 신종(神宗)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였는데, 권상하가 비로소 청주(淸州)의 화양동(華陽洞)에 건립하고, ‘만동묘(萬東廟)’라 이름하고, 사변(四邊)·사두(四豆)로 신종(神宗)과 의종(毅宗) 두 황제(皇帝)를 제사하였다. 갑신년에 이르러 숙묘(肅廟)가 태세(太歲)가 군탄(涓灘 申)이라 하여 황조(皇朝)의 옛 은혜에 감격해 단선(壇墠)을 설치하고 제사지내려 하여 비밀히 권상하를 찾아 물으니, 권상하가 극력 찬동해서 드디어 대보단(大報壇)을 쌓았던 것이다. 정유년(1717, 숙종43)에 숙묘가 온천(溫泉)에 거둥하매 권상하가 비로소 소명(召命)을 받아 행궁(行宮)에 입견(入見)하였다가, 회란(回鑾 환궁)함에 미쳐서 권상하도 또한 산으로 돌아가고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가 81세였다. 뒤에 시호(諡號)를 ‘문순(文純)’으로 내렸다. 문인(門人)으로는 이간(李柬)과 한원진(韓元震)이 가장 이름이 알려졌다.

원본 편찬자들에게 권상하는 “학문이 정심(精深)하지 못하고 주워 모아 외고 말하는 것이 다만 송시열의 여서(餘緒) 뿐이어서 이 때문에 김창협(金昌協) 형제(兄弟)가 매우 경멸하였다.”며, “임금에게 말한 바가 성학(聖學)을 권면하고 치도(治道)를 도울 만한 것이 없고 다만 송시열이 항상 말한 바 ‘천지간(天地間)에는 오직 「직(直)」자 한 글자만이 있을 뿐이다.’와 ‘대의(大義)를 위하여 설치(雪耻)를 하여야 한다.’는 것뿐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듣고 비웃었다.”고 혹평하였다. 송시열과의 관계에 더하여, 김창협 형제가 경멸하였다 하여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의 사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721년 10월에 경종은 왕세제에게 정사(政事)를 대행하게 하는 명을 내렸다.

②-2. 경종 권5 1년 10월 17일(갑술)

[원본]

가) 삼가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국군(國君)에게 질병이 있을 경우 태자가 청정(聽政)하고 선위(禪位)받았던 것은 당(唐)나라에는 순종(順宗)이 있고, 송(宋)나라에는 광종(光宗)이 있었다. 순종은 풍암(風瘡)으로 말을 못하여 조회를 보지 못하였고, 광종은 심지(心志)를 잃어서 부모에게 문안을 폐하고 집상(執喪)을 하지 못하므로, 두황상(杜黃裳)과 조여우(趙汝愚)의 일이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비록 조회에 임하여 침묵하고 청단(聽斷)에 권태로움을 느낄지라도 기거 동작이 상도(常度)가 있고 조향(朝享)을 폐한 적이 없으며, 비록 혹시 화기(火氣)가 올라 섬미(譴迷)함이 있을지라도 군하(群下)가 아뢰는 일에 대한 수답(酬答)이 어긋나지 아니하여 순종·광종 두 임금처럼 말을 못하거나 집상(執喪)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대신으로서 비록 충성스러움이 두황상·조여우와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정무를 놓는 일을 즉위 원년(元年)에 갑자기 의논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돌아보건대 이이명과 김창집은 죄와 허물이 쌓이고 쌓여 항상 스스로 위태로와하는 마음을 품고 감히 이런 일을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그 자제와 문객의 흉측한 계획과 사악한 모의가 또 역안(逆案)에 낭자한 경우가겠는가? 정무를 놓는 명이 있었는데도 정청(庭請)을 또 거두니, 중외의 인심이 비분(悲憤)하고 대소 신민(大小臣民)은 분주하여 허둥지둥하였다. 제생(諸生) 중에는 대궐을 지키면서 울부짖는 자까지 있었는데, 조태구가 대궐에 나아가 입대(入對)하자 반한(反汗)의 명령이 있음을 듣고서는 모두 기뻐하여 뛰어 마지 않았으니, 경종(景宗)의 거룩한 덕이야말로 전(傳)에 이른바, ‘슬퍼함을 백성에게 베풀지 아니하여도 백성이 슬퍼하고 공경함을 백성에게 베풀지 아니하여도 백성이 공경한다.’는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나) 사신(史臣)은 말한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마음의 병이 갑절이나 심해져 군신(君臣)을 대할 때는 말이 혹 뒤바뀌는 경우가 있고 만기(萬機)에 임할 때는 살피지 못함이 많았으니, 진실도 두려워할 만한 종사의 근심이 있었으니, 이는 조성복(趙聖復)의 상소와 네 대신의 차자(劄子)에서 빙자해 말한 바이다. 청정(聽政)은 선조(先朝)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고 세제(世弟)의 영명(英明)함은 족히 큰 임무를 맡아 감당할 만하니, 성상께서 정무를 놓고 한가로운 데 나아가 조양(調養)에 전심하되 1분(分)의 차효가 있다면 어찌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두황상(杜黃裳)·조여우(趙汝愚)의 일이니, 어찌 곧장 역(逆)으로 논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윤(伊尹)·곽광(霍光)·두황상·조여우는 공(公)을 위한 것이었고, 왕망(王莽)·동탁(董卓)·사마의(司馬懿)·환온(桓溫)은 사(私)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이 무리들의 충(忠)이 되고 역(逆)이 되는 것은 또한 오직 마음의 공(公)과 사(私)가 어떠한가에 있을 뿐이다. 마음을 속에 감추었으니, 그 공과 사를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그 하는 일을 추적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대저 국군(國君)에게 질병이 있어 세자가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나라의 큰 정사이니, 또한 숨기고 덮어서 비밀로 할 만한 것이 아니니, 대신이 애초에 바로 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은미(隱微)하게 말을 낸 것은 무엇 때문인가? 3일 동안 정청(庭請)하여 힘써 다투고 고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미 절목(節目)을 올렸는데 또 도로 거두기를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신의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종사(宗社)를 위해 큰 의논을 세우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가? 그 몰래 손과 다리를 놀려 힘써 덮으려고 한 것은 그 마음에 험잡(挾難)한 바가 있어 속으로 부족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저 이른바 험잡이라는 것은 이 무리가 성상을 등의 까끄라기처럼 보아 30년 이래 두려워하며 도마 위의 고기로 자처하고, 동궁에게는 또 스스로 정책(定策)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일의 거행은 바로 까끄라기를 없애고 도마를 벗어나며 공(功)을 요구하고 보답을 바라는 계책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비록 착함이 이윤(伊尹)과 같고 어질고도 충성스러움이 곽광(霍光)·두황상(杜黃裳)·조여우(趙如愚)와 같은 이가 이 처지에서 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데, 하물며 환득 환실(患得患失)하고 옹치(癰痔)를 입으로 빨아주는 탐욕스럽고 비루함이 이 무리와 같은 경우이겠는가? 아! 임금과 신하 사이는 분의(分義)가 엄중하니, 만약 한 몸의 사사로운 이해(利害)로 그 사이에 참여한다면, 맹자(孟子)가 이른바 ‘이윤(伊尹)의 뜻이 있으면 가하

다.’고 한 데에 크게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장경부(張敬夫)가 이른바 ‘일신의 이해를 위하여 피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經)에 이르기를, ‘그 큰 괴수(魁首)를 죽인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수종(首從)의 구분이 없겠는가? 더욱이 애초에 옥안(獄案)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더욱 구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한꺼번에 네 대신을 함께 죽였으니 그 또한 참혹하다.”

[수정]

사신은 논한다. “병을 숨길 수 있는가? 성인(聖人)도 또한 질병이 있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의 고명편(顧命篇)에 이르기를, ‘이제 하늘이 나에게 질병을 내려 장차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성왕(成王)이 그 병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임금이 질병이 있으면 신하가 숨길 수 있겠는가? 늘 있는 병은 실덕(失德)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경》의 금릉편(金縢篇)에 이르기를, ‘너희 원손(元孫) 모(某)가 나쁜 병을 만났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주공(周公)이 무왕(武王)의 병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대저 임금에게 불행히 병이 있는데, 좌우(左右)에서 나라의 주권을 도둑질하여 사직(社稷)이 장차 망하게 되었다면, 비록 즉위(卽位)한 원년(元年)일지라도 저사(儲嗣)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저사를 이미 세웠다면 어찌 국정(國政)을 섭정(攝政)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군주가 병이 있는데도 동궁(東宮)이 섭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난신(亂臣)이고, 군주가 병이 있는데도 동궁이 섭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난신이다. 아! 임금께서 병이 있는가, 병이 없는가? 최석항이 전상(殿上)에서 모시고 있는데 임금이 그를 국문하라 명하시고 신치운(申致雲)이 전상에서 모시고 있는데 임금이 그를 가두라고 명하신 후에야 저들의 무리가 비로소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성상의 질병을 끝내 숨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사대신(四大臣)이 연명(聯名)하여 차자(劄子)를 올린 것이 어찌 신하의 절개가 없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사대신들은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보고도 오히려 일조(一朝)의 화(禍)를 고려하여 능히 왕세제(王世弟)를 높여서 떠받들어 국정(國政)을 섭정하기를 청하지 못하였다면, 그들의 불충(不忠)한 죄가 저들의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조태구 등이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옴에 미쳐서 위기(危機)가 위로 동궁(東宮)에게 닥쳐서 실로 말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김창집 등이 이에 창황히 따라 들어간 같은 목소리로 환수(還收)를 청하였으니, 또한 그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그들이 몇대로 장살(狀殺)을 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연명 차자(聯名劄子)를 죄안(罪案)으로 삼았고, 을사년(1725, 영조1) 이후에 이르고 나서는 스스로 연명 차자에 위배한 자가 도리어 그들의 역안(逆案)이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삼변(三變)의 설을 만 들어내어 처벌하였다. 삼변은 바로 정청(庭請)·연차(聯劄)·수환(收還)이다. 이른바 ‘삼변’이란 것은 그것이 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충성을 하는 데 한결같았던 것을 볼 수 있다.”

②-2 기사는 왕세제 대리청정을 둘러싸고 소론과 노론이 원본과 수정본을 통해 상이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원본에는 사론이 가), 나) 두 편이 달려 있는데, 나) 기사에서 보듯이, “대신이 애초에 바로 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은미(隱微)하게 말을 낸

것은 무엇 때문인가? 3일 동안 정청(庭請)하여 힘써 다투고 고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미 절목(節目)을 올렸는데 또 도로 거두기를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신의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종사(宗社)를 위해 큰 의논을 세우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가?”를 곧 삼변, 정청(庭請)·연차(聯筭)·수환(收還)이라고 수정본에서 정리했던 것이다.

김창집 등이 정청을 하다가 거두고 연명 차자를 올렸으며, 결국 그것을 거두었다는 말이다. 이를 한결같은 충성으로 보는 수정본의 편찬자들과, 변심이자 역심이라고 보는 원본 편찬자들의 견해가 대립하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가) 기사와는 달리 나) 기사는 “그러나 경(經)에 이르기를, ‘그 큰 괴수(魁首)를 죽인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수종(首從)의 구분이 없겠는가? 더욱이 애초에 옥안(獄案)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더욱 구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한꺼번에 네 대신을 함께 죽였으니 그 또한 참혹하다.”고 하여 이 사태가 노론 4대신의 사사(賜死)나 참수(斬首)에 이를 일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아마 가)의 기록이 경종 당시 사론이고, 나)는 편찬할 때인 영조 때 사론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영조대에 무옥(誣獄)으로 밝혀진 김일경, 목호룡의 고변으로 인한 대대적인 노론의 숙청이었다. 발단은 12월 6일 김일경(金一鏡) 등이 조성복(趙聖復) 등을 처벌하라고 올린 상소였다. 조성복은 그해 10월 10일 왕세제의 참정(參政)을 요청하는 하는 상소를 올렸고, 경종이 그날 바로 세제에게 대리청정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②-3. 경종 권5 1년 12월 6일(임술)

[원본]

김일경 등의 상소……임금이 하교하여, ‘나의 천심(淺深)을 엿본다.’며 꾸짖고 여러 승지를 아울러 파직하였으며, 이어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일체 모두 삭출(削黜)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서소 위장(西所衛將) 심필기(沈必沂)를 가승지(假承旨)에 차임하였는데, 심필기가 계달(啓達)에 참여하지 아니한 승지 이정주(李挺周)·김제겸(金濟謙)을 패초(牌招)할 것을 청하였다. 이정주가 부름을 받고 입궐하자 임금이 이정주를 사판(仕版)에서 깎아내고 김제겸을 파직하라 명하였다. 김창집·이이명·조태채가 금오(金五) 밖에 나아가서 대명(待命)하니, 임금이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김창집 등이 드디어 성(城) 밖으로 물러가서 대죄(待罪)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일경은 본래 위험한 소인(小人)으로 젊어서 김춘택(金春澤)을 따라다니며 좋게 지냈다. 오도일(吳道一)이 문병(文柄)을 주관하자 문자(文字)로 교분을 맺어 마침내 괴과(魁科)816)를 훔쳤고, 대관(臺官)이 되자 이정익(李楨益) 등의 범분(犯分)한 죄를 논하였다. 최창대(崔昌大)가 ‘병원군(邳原君)이 늙어서 세자(世子)에게 불지 아니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자, 김일경은 크게 분노하여 이사상(李師尙)·한배주(韓配周)와 사우(死友)를 맺었는데, 논의가 날카롭고 방자하였다. 또 그 집에서의 행동이 더럽고 악하였는데, 벼슬살이 하면서부터 탐욕스럽고 방종(放縱)하여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숙종(肅宗) 또한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물리쳐 버려두고 쓰지 아니하니 김일경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숙

종이 위독하자 여러 대신을 불러 와내(臥內)에 들어오게 하고는 빈장(殯葬)817) 를 다스리는 일을 돌아보며 말하고 나라일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김일경은 이 사실을 듣자 웃으며 같은 무리에게, ‘그대의 무리가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만약 능히 임금의 덕을 일찍 보도(輔導)하였더라면 오늘날 고명(顧命)818) 이 어찌 이에 그치겠는가?’라고 하고, 그 말이 포만(暴慢)하여 조금도 슬퍼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보는 자들이 놀랐다. 대저 김일경이 이이명과 김창집의 죄를 상소에다 논하기를, ‘지금 전하께 불충한 자는 바로 선왕에게 불충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진실로 옳다. 하지만 김일경이 숙묘(肅廟)께 불충함이 이와 같은데, 또한 어찌 경종(景宗)께 충성할 리가 있겠는가? 뜻을 얻은 뒤 동궁(東宮)이 안전에 없고 입으로 흉한 말을 마구 했던 것을 보면 더욱 징험할 수 있다. 대저 그 마음을 세우고 일 행하는 본말(本末)은 큰 공명(功名)과 큰 부귀를 취하며 사욕을 이루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데 불과했던 것이다. 대저 이이명과 김창집의 패배에 김일경의 힘이 어찌 있었겠는가마는 당시의 의논을 돌아보건대 그 공이 토역(討逆)에 있으므로 감히 제재해 누르지 못하였으나, 기세(氣勢)를 성대하게 만들어 국가를 거의 어지럽혔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②-3 기사는 조성복에 대한 김일경의 비판 상소를 소개하고, 사론을 수록하였다. 사론에서는 김창집을 비판하면서도 김일경이 소인이고, “김일경이 숙묘(肅廟)께 불충함이 이와 같은데, 또한 어찌 경종(景宗)께 충성할 리가 있겠는가? 뜻을 얻은 뒤 동궁(東宮)이 안전에 없고 입으로 흉한 말을 마구 했던 것을 보면 더욱 징험할 수 있다.”고 김일경을 비판했다. “이이명과 김창집의 패배에 김일경의 힘이 어찌 있었겠는가마는 당시의 의논을 돌아보건대 그 공이 토역(討逆)에 있으므로 감히 제재해 누르지 못하였으나, 기세(氣勢)를 성대하게 만들어 국가를 거의 어지럽혔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양비론을 펴고 있다.

이날로 경종은 심단(沈檀)을 이조판서로, 김일경을 이조참판으로 임명했다. 환국이었다. 훈련대장 이홍술, 충유사 윤각을 문외 출송시키고, 부제학 홍계적을 나주 흑산도에 안치했으며, 어유룡·박치원 등을 의금부에 하옥했다. 9일에는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견명을 면직시켰다. 민진원·이우항 등은 12일에 성주목·강진 고금도 등지로 귀양 갔다. 17일에 윤지술(尹志述)은 형을 받고 죽었다.

12월 22일에, 환관 박상검(朴尙儉)과 문유도(文有道) 등이 왕세자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었으나 관련자인 궁인 석렬(石烈), 필정(必貞)이 자결하는 통에 사건을 밝히지 못하고 말았다. 미심쩍은 일이었다. 그러자 박상검의 사건에 대한 처리, 세제를 효우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라는 정호(鄭澍)의 상소가 있었고,⁹⁶⁾ 1월 6일 박상검이 사형당하고 김몽상과 박찬문

96) 《경종실록》 권6 2년 1월 2일(무자). 《경종실록》에서는, “행 사직(行司直) 정호(鄭澍)가 향리(鄉里)에서 상소하여, ‘자교(慈敎)를 봉환(封還)하고 역엄(逆閹)을 곧장 정법(正法)하도록 청한 것’을 정신(廷臣)의 죄라고 하여 무고하고 날조한 것이 모두 지극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반면, 《경종수정실록》에는 정호의 상소가 전제되어 있으며, “정호(鄭澍)는 문정공(文正公) 정철(鄭澈)의 손자이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을 사사(師事)하여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데, 젊어서부터 강직(剛直)하여 그의 이름이 조정에서 중

이 방송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②-4-1. 경종 권6 2년 3월 27일(임인)

[원본]

- 목호룡(睦虎龍)의 상변(上變), 공칭(供稱) 전제

목호룡의 공초(供招) 끝에 동궁을 핍박하는 단서가 되는 말이 있었으므로, 국청(鞠廳)의 추안(推案)에는 삭제해 버리고 기록하지 않았다. 목호룡은 남인(南人)의 천얼(賤孽)로서 백망과 체결(締結)하여 김용택·이천기·오서중·유경유의 사이에서 순간순간 형적을 바꾸며 노닐어 홍역(凶逆)의 계획과 음비(陰秘)한 모의에 어지럽게 참여하여 관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또다시 김일경(金一鏡)·박상검(朴尙儉)과 투합(投合)하여 동궁을 위태하게 할 계책을 도모하였으니, 고변서(告變書) 가운데 있는, ‘네가 기꺼이 임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깨냈다.’는 말과 공사(供辭) 가운데 있는, ‘동궁의 심사(心事)를 환히 안다.’는 말은 뜻이 지극히 흉참(凶慘)하였다. 여러 적(賊)의 무리가 스스로 위태하여 두렵게 여기는 마음으로 반역(反逆)을 도모하였을 뿐이니, 그 무엇이 동궁에게 관계가 있겠으며, 또 무슨 밝힐 만한 심사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반드시 이 말을 했던 것은 대개 김일경·박상검과 안팎으로 서로 호응하며 함벽(闔闢)하여 말을 만듦으로써 그 무욕(誣辱)하고 더럽히며 위태롭게 하고 핍박하는 계책을 성사시키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때 옥사(獄事)를 조사하던 여러 신하들이 비로소 고변서(告變書) 가운데 동궁을 핍박하는 말을 삭제해 버릴 것을 청한 것은 진실로 체모를 얻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능히 그 정절(情節)을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그 죄를 성토(聲討)하지 못하고 전례(前例)에 따라 책훈(策勳)하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소중한 바가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옥정(獄情)을 완전히 핵실한 뒤에도 유독 그 무고하며 핍박한 죄는 밝혀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인가? 식자(識者)로서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국청에서 도사(都事)를 보내어 고발한 여러 적(賊)들을 잡아올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그리고 지열(池烈)은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교하였다.

[수정]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하여 무욕(誣獄)을 일으켰다. 박상검(朴尙儉)이 이미 복주(伏誅)되어 왕세제를 동요(動搖)시킬 계책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또 주청사(奏請使)가 일을 끝내고 선래(先來)가 이미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드디어 천례(賤隸)인 목호룡을 모집한 다음 상변(上變)하도록 사주하여 일대(一隊)의 제인(諸人)의 자제(子弟)·문객(門客)과 왕세제(王世弟)의 겸속(僉屬), 겸속들과 연관된 나인(內人), 빈궁(嬪宮)의 친질(親姪), 사저(私邸)의 차지 중관(次知中官)을 고발하였으므로, 모두 옥에 갇혀 단련(鍛鍊)을 받았다. 이는 왕세제를 무함하기 위한 계책이었으나, 결국 그들의 흉악한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히 여김을 받았다. 박상검(朴尙儉)의 역변(逆變)이 있었을 때를 당하여 80세의 기구신(耆舊臣)으로 동궁(東宮)을 위하여 피하지 않고 과감히 말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용감한가? 문청공이 훌륭한 손자를 두었다.”고 기렸다.

②-4-2. 3년 동안 목호룡이 고발한 역모 옥사가 계속됨

[수정]

이제야 왕옥(王獄)에 향양(桁楊 형구)을 갖추게 되었고, 초독(楚毒)이 말할 수 없이 혹독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단련(鍛鍊)하여 죄에 얹어 넣는 일이 3년이나 되도록 계속되었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복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억지로 지만(遲晩 자백)한 사람도 있고, 이미 죽었는데도 죄를 얹어 결안(結案)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장형(杖刑)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한 사람도 있었으니, 이렇게 허황한 옥안(獄案)은 예전에 없던 것이었다. 이른바 공사(供辭)니 결안(結案)이니 하는 것은 구본(舊本)의 실록(實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영종(英宗)께서 보위(寶位)에 오른 데 이르러 차례로 신리(伸理)되었다.

②-4-3. 역모에 연루된 사람

[수정]

그 옥사(獄事)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정인중(鄭麟重)은 바로 고(故) 충신(忠臣)인 정발(鄭撥)의 손자이고, 김용택(金龍澤)은 곧 김만중(金萬重)의 손자이자, 이이명(李頤命)의 사위이다. 이천기(李天紀)는 곧 이사영(李思永)의 아들로 김춘택(金春澤)의 처제(妻弟)이고, 심상길(沈尙吉)은 곧 심진(沈楹)의 조카이고, 이희지(李禧之)는 곧 이사명(李師命)의 아들이다. 홍의인(洪義人)은 곧 홍언도(洪彦度)의 아들이고, 이기지(李器之)는 곧 이이명(李頤命)의 아들이다. 서덕수(徐德修)는 곧 서종계(徐宗悌)의 손자이고, 김성행(金省行)은 곧 김창집(金昌集)의 손자이다. 이만성(李晩成)·홍계적(洪啓迪)·김운택(金雲澤)·김민택(金民澤)·조성복(趙聖復)·김제겸(金濟謙)·홍석보(洪錫輔)는 문신(文臣)들로서 현직(顯職)에 오른 사람들이고, 이홍술(李弘述)·윤각(尹愷)·이우항(李宇恒)·이상집(李尙畚)·백시구(白時耆)·유취장(柳就章)·심진(沈楹)·이현(李瀾)·김시태(金時泰)는 무신(武臣)들 가운데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고, 유성추(柳星樞)·양익표(梁益標)·이명좌(李明佐)·조흡(趙洽)·유후장(柳厚章)은 무가(武家)의 사람들이다. 이정식(李上植)·이만성(李晩成)은 문서(門庶)인데, 이견명(李健命)과는 내외 형제(內外兄弟)이다. 김창도(金昌道)는 곧 김창집(金昌集)의 서종형제(庶從兄弟)이고, 조송(趙松)은 곧 조영복(趙榮福)의 서숙(庶叔)이고, 김성절(金盛節)은 곧 김성적(金盛迪)의 서제(庶弟)이며, 이세복(李世福)은 곧 조송(趙松)의 생질이다. 그리고 이상건(李尙建)·김수천(金壽天)·이삼석(李三錫)·김극복(金克復)·우홍채(禹洪采)·전인좌(錢仁佐)·현덕명(玄德明)·김진석(金震錫)·형의빈(邢儀賓)·홍순택(洪舜澤)은 곧 상역(象譯)351)이다. 백망(白望)은 곧 잠저(潛邸) 때의 겸속(僉屬)이고, 정우관(鄭宇寬)·김일관(金一觀)이 있으며, 업봉(業奉)은 여인(女人)이다. 이영(二英)은 백망(白望)의 처이고, 업이(業伊)는 곧 이영의 어머니이다. 백열(白烈)은 곧 궁인(宮人)으로 백망의 측속인 자이고, 묵세(墨世)는 곧 이영의 측속으로 궁인이 되었는데 나이 겨우 14세였다. 일정(一貞)은 곧 장세상(張世相)의 비(婢)인 일업(一業)이고, 장세상은 곧 잠저(潛邸) 때의 차지중관(次知中官)이다. 김덕기(金德器)는 곧 장세상의 양자(養子)이다. 또 최홍(崔泓) 등이 있

는데 모두 60여 인이 전후 체포되었다. 그러나 생존자는 10인도 못되었다.

②-4-1 기사에서 원본은 “김일경·박상검과 안팎으로 서로 호응하며 합벽(闔闢)하여 말을 만듦으로써 그 무욕(誣辱)하고 더럽히며 위태롭게 하고 꺾박하는 계책을 성사시키려고 했다.”며 신임사화가 무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4-2, ②-4-3 기사처럼 사후에 목호룡의 고변부터 3년 동안, 즉 영조가 즉위할 때까지 옥사가 계속되었음을 밝히거나, 전후로 60여 명이 체포되고 생존자가 10명도 되지 않았다는 서술은 수정본이니까 가능한 기록일 것이다.

목호룡의 고변으로 노론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4월 12일 조태구(趙泰耆)·최석항(崔錫恒)의 차자에 따라 김창집, 이이명을 사사했다. 5월 3일 서종태(徐宗泰)의 아들의 아들로 옥사를 온건히 처리하려 했던 서명균(徐命均)은 안악 군수(安岳郡守)로 강등되었다. 수정본에서는, “오직 서명균만이 조문명(趙文命)·송인명(宋寅明)·박사수(朴師洙)와 함께 그 속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완소(緩少)’라고 호칭하였다. 박상검이 권병(權柄)을 도둑질하여 태학생(太學生) 윤지술(尹志述)을 살해하자, 서명균이 상소하여 극력 구제하였는데, 훌륭한 청의(淸議)였다. 영조 3년에 조문명·송인명이 국정의 요직에 앉게 되자, 비로소 노소(老少)와 남북(南北)의 당인(黨人)들을 조정(調停)하여 아울러 기용했는데, 이를 ‘탕평(蕩平)’이라고 호칭하였다.”라고 그를 기렸다.

8월 19일에는 최석항이 입대(入對)하여 이건명(李健命)을 죽일 것을 청하여 이건명은 나로도(羅老島)에서 참수되었다. 네 대신 중 이건명이 특히 참혹하게 죽은 것은 이건명이 청나라에서 왕세제 고명(誥命)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석항이 분노하여 마치 개인의 원수를 갚듯이 하게 된 것이라고 수정본 편찬자들은 보았다.⁹⁷⁾ 10월 29일에는 위리안치했던 조태채(趙泰采)를 진도(珍島)에서 사사(賜死)하게 하였다.⁹⁸⁾

경종은 9월 19일 교문(敎文)을 발표하고, 21일 태묘에 역적을 토벌한 사실을 고했다. 수정본에는 영조 을사년(1725, 영조1) 이 임인년 김일경과 목호룡의 무고에 의한 옥안(獄案)을 다시 논의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전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론을 덧붙였다.

②-4-4. 경종 권3 9월 21일(계묘)

[수정]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임인년(壬寅年) 군흉(群凶)들의 죄를 어떻게 이루 주살(誅殺)할 수 있겠는가? 당시 사람들은 천신(薦紳)으로부터 위포(韋布)에 이르기까지 저사(儲嗣)를 세워 대리하게 하자는 데에 관계되어 연루되었으면, 한 사람도 주륙(誅戮)이나 잔축(竄逐)을 혹시라도 면하지 못하였었다. 예로부터 간흉(奸凶)들이 단련(鍛鍊)하여 죄를 만들어 낸 것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 옥사처럼 참혹하고도 포악한 경우는 있지 않았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까지 옥례(獄隸)를 시켜 대신 서압(署押)하게 하여 결안(結案)을 만들어 낸 사례가 많았

97) 《경종수정실록》 권3 2년 8월 19일(임신)

98) 《경종실록》 권10 2년 10월 29일(신사)

으니, 이로써 살펴보건대 이른바 승복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흉당(凶黨)들이 두찬(杜撰)한 것임이 환히 드러나 숨길 수 없다. 목세(墨世)는 대전 나인(大殿內人)으로 그때 나이 겨우 14세였는데, 적신(賊臣)들은 그가 어리고 나약한 것을 속여서 협박하면 무복(誣服)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으로 옥사를 실증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목세는 다만 한 마디 말이 라도 성상에게 미치게 될까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다가, 결국 형틀 아래에서 운명(隕命)하고 말았는데, 전후 형신(刑訊)을 받은 것이 모두 13차례였다. 아! 상도(常道)를 지키는 천성(天性)은 사람들이 누구나 지니고 있어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저 옥사를 다스리던 역적들은 무슨 심장을 가졌기에 그리한단 말인가?

김성행(金省行)이 형신 받을 적에 옥졸(獄卒)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상투를 단단히 잡아매어 조금도 동요됨이 없게 하라.’ 했는데, 이는 그때 옥사를 다스리던 사람이 죄수의 상투가 조금만 꼬덕거리는 것을 보면 문득 승복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옛날의 절사(節士)인들 어찌 이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 영종(英宗)이 누차 그 말을 거론하면서 그의 의열(懿烈)을 불쌍하게 여겨 직접 제문(祭文)을 지어 그의 충성을 숭장(崇獎)하였으니, 역적들이 없는 죄를 꾸며서 법망(法網)에 끌어넣은 죄상은 더욱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백시구(白時耆)는 무과(武科)로 벼슬에 나아가 죽을 때가 가깝게 되었으니, 흉당(凶黨)들이 가장 미워한 경우가 아니었으면 기필코 죽이려는 죄과(罪科)에 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백시구가 국옥(鞠獄)에 나아가 신문받을 적에 눈을 부릅뜨고 큰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선조(先朝)의 숙장(宿將)들이 모두 도륙(屠戮)되었으니, 혼자서 살아 있는 것이 부끄럽다. 어찌 하여 속히 죽이지 않는가?’ 했으므로, 흉당들이 노하여 살해한 것이다. 이광좌(李光佐)가 영종(英宗)에게 제주(提奏)한 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때 옥사를 다스리던 여러 사람들이 제마음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있으니, 아! 통분스럽다.

금상(今上) 5년 신축년(1781, 정조5)에 원릉(元陵)에 거둥하여 사충사(四忠祠)에 치제(致祭)하라고 명하고, 김성행(金省行)에게 한 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하게 하였으며, 특별히 서덕수(徐德修)에게 집의(執義)를 증직(贈職)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태세(太歲)가 신축(辛丑)이 든 이 해에 선대왕(先大王)께서 잠저(潛邸)에서 들어가 저위(儲位)를 계승했는데, 이제 구력(舊曆)이 되돌아왔으나, 나 소자(小子)는 잊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펼 수 있는 데가 없다. 아! 우리 선왕(先王)께서는 열조(列朝)의 심법(心法)을 계술(繼述)하고 삼종(三宗)의 혈맥을 이어 요순(堯舜)처럼 전수(傳授)함에 있어 인의(仁義)가 극진했으므로, 우리의 4백 년 종사(宗社)가 이를 힘입어 태산(泰山)과 반석처럼 편안해졌으니, 아! 성대하도다. 당시에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충민공(忠愍公) 이견명(李健命)·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 같은 이들이 힘을 합하여 익대(翼戴)하다가 자신이 나라를 위하여 순사(殉死)했으니, 그 정충(精忠)과 대절(大節)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이목에 찬란하게 번뜩이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천지(天地)에 세워놓아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어 영원히 천하 만세에 할말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불행하게도 당시에 효경(梟獍)같이 사나운 무리들이 대대적인 무옥(誣獄)을 일으켜 이에 참화(慘禍)를 꾸며내었으니, 아!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

겠는가? 선조(先朝) 때부터 포장(褒獎)하라는 하교가 누차 사륜(絲綸)에 언급되었고, 강가에 사당(祠堂)을 지어서 사충(四忠)이라는 편액(扁額)을 내렸으니, 성인(聖人)이 천하를 공변되게 다스리는 마음으로 이런 은수(恩數)가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공의(公議)는 백년을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다는 것이 또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거듭 구갑(舊甲)을 만나 원릉(原陵)을 배알하게 되니, 나 소자(小子)가 어찌 느낌을 표현할 방도가 없을 수 있겠는가? 사충사(四忠祠)에 승지를 보내어 길일(吉日)을 가려 치제(致祭)하게 하고, 그들의 자손을 선조(選曹 이조)로 하여금 녹용(錄用)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그때 고굉(股肱)의 손자와 주액(肘腋)의 지친으로서 사생(死生)을 가름할 즈음에 만일 동요가 있었더라면, 아! 오늘의 종사(宗社)가 편안히 모셔질 장소가 있었을는지 모르는 일이다. 그때 화(禍)를 입은 사람들에게 차례로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이 홀로 누락되었으므로, 여론(輿論)이 지금까지 차탄(嗟歎)하고 있다. 일찍이 내가 사위(嗣位)한 처음에 하려고 하였으나,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증직(贈職)을 내리는 것 같아서 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그때 선왕의 하교를 소자(小子)가 분명히 받들어 들었는데, 더구나 그 자손들을 녹용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어찌 표장(表章)하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증 이조 참의(吏曹參議) 김성행에게 한 자급을 추증하고, 고(故) 학생(學生) 서덕수에게는 특별히 사헌부 집의를 추증하라. 모두 오늘 하비(下批)하게 하라.”

하였다.

3) 복권과 출향의 갈림길

③-1. 경종 권3 2년 6월 11일(갑자)

[수정]

수찬 이세덕(李世德)이 상소하기를,

“…… 송시열이 신의 스승의 아버지인 고(故) 유신(儒臣) 윤선거(尹宣舉)에게 무욕(誣辱)을 가하기를, ‘부노(俘奴)라’느니 ‘잔인한 사람이라’느니 ‘물가에 가서 물어보라’느니 ‘윤휴(尹鑄)보다 먼저 법에 의거하여 복주(伏誅)되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그가 추악하게 비난한 것은 전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의 스승이 송시열과 절교(絶交)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송시열에게는 악행(惡行)이요 이치에 어긋난 말이기 때문에 숨기고 논하지 않으면서 이에 말하기를, ‘서로 절교한 것은 묘문(墓文)을 지어준 데에 있었던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만, 묘문에는 욕설(辱說)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의서(擬書)라는 것은 오로지 학술(學術)의 수박(粹駁)을 논하고 사생(師生)의 충규(忠規)를 극진히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이야말로 신의 스승의 고심(苦心)이요 혈성(血誠)인 것입니다. 어찌 조금이나마 잘못되었거나 어긋난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송시열은 본원(本源)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이에 말하기를, ‘이는 원한을 갚으려는 것이라.’ 하고 ‘이는 절교를 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비(是非)를 전도시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였으며, 흥패한 말이 갈수록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중외(中外)의 많은 선비들이 신의 스승을 위해 신변(伸辨)하는 소장(疏章)을 올리면, 이를 번번이 모두 막아버리고 봉입(捧入)하지 않았으니, 베를 짜던 자모(慈母)가 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복을 던지고 달아났다고 한 참소는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 양쪽의 말을 모두 저지시키지 않고 함께 주달했다면, 우리 선대왕(先大王)의 성신(聖神)함과 총명스러움으로 끝에 가서 내리신 처분(處分)이 반드시 여기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온 나라의 사림(士林)들이 지금까지도 개연(慨然)한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끝없이 원한을 품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 하였다.

③-1 기사는 수찬 이세덕이 윤선거 부자를 복권시켜 달라는 내용의 상소인데, 내용으로 보아 원본에는 수록되어야 되었을 기사인데, 오히려 원본에는 나오지 않고 수정본에만 실려 있다. 7월 2일에는 유생 황욱(黃昱) 등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흥미롭게도 이 역시 원본에는 간단히 상소 사실만 기재한 데 비해, 상소 원문 전체는 수정본에만 실려 있다.

이런 흐름에서 8월 7일에는 윤선거, 윤증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시호를 내렸다. 수정본에는,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선대왕(先大王)의 엄중한 병신년의 처분은 사문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은 세도의 오류(汚隆)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홍당(凶黨)들이 장황하게 신변(伸辨)하여 결국 뒤집어 고치고야 말았으니, 너무도 기탄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교적 짧은 사론을 남겼다. 이렇게 한쪽이 양지가 되면, 이제 음지가 되는 곳도 있을 터이다.

③-2-1. 경종 권11 3년 3월 13일(임진)

[원본]

관학 유생(館學儒生) 김범갑(金范甲)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도봉 서원(道峰書院)은 곧 선정신(先下臣) 조광조(趙光祖)를 타령(妥靈 신주를 모심)한 곳 이었는데, 일찍이 병자년(1696, 숙종22)에 송시열(宋時烈)을 아울러 향사(享祀)했으니, 어찌 식자(識者)들이 놀라 탄식하고 사림(士林)이 답답해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 춘추 대의(春秋大義)란 송시열이 세상을 속이는 패병(樞柄 칼자루)이었습니다. 효종(孝宗)께서는 실효(實效)를 구하셨는데, 송시열은 허성(虛聲)으로 응했고, 효종께서는 성의(誠意)로 대우하셨는데 송시열은 거짓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평생의 기량이 다만 한 세상을 속이는 데 있었고, 실제 사업에 이르러서는 척촌(尺寸)만큼도 일컬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신(先正臣) 윤선거(尹宣舉)가 글을 보내어 그 빈말일 뿐 실상이 없음을 깊이 배척했으니, 그 심지(心地)가 회홀(回譎)함과 대의(大義)의 허식적인 것을 식자(識者)의 공안(公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대체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묘(顯廟)께서 사위(嗣位)하신 초년을 당해서는 영안(永安)의 조서(詔書)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나아가기 어려운 사단으로 핑계대더니, 경신년(1680, 숙종6) 재기(再起)하던 날에 이르러서는 다시 일언반구도 대의(大義)에 대해서는 언급한 일이 없었으니, 어찌하여 그 앞뒤가 한결같이 이처럼 상반되었는지요? 더구나 그가 찬(撰)한 고(故) 상신(相臣) 김유(金瑬)의 묘명(墓銘)에 주화(主和)한 일절(一節)을 종사(宗社)를 위한 계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르러 그의 평생토록 고집한

바의 대의(大義)가 그의 허성(虛聲)과 더불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말았으니, 진실을 가장하여 허위를 파는 모습이 도처에서 탄로되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③-2-2. 경종 권11 3년 3월 13일(임진)

[원본]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도 또한 그대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도봉서원에 병향(並享)한 것은 공공(公共)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니,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나름대로 문제삼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김범갑 등이 시기를 노려 비난을 가하면서 신축년(1721, 경종1)의 화(禍)를 순치(馴致)시켰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참된 시비(是非)이겠는가? 사향(祀享)의 중전(重典)은 이미 선조(先朝)의 처분(處分)을 거친 것인데, 한 예관(禮官)의 용이한 진청(陳請)으로 하루아침에 철폐(撤罷)했으니, 몹시 전도(顛倒)된 일이다.

[수정] 경종 권4

도봉서원(道峰書院)에 병향한 것은 공공(公共)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니,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나름대로 문제삼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김범갑(金范甲) 등이 시기를 노려 비난을 가하면서 신축년의 화(禍)를 순치(馴致)시켰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참된 시비(是非)이겠는가? 사향(祀享)의 중전(重典)은 이미 선조(先朝)의 처분(處分)을 거친 것인데, 한 예관(禮官)의 용이한 진청(陳請)으로 하루아침에 철폐(撤罷)했으니, 몹시 전도(顛倒)된 일이다.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홍당(凶黨)들이 숙묘(肅廟)의 병신년(1717, 숙종42) 처분(處分)에 대해 불만을 품고 기필코 송문정(宋文正 송시열)에 대해 원한을 풀려고 했고 도봉 서원에서 출향(黜享)시키기까지 했으니, 너무 심한 짓이었습니다. 김범갑과 최탁(崔鐸)의 소장은 모두가 날조해 낸 홍패(凶悖)스런 말인데도 해조(該曹)와 묘당(廟堂)이 같은 말로 찬성했기 때문에 그때의 사관(史官)이 비난했다 하고 전도되었다 한 것인데, 그것은 또한 밖으로 공의(公議)를 내어 보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③-2-1 기사는 송시열을 조광조와 병향한 도봉서원에서 출향시키기를 청하는 상소이다. 송시열의 춘추대의가 허구이며, 효종을 이용했고 윤선거를 비방했으나 실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③-2-2 기사이다. 원본에서는 숙종의 병신처분을 거쳤던 일인데 이렇게 쉽게 출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되묻고 비판하고 있다. 수정본에서도 원본의 이 사론을 그대로 전제하면서 “사관(史官)이 비난했다 하고 전도되었다 한 것인데, 그것은 또한 밖으로 공의(公議)를 내어 보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동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각자 사태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신임사화가 흑독한 무함이고 송시열의 도봉서원 출향이 과도한 조치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에 있었던 네 차례의 실록 수정 중 마지막 수정은 《경종실록》의 수정, 즉 정조 초반에 있었던 《경종수정실록》의 편찬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방법과 논의를 통해 《경종실록》 수정의 실제와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경종실록》의 편찬과정과 수정논의 및 실제 수정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수정 대상이 되었던 주요 사건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1721년(경종1년)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聽政)과, 그에 이은 김일경(金一鏡)의 옥사, 이듬해 목호룡(睦虎龍)의 고변과 노론 4대신의 죽음, 윤선거(尹宣舉) 부자의 복권과 송시열(宋時烈)의 도봉서원(道峯書院) 출향(黜享) 등이 그것이다.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상호 인식차를 보이면서도, 이 사태가 신임사화로 연결되어 노론 4대신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경종수정실록》 편찬자들의 생각이었음은 당연했지만, 《경종실록》 편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일경의 옥사와 목호룡 고변에 대해서 《경종실록》 원본은 김일경·박상검과 안팎으로 서로 호응하며 만든 무옥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경종수정실록》과 일치하는 관점으로, 신임사화가 무옥이었음에 공론이 있었고,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신임사화로 인해 노론이 몰락한 상태에서, 8월 7일에는 윤선거, 윤증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시호를 내렸고, 이듬해에 송시열은 조광조와 병향되었던 도봉서원에서 출향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서 흥미롭게도 《경종실록》의 사론과 《경종수정실록》의 사론 모두 과도한 조치로 시비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각자 사태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신임사화가 혹독한 무함이고 송시열의 도봉서원 출향이 과도한 조치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흔히 선조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의 수정에서 나타난 대립적 견해와는 분명 다른 양상이었다. 이는 영조 원년에 신임사화에 대해 무옥이라는 인식 공유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역사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이었다.